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2023. 9.



2023.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2023.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1.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특정 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는 제도임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예금·적금 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 농지은행, 농어촌정비, 농지조성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 면제

#### 가. 도입 목적

- 영세한 농어민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 보전
  - 1970년부터 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용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인지세를 면제함
- 농·어촌발전 및 농·어가 생활안정과 영농·영어 규모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지세를 면제함

#### 나. 정책대상자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엽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어촌계 등의 조합과 조합원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 등 관련 농·어민과 토지·농어가 소유자, 농어촌공사,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과원 소유자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자, 농업협동조합 등

농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자 및 농어촌공사

#### 다. 수혜내용

용자 서류, 예·적금증서(통장)의 인지세 면제

○ 이때, 동일인이 용자 합계액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인지세 면제(1억원 초과하는 제외)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서류와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 구입 서류의 인지세 면제

#### 라. 조세지출 규모

인지세 관련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

○ 1970년 1월 1일 제도 신설

○ 금융위기 이후 관련 산업에서 용자 규모 등이 감소한 2019년을 제외하고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2013년 51억원에서 2023년(전망) 124억원으로 143% 증가

<표 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인지세	51	65	60	62	26	77	81	92	116	119	12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마. 제도 연혁

- 「인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예·적금증서·통장 등에 부과되는 인지세(제1항제5호·제6호·제9호)와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에 의한 거래에 부과되는 인지세(제1항제7호·제11호)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설정됨

〈표 2〉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70. 1. 1.	- 신설(「조감법」 제6조 6호) · 농민이나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용자를 받을 때 인지세 면제(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
1973. 12. 20.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7호, 8호 신설) · 단위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예금 및 적금증서, 통장의 인지세 면제 · 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1975.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6호, 7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추가)
1978. 12. 5.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제10호 신설) ·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또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 구입 시 작성 서류 인지세 면제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6조 6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1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1980.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제12호 신설)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1982. 1. 1.	-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범조항 변경 · 「조감법」 제6조 6, 7, 8, 10, 11호 → 「조감법」 제81조 5, 6, 7, 9, 11호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축산업협동조합 추가)
1983.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산림조합 추가)
1987. 1. 1.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81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1,500만원 이하
1989. 1. 1.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81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1,500만원 이하 → 개정 3,000만원 이하

<표 2>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9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li> <li>·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추가)</li> </ul>
199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7호)</li> <li>·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추가</li> </ul>
1991.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7호)</li> <li>·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추가</li> </ul>
199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범조항 변경</li> <li>· 『조감법』 제81조 5, 6, 7, 9, 11호 → 『조감법』 제111조 5, 6, 7, 9, 11호</li> <li>-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li> </ul>
199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111조 5호)</li> <li>·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3,000만원 이하 → 개정 5,000만원 이하</li> </ul>
199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개정(『조감법』 제111조 7호)</li> <li>·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li> </ul>
199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범조항 변경</li> <li>· 『조감법』 제111조 5, 6, 7, 9, 11호 → 『조특법』 제116조 5, 6, 7, 9, 11호</li> <li>- 일몰기한 설정</li> <li>· 일몰기한: 2000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5, 6, 9호)</li> </ul>
200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개정(제111조, 5, 6호)</li> <li>·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에 통합됨</li> </ul>
2000.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명칭 변경</li> </ul>
200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기한 연장</li> <li>· 기존: 2000년 12월 31일 → 개정: 2003년 12월 31일</li> </ul>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기한 연장</li> <li>· 기존: 2003년 12월 31일 → 개정: 2006년 12월 31일</li> </ul>
200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제116조 7호)</li> <li>·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li> </ul>
200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기한 연장</li> <li>· 기존: 2006년 12월 31일 → 개정: 2009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5, 6, 9호)</li> <li>- 『조특법』 제116조 7호, 11호 일몰기한 설정</li> <li>·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7, 11호)</li> </ul>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개정(『조특법』 제116조 7호)</li> <li>·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폐지</li> <li>·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도입</li> <li>- 일몰기한 연장</li> <li>· 기존: 2009년 12월 31일 → 개정: 2012년 12월 31일</li> </ul>

<표 2>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13.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2년 12월 31일 → 개정: 2015년 12월 31일
2016.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5년 12월 31일 → 개정: 2018년 12월 31일
2018. 1. 1.	- 적용요건 완화(「조특법」 제116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5,000만원 이하 → 개정 1억원 이하
2019.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2022.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3년 12월 31일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현황

### 가. 영국

- 영국에서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 통상 인지세·토지세(SDLT)를 지불해야 함
  - 자유 보유 형태의 토지(freehold estate), 신규 또는 기존의 임차 보유 형태의 토지(leasehold estate),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인지세가 부과됨
  - 2003년 Finance Act가 시행된 이후 토지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지세가 폐지되었음
  - 통상적으로 부동산 또는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에 기반을 두어 인지세 액수가 정해짐
  
-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가치, 구매자의 특성 등 요인에 따라 인지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relief or an exemption)이 주어짐
  - 인지세는 부동산의 가치와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며, 특정 임계값 미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인지세 면제
  - 기타 특정 상황에서 인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 받아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나. 호주

- 호주의 인지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성격을 지니며, 주별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나 모든 주에서 인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주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지만 자동차 등록 및 양도, 보험, 부동산, 고용 구매 계약(hire purchase agreements), 재산 양도(사업, 부동산 또는 특정 주식) 시 인지세를 부과함
  - 주별로 자체 법령을 제정하여 과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 이전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1.25~6.75%가 적용됨
  - 주별로 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인지세는 인지세법(Stamp Duties Act)에 따라 싱가포르의 모든 부동산 및 주식과 관련된 과세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임
  - 과세대상 문서가 실행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
  -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자산의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있고 실물 또는 전자적 문서를 모두 포함
  - 단, 일부 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가 면제됨
  
- 싱가포르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매수인(양수인, 임차인 등)이 부담하는 인지세(Buyer's Stamp Duty, BSD)와 매도인(양도자 등)이 부담하는 인지세(Seller's Stamp Duty, SSD)로 구분됨
  - 매수인은 부동산 임대차 및 매거래, 주식 등 매매거래, 저당권 설정계약 시 인지세를 부담하고, 매수인의 상황, 즉 개인 또는 기업인지 여부, 싱가포르 거주자 여부, 보유 부동산수에 따라 추가적인 부가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납부할 의무를 짐
  -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교환 시 인지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용도, 즉 주거용·산업용 등에 따라 인지세율이 달라짐

## 라. 홍콩

- 홍콩의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 및 무기명 증권과 같이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 고정 혹은 종가로 부과되며, 이러한 증서의 복제 문서 혹은 대체 문서에도 부과할 수 있음
  - 홍콩의 인지세는 거래 자체가 아닌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문서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① 부동산의 임대차 문서 ②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 문서 ③ 주식의 양도 문서에 부과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비롯한 해당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의 의무가 있음
  - 한편,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39조에 의거, 특정한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 부동산 임대차, 매매 및 양도, 주식의 매매 및 양도에 따라 각각의 인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됨
  - 부동산 임대차 문서의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0.25%에서 1%까지 인지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됨
  - 부동산 매매 및 양도 시에는 종가인지세(Ad Valorem Stamp Duty, AVD)가 부과되며, 첫 매각 및 양도 이후 일정 기간 내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가 추가로 부과되며, 매도자 뿐 아니라 매수자도 인지세를 납부함

## 마. 일본

- 일본의 인지세는 「인지세법(印紙稅法)」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 일본 「인지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할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과세대상 및 세율은 「인지세법」 [별표 제1과세물건표] 제6항에 규정되어 있음

-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건은 해당 법 제5조에 명시
  - 구체적으로, 별표 제1의 비과세 물건란에 열거된 문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 별표 제3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문서로 같은 표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 해당됨
  - 보충 조항 내 제9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명의를 “중앙 협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열거된 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 국제적으로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는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범위에 대해 정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인지세 면제 특례의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세 과세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추세가 해당 특례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 3. 타당성 평가

- (정부역할의 정당성) 특례의 정책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농어촌 발전 등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정부가 이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적절
    - 농어민에 대한 융자사업은 농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정책 자금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들이 금융취약계층과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조세지출은 타당
    -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
    - 인지세 면제 혜택을 통해 1금융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의 신규 고객 유인 및 기존고객충성도 유도로 조합원들의 저축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
- (정책수단의 적절성) 동 제도의 구조적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
- (지원대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흥이나 새마을 금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적절
    - 2021년 기준,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원, 어가의 평균소득은 5,23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484만원 대비 63%(농가) 및 70%(어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흥이나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신용수준이 낮음
    -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9%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2%
  -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
    - 소비대차증서에는 인지세 면제 대출한도가 현행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큰 규모의 대출이나 예·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 인지세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 방식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정산 절차 생략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에 도움
  - (지원수준) 1인당 수혜금액과 특례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현 지원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추정 세수 규모가 작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유사중복성) 현 특례제도는 대농 및 부농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타 세계 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공공성 인정, 관련 종사자들의 취약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당수 세제지원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면제를 통해 농어민을 지원

#### 4.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하여 수혜자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을 선정함
    - 농협과 수협은 농업인과 어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직업적 특수성이 존재하나,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원(회원)이 되기 위한 직업 요건은 없음
    - 응답자 중 2개 이상 조합 가입자는 11.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협·수협의 조합원이 신협·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과반수
  - 목표 사례 수는 각 상호금융기관별 100명이었으며, 총 403명에 대한 설문이 수득됨
    - 수혜 비율은 제6호, 제5호, 제7·11호, 제9호 순으로 높음
  - 해당 제도의 인식 및 효과,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해당 제도에 대한 시각 차이 및 해당 특성을 통제한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포함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해당 과세특례는 수혜대상자들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제1항 제6호를 제외하고 동 과세특례는 수혜대상자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응답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수협의 조합원은 보다 긍정적으로 답함
    - 표본을 수혜자로만 한정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의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의 수준이 큰 편은 아니라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제1항 제5호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군이 인지세 면제 수준이 크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용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기인한다 볼 수 있음

〈표 3〉 개별 호에 대한 경제적 효과(설문조사)

경제적 효과성	대상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효과의 수준(1~4)	수혜대상자	2.75	2.01	2.66	2.66
	농협	2.73	1.95	2.62	2.59
	신협	2.77	2.06	2.63	2.68
	새마을금고	2.68	2.02	2.64	2.62
	수협	2.94	2.08	2.81	2.84
	수혜자	3.08	2.02	3.43	3.00
긍정(3,4) 비율(%)	수혜대상자	70.2	20.8	64.0	62.3
	농협	70.7	20.7	61.2	55.2
	신협	69.2	27.5	61.7	61.7
	새마을금고	66.2	25.4	63.8	60.0
	수협	81.2	19.8	76.2	78.2
	수혜자	86.0	24.4	100.0	100.0

〈표 4〉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설문조사)

대상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경제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설문자	41.7%	65.2%	71.7%	63.2%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설문자	75.3%	48.3%	63.2%	64.9%

- 보다 면밀한 결과 분석을 위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도 대부분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결과가 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확률 모형을 추정

- $Y_i = \alpha + \beta_1 Gender_i + \beta_2 Age_i + \beta_3 School_i + \beta_4 Tenure_i + \beta_5 Married_i + \beta_6 nFamily_i + \beta_7 Asset_i + \beta_8 CreditRate_i + \gamma' Job_i + \epsilon_i$
- $Y_i$ : 경제적 효과의 정도
- $Gender_i$ : 여자면 1, 남자면 0인 더미변수
- $Age_i$ : 나이
- $School_i$ : 초대졸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Tenure_i$ : 재직기간
- $Married_i$ : 결혼한 상태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nFamily_i$ : 가족 구성원수
- $Asset_i$ : 순자산
- $CreditRate_i$ : 신용등급 1(높음) ~ 10(낮음)
- $Job_i$ : 직업 고정 효과
- $\epsilon_i$ : 잔차항

○ 위의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하고자 함

-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된 후의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alpha$ 의 값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추정계수  $\beta$ 을 확인해봄으로써 특정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군이 보다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질적으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표 5> 개별 호에 대한 경제적 효과(회귀분석, Robust SE)

구분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alpha$	2.416***	1.326***	2.387***	2.237***
$Gender$	-0.007	-0.172*	-0.005	-0.124
$Age$	-0.006	0.000	-0.003	0.002
$School$	-0.157	-0.191*	-0.069	-0.175*

<표 5>의 계속

구분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i>Tenure</i>	0.004	0.001	0.007*	0.002
<i>Married</i>	0.154	0.025	0.053	0.022
<i>nFamily</i>	-0.006	0.100*	0.029	0.037
<i>Asset</i>	-0.001	-0.001**	-0.001	-0.001
<i>CreditRate</i>	-0.022*	-0.010	-0.024**	-0.035***
Job FE	Y	Y	Y	Y
R-squared	0.108	0.122	0.082	0.133
Obs.	245	245	245	245
$\bar{Y}_i$	2.812	2.078	2.702	2.694

주: \*\*\* P<0.01, \*\* p<0.0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5. 결론 및 정책 제언

- 특례의 정책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 동 제도의 구조적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
  - (지원대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적절
  -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
  - (지원수준) 1인당 수혜금액과 특례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현 지원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설문조사와 회귀분석 결과, 대체로 설문응답자는 본 조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세의 수준이 큰 편이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응답자들의 주된 자산 형성 경로를 고려할 때, 본 제도가 인지세 면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래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목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효과성 분석이 설문조사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이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형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
-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현행 제도는 최초 목적에 맞추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농어민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분석 결과 동 제도의 효과가 영세한 농어민들에게서 발견되고,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음
-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가 최초 목적에 맞추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안) 신탁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 중 농어민으로 본 특례의 수혜대상을 한정**

- 본 특례는 최초 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농어민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오랜 기간 농어민뿐 아니라 신탁 및 새마을금고 조합원에게도 안정적 소득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최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특례의 수혜대상을 농어민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함
  - 현행 제도의 취지가 영세한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고려할 때, 신탁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 중 농어민에게만 수혜대상을 한정
  - 구체적으로 대출 과정에서 농지원부 혹은 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농어민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2안) 총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 또는 신용수준을 기준으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한**

- 본 특례의 수혜대상을 종합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

하는 안을 제시함

- 예를 들어, 농어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 조건과 유사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소득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음
-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경우 수혜대상이 농어민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니, 미소금융 신청 기준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등으로 수혜대상을 축소 가능

### (3안) 현행 특례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일몰 연장 후 농어민 및 농어업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 수혜대상 축소를 위해 인지세 면제 혜택에 대해 지나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세저항 및 관련 행정비용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목표인 농업발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정책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수혜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음
  - 소득·재산 수준을 이용한 스크리닝은 오히려 조세저항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농림어업 등 1차산업에 대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농어민 전체, 농지 거래 관련 지원 타당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혜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그 편익보다 더 클 수도 있음
  - 청년조합원에게 인지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청년 농업인의 경우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억원 이상 대출에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줄 경우 영세한 농어민 취지라는 특례의 최초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
-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비사업 수혜 범위를 사업 규모 등으로 축소할 경우 본 사업의 사회적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정책사업 인지세 면제 혜택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오히려 세액이 큰 중요한 사업(예를 들어 대규모 홍수 방지를 위한 큰 규모의 토목공사)이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미 농지은행 사업 등을 할 때 소득요건 등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본 특례는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음
  
- 본 제도를 일몰 연장한 이후 농어촌 고령화율, 도시가구 대비 농어업 종사 가구 평균 소득 등 지표를 면밀하게 관찰 후 향후 농어민 및 농어업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제안

# 목 차

I. 서론 .....	23
II.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	27
1. 인지세 감면 제도 .....	29
가. 근거 규정 및 도입 목적 .....	29
나. 정책대상자 및 수혜대상 서류 .....	29
다. 조세지출 규모 .....	30
라. 제도 연혁 .....	31
마. 인지세 축소·폐지와 관련된 최근 논의 .....	33
2. 인지세 감면제도 현황 .....	35
가.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예금·적금 증서·통장 인지세 감면액 .....	35
나.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관련 인지세 감면액 .....	39
III.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	43
1. 영국 .....	45
2. 호주 .....	46
3. 싱가포르 .....	46
4. 홍콩 .....	48
5. 일본 .....	51
6. 시사점 .....	59
IV. 타당성 분석 .....	61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	63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67
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	67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 .....	70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	72
3. 타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	74
4. 소결 .....	77
<b>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b>	<b>81</b>
1. 설문조사 개요 .....	84
2. 설문조사 결과 .....	94
가.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94
나.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03
다.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제11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12
라.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9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17
마.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20
3. 회귀분석 결과 .....	125
4. 소결 .....	127
<b>VI.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29</b>
1. 결론 .....	131
2. 정책 제언 .....	133
<b>참고문헌 .....</b>	<b>138</b>
<b>부 록: 설문조사 .....</b>	<b>141</b>

##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	30
<표 II-2> 인지세 감면제도 연혁 .....	31
<표 II-3> 조특법 및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증서 연도별 인지세 면제한도 .....	35
<표 II-4> 농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	36
<표 II-5> 수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	37
<표 II-6> 산림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	37
<표 II-7>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	38
<표 II-8>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	39
<표 II-9> 농지은행 및 농어촌정비사업의 인지세 감면 현황 .....	40
<표 II-10> 농지은행사업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전망치 .....	41
<표 III-1> 싱가포르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	48
<표 III-2> 홍콩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	50
<표 III-3> 일본의 「인지법」상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 세율 .....	52
<표 IV-1> 연도별 고령화율 .....	66
<표 IV-2>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수 .....	66
<표 IV-3> 소득종류별 농어가소득 .....	68
<표 IV-4> 농가인구 및 농업인 조합원 수 .....	68
<표 IV-5> 전체 대출금 금액별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	69
<표 IV-6> NICE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	69
<표 IV-7>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	73
<표 IV-8> 국세 주요 조세 지원 .....	74
<표 IV-9> 지방세 주요 조세 지원 .....	76
<표 V-1> 설문조사 대상 .....	87
<표 V-2> 설문 질문의 구성 예시 .....	89

<표 V-3> 응답자 특성 .....	91
<표 V-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	95
<표 V-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	97
<표 V-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	99
<표 V-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	102
<표 V-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	104
<표 V-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	105
<표 V-1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효과 .....	108
<표 V-1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	111
<표 V-1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 수혜 여부 .....	114
<표 V-1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 수혜 금액 .....	115
<표 V-14>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 기준) .....	121
<표 V-15>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 기준) .....	123
<표 V-16> 소득별 선호 지원 방식 .....	124
<표 V-17> 개별 호에 대한 경제적 효과(회귀분석, Robust SE) .....	126
<표 V-18>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설문조사) ..	127

## 그림 목 차

[그림 IV-1] 농지은행사업 개요 .....	65
[그림 V-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	95
[그림 V-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	96
[그림 V-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금액 .....	98
[그림 V-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	99
[그림 V-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101
[그림 V-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	101
[그림 V-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	102
[그림 V-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	104
[그림 V-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	105
[그림 V-1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	107
[그림 V-1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1회 최대 수혜 금액 예상 .....	107
[그림 V-12]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 .....	108
[그림 V-13]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110
[그림 V-14]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	110
[그림 V-15]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	111
[그림 V-16]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	113
[그림 V-17]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	113
[그림 V-18]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 .....	116
[그림 V-19]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의 목적 사업 유도 효과 .....	116
[그림 V-20]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	118
[그림 V-21]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 .....	119
[그림 V-22]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	120
[그림 V-23] 소득별 적합 지원 방식 .....	122
[그림 V-24]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	123



# I. 서론





# I. 서론

- 본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함
  
- 동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 등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실질적 소득보전 수단을 위해 특정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
  - 수혜대상자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엽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어촌계 등의 조합과 조합원 등임
  - 수혜자들에게 ① 소비대차증서(융자한도: 1억원) ② 예금·적금증서·통장 ③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④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등의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혜택 제공
  
- 동 제도는 장기간 운영되었음에도 최근 심층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감면액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1970년 최초로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 이후 수혜대상과 비과세 한도가 비정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2013년 42억원에서 2023년(전망) 116억원으로 176% 증가함
  -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일몰연장 8회 실시
  
- 이에 본보고서는 동 제도에 대한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를 진단하는 등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최초 제도 도입 시의 목표를 제고하는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 동 조세특례 항목의 경우 2023년 말 일몰이 도래하며, 이에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및 타당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성 제기
  - 농어민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의 타당성, 효과

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농가 및 국가재정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제 I 장의 서론과 제 VI 장의 결론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에서는 인지세 감면 제도 및 그 현황에 대해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에 대하여 살펴봄
  - 제 IV 장에서는 동 특례제도의 정부 개입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유사 제도와 중복성 여부 등 타당성 분석을 시행함
  - 제 V 장에서는 효과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
  - 제 VI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정책 제언을 제시함

## Ⅱ.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 II. 인지세 감면 제도 및 현황

### 1. 인지세 감면 제도

#### 가. 근거 규정 및 도입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제6호·제9호는 농어민 등에 대한 용자, 예적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생산비 및 가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는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에 부과되는 인지세 면제를 통해 농·어촌발전 및 농·어가 생활안정과 영농·영어 규모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

#### 나. 정책대상자 및 수혜대상 서류

- 영세한 농어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실질적 소득 보전과 서민 금융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 조합과 조합원에게 용자서류, 예금통장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
  - (수혜대상)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엽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어촌계 등의 조합과 조합원 등
  - (감면내용) 조합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조합이 작성하는 수혜대상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sup>1)</sup>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16-0...2 「용자금액의합계액산정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인지세 면제액이 계산됨

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용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 용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용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2002. 4. 15. 개정).

② 추가용자로 인하여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대상문서는 그 추가용자 시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고 당해문서의 기재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 영농·영어규모의 적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에 부과되는 인지세 감면으로 농가 및 국가재정 부담 완화

○ (수혜대상)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 등 관련 농·어민과 토지·농어가 소유자, 농어촌공사,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과원 소유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자, 농업협동조합 등
- 농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자, 농어촌공사

○ (감면내용)

- 농지은행: 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농어촌정비: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농지조성: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서

### 다. 조세지출 규모

□ 연도별 인지세 감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표 II-1>에서 보듯,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2013년 51억원에서 2023년 (전망) 124억원으로 143% 증가

<표 II -1>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인지세	51	65	60	62	26	77	81	92	116	119	12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 추가로 받는 용자금액만을 표기한 경우: 그 추가용자금액
2. 이미 받은 용자금액과 추가로 받은 용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기 용자금액과 추가용자금액과의 합계액
3. 이미 받은 용자금액미상환잔액과 추가로 받는 용자금액을 병기하거나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미상환잔액과 추가용자금액의 합계액
4. 이미 받은 용자금액미상환잔액 및 추가로 받는 용자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미상환잔액과 추가용자금액의 합계액

## 라. 제도 연혁

- 1970년 최초 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용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었고, 점차 수혜대상과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추세
  - 1970년 동 제도가 신설된 이후 영세한 농어민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 보전 수단이 되어 왔음
  - 초반에는 농민이나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용자를 받을 때 인지세 면제(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 혜택 제공
  - 1973년도에 농·어가 생활안정과 영농·영어 규모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예·적금증서·통장 및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 신설
  - 1978년도에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및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대차증서 비과세 한도 확대
  - 「조특법」 제116조 제1항에 일몰기한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 일몰연장 8회 실시

<표 II -2> 인지세 감면제도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70. 1. 1.	- 신설(「조감법」 제6조 6호) · 농민이나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용자를 받을 때 인지세 면제(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
1973. 12. 20.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7호, 8호 신설) · 단위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예금 및 적금증서, 통장의 인지세 면제 · 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1975.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6호, 7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추가)
1978. 12. 5.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제10호 신설) ·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또는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 구입 시 작성 서류 인지세 면제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6조 6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1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표 II -2>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80.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6조 제12호 신설)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1982. 1. 1.	-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법조항 변경 · 「조감법」 제6조 6, 7, 8, 10, 11호 → 조감법 제81조 5, 6, 7, 9, 11호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축산업협동조합 추가)
1983.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산림조합 추가)
1987. 1. 1.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81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1,500만원 이하
1989. 1. 1.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81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1,500만원 이하 → 개정 3,000만원 이하
1990.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5호, 6호) · 용자서류 및 예·적금 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 추가(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추가)
1991. 1. 1.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7호) ·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추가
1991. 12. 27.	- 감면대상 확대(「조감법」 제81조 7호) ·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 인지세 면제 추가
1994. 1. 1.	-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법조항 변경 · 「조감법」 제81조 5, 6, 7, 9, 11호 → 「조감법」 제111조 5, 6, 7, 9, 11호 -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1996. 1. 1.	- 적용요건 완화(「조감법」 제111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3,000만원 이하 → 개정 5,000만원 이하
1997. 1. 1.	- 감면대상 개정(「조감법」 제111조 7호)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1999. 1. 1.	- 「조감법」 전부 개정으로 법조항 변경 · 「조감법」 제111조 5, 6, 7, 9, 11호 → 「조특법」 제116조 5, 6, 7, 9, 11호 - 일몰기한 설정 · 일몰기한: 2000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5, 6, 9호)
2000. 1. 1.	- 감면대상 개정(제111조, 5, 6호) · 축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에 통합됨
2000. 10. 21.	- 임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명칭 변경

〈표 II -2〉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01.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00년 12월 31일 → 개정: 2003년 12월 31일
2004.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03년 12월 31일 → 개정: 2006년 12월 31일
2005. 1. 1.	-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제116조 7호)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07.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06년 12월 31일 → 개정: 2009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5, 6, 9호) - 「조특법」 제116조 7호, 11호 일몰기한 설정 ·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조특법」 제116조 7, 11호)
2010. 1. 1.	- 감면대상 개정(「조특법」 제116조 7호) · 농가경영규모적정화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폐지 ·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 및 서류의 인지세 면제 도입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09년 12월 31일 → 개정: 2012년 12월 31일
2013.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2년 12월 31일 → 개정: 2015년 12월 31일
2016.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5년 12월 31일 → 개정: 2018년 12월 31일
2018. 1. 1.	- 적용요건 완화(「조특법」 제116조 5호) · 동일인의 용자금액 합계액 요건 완화: 기존 5,000만원 이하 → 개정 1억원 이하
2019.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2022. 1. 1.	-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3년 12월 31일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마. 인지세 축소·폐지와 관련된 최근 논의

- 인지세는 다양한 이유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대출이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함

-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뿐 이를 통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또는 유무선전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됨<sup>2)</sup>
-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어 이중과세적 성격 존재<sup>3)</sup>

□ 최근에도 인지세 축소·폐지에 관한 논의들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윤광재(2008)<sup>4)</sup>는 인지세를 포함해 수입인지 제도 전반에 대해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제도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기적인 사용빈도가 떨어지며, 보편적 세제라기보다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과 관련된 자만이 과세 대상자가 되고 있는 특수한 세금으로 봄
- 2014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하나로 대출 시 부과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 대출(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며 가계 부채가 심각할수록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sup>5)</sup>
- 2015년 박명재 의원<sup>6)</sup>은 현행 인지세법은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달라진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이중과세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함
  - 국회입법조사처<sup>7)</sup> 역시 인지세는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 시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경우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이 명백할 뿐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근거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았음

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2015.

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2015.

4) 윤광재,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2008. 12.

5) 새정치민주연합, 「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 폐지 추진(새정치연합, 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 폐지 추진」, taxtimes.co.kr, 검색일자: 2023. 5. 31.

6) 박명재,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2014.

7)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5.

- 달라진 경제여건,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 소지 배제 등을 감안하여 인지세 항목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 2017년 20대 국회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부과되는 1,000원의 인지세를 직불카드 인지세는 폐지하고 신용카드는 3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는 등 인지세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한편으로는, 2023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의 용자·예금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16조 제2항 제3호)이 상정되기도 함
- 윤준병 외 14인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2. 인지세 감면 제도 현황

### 가.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예금·적금 증서·통장 인지세 감면액

- 상호금융기관의 각 회원(조합원)이 2023. 12. 31까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동일인 기준 용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및 예적금 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함
- 1979년에 농협 등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신설(용자한도: 100만원)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지세 면제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대출서류 인지세 면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되고 있음

<표 II -3> 조특법 및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증서 연도별 인지세 면제한도

(단위: 만원)

구분	1982~1986	1987~1988	1989~1995	1996~2001	2002~2009	2010~2016.3	2016.3~2017	2018~
조특법	500	1,500	3,000	5,000				10,000
인지세법	-				2,000	4,000	5,000	

주: 적용대상은 조합원 등(「조특법」), 모든 납세의무자(「인지세법」)임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통상적으로 대출관련 인지세 세액 7만원은 조합과 조합원이 각각 50%씩 부담
- 농업협동조합의 인지세 감면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와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예금·적금증서·통장을 모두 합하여 2019년 36억 5,400여 만원에서 2022년 32억 9,900여 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인지세 감면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6억 5,400여 만원, 2020년 38억 250여 만원, 2021년 49억 7,600여 만원, 2022년 32억 9,900여 만원 등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음
  - 인지세 감면액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소비대차증서 발행건수가 전년 대비 38%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 II -4> 농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				
	인지세 감면대상 서류	기재금액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19	소비대차증서	5천만~1억원	45,391	70,000	3,177,370,000
2019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5천만~1억원	851	70,000	59,570,000
2019	예금, 적금증서, 통장	-	4,166,536	100	416,653,600
2020	소비대차증서	5천만~1억원	48,005	70,000	3,360,350,000
2020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5천만~1억원	764	70,000	53,480,000
2020	예금, 적금증서, 통장	-	3,886,908	100	388,690,800
2021	소비대차증서	5천만~1억원	64,440	70,000	4,510,800,000
2021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5천만~1억원	1,195	70,000	83,650,000
2021	예금, 적금증서, 통장	-	3,812,208	100	381,220,800
2022	소비대차증서	5천만~1억원	39,971	70,000	2,797,970,000
2022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	5천만~1억원	1,115	70,000	78,050,000
2022	예금, 적금증서, 통장	-	4,229,300	100	422,930,000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지세 감면은 1970년 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협의 인지세 감면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억 6,840만원, 2019년 2억 6,014만원, 2020년 2억 2,028만원, 2021년 2억 785만원, 2022년 2억 1,508만원 등 연도별로 서서히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소 증가하였음

<표 II -5> 수협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회원)				
	인지세 감면 대상 서류	기재금액 (존재할 경우)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18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5천만~1억원	3,724	70,000	260,680,000
	예·적금 통장	-	77,248	100	7,724,800
2019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5천만~1억원	3,606	70,000	252,420,000
	예·적금 통장	-	77,224	100	7,722,400
2020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5천만~1억원	3,037	70,000	212,590,000
	예·적금 통장	-	76,875	100	7,687,500
2021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5천만~1억원	2,856	70,000	199,920,000
	예·적금 통장	-	79,281	100	7,928,100
2022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5천만~1억원	2,948	70,000	206,360,000
	예·적금 통장	-	87,247	100	8,724,700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 산림조합의 인지세 감면액은 최근 5년간 매년 3억 500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3억 700만원으로 다소 증가함

<표 II -6> 산림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회원)				
	인지세 감면 대상 서류	기재금액 (존재할 경우)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18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1억원	6,336	70,000	300,000,000
	예·적금 통장	-	48,587	100	5,000,000
2019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1억원	7,514	70,000	300,000,000
	예·적금 통장	-	53,857	100	5,000,000
2020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1억원	7,555	70,000	300,000,000
	예·적금 통장	-	51,072	100	5,000,000

<표 II -6>의 계속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회원)				
	인지세 감면 대상 서류	기재금액 (존재할 경우)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21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1억원	7,540	70,000	300,000,000
	예·적금 통장	-	54,071	100	5,000,000
2022년	금전소비대차	융자한도 1억원	5,495	70,000	300,000,000
	예·적금 통장	-	73,831	100	7,000,000

자료: 산림조합 내부자료

- 새마을금고의 인지세 감면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통장을 모두 합하여 2018년 27억 9천만원에서 2022년 26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인지세 감면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7억 9천만원, 2019년 27억 5천만원, 2020년 28억 8천만원, 2021년 23억 4천만원, 2022년 26억원 등 연도별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표 II -7>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회원)				
	인지세 감면 대상 서류	기재금액 (존재할 경우)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18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9,976	70,000	2,090,00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7,012,487	100	700,000,000
2019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986	70,000	2,020,00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7,375,371	100	730,000,000
2020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1,345	70,000	2,190,00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6,912,690	100	690,000,000
2021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2,220	70,000	2,250,00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7,067,675	100	700,000,000
2022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3,499	70,000	1,640,00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9,618,766	100	960,000,000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부자료

- 신협중앙회의 연도별 인지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1억 2,100여 만원에서 2022년 20억 7,400여 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인지세 감면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21억 2,100여 만원, 2019년 21억 8,200여 만원, 2020년 22억 6,400여 만원, 2021년 22억 8,100여 만원, 2022년 20억 7,400여 만원 등으로 2022년까지 소폭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의 인지세 감면액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보면 예적금 통장의 감면액이 매년 4억원 선에서 유지되었으나 2022년 7억여 원으로 증가한 반면, 금전소비 대차증서의 감면실적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전체적인 감면액이 줄어들었음

〈표 II -8〉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조합원(회원)				
	인지세 감면 대상 서류	기재금액 (존재할 경우)	건수	세액	인지세 감면액
2018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4,026	70,000	1,681,82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4,391,050	100	439,105,000
2019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4,456	70,000	1,711,92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4,701,711	100	470,171,100
2020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713	70,000	1,799,91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4,643,236	100	464,323,600
2021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676	70,000	1,797,32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7,152,633	100	715,263,300
2022	금전소비대차증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9,409	70,000	1,358,630,000
	예금·적금증서·통장	-	7,152,633	100	715,263,300

자료: 신협중앙회 내부자료

#### 나.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관련 인지세 감면액

-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서류들에 대해 최근 3개년 간 약 3만 4천건, 33억원의 인지세 면제

- 면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 농지은행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 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배수개선사업, 치수능력확대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받기반정비사업 등
  - 농지조성사업: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
- 최근 3개년(2020~2022년) 농지은행 사업 지원자는 13억원, 국가는 20억원 인지세 면제 혜택을 누림
- 최근 3개년(2020~2022년) 농촌정비사업의 경우 인지세 면제액은 약 7억원으로 추산됨

<표 II -9> 농지은행 및 농어촌정비사업의 인지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면제건수	대상금액	인지세액(면제액)		
			합계	농지은행사업 지원자	국가
합계	33,659	6,351,308	3,251	1,283	1,968
농지은행사업	22,757	4,195,986	2,566	1,283	1,283
2020	7,131	1,286,703	808	404	404
2021	7,507	1,337,008	835	418	418
2022	8,119	1,572,275	923	462	462
농어촌정비사업	10,902	2,155,322	685	-	685
2020	3,150	622,754	182	-	182
2021	1,147	781,974	174	-	174
2022	1,054	729,227	162	-	162

주: 농지조성사업은 최근 3개년 인지세 감면 사례 없음(준공지구 없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특히 농지은행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지은행사업 농지매입에 따른 인지세 감면으로 농업인 25억원 비용 절감 및 농지관리기금 51억원 재원조달 효과 발생

<표 II -10> 농지은행사업 연도별 조세지출 추정전망치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사업구분				부과자 구분		
		농지매매 (매입, 매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경영회생 (매입, 환매)	과원매매 (매입, 매도)	국가(기금)	농업인	
인지세 조세지출 합		5,095	1,046	2,403	1,383	263	2,547.5	2,547.5
2022년	투자계획	-	31,585	743,087	323,120	32,517		
	건당 평균 계약액	-	18	177	198	55		
	매매건수(a)		1,742	4,191	1,635	588		
	인지세(a×세액*)	923	121	237	514	51	461.5	461.5
2023년	투자계획	-	57,665	765,000	290,700	32,733		
	건당 평균계약액	-	18	177	198	55		
	매매건수(a)	-	3,204	4,322	1,468	595		
	인지세(a×세액*)	1,021	227	530	213	52	510.5	510.5
2024년	투자계획	-	58,472	775,710	294,770	33,191		
	건당 평균 계약액	-	18	177	198	55		
	매매건수(a)	-	3,248	4,383	1,489	603		
	인지세(a×세액*)	1,036	230	538	216	53	518	518
2025년	투자계획	-	59,291	786,570	298,897	33,656		
	건당 평균 계약액	-	18	177	198	55		
	매매건수(a)	-	3,294	4,444	1,510	612		
	인지세(a×세액*)	1,050	233	545	219	53	525	525
2026년	투자계획	-	60,121	797,582	303,081	34,127		
	건당 평균 계약액	-	18	177	198	55		
	매매건수(a)	-	3,340	4,506	1,531	620		
	인지세(a×세액*)	1,065	236	553	222	54	532.5	532.5

주: \*세액: 2022년 각 사업별 인지세의 가중평균 값(농지매매, 70,704원, 공공임대용 122,706원, 경영회생 144,856원, 과원매매 87,296원)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 Ⅲ. 주요국의 인지세 제도

-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인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인지세 제도와 더불어 인지세 감면 규정 위주로 유사 해외사례를 정리하고자 함

#### 1. 영국

- 영국에서 특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 통상적으로 인지세·토지세(SDLT)를 지불해야 함
  - 자유 보유 형태의 토지(freehold estate), 신규 또는 기존의 임차보유 형태의 토지(leasehold estate), 공동소유권 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인지세가 부과됨
  - 2003년 Finance Act가 시행된 이후 토지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지세가 폐지되었음
    - 1986년에는 ‘Stamp Duty Reserve Tax(SDRT)’라는 이름으로 주식, 기타 유가증권 등에도 인지세가 부과되었으나 2003년 12월 1일부터 ‘Stamp Duty Land Tax(SDLT)’라는 이름으로 인지세가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 부과됨
  - 통상적으로 부동산 또는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인지세 액수가 정해짐
-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가치, 구매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지세 면제 또는 경감 혜택(relief or an exemption)이 주어짐
  - 인지세는 부동산의 가치와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며, 특정 임계값 미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됨
    - 2022년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50,000, £625,00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최초 구매자의 경우 £425,000, 비주거용 토지 및 부동산의 경우 £150,000이 임계점으로 설정됨

- 이때 최초 구매자는 “영국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고 해당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점유하려는 개인”으로 정의
- 기타 특정 상황에서 인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아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개인의 주택을 구매하는 건설 회사, 직원의 집을 사는 고용주, 강제 구매를 하는 지방 당국, 커뮤니티에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부동산 개발자, 자선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선 단체 등의 경우 인지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한 조세지출은 100만 파운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4%에서 5%로 인상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쇄

## 2. 호주

- 호주의 인지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성격을 지니며, 주별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나 모든 주에서 인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주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지만, 자동차 등록 및 양도, 보험, 부동산, 고용 구매 계약(hire purchase agreements), 재산 양도(사업, 부동산 또는 특정 주식 등) 시 인지세를 부과함
  - 주별로 자체 법령을 제정하여 과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 이전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1.25~6.75%가 적용됨
  - 주별로 인지세가 면제되는 때도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최대 AUD 78,000(과세 가치)의 비용이 드는 신차 또는 중고 배터리, 전기 및 수소 연료 전지 차량 구매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sup>8)</sup>
    - 퀸즐랜드는 \$5,000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음<sup>9)</sup>

## 3. 싱가포르<sup>10)</sup>

- 싱가포르의 인지세는 인지세법(Stamp Duties Act)에 따라 싱가포르의 모든 부동산

8) “Australia - Corporate - Other taxes,” <http://pwc.com>, 검색일자: 2023. 7. 26.

9) Cohen Handler, “The Ultimate Guide to Stamp Duty in Australia,” <https://cohenhandler.com.au/ultimate-guide-stamp-duty-australia/>, 검색일자: 2023. 7. 26.

10) 정다운 외(2020)를 활용하여 정리함

및 주식과 관련된 과세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임<sup>11)</sup>

- 과세대상 문서가 실행되는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자산의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있고 실물 또는 전자적 문서를 모두 포함
- 단, 아래 열거하는 문서는 인지세 납부가 면제됨
  - ① 정부가 직접 또는 이를 대신하여 계약한 문서로서 정부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문서
  - ② 싱가포르 외부 자산의 양도, 이전, 임대, 저당으로 계약하는 문서
  - ③ 싱가포르 외부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문서
  - ④ 협동조합법(Co-operative Society Act)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이를 대신하여 계약한 문서
  - ⑤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당국이 양도, 이전 또는 협상한 증권에 관한 문서
  - ⑥ 토지법에 따라 토지세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 ⑦ 주택구분법(Land Titles(Strata) Act) 제125조, 126조에 따라 등록된 양도 문서
  - ⑧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 앞으로 발행된 문서
  - ⑨ 공적임대제도에 따라 2012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임대계약에 관한 문서

□ 싱가포르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매수인(양수인, 임차인 등)이 부담하는 인지세(Buyer's Stamp Duty, BSD)와 매도인(양도자 등)이 부담하는 인지세(Seller's Stamp Duty, SSD)로 구분됨

- 매수인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주식 등 매매거래, 저당권 설정계약 시 인지세를 부담
- 또한 매수인의 상황, 즉 개인 또는 기업인지 여부, 싱가포르 거주자 여부, 보유 부동산수에 따라 추가적인 부가인지세(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싱가포르 국적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부과되는 인지세율은 0%, 싱가포르 국적 유주택자의 인지세율은 7~10%, 외국인과 법인의 인지세율은 15% 단일세율 적용

11) IRAS, <https://www.iras.gov.sg/taxes/stamp-duty/for-property/basics-of-stamp-duty-for-property/learning-the-basics-for-properties>, 검색일자: 2023. 8. 1.

-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교환 시 인지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용도, 즉 주거용·산업용 등에 따라 인지세율이 달라짐

<표 III- 1> 싱가포르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과세대상문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임대차거래	임차인	계약기간 4년 이내 연간 총임대료	0.4%	
		계약기간 4년 초과 4년간의 연평균 임대료÷4		
주거용 부동산 양도	매수인	거래가액의 첫 SGD 180,000	1%	
		다음 SGD 180,000	2%	
		다음 SGD 640,000	3%	
		나머지	4%	
	매도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보유기간 1년 이내	12%
			1년 초과 2년 이하	8%
			2년 초과 3년 이하	4%
			3년 초과	N/A
비주거용 부동산 양도	매수인	매수가액의 첫 SGD 180,000	1%	
		다음 SGD 180,000	2%	
		나머지	3%	
	매도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보유기간 1년 이내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3년 이하	5%
			3년 초과	N/A
	주식 양도	매수인	Max(거래가액, 시장가액)	0.2%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인	저당금액	0.2% 또는 0.4%	

자료: 정다운 외(2020), p. 160

#### 4. 홍콩<sup>12)</sup>

- 홍콩의 인지세는 부동산, 주식 및 무기명 증권과 같이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 고정 혹은 종가로 부과되며, 이러한 증서의 복제 문서 혹은 대체 문서에도 부과할 수 있음

12) 김정명 외(2021)를 활용하여 정리함

- 홍콩의 인지세는 거래 자체가 아닌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문서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부동산의 임대차 문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 문서, 주식의 양도 문서 등에 부과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비롯한 해당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의 의무가 있음
    - 주식 양도의 경우 중개인과 양도인 및 양수인이 그 당사자가 되며, 에이전트가 없으면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한편,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39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 ① 1942년 11월 26일부터 1945년 9월 1일까지 일본이 홍콩에서 시행한 인지세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날인된 모든 증서
    - ② 정부 공무원 또는 통합 공무원에게 매각된 모든 양도 증서
    - ③ 정부 보조금 및 임대료, 혹은 해당 보조금 및 임대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④ 주택청이 주택조례(Housing Ordinance)의 목적상 계약한 양도 증서
    - ⑤ 인지세가 면제된 자에게 면책된 부지를 판매하는 모든 양도 증서
    - ⑥ 파산조례(Bankruptcy Ordinance) 제125조 또는 회사조례(Companies Winding Up Ordinance)
- 부동산 임대차, 매매 및 양도, 주식의 매매 및 양도에 따라 각각의 인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됨
- 부동산 임대차 문서의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0.25%에서 1%까지 인지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됨
    - 공사비용 등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기타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4.25%의 요율이 적용되며, 임대차 문서가 사본이거나 대체본일 경우 각 문서당 5홍콩달러를 추가로 납부함
  - 부동산 매매 및 양도 시에는 종가인지세(Ad Valorem Stamp Duty, AVD)가 부과되며, 첫 매각 및 양도 이후 일정 기간 내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가 추가로 부과되며,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도 인지세를 납부함
    - 종가인지세(AVD)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매각 계약 문서에

부과되며, 세율은 거래일, 부동산의 용도,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Scale 1과 Scale 2로 구분하여 부과

- 특별인지세(SSD)는 취득 후 36개월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종가인지세에 더하여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2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일 경우 15%, 12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일 경우 10%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짐
- 매수자 인지세는 홍콩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이 2012년 10월 27일 이후 취득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며, 종가인지세(AVD) 및 특별인지세(SSD) 세액의 15% 세율로 고정 부과됨

<표 III-2> 홍콩의 과세대상 문서별 인지세 세율

과세대상문서	내용		세율
부동산 임대차거래	계약 기간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0.25%
		1년 이하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할 총 임대료의 0.25%
		1년 초과 3년 이하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0.5%
		3년 초과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1%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와 관련한 주요 비용, 공사비용 등	임대료가 리스에 의해 지불될 경우 4.25%,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및 양도와 같은 비율로 청구함
		사본 혹은 대체본 문서	문서당 5홍콩달러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보유 기간	6개월 이하	2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5%
		12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
주식 매매 및 양도	홍콩 주식의 매매 계약서		계약서 내 표시된 금액 혹은 평가 가치의 0.13%
	자발적 처분으로 인한 양도 문서		5홍콩달러+주식 가치의 0.26%
	기타 양도 문서		5홍콩달러

자료: 김정명 외(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5. 일본

- 일본의 인지세는 「인지세법(印紙稅法)」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 일본의 「인지세법」 구조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6조),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제7조), 제3장 납부, 신고 및 환급(제8조부터 제14조), 제4장 기타규칙(제15조에서 제20조), 제5장 벌칙(제21조부터 제24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칙과 별표에서 시행 기일과 구체적인 세액이 수록<sup>13)</sup>되어 있음
  - 일본 「인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작성할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과세대상 및 세율은 「인지세법」 [별표 제1과세물건표] 제6항에 규정되어 있음
  
-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건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별표 제1의 비과세 물건란에 열거된 문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 별표 제3의 왼쪽란에 열거하는 문서로 같은 표 오른쪽란에 열거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 해당됨
  - 보충 조항 내 제9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 특례 규정에 따라 명의를 “중앙협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열거된 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 금전소비대차, 계속·반복적 거래, 예금 증서나 통장 등에 인지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만 해당
  - 다만, 일본은 운송계약, 판취장 등에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해 과세대상이 다소 넓은 편임을 알 수 있음(윤순상, 2023)

13) 일본 인지세 법령사이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 검색일자: 2023. 7. 25.

〈표 III-3〉 일본의 「인지법」상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 세율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p>① 1. 부동산, 광업권, 무체재산권, 선박 혹은 항공기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p> <p>2.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의 설정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p> <p>3. 소비 대차에 관한 계약서</p> <p>4. 운송에 관한 계약서(용요선(傭船)에 관한 계약서 포함)</p> <p>② 도급에 관한 계약서</p>	<p>1. 부동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외에 철도재단, 궤도재단 및 자동차교통사업재단을 포함한다.</p> <p>2. 무체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상호 및 저작권을 말한다.</p> <p>3. 운송에 관한 계약서에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및 송장을 포함하지 않는다.</p> <p>4. 용선계약서에는 항공기의 용선계약서를 포함하고, 나용선계약서를 포함하지 않는다.</p> <p>도급에는 직업야구선수, 영화 배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무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금액이 1만엔 이상, 10만엔 이하인 경우: 200엔</li> <li>· 10만엔 초과, 50만엔 이하인 경우: 400엔</li> <li>· 50만엔 초과, 100만엔 이하인 경우: 1,000엔</li> <li>· 1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인 경우: 2,000엔</li> <li>·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인 경우: 1만엔</li> <li>·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인 경우: 2만엔</li> <li>·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6만엔</li> <li>·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인 경우: 10만엔</li> <li>· 5억엔 초과, 10억엔 이하인 경우: 20만엔</li> <li>·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경우: 40만엔</li> <li>· 50억엔 초과인 경우: 60만엔</li> <li>· 계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서 1통당 200엔</li> </ul>	<p>1.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과세물건표 적용에 관한 통칙 3가목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이호에 열거하는 문서가 되는 것은 제외한다.) 중 해당 계약금액이 1만엔 미만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금액이 1만엔 이상, 100만엔 이하인 경우: 200엔</li> <li>· 100만엔 초과, 200만엔 이하인 경우: 400엔</li> <li>· 200만엔 초과, 300만엔 이하인 경우: 1,000엔</li> <li>· 3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인 경우: 2,000엔</li> <li>·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인 경우: 1만엔</li> <li>·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인 경우: 2만엔</li> <li>·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인 경우: 6만엔</li> <li>· 1억엔 초과, 5억엔 이하인 경우: 10만엔</li> <li>· 5억엔 초과, 10억엔 이하인 경우: 20만엔</li> <li>·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인 경우: 40만엔</li> <li>· 50억엔 초과인 경우: 60만엔</li> <li>· 계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서 1통당 200엔</li> </ul>	<p>1.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과세물건표 적용에 관한 통칙 3가목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이호에 열거하는 문서가 되는 것은 제외한다.) 중 해당 계약금액이 1만엔 미만인 것</p>

〈표 III -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③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된 어음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0엔</li> <li>•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400엔</li> <li>•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600엔</li> <li>•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000엔</li> <li>•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000엔</li> <li>•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4,000엔</li> <li>•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6,000엔</li> <li>•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만원</li> <li>• 5,000만원 초과, 1억엔 이하: 2만원</li> <li>• 1억엔 초과, 2억엔 이하: 4만원</li> <li>• 2억엔 초과, 3억엔 이하: 6만원</li> <li>• 3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만원</li> <li>• 5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15만원</li> <li>• 10억엔 초과: 20만원</li> <li>• 일람(一覽) 지불, 금융기관 상호간의 것, 외국통화로 금액이 기재된 것, 비거주자 엔화 표시된 것, 엔화표시은행 인수어음, 사채 등을 담보로 하고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매입오퍼레이션 대상 어음: 200엔</li> </ul>	<p>수형(手形) 금액이 십만엔 미만인 어음</p> <p>수형(手形)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p> <p>수형(手形)의 복본 또는 등본</p>
④ 주권, 출자증권 또는 사채권 또는 투자신탁, 대부신탁, 특정목적신탁 또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	<p>1. 출자증권이란 『상호회사(보험업법, (1995년 법률 제105호) 제2조제5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상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기금증권 및 법인의 사원 또는 출자자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98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증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2. 사채권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및 상호회사의 사채권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된 액면금액(발행가액×주수)이 500만엔 이하: 200엔</li> <li>•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1,000엔</li> <li>•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 2,000엔</li> <li>•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1만원</li> <li>• 1억엔 초과: 2만원</li> </ul>	<p>1. 일본은행 및 기타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작성하는 출자증권(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44호)에서 규정하는 우선출자증권을 제외한다.)</p> <p>2. 수익권을 다른 투자신탁 수탁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p>

〈표 III-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⑤ 합병 계약서 또는 흡수 분할 계약서 또는 신설 분할 계약서	<p>1. 합병계약서란 「회사법」(2005년 법률 제 86호) 제748조 (합병계약의 체결)에서 규정하는 합병계약(「보험법」 제159조제1항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규정하는 합병계약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문서(해당 합병계약의 변경 또는 보충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2. 흡수분할계약서란 「회사법」 제757조(흡수 분할계약의 체결)에서 규정하는 흡수분할계약을 증명하는 문서(해당 흡수분할 계약의 변경 또는 보충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신설분할계획서란 「회사법」 제762조제1항 (신설분할계획의 작성)에서 규정하는 신설 분할계획을 증명하는 문서(해당 신설분할계획의 변경 또는 보충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1통당 4만엔	
⑥ 정관	1. 정관은 회사(상호회사를 포함한다.)의 설립 시에 작성되는 정관의 원본에 한한다.	1통당 4만엔	1.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정관 중 「공증인법」 제62조의3제3항 (정관의 인증절차)의 규정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것 이외의 것
⑦ 지속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	1. 계속적 거래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란 특약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은행거래 약정서 및 기타 계약서로서 특정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통당 4,000엔	

〈표 III-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⑧ 예금증서, 저금증서		1통당 200엔	1. 신용금고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예금, 저금증서로서 기재된 예입액이 1만엔 미만인 것
⑨ 창하(倉荷) 증권, 신하 증권 또는 복합 운송 증권	<p>1. 창하증권에는 「상법」(1987년 법률 제48호) 제61조(창하증권의 기재사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결여된 증서로서, 창하증권과 유사한 효용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p> <p>2. 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증권에는 「상법」 제758조(신하증권의 기재사항)(동법 제769조 제2항(복합운송증권)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결여된 증서로서, 이들 증권과 유사한 효용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p>	1통당 200엔	
⑩ 보험증권	<p>보험증권이란 보험증권 기타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법」(2008년 법률 제56호) 제6조 제1항(손해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교부), 제40조 제1항(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교부) 또는 제69조 제1항(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교부)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서면(해당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재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며, 「보험법」 제3조 제5항 제3호(면허)에서 정하는 보험계약 및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p>	1통당 200엔	

〈표 III -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① 신용장		1통당 4만엔	
② 신탁행위에 관한 계약서	1. 신탁행위에 관한 계약서에는 신탁증서를 포함한다.	1통당 4만엔	
③ 채무의 보증에 관한 계약서(주된 채무의 계약서에 병기하는 것 제외)		1통당 4,000엔	1. 신원보증에 관한 계약서(1956년 법률 제42호)
④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기탁에 관한 계약서		1통당 200엔	
⑤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에 관한 계약서		1통당 200엔	1.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 중 해당 계약금액이 1만엔 미만인 것
⑥ 배당금 영수증 또는 배당금 송금 통지서	1. 배당금영수증이란 배당금영수증 및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 또는 배당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2. 배당금송금통지서란 배당금송금표,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배당금이 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에 있는 주주의 예·적금계좌 및 기타 계정으로 이체된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1통당 200엔	1. 기재된 배당금액이 3,000엔 미만인 증서 또는 문서

〈표 III -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p>⑩ 1. 매출 대금에 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2.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로 1에 해당하는 수취서 이외의 것</p>	<p>매출대금과 관련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란 자산을 양도하거나 시용하게 하는 것(해당 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역무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절차를 포함하며, 「금융상품거래법」(1947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1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 대가, 보혐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매출대금'이라 한다.)으로서 받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를 말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수취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수취서에 기재된 수취금액의 일부에 매출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 및 그 수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출대금인지 여부는 당해 수취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p> <p>나.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란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해당 위탁을 한 자(이하 이란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대신하여 매출대금을 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예저금계좌로의 이체금의 수취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된 수취금액이 100만엔 이하: 200엔</li> <li>• 100만엔 초과, 200만엔 이하: 400엔</li> <li>• 200만엔 초과, 300만엔 이하: 600엔</li> <li>• 300만엔 초과, 500만엔 이하: 1,000엔</li> <li>• 500만엔 초과, 1,000만엔 이하: 2,000엔</li> <li>• 1,000만엔 초과, 2,000만엔 이하: 4,000엔</li> <li>• 2,000만엔 초과, 3,000만엔 이하: 6,000엔</li> <li>• 3,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 1만엔</li> <li>•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2만엔</li> <li>• 1억엔 초과, 2억엔 이하: 4만엔</li> <li>• 2억엔 초과, 3억엔 이하: 6만엔</li> <li>• 3억엔 초과, 5억엔 이하: 10만엔</li> <li>• 5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15만엔</li> <li>• 10억엔 초과: 20만엔</li> <li>• 수취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1통당 200엔</li> </ul>	<p>비과세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된 수령금액이 5만엔 미만인 수령서</li> <li>2. 영업(회사 이외의 범인으로서는 법령의 규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출자 이외의 자에게 실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해당 출자가 그 출자를 한 범인에 대하여 행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과 관련된지 않는 수취서</li> <li>3. 유가증권 또는 제8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전 호에 열거된 문서에 추가한 수취서</li> </ol>

〈표 III-3〉의 계속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물건
물건명	정의		
	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받는 대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라.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작성하는 급전 또는 유가증권의 수취서		
㉘ 예금통장, 저금통장, 신탁통장, 부금통장, 보험료통장	1. 생명공제 부금통장이란 농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인이 생명공제와 관련된 계약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금통장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편(1연당) 200엔	1. 신용금고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예금, 저금통장 2.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비과세소득)에서 규정하는 예저금과 관련된 예금, 저금통장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보통예금통장
㉙ 소비대차통장, 도금통장, 유가증권 예치통장, 급전 수취통장 등(단, ㉘에 열거된 통장은 제외)		1편(1연당) 400엔	
㉚ 편취장	1. 편취장이란 제1호, 제2호, 제14호 또는 제17호에 열거하는 문서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상대방으로부터 첨부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1편(1연당) 4,000엔	

자료: 일본 인지세 법령사이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 검색일자: 2023. 7. 25.

## 6. 시사점

- 인지세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는 축소되는 추세
  - 최초의 인지세법(Stamp Act 1765)은 1765년 3월 22일, 영국 조지 3세가 재가하고,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되었을 정도로 인지세는 오래되었음
  - 오랜 역사에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인지세의 과세대상 문서가 축소되는 추세임
  - 상당수 국가들은 대부분 부동산 및 유가증권 관련 거래문서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범위에 대해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지세 면제 특례의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세 과세 범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제적인 추세가 해당 특례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 IV. 타당성 분석





## IV.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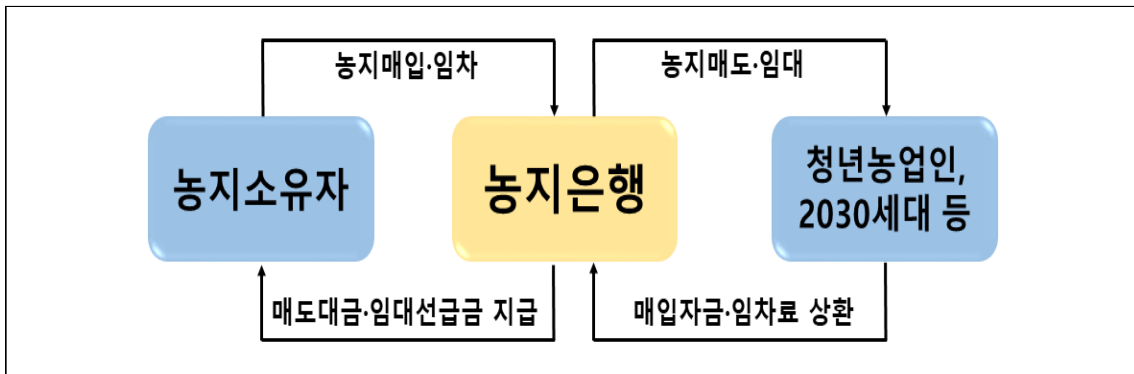
- 동 제도와 관련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 정책 목적의 적절성은 정책 목적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함
  - 상호금융기관 조합원들의 대출 관련 용자서류, 예·적금증서·통장과 더불어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수행 등 정책 사업 관련 서류들이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 정부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도입근거뿐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초기 정책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봄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정부 개입이 타당하였더라도 현재는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더 이상 제도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함
  - 농어민과 서민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표로 하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부차적인 정책목표로 고려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함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제6호·제9호에 따라 용자, 예·적금증서·통장 등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농·수·신협 등 조합원 등)의 실질 소득 증대의 필요성 검토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는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 조성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 면제를 통해 농·어촌발전 및 농·어가 생활안정과 영농·영어 규모의 확대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정부가 이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 농어민에 대한 융자사업은 농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정책 자금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개인 소비,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한 금전소비대차와는 차별성 존재
  -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이 해당조합에서 받는 융자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혜자들의 소득 증가에 분명 기여함
  - 추가적으로 영세 농어민이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시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농업, 어업생산비 감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농수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음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금융취약계층과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개선을 위해 정당
  - 인지세는 통상 금융기관과 수혜자가 나누어 지불하므로, 동 특례제도는 상호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음
  - 윤상용(2022)은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힘<sup>14)</sup>
  - 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효율성과 지역 내 지점 수는 지역의 금융포용에 긍정적 영향요인이며, 비수도권에서의 지점수 감소는 지역의 금융포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율성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 인지세 면제 혜택을 통해 1금융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의 신규 고객 유인 및 기존고객충성도 유도로 조합원들의 저축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그러므로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게 소액이지만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어 관련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라고 판단

14) 윤상용, 「서민금융기관의 지점수 감소가 지역의 금융포용과 기관의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제54권 제3호, 지역개발연구, 2022.

-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역시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판단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지매매,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그림 IV-1]에서 보듯 고령·질병, 저소득 은퇴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농촌고령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음

[그림 IV-1] 농지은행사업 개요



- 이러한 정책 사업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김지석·안태현(2022)은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을 보호·지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중요한 수단임을 밝힘<sup>15)</sup>
- 상대적으로 재정취약 계층인 2030세대 청년농, 경영위기농가에 대해 집중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정부 정책과도 합치
  - 정부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sup>16)</sup>
  - <표 IV-1>에 따르면, 농업·농촌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농촌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

15) 김지석·안태현, 「농지은행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2021.

16) 임소영·김영준·하인혜,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표 IV-1> 연도별 고령화율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농가인구	3,063	2,422	2,315	2,245	2,314	2,215	
65세 이상 농가인구	973	1,030	1,035	1,046	980	1,037	
고령화율	농가	31.8	42.5	44.7	46.6	42.3	46.8
	국가 전체	10.8	14.2	14.3	14.9	16.4	17.1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 <표 IV-2>에서 보듯 청년농업인의 농업인 대비 비중은 2018~2021년 약 3% 미만으로 답보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필요

<표 IV-2>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농업인 수(a)	2,451,700	2,455,993	2,487,634	2,518,677
청년농업인 수(b)	65,713	63,208	64,206	65,829
비율(b/a)	2.7%	2.6%	2.6%	2.6%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농식품부)

- 농업인의 부채 비율 감소 및 소득 확대를 통한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농업 정책 사업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
  - 농어촌정비사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농지를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대규모 홍수나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식량 안정적 공급) 주곡자급, 품질향상, 작물 증산 등
    - (농업경쟁력 강화) 재해방지, 영농편의, 비용절감 등
    - (국토의 균형개발) 국토보전, 수자원 개발, 휴경방지, 경관개선 등
    - (농촌진흥) 소득증대, 관광자원 확충, 도농교류 확대 등
  - 농지조성사업 역시 과거 수도작 위주의 간척농지 조성에서 벗어나 타작물 재배

등 간척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농어촌 발전 등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동 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평가
  - 지원대상의 적절성: 동 제도의 수혜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 어떠한 것이 더 적절한지, 정책 대상자들이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행태를 조정할 경제적 유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지원수준의 적절성: 지원규모가 정책에서 목표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 평가

### 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 농어민의 소득이 아직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
  - <표 IV-3>에서 보듯 2021년 기준,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원, 어가의 평균 소득은 5,23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484만원 대비 63%(농가) 및 70%(어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비록 농어촌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농어민 들은 소득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취약계층이라고 판단
  - 또한 어업인의 경우 한·중 FTA 등에 따른 수입수산물 증가와 바다모래 채취 및 연근해오염, 해수온도 상승, 중국어선의 불법남획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

- 이를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수혜대상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필요

〈표 IV-3〉 소득종류별 농어가소득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농가소득	41,182	45,029	47,759
- 농업소득	10,261	11,820	12,961
어가소득	48,415	53,187	52,392
- 어업소득	20,672	22,716	19,676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	67,440	69,532	74,844

주: 1. 농가는 1,000㎡(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구, 조사기준 시점 현재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등을 의미하고, 어가는 연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연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2. 도시가구소득은 각 연도 마지막 분기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1.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지출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농어민이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
  - 상호금융기관 조합원 자격은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영위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 특례제도의 지원대상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
  - 2018~2021년간 농협중앙회 조합원 수는 전체 농가인구의 90%를 상회하므로, 조합원이 용자 또는 예·적금 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

〈표 IV-4〉 농가인구 및 농업인 조합원 수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농가인구(a)	2,314,982	2,244,783	2,314,064	2,215,498
조합원 수(b)	2,146,585	2,099,167	2,085,234	2,087,360
비율(b/a)	93%	94%	90%	94%

자료: (농가인구) 통계청, (조합원 수) 농협 내부자료

- 동 제도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목적은 농어민 및 서민의 재산 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저축 의욕 고취 등에 있으므로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세계 지원은 적절
-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조합원 대부분이 신용수준이 낮으므로 동 특례제도를 통해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
  - 새마을 금고 대출 서비스 상당수는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적절
    - <표 IV-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9%이며, <표 IV-6>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2%임
    - 인지세 감면액의 대부분은 서민 등 취약계층이 수혜를 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효과가 있음

<표 IV-5> 전체 대출금 금액별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단위: 건)

구분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계
대출건수	142,319	217,446	48,276	42,681	20,754	48,204	519,680
비율	79%			8%	4%	9%	100%

자료: 새마을 금고 내부자료

<표 IV-6> NICE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분포 현황(2022년 신규대출 기준)

(단위: 건)

구분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계
대출건수	4,428	10,247	3,534	3,671	1,665	1,721	25,266
비율	72%			14%	7%	7%	100%

주: 6등급은 미소금융 지원 기준

자료: 새마을 금고 내부자료

- 다만, 경영하는 토지의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농어민이나 신용등급이 높은 신협 또는 새마을 금고 조합원들도 동 특례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소득수준,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일 경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예적금 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됨
  - 현행 제도의 취지가 영세한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고려할 때, 경영하는 토지의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농어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신흥이나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합원 요건이 약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고소득자가 제도의 이점을 향유할 가능성도 있음
    - 신흥, 새마을 금고의 경우 구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또는 거소) 존재, 최소금액 예치 요건 충족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은 최종적으로 국가에게 돌아가므로, 수혜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농림축산식품부)에 귀속되며, 농지은행사업의 집행기관(농어촌공사)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전액 농지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전
  - 그러므로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인지세 감면의 실질적 감면대상은 국가임
  - 유사하게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국고에 귀속됨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인지세 감면의 실질적 정책대상은 국가가 됨
  - 따라서 국가가 국가에 조세를 부과하는 비합리 방지, 인지세 감면으로 인한 국가(농지관리기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손비보전 절차 발생 방지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수혜대상은 적절

#### 나. 지원방식의 적절성

- 인지세 감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조합원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

-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이나 기초 자산이 부족한 신규 진입농은 담보 능력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농가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의 가격은 최근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규 진입농과 기존 농가와의 유동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줄 경우 그들에게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줄 수 있음
  - 대출에 대한 인지세 감면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다 민감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현재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
  -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아닌 단지 특정 조합과 조합원 가입 여부에 의해서 수혜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에도, 인지세 면제한도를 설정해 동 제도는 형평을 달성하고 있음

□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더 큰 효과를 주도록 제도가 잘 설계되었다고 판단

- 인지세 감면 혜택은 수혜자 간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대한 판단 필요
  - 인지세는 일종의 문서세로서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지 않음
- 동 특례제도는 소비대차증서에는 인지세 면제 대출한도가 현행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큰 규모의 대출이나 예·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 특히 금전소비대차 증서 작성에 부과되는 인지세가 대출자에게 이자비용 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생활에서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서민들에게 인지세 면제 방식은 적절

- 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호금융기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도 특례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
  - 상호금융기관은 취급상품 및 업무구역의 제한 등으로 일반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며, 인지세 면제가 되는 적금은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혼치 않은 상품임
  - 2017년에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금융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여 아직 정책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지원방식을 통해 수혜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은 명확함
  
- 고령화 심화, 영농승계자 부족 등 농어민인력 육성이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감면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정산 절차 생략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가능
  -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수혜자에게 과도한 인지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면 동 제도가 그릇되게 작동할 수 있음
    - 현재 인지세 면제의 수혜 대상은 조합과 조합원의 가입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농어민 중 소득·자산 측면에서는 정부지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
  - 하지만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경우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의 경우 부채 4천만원 이상 또는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나 농업법인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종합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혜자들에게 현재 방식의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금액은 영세한 농업인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보전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1인당 평균 수혜금액과 전체 인지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금액은 매우 적은 편임
- 2023년 전망치 대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매우 크지만, 인지세 조세지출 비중은 약 0%로 미미한 수준
- 동 특례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표 IV-7>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소득세	345,618	60.6	372,715	58.6	403,988	58.3
법인세	88,924	15.6	113,316	17.8	127,862	18.4
상속·증여세	10,838	1.9	20,049	3.2	22,194	3.2
직접국세계	445,381	78.1	506,082	79.6	554,044	79.9
부가가치세	101,755	17.8	105,930	16.7	113,210	16.3
교통·에너지·환경세	7,758	1.4	6,357	1.0	6,699	1.0
개별소비세	7,483	1.3	9,444	1.5	10,422	1.5
주세	1,084	0.2	1,911	0.3	2,029	0.3
인지세	122	0.0	131	0.0	136	0.0
증권거래세	2,592	0.5	1,415	0.2	1,631	0.2
교육세	3,325	0.6	3,883	0.6	4,245	0.6
간접국세계	124,119	21.8	129,071	20.3	138,372	20.0
관세	748	0.1	623	0.1	739	0.1
합계	570,248	100.0	635,776	100.0	693,15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2.

- 장기적으로 동 제도를 통한 혜택이 인지세 면제로 인한 조세지출 액수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농어민에게 현재 수준의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 인지세 면제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가계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서 대출 부대비용 경감으로 가계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바, 해당 조세지출은 수혜대상(농업인 조합원)에게 필요함

-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음
- 추정 세수 규모가 작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특례 폐지 시 상대적 효과는 낮은 편이라 추정
  - 전형적인 소액다건 세제로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에 대한 7만원 절감 효과, 1필지당 6만원 이하 효과로 농어민 개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다수의 개인에게 수혜되는 효과가 분명 존재
  - 개인에게 수혜되는 효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정액지원으로 형평성은 높음

### 3. 타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은 수혜자나 혜택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여타 제도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임
- 국세 중 농어민을 위한 조세 지원은 <표 IV-8>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지세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민에 대한 국세 지원 중 인지세 면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8> 국세 주요 조세 지원

(단위: 억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소득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추정 곤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추정 곤란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항	187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69조, 제69조의2	12,401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특법 제70조	55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조특법 제87조의2	122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추정 곤란
	조합원 배당소득·예탁금이자 비과세	조특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5,521

<표 IV-8>의 계속

(단위: 억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부가 가치세	미가공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추정 곤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16,09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기자재(농업기계)·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2항	55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법 제105조의 2	1,219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추정 곤란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의2	11,549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25,323
	농업중앙회 경제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23	480
상속· 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특법 제71조	436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176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특법 제66조, 제67조 1항	284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8조	154
	농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특법 제72조	2,451
인지세	농업인의 용자, 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 제1항	26

주: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지방세 중 농어민을 위한 조세 지원은 <표 IV-9>에서 볼 수 있듯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중 재산세의 경우 인지세처럼 용자, 예금과 같은 자산의 형성과 관련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견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재산세는 형성된 재산에 부과하는 과세이고 인지세는 자산 및 부채의 형성 과정에서 수단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됨

<표 IV-9> 지방세 주요 조세 지원

(단위: 억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6조 제1항, 제2항	83,364
	귀농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6조 제4항	3,500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및 자동차세 면제	지특법 제7조 제1항	90
	농업용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7조 제2항	509
	농지(임야)확대개발을 위한 농지(임야)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8조	810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11조 제1항	23,714
	농업법인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지특법 제11조 제2항	38,251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13조 제2항	14,870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15조 제1항, 제2항	61
	농협·산림조합의 회원들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공동이용시설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14조 제2항	6
농협중앙회 등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 제14조 제1항	283	
재산세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특법 제13조 제2항	2,354
	농협중앙회 등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 제14조 제1항	582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특법 제14조 제3항	24,037
	농업용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	지특법 제7조 제2항	530
	농업법인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지특법 제11조 제2항	2,336
	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특법 제13조 2항	3,487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지특법 제35조의2	556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15조 제1항, 제2항	26,694

<표 IV-9>의 계속

(단위: 억원)

세목	감면내용	근거 법령	감면세액
등록 면허세	농업법인 설립 후 2년 이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11조 제1항	2,336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6조 제3항	280
주민세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특법 제10조 제2항	1,471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 경감	지특법 제14조 제4항	11

주: 여러 세목에 대해 감면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8.

- 농어민 지원 조세 특례는 국세와 지방세 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 특례제도는 수혜자들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존재함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공공성 인정, 관련 종사자들의 취약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지세 세부 항목에 대한 지원 타당성보다는 농어민 전체, 농지 거래 관련 지원 타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조특법」에 규정된 여러 조세 지원 중 대농 및 부농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타 세제지원과는 다른 양상

#### 4. 소결

- (정부역할의 정당성) 특례의 정책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농어촌 발전 등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정부가 이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적절
    - 농어민에 대한 융자사업은 농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들이 금융취약계층이라는 점과 지역에 중

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조세지출은 타당

-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
- 인지세 면제 혜택을 통해 1금융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의 신규 고객 유인 및 기존고객충성도 유도로 조합원들의 저축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

□ (정책수단의 적절성) 동 제도의 구조적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

- (지원대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흥이나 새마을 금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적절
  - 2021년 기준,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원, 어가의 평균소득은 5,23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484만원 대비 63%(농가) 및 70%(어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흥이나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용수준이 낮음
  - 2022년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9%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출건수 중 1억원 이하 비중은 72%
-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
  - 소비대차증서에는 인지세 면제 대출한도가 현행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큰 규모의 대출이나 예·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 인지세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 방식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정산 절차 생략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에 도움

- (지원수준) 1인당 수혜금액과 특례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현 지원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추정 세수 규모가 작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유사중복성) 현 특례제도는 대농 및 부농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타 세제 지원과는 다른 양상
  -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공공성 인정, 관련 종사자들의 취약성이 인정되어 다수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당수 세제지원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면제를 통해 농어민을 지원
  - 다만, 현 특례제도는 소득 또는 자산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농·부농에게 지원 수준이 커질 수 있는 다른 세제지원과 차별성 존재



## 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 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sup>17)</sup>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조세특례가 수혜대상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성 분석을 실시함
  
- 「인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는 농·어민 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용자, 예·적금증서·통장 등에 부과되는 인지세(제1항 제5호·제6호·제9호)와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에 의한 거래에 부과되는 인지세(제1항 제7호·제11호)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임<sup>18)</sup>
  - 각 호별로 인지세가 발생하는 거래가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에서는 개별 호 단위로 분석을 실시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임
  - 해당 제도의 인지 및 혜택 여부 및 혜택 수준
    -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의 경우 수혜대상자가 해당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도 제도 요건이 만족될 경우 자동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인지와 효과성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임
    - 반면에 본 제도의 일부 혜택의 경우(제1항 제5호·제6호·제9호)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에서의 자격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의 인지에 따라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와 수혜 여부 및 혜택 수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7) 전체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 참고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에는 보다 많은 인지세 면제 항목이 존재하나 이번 조세특례 심층 평가에서는 농·어민 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함

- 효과성 분석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가 농·어민 등의 소득 및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함
-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생각하는 각 호의 효과 수준에 대해 분석하며,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우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목적사업(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분석함
- 농·어민 등의 주된 자산 축적 방식
  - 제도의 효과성, 방향성, 개선방안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의 설정이 적절하게 되어있는지 파악해야 함
  - 본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농·어민 등의 경제적 안정이므로 이에 가장 중요한 자산 축적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농·어민 등의 주된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현 제도의 요건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세특례 제도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
- 농·어민 등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지원 방식
  - 현 조세특례 제도 및 농·어민 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혜대상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함

## 1. 설문조사 개요

- 해당 조세특례 제도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세청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성 분석을 시도함
  - 자료의 획득이 가능할 경우 인지세 면제 금액자료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미시자료 및 국세청 과세자료가 통합이 될 경우, 해당 제도 변화를 외생적 충격으로 고려하여 이벤트 스터디나 이중차분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 추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인지세 면제 금액에 대한 자료는 개별 상호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자료와 병합을 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분기 혹은 연별로 각 호에 대한 누적금액을 수치화하고 있어 이를 통한 개인 단위의 통계적 분석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염두하고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표본 설정의 유연성
    -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목표로 설문조사 대상 표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개인정보,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구축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하여 설문조사의 시행과 자료 수득을 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 제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인지세 면제와 그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자료가 필수적인데,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 자료 수득의 용이성
    -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의 경우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실증적 모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득은 연구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질문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수혜자 또는 수혜대상자에게 제도의 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응답을 하게 된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 등으로 인한 편향
    - 연구자의 의도 또는 설문조사 시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설정된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모집단과 연구자가 생각하는 모집단이 유사할 경우 확률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으로 인한 편향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sup>19)</sup>

- 또한, 응답자의 사회·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의 상황과 다르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가능성도 있어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은 설문조사 응답 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응답할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을 통제한 결과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 등을 보이고 이것이 만약 응답과 관련되었다면 응답자만의 결과는 편향이 있을 수 있음
- 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최대한 응답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였음

□ 설문조사의 대상(<표 V-1>)은 본 조세특례 제도의 수혜대상자인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총 400명을 목표로 실시함

- 조사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중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면서 조합원 가입 요건의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설정함
  - 농협과 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며 특히 직업요건이 필수적임
  - 농협(수협)의 경우 농업인(어업인)으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함
  - 반면에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입도 가능함
- 표본집단은 각 상호금융기관의 권역별·도시 규모별로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당 일정 수의 표본을 조사함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권역별·도시 규모별로 나누었을 경우 지점별로 조합원 분포가 유사하여, 선정된 지점에서 10개의 표본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반면에 수협의 경우 모집단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고 지점별로 조합원 분포 현황 차이가 커 수협이 주로 분포하는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19) 확률표본추출법에는 단순무작위추출, 층화무작위추출, 계통적표본추출 등이 있음

- 세종의 지점에서 나누어 표본을 획득함
- 표본 구성은 수득 기준으로 총 400명을 고려하였고, 각 조사 그룹당 100명을 목표로 실시하였음
  - 본 심층평가에 주어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수준으로 설정함

<표 V-1>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	
조사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표본집단	각 조합원 기준 지역, 도시·농어촌 거주 등으로 층화추출
표본구성	총 400명(각 조사 그룹당 100명)
표본추출방법	각 조합원별로 동일한 샘플 숫자 추출

-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설문작성 및 검토 2개월, 설문조사 진행 2개월 실시
  - 개별 제도마다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비교적 설문의 길이가 긴 편에 속하였으며, 수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면조사방식을 채택하여 표본 수에 비해 설문조사 기간이 많이 요구되었음
- 보다 정확한 자료 수득을 위하여 여러 설문조사 방식 중 대면조사방식을 채택함
  - 설문조사 방식에는 인터넷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 ARS 전화조사, 전화설문조사, 대면조사 등이 많이 활용됨
  - 이 중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대면조사방식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함
    - 앞서 설문조사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응답자의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설문 응답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방식이 적절함
    - 본 설문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가 응답자 입장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여러 호에 대한 내용을 한 설문조사에 담았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 수득률이 낮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가장 적합한 대면조사방식을 사용함

- 앞서 언급하였던 효과성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질문을 실시함
  - 응답자의 인적사항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가입 기관, 신용점수, 연소득, 자산 등을 조사함
    -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항목을 포함함
    - 이를 통하여 자산, 소득과 같은 특정 요건의 정책대상자에 해당 제도가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적사항과 연관 있는 편향 등을 통제한 일반적인 제도 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인식
    - 본 제도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상호금융기관에서의 자격(조합원 여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의 인지에 따라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각 호별로 제도의 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해당 제도의 혜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제도 혜택 여부 및 혜택 금액
    - 수혜가능대상자에게 제도 혜택 여부와 혜택 금액을 질문함
    - 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전체 표본에서 확인하고 앞서 조사한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그 결과가 이질적인지 파악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함
  -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본 조세특례 제도가 농·어민 등의 소득 및 자산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조사함
    - 또한, 수혜대상자의 관점에서 제1항 제7호·제11호가 목적사업(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을 얼마나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함
    -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조세특례의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질문함
  - 제도 개선 방안
    - 본 조세특례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을 각 호별로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함

- 추가적으로 농·어민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유형자산, 기술, 인프라, 재정 등)과 지원 방식을 조사함
- 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호에 따른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지세 면제 항목이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지 파악해볼 수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응답자의 주된 자산 축적 방식
  - 수혜대상자의 주된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득 종류에 대한 자산 축적 기여도를 순위 형식으로 질문함
  - 이를 통해 농·어민 등의 주된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현 제도의 개별 호와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세특례 제도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음
- 이 이외에도 본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여러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표 V-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전문은 부록에 수록함

**<표 V-2> 설문 질문의 구성 예시**

<b>응답자의 인적사항</b>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귀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 귀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2022년 기준 귀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단기 자산 및 부채)
<b>제도에 대한 인식</b>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에서 동일인의 용자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추가적인 검색을 하시지 마시고 해당 조항을 보고 느끼는 대로 적어주세요.)
· 만약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의 혜택이 위 문항에 응답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b>제도 혜택 여부 및 혜택 금액</b>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의 혜택을 받으신 금액을 적어주세요.

<표 V-2>의 계속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현행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기재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이 인지세 면제로 받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현행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하여 건별로 1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이 인지세 면제로 받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도 개선 방안**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농민·어민·임업인의 지원을 위해 어떠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 중 3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에 대해 지원 방식도 응답해주세요.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와 관련한 제언 사항이 있으면 가감 없이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의 주된 자산 축적 방식**

- 현재까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가구 기준 소득은 무엇인가요? 각 항목에 기여도가 큰 순서대로 1~8순위로 응답해주세요.
- 현재까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중요하게 기여하였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지원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조사 표본 특징

- 설문조사 결과 소득 표본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의 조합원(회원) 총 403명으로 구성됨
  - 조합별 가입자를 살펴보면 주거래 기준 지역농협 100명, 신협 101명, 새마을금고 102명, 수협 100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개의 조합에 동시 가입한 경우는 주거래 조합 중 지역농협 13명, 신협 16명, 새마을금고 11명, 수협 7명이 있었음
  - 표본 내 복수 가입이 없는 경우는 355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조합을 가입한 응답자의 경우 48명으로 약 11.9%를 차지하고 있음

-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203명과 200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관측되었음
  - 연령은 60세 이상(40.0%)과 40~59세(39.2%)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인구 밀집도와 유사하게 ‘서울/경기/인천’지역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이 23.3%, ‘광주/전라’가 16.1% 순으로 많았음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졸’(49.1%)이 제일 많은 것으로 관측됨
  - 응답자의 직업은 ‘판매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각각 31.8%과 26.8%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근로 지속 기간은 ‘10~20년 미만’이 25.8%로 가장 높았음
  - 다만, 근로 지속 기간의 경우 20년 이상의 비중이 과반수(54.4%)로 관측되어 해당 직업에 오래 근로한 사람들이 응답자에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혼’상태(91.1%)이며, 2인 이상의 가구(94.8%)인 것을 확인함
- 응답자의 신용 및 자산상태는 다음과 같음
  - 추정치를 포함한 신용점수는 각 등급별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실제 신용점수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1~3등급’이 55.8%(82명)로 제일 많았음
  - 2022년 기준 응답자의 가구 종합소득은 ‘5,000~7,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분포(35.7%)를 보여, 일반적으로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소득분위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V-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3	100.0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8.8
	신협	120	29.8
	새마을금고	130	32.3
	수협	101	25.1

<표 V-3>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가입 조합 (주거래)	지역농협	100	24.8
	신협	101	25.1
	새마을금고	102	25.3
	수협	100	24.8
복수 가입 여부	복수 가입 없음	355	88.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1.9
성	남자	203	50.4
	여자	200	49.6
연령	19~39세	84	20.8
	40~59세	158	39.2
	60세 이상	161	40.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7.5
	대전/충청	63	15.6
	광주/전라	65	16.1
	대구/경북	30	7.4
	부산/울산/경남	94	23.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6.7
	고등학교 졸업	198	49.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0.1
	대학교(4년제) 졸업	97	24.1
직업	관리자	5	1.2
	사무 종사자	49	12.2
	서비스 종사자	57	14.1
	판매 종사자	128	31.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2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4.5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7
	단순노무 종사자	3	0.7
	기타	28	6.9

<표 V-3>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19.9
	10~20년 미만	104	25.8
	20~30년 미만	89	22.1
	30~40년 미만	89	22.1
	40년 이상	41	10.2
혼인상태	기혼	367	91.1
	미혼	32	7.9
	기타	4	1.0
가구원수	1인	21	5.2
	2인	160	39.7
	3인	125	31.0
	4인 이상	97	24.1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발급 가능	359	89.1
	발급 불가능	13	3.2
	모름	31	7.7
신용점수 (인지)	1~3등급	82	55.8
	4~6등급	46	31.3
	7~10등급	19	12.9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30.5
	4~6등급	116	28.8
	7~10등급	119	29.5
	모름	45	11.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4.5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1.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35.7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4.1
	10,000만원 이상	56	13.9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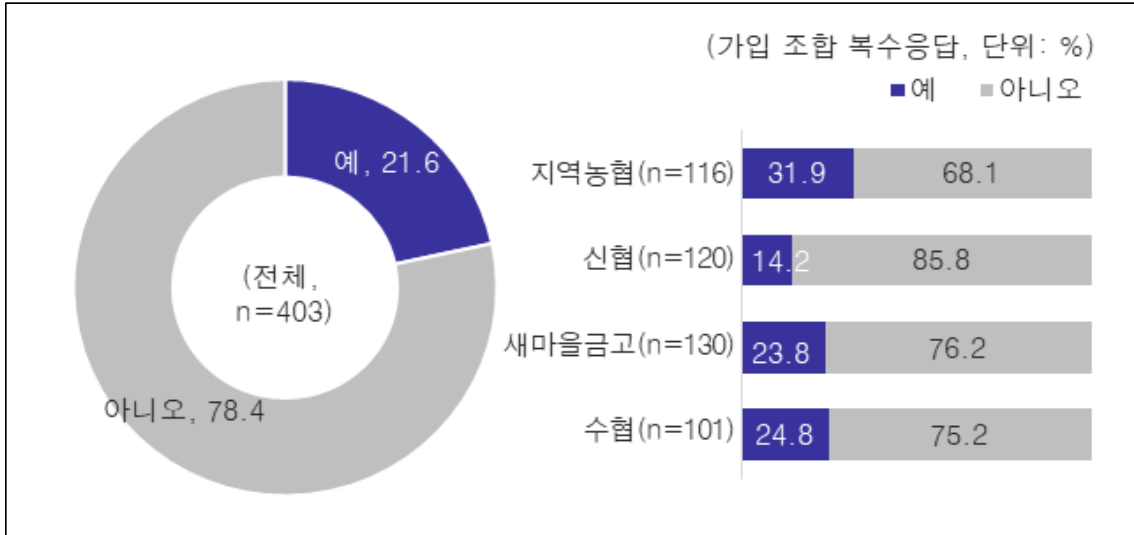
- 설문조사는 개별 호에 대한 부분과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함
  - 개별 호에서는 해당 요건에 대한 인지 여부, 혜택 경험, 경제적 효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봄
  -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산 축적에 기여한 가구 소득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 형식, 농민, 어민, 임업인 지원을 위한 지원 및 방식, 인지세의 면제와 관련된 제언 사항에 대하여 살펴봄

### 가.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본 조세특례는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임
    - 용자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7만원의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용자를 모두 갚고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 반복 수혜 가능함
- 제1항 제5호의 인지 여부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1.6% 수준으로 나타남
    - 상호금융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인지 수준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협(24.8%), 새마을금고(23.8%) 순으로 높았음
    - 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농협과 수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카드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 여부가 많은 차이를 보였음
    - 반면에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낮은 등급(7~10등급)에서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다른 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해당 제도의 인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V-1]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표 V-4>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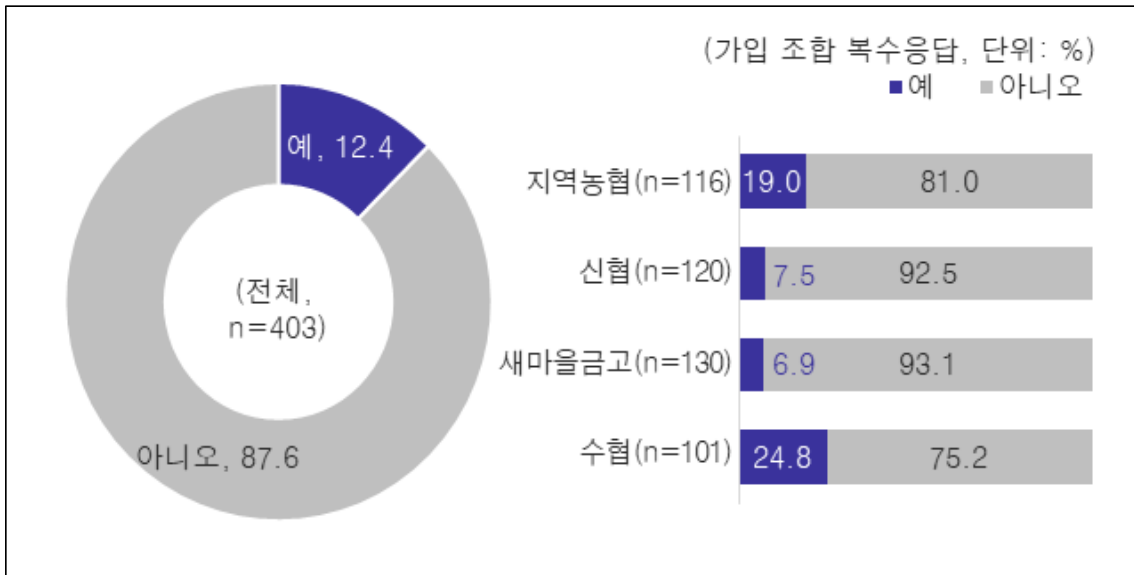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	아니오 (%)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8.9	71.1
		발급 불가/모름	10	30.0	70.0
	신협	발급 가능	89	14.6	85.4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0.7	79.3
		발급 불가/모름	10	10.0	90.0
	수협	발급 가능	88	25.0	75.0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23.6	76.4
	4~6등급		116	25.0	75.0
	7~10등급		119	21.0	79.0
	모름		45	8.9	91.1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88.9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8.2	81.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2.2	77.8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9.6	80.4
	10,000만원 이상		56	32.1	67.9

□ 제1항 제5호의 수혜 여부

- 제1항 제5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2.4% 수준으로 나타남
  - 수협 가입자에서 수혜 비율 2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농협(19.0%) 등의 순임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총 87명), 48.3%가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카드 발급 가능한 응답자들이 해당 제도를 수혜했던 경험이 있는 경향성이 확인됨
  -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비율으로는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카드 발급 불가자의 수가 적어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 정확한 판별은 어려움
  - 반면에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간 등급(4~6등급)에서 매우 높은 수혜 경험을 보임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V-2]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표 V-5>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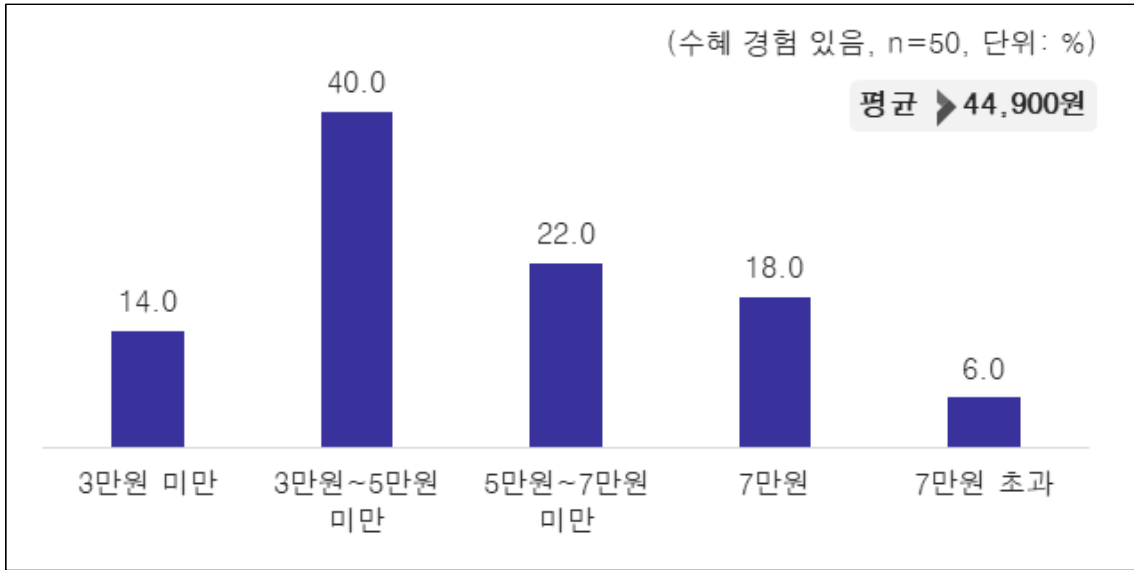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12.4	87.6	
제1항 제5호 인지		87	48.3	51.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8.9	81.1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신협	발급 가능	89	5.6	94.4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97.8
		발급 불가/모름	10	10.0	90.0
	수협	발급 가능	88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2	16.7	83.3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10.6	89.4
	4~6등급		116	19.8	80.2
	7~10등급		119	10.1	89.9
	모름		45	4.4	95.6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88.9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0.2	89.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1.8	88.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3.4	86.6
	10,000만원 이상		56	16.1	83.9

□ 제1항 제5호의 수혜 금액

- 제1항 제5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혜 금액에 대해 평균 44,900원이라 응답함(추가적인 검색 없이 기억나는 대로 응답)
  - 최대 수혜 금액으로 ‘3만~5만원 미만’이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94.0%가 최대 수혜 금액을 7만원 이하로 응답하였으나 6.0%의 응답자가 ‘7만원 초과’의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중 정확한 수혜금액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그림 V-3]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수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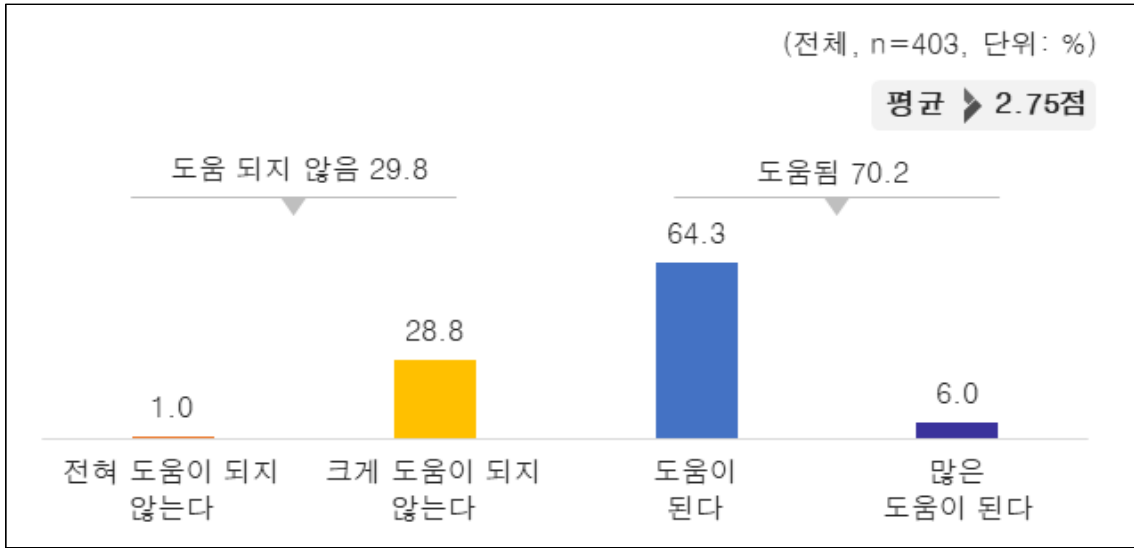


□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 [그림 V-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인 7만원의 인지세 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3%로 나타남<sup>20)</sup>
  -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74점으로 응답자들이 다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응답자들이 해당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유사하게 등급이 낮으면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느끼지만 중간 등급(4~6등급)에서 본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평가함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0만원 미만’까지는 인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여 ‘10,000만원 이상’에서는 과반수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함

20) ‘많은 도움이 된다’(6.0%) + ‘도움이 된다’(64.3%)

[그림 V-4]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표 V-6>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만점)	
전체		403	1.0	28.8	64.3	6.0	29.8	70.2	2.7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2	26.7	65.6	5.6	28.9	71.1	2.74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	90.0	0.0	10.0	90.0	2.90
	신협	발급 가능	89	0.0	34.8	61.8	3.4	34.8	65.2	2.69
		발급 불가모름	12	0.0	33.3	58.3	8.3	33.3	66.7	2.75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38.0	57.6	2.2	40.2	59.8	2.60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80.0	0.0	20.0	80.0	2.80
	수협	발급 가능	88	0.0	20.5	65.9	13.6	20.5	79.5	2.93
		발급 불가모름	12	0.0	8.3	83.3	8.3	8.3	91.7	3.00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	43.1	53.7	1.6	44.7	55.3	2.55	
	4~6등급	116	0.9	16.4	72.4	10.3	17.2	82.8	2.92	
	7~10등급	119	0.8	30.3	60.5	8.4	31.1	68.9	2.76	
	모름	45	0.0	17.8	82.2	0.0	17.8	82.2	2.8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33.3	61.1	5.6	33.3	66.7	2.7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0.0	19.3	73.9	6.8	19.3	80.7	2.8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1	27.8	64.6	5.6	29.9	70.1	2.74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0	41.2	49.5	8.2	42.3	57.7	2.65	
	10,000만원 이상	56	0.0	23.2	75.0	1.8	23.2	76.8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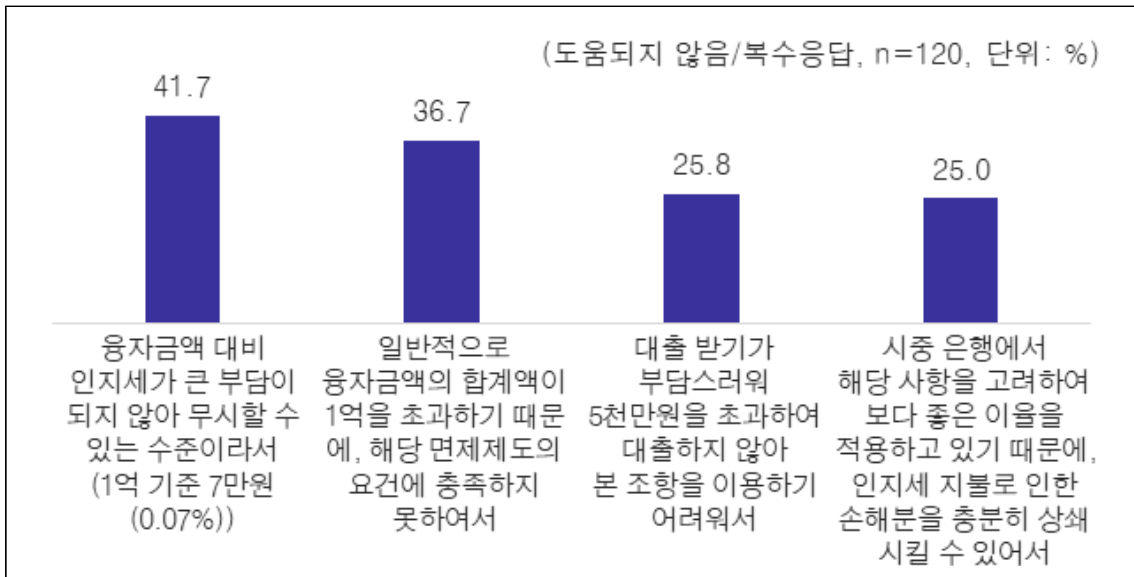
□ 제1항 제5호의 경제적 효과 정도에 대한 응답 이유

- 제1항 제5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그룹으로 나누어 응답의 이유에 대하여 설문함
- 제1항 제5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융자금액 대비 인지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1억 기준 7만원(0.07%))’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나,<sup>21)</sup> 혜택 금액의 비중이 거래금액에 비해 낮기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으로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제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서’가 36.7%로 다음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출의 목적이 단순한 생활자금의 수준을 넘어 개인용 또는 사업용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았음
- 제1항 제5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응답자의 75.3%가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적은 편에 속해 소액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를 선택함<sup>22)</sup>
  - 특히, 가구 종합소득이 ‘3,000만원 미만’에서 해당 문항을 가장 높은 비율(91.7%)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 구간인 ‘3,000만~5,0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도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해당 문항을 선택(76.1%)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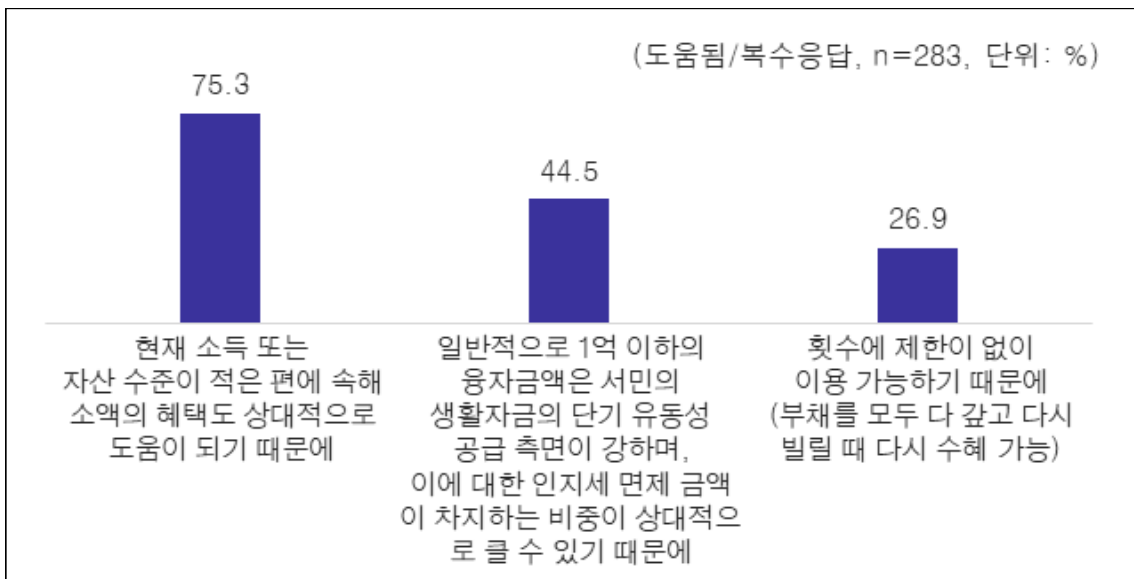
21) 해당 응답은 제1항 제5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120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22) 해당 응답은 제1항 제5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283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냄

[그림 V-5]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림 V-6]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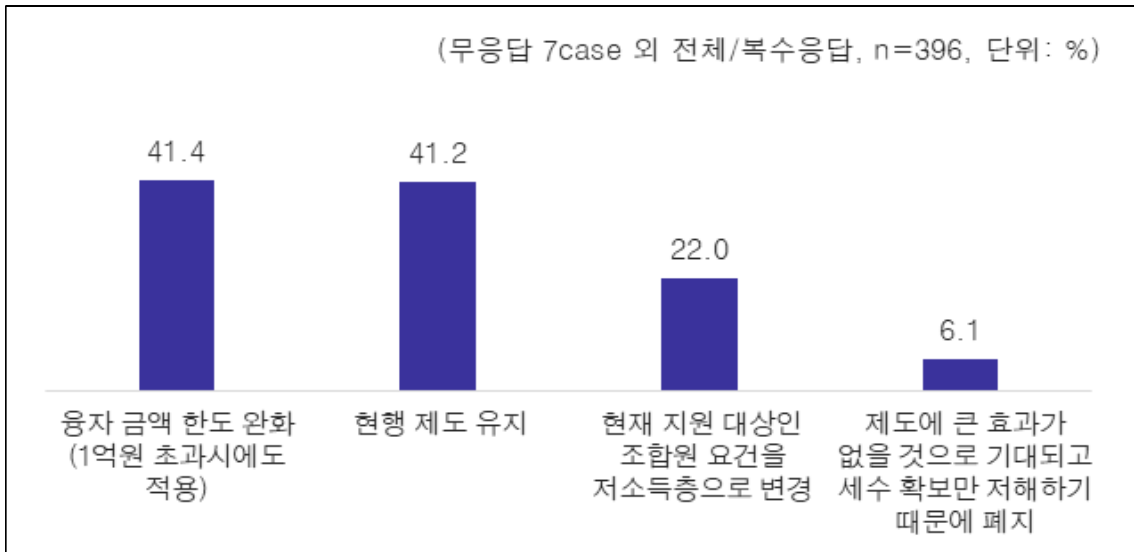


□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총 396명이 응답하였으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용자 금액 한도 완화(1억원 초과 시에도 적용)’(41.4%), ‘현행 제도 유지’(41.2%)가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 유지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유지/확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축소/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신용에 따른 유의미한 응답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일수록 ‘현행 제도 유지’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
- 특히,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과반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였음

[그림 V-7]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표 V-7>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자 금액 한도 완화	제도 유지	저소득층으로 요건 변경	폐지	
전체		396	41.4	41.2	22.0	6.1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120	30.8	30.8	30.8	20.0	
	도움됨	276	45.7	46.0	18.1	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5.6	34.4	30.0	7.8
		발급 불가모름	9	55.6	22.2	33.3	0.0
	신협	발급 가능	86	51.2	29.1	23.3	8.1
		발급 불가모름	12	41.7	50.0	16.7	0.0
	새마을금고	발급 가능	90	42.2	38.9	23.3	7.8
		발급 불가모름	10	30.0	60.0	10.0	0.0
	수협	발급 가능	87	26.4	58.6	14.9	3.4
		발급 불가모름	12	41.7	58.3	0.0	0.0

<표 V-7>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융자 금액 한도 완화	제도 유지	저소득층으로 요건 변경	폐지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19	33.6	36.1	25.2	10.9
	4~6등급	114	48.2	41.2	24.6	2.6
	7~10등급	118	40.7	45.8	17.8	6.8
	모름	45	46.7	42.2	17.8	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66.7	5.6	0.0
	3,000만~5,000만원 미만	87	37.9	51.7	16.1	0.0
	5,000만~7,000만원 미만	140	39.3	40.7	25.0	6.4
	7,000만~10,000만원 미만	96	33.3	37.5	29.2	13.5
	10,000만원 이상	55	70.9	23.6	16.4	3.6

나. 인지세의 면제(§ 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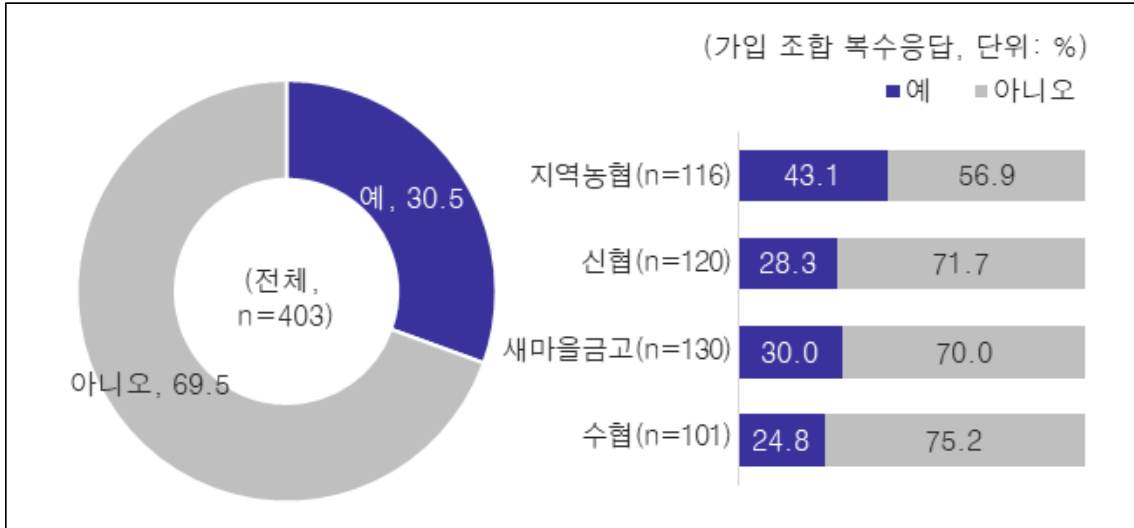
-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영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해 발생하는 인지세 100원 면제
  - 횟수 제한 없음

□ 제1항 제6호의 인지 여부

-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30.5% 수준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경우에 제1항 제5호에 비해 많은 응답자가 해당 조세특례를 인지하고 있었음
  - 상호금융기관별로는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인지 수준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30.0%) 순으로 높았음
  - 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협에서 카드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 여부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음
  -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간 등급(4~6등급)에서 다소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다른 등급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음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0만원 미만’까지는 인지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여 ‘10,000만원 이상’에서는 과반수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V-8]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표 V-8>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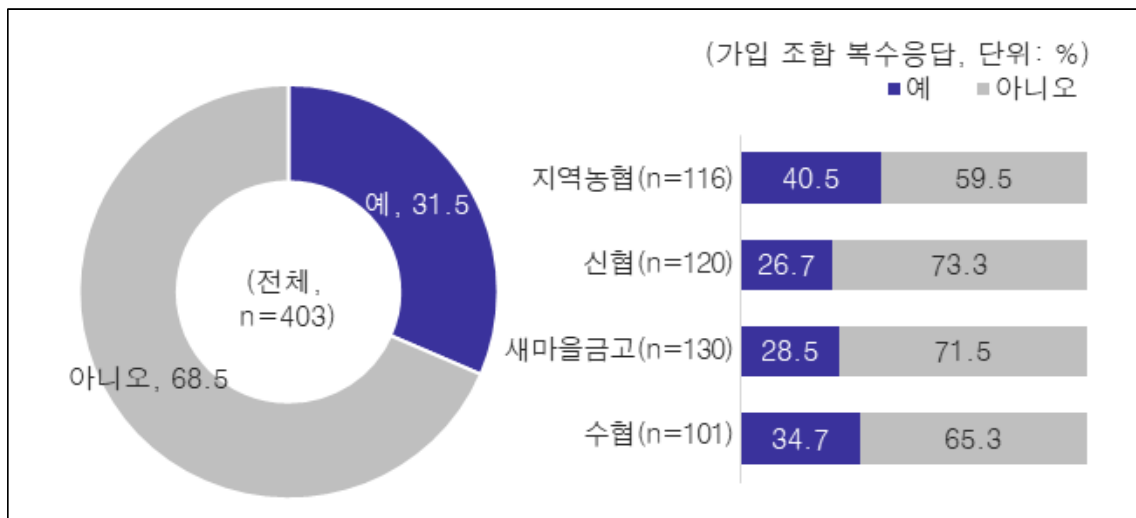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	아니오 (%)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0.0	60.0
		발급 불가/모름	10	40.0	60.0
	신협	발급 가능	89	31.5	68.5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8.3	71.7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수협	발급 가능	88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2	8.3	91.7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46.3	53.7	
	4~6등급	116	24.1	75.9	
	7~10등급	119	31.1	68.9	
	모름	45	2.2	9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7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9.3	80.7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5.7	74.3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6.1	63.9	
	10,000만원 이상	56	51.8	48.2	

□ 제1항 제6호의 수혜 여부

- 제1항 제6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1.5% 수준으로 파악됨
  - 제1항 제5호에 비해 해당 조세특례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해당 면제 혜택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상호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에 비하여 해당 수준이 적절하거나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총 123명), 88.6%가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인지 여부의 분포와 수혜 여부의 분포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9]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표 V-9>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31.5	68.5		
제1항 제5호 인지		123	88.6	11.4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36.7	63.3	
		발급 불가/모름	10	40.0	60.0	
	신협	발급 가능	89	29.2	70.8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표 V-9>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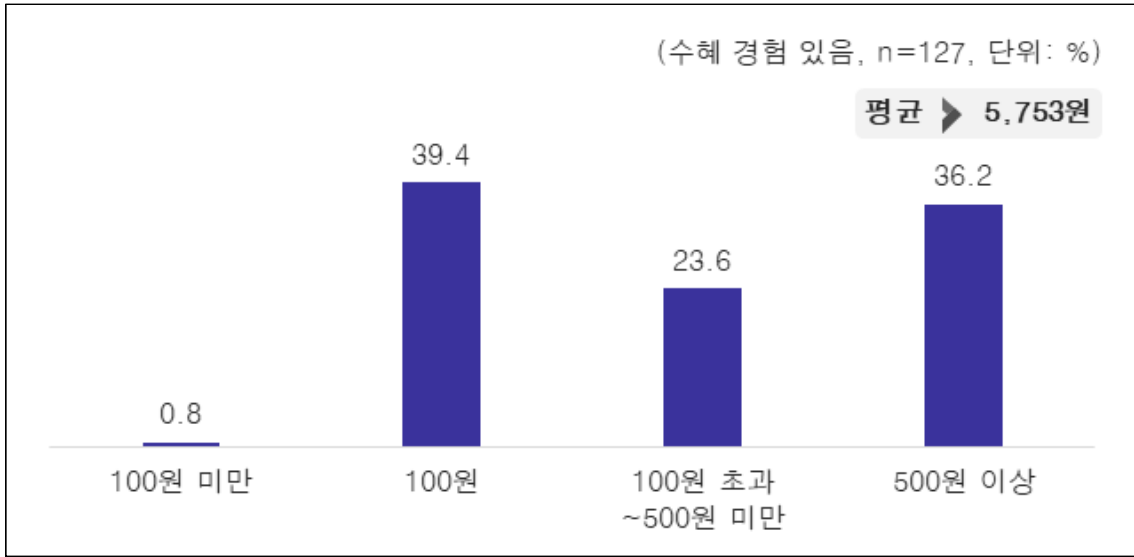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수협	발급 가능	88	38.6	61.4
		발급 불가/모름	12	8.3	91.7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44.7	55.3
	4~6등급		116	33.6	66.4
	7~10등급		119	26.9	73.1
	모름		45	2.2	9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7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6.1	73.9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7.1	72.9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40.2	59.8
	10,000만원 이상		56	37.5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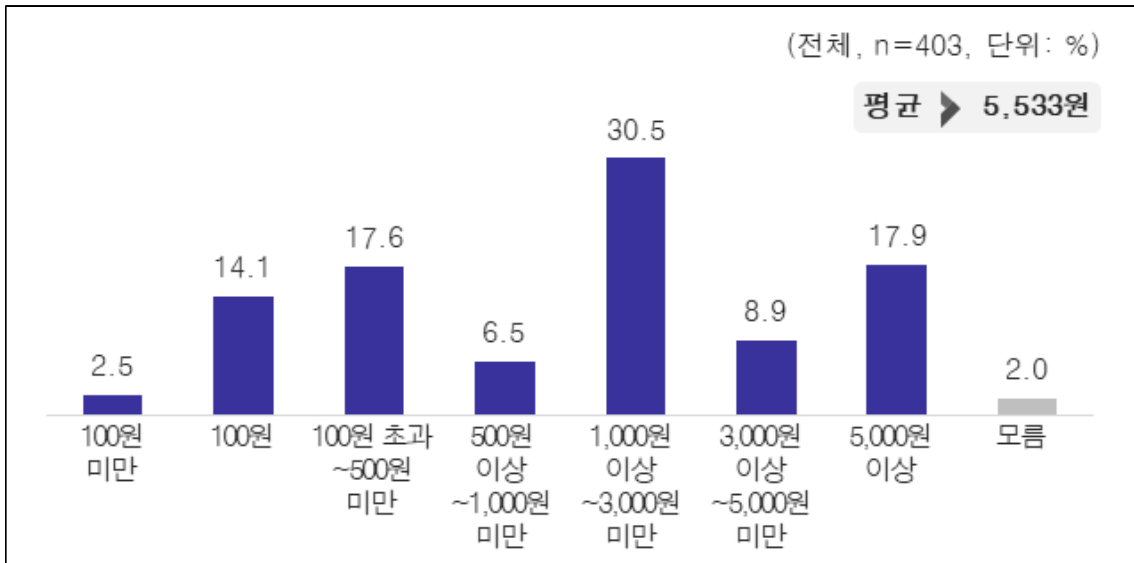
□ 제1항 제6호의 수혜 금액

- 제1항 제6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127명)은 본인이 받은 수혜 금액에 대해 평균 5,753원이라 응답함(추가적인 검색 없이 기억나는 대로 응답)
  - 수혜 금액으로 ‘100원’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36.2%의 응답자가 ‘100~500원 미만’, 36.2%의 응답자가 ‘5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응답자 중 정확한 수혜금액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이러한 논지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제1항 제6호의 1회 최대 수혜 예상 금액을 질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5,533원으로 응답하였고, 선택지에서도 ‘1,000원 이상~3,000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그림 V-11])

[그림 V-10]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그림 V-11]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1회 최대 수혜 금액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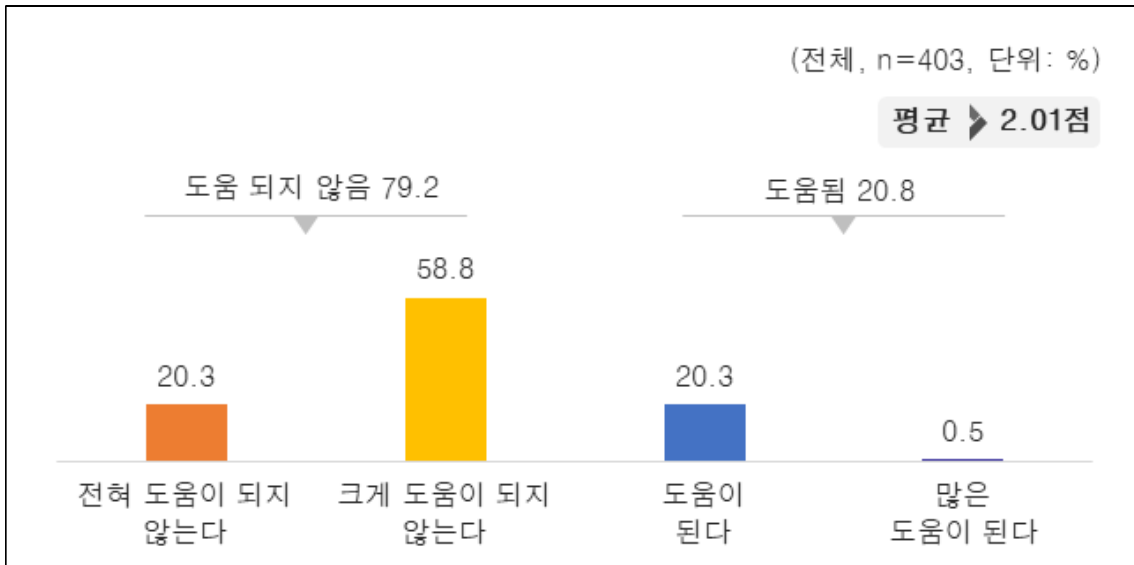
□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인 건별 100원의 인지세 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8%로 나타남<sup>23)</sup>
  -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01점으로 응답자들이 해당 제도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측에 가까움

23) ‘많은 도움이 된다’(0.5%) + ‘도움이 된다’(20.3%)

-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중간 등급(4~6등급)에서 본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평가(2.34/4)하고, 높은 등급(1~3등급)에서 본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낮게 평가함(1.76/4)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10,0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낮게 평가함

[그림 V-12]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



<표 V-10>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효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만점)		
전체	403	20.3	58.8	20.3	0.5	79.2	20.8	2.01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4.4	54.4	21.1	0.0	78.9	21.1	1.97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10.0	0.0	90.0	10.0	1.90
	신협	발급 가능	89	21.3	57.3	21.3	0.0	78.7	21.3	2.00
		발급 불가/모름	12	16.7	58.3	25.0	0.0	75.0	25.0	2.08
	새마을금고	발급 가능	92	22.8	54.3	22.8	0.0	77.2	22.8	2.00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10.0	0.0	90.0	10.0	1.90
	수협	발급 가능	88	12.5	69.3	15.9	2.3	81.8	18.2	2.08
		발급 불가/모름	12	25.0	41.7	33.3	0.0	66.7	33.3	2.08

<표 V-1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크게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만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33.3	56.9	9.8	0.0	90.2	9.8	1.76
	4~6등급	116	5.2	56.9	37.1	0.9	62.1	37.9	2.34
	7~10등급	119	28.6	59.7	10.9	0.8	88.2	11.8	1.84
	모름	45	2.2	66.7	31.1	0.0	68.9	31.1	2.2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6.7	55.6	27.8	0.0	72.2	27.8	2.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4.8	64.8	20.5	0.0	79.5	20.5	2.06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2.9	54.2	22.9	0.0	77.1	22.9	2.00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2.7	61.9	13.4	2.1	84.5	15.5	1.95
	10,000만원 이상	56	19.6	57.1	23.2	0.0	76.8	23.2	2.04

□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 정도에 대한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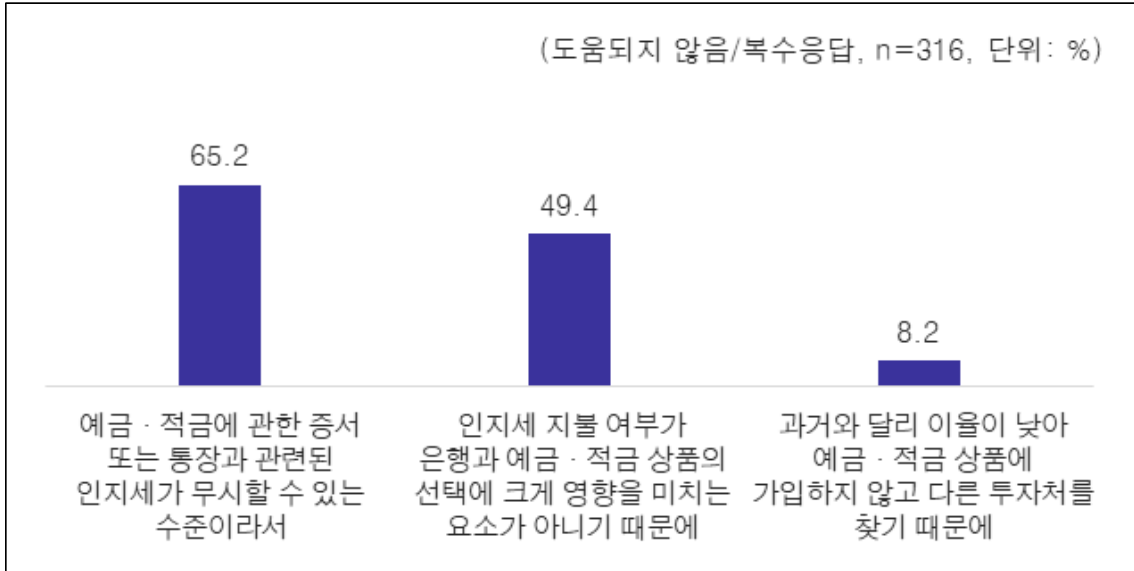
-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룹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으로 나누어 응답의 이유에 대하여 설문함
-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과 관련된 인지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sup>24)</sup>, 혜택 금액의 비중의 절대적인 값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인지세를 따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 주된 이유로는 ‘인지세 지불 여부가 은행과 예금·적금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이었음
  - 49.4% 수준이어서 지불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대적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해당 요인이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큰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해당 결과는 응답자의 개인정보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음
- 반면에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는 응답자의 82.8%가 ‘횟수에 제한이 없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를 선택함<sup>25)</sup>

24) 해당 응답은 제1항 제6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316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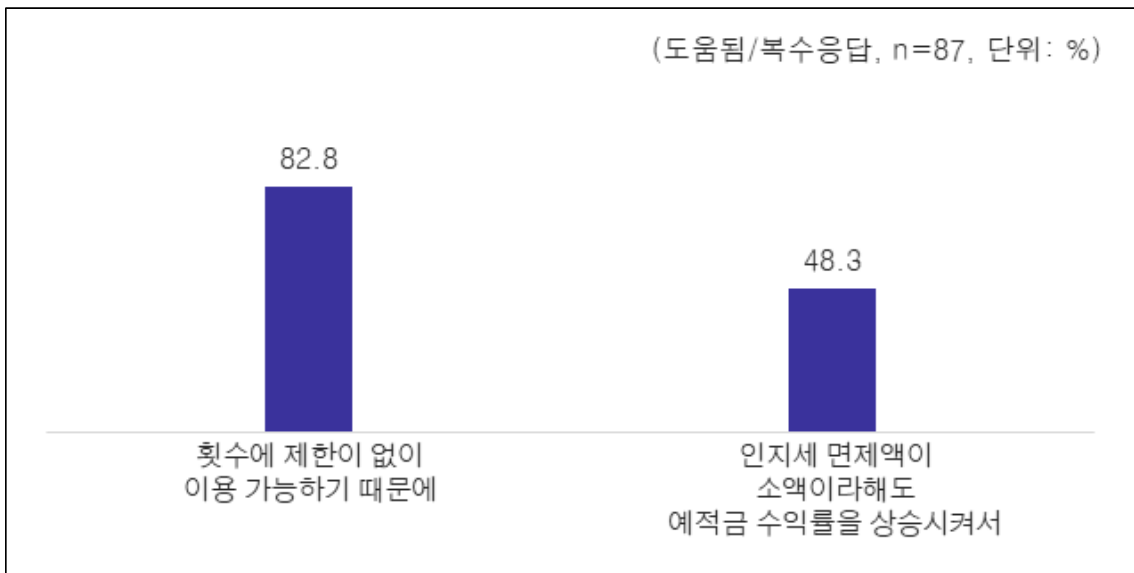
25) 해당 응답은 제1항 제6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 제1항 제5호와는 다르게 응답자의 신용 수준이나 가구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음

[그림 V-13]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림 V-14]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가 도움이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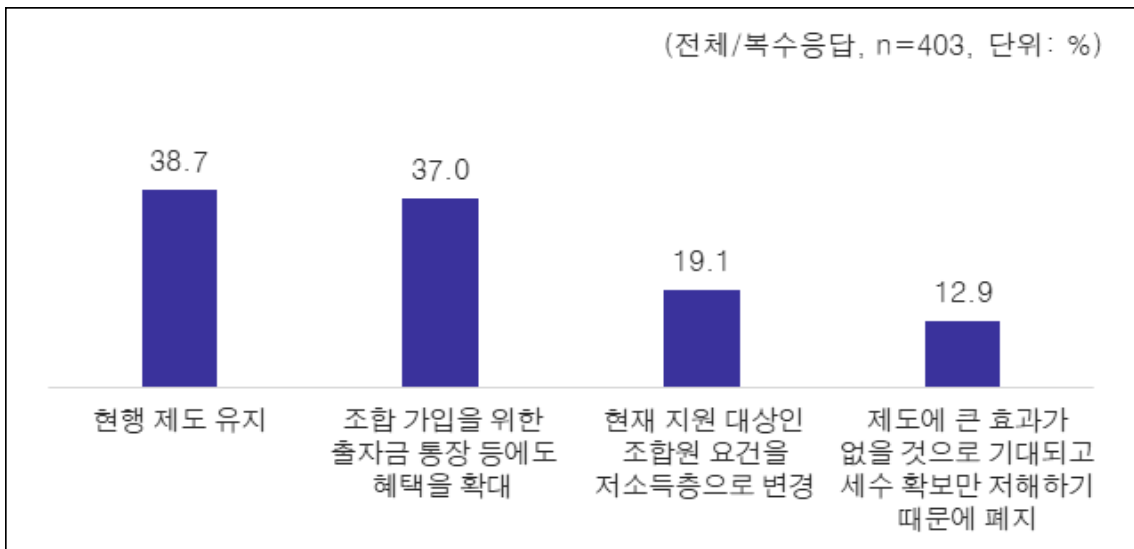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87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냄

□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현행 제도 유지’(38.7%),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37.0%)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혜택 유지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함
  -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유지/확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축소/폐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일수록 ‘현행 제도 유지’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V-15]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표 V-11>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응자 금액 한도 완화	제도 유지	저소득층으로 요건 변경	폐지	
전체		403	38.7	37.0	19.1	12.9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319	35.4	34.8	18.2	16.3	
	도움됨	84	51.2	45.2	22.6	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6.7	44.4	18.9	15.6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20.0	0.0
	신협	발급 가능	89	38.2	38.2	25.8	10.1
		발급 불가/모름	12	41.7	41.7	25.0	0.0

<표 V-11>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자 금액 한도 완화	제도 유지	저소득층으로 요건 변경	폐지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5.9	41.3	18.5	12.0
		발급 불가/모름	10	80.0	20.0	10.0	0.0
	수협	발급 가능	88	53.4	21.6	14.8	15.9
		발급 불가/모름	12	25.0	33.3	8.3	33.3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34.1	27.6	26.0	16.3
	4~6등급		116	43.1	37.9	24.1	8.6
	7~10등급		119	41.2	42.9	6.7	14.3
	모름		45	33.3	44.4	20.0	11.1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0.0	27.8	11.1	1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42.0	38.6	17.0	8.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41.7	34.0	19.4	13.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7.1	27.8	23.7	18.6
	10,000만원 이상		56	25.0	60.7	16.1	10.7

다. 인지세의 면제( § 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제11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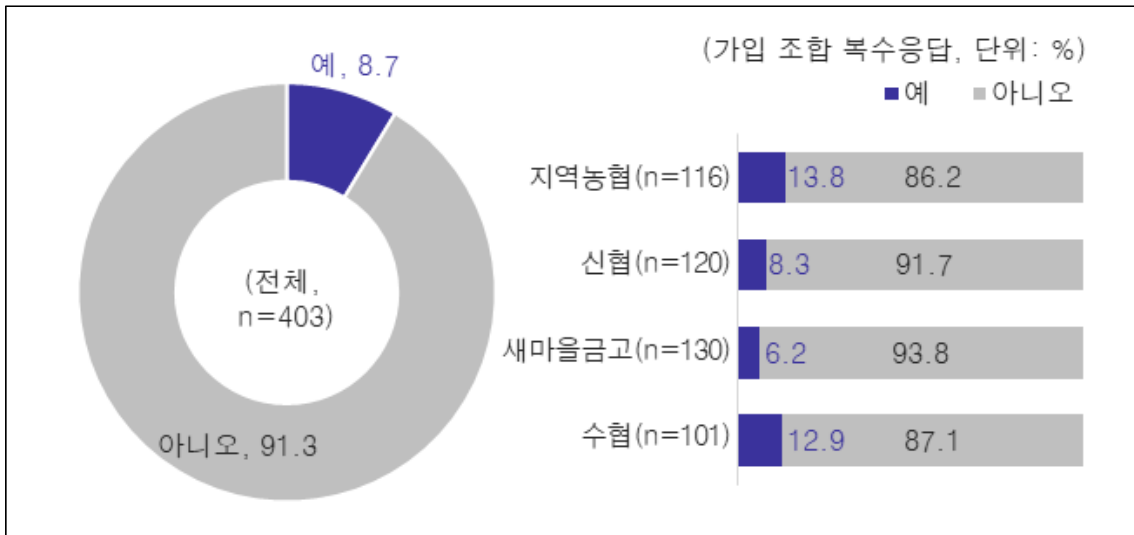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

- 공공목적을 가진 농민·어민·임업인 관련 사업 중 정부부처가 아닌 산하 기관이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시 인지세 면제혜택을 주는 제도임
- 제1항 제7호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제1항 제11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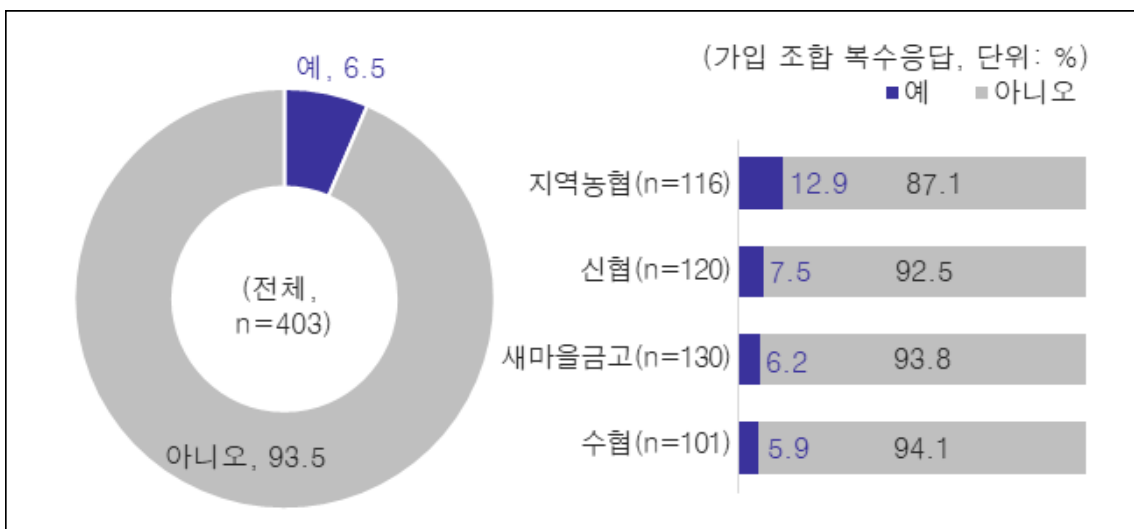
□ 제1항 제7호·제11호의 인지 여부

-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7%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제1항 제11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5%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만 회원인 응답자 중에서는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각각 1명씩 존재함)에서 가늠해볼 수 있음

[그림 V-16]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그림 V-17]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 제1항 제7호·제11호의 수혜 여부

- 지역농협 또는 수협 조합원(215명)을 대상으로 제1항 제7호·제11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 수준으로 파악됨
- 제1항 제7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29명), 20.7%가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제1항 제11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21명), 19.0%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종합소득이 늘어날수록 해당 제도의 수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12>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 수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5	3.3	96.7	
제1항 제7호 인지		29	20.7	79.3	
제1항 제11호 인지		21	19.0	81.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1	98.9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신협	발급 가능	6	16.7	83.3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5	0.0	100.0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88	5.7	94.3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53	0.0	100.0
	4~6등급		76	7.9	92.1
	7~10등급		56	1.8	98.2
	모름		30	0.0	1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8	0.0	100.0
	3,000만~5,000만원 미만		49	2.0	98.0
	5,000만~7,000만원 미만		77	2.6	97.4
	7,000만~10,000만원 미만		51	3.9	96.1
	10,000만원 이상		30	6.7	93.3

□ 제1항 제7호·제11호의 수혜 금액

- 제1항 제7호 또는 제11호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7명)은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에서 주로 혜택을 받은 것(6명)으로 나타남
  - 수혜 금액은 대부분 7만원이었으며, ‘농어촌정비사업’에서 15만원 수혜 경험이 1건 관측됨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재산권 증가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7만원 임을 고려하였을 때, 수혜자의 재산 증가분이 1억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표 V-13>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 수혜 금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7만원	15만원
제1항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	2	50.0	50.0
	농지은행사업	1	100.0	-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1	100.0	-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6	100.0	-
제1항 제11호	농지조성사업	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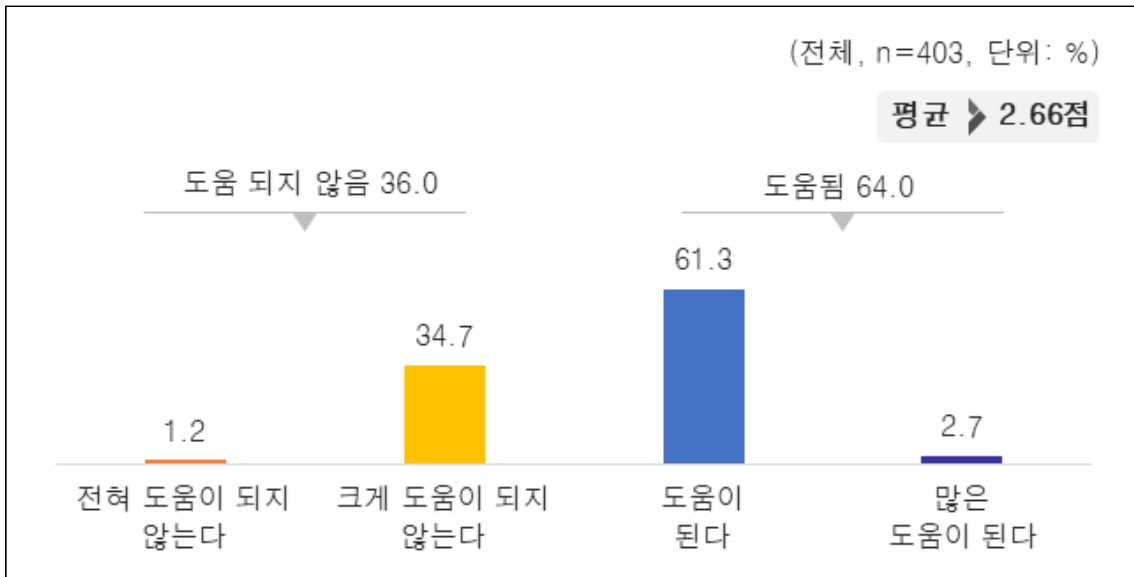
□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7호·제11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에 64.0%로 나타남<sup>26)</sup>
  -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66점으로 응답자들이 해당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음
- 제1항 제7호·제11호가 사업 참여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sup>27)</sup>
  -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71점으로 해당 제도의 사업 유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두 경우 모두 응답자의 신용이나 가구 소득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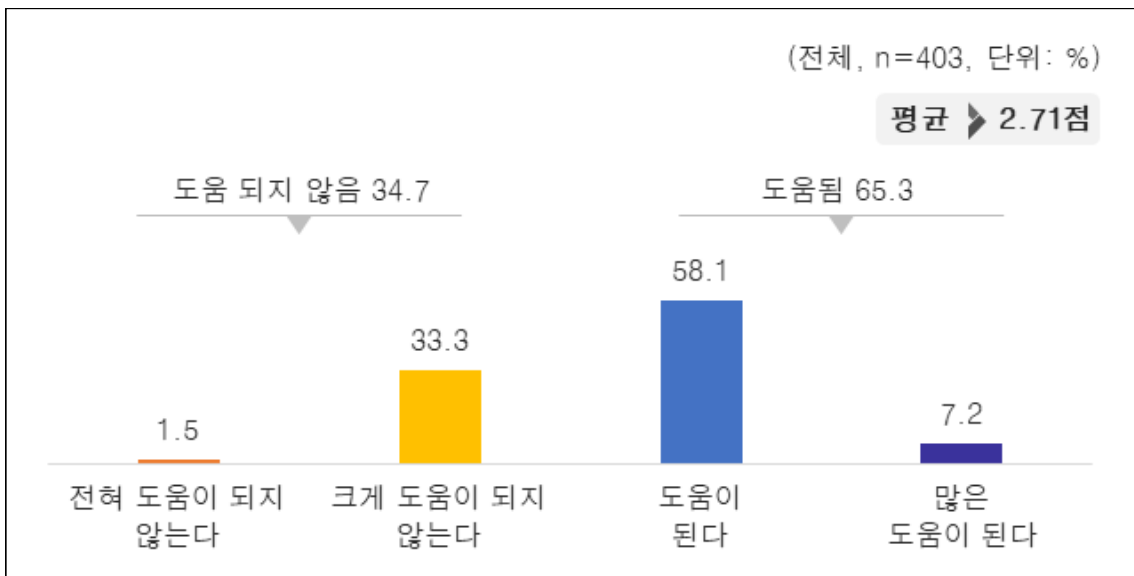
26) ‘많은 도움이 된다’(2.7%) + ‘도움이 된다’(61.3%)

27) ‘많은 도움이 된다’(7.2%) + ‘도움이 된다’(58.1%)

[그림 V-18]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



[그림 V-19]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제11호의 목적 사업 유도 효과



□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 정도에 대한 응답 이유

-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의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71.7%)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음<sup>28)</sup>

28) 해당 응답은 제1항 제7호·제11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145명을 대상으로

- 해당 결과는 참여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나, 가구 종합소득의 경우 클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됨
- 반면에 제1항 제7호·제11호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는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 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63.2%),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59.7%) 순으로 이유를 꼽았음<sup>29)</sup>
- 수협 가입자의 경우,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76.6%)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의 신용 수준이 낮아질수록 첫 번째 이유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가구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음

## 라. 인지세의 면제(§ 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9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 제1항 제7호 및 제1항 제11호와 유사하게 공공목적 사업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혜택 제도임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와 관련된 인지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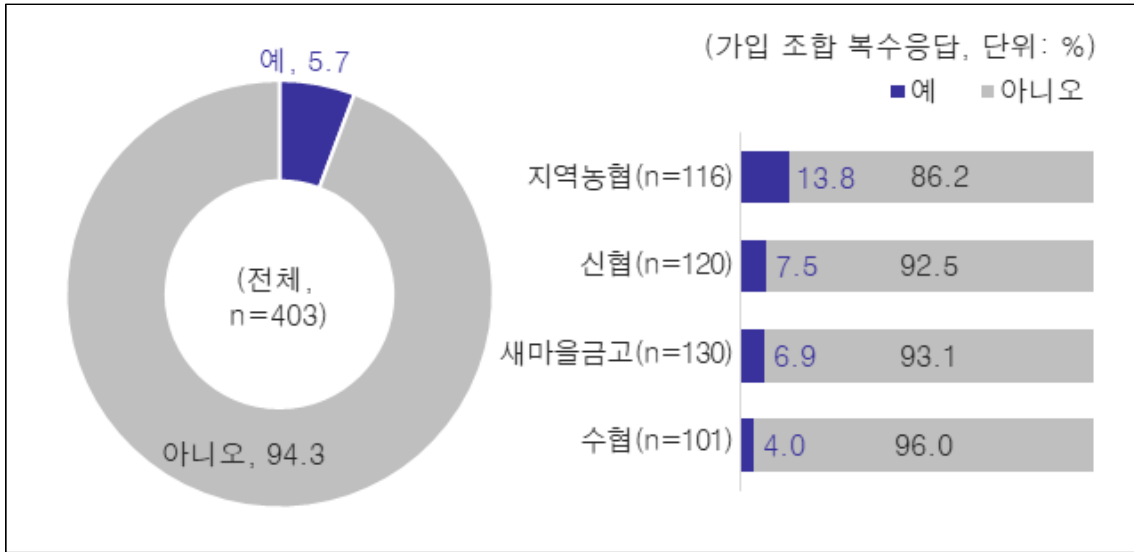
### □ 제1항 제9호의 인지 여부

-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7% 수준으로 확인됨
  -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 대상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역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해당 제도를 수혜받을 가능성이 일부 있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만 회원인 응답자 중에서는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각각 2명씩 존재함)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음

---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145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29) 해당 응답은 제1항 제7호·제11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258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냄

[그림 V-20]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 제1항 제9호의 수혜 여부

- 지역농협 조합원(116명)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7%(2명)만이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신용 수준과 가구의 종합소득과 연계해서 확인하기에는 수혜 경험자의 수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해석이 불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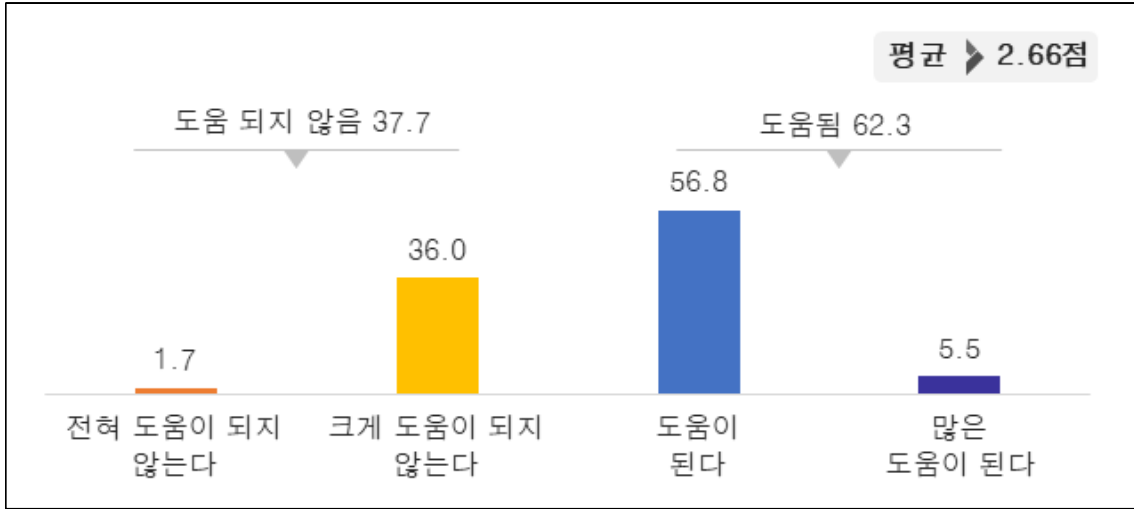
□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9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2.3% 수준으로 나타남<sup>30)</sup>
-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66점으로 응답자들이 느끼기에 해당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음
- 다른 상호협동조합의 결과와 다르게 수협 조합원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음
- 두 경우 모두 응답자의 신용이나 가구 소득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0) '많은 도움이 된다'(5.5%) + '도움이 된다'(56.8%)

[그림 V-21]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

(전체, n=430, 단위: %)



□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 정도에 대한 응답 이유

-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한 그룹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에 드는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63.2%)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음<sup>31)</sup>
  - 해당 결과는 응답자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서는 특정 패턴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가구 종합소득의 경우 ‘10,00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응답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제1항 제9호의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한 그룹에서는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 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64.9%)로,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63.7%)로 유사한 수준으로 이유를 꼽았음<sup>32)</sup>
  - 응답자의 신용 수준이 낮은 그룹(4~10등급)과 가구 종합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도 세후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다 많이 경제적 효과의 이유로 꼽았음

31) 해당 응답은 제1항 제9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152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32) 해당 응답은 제1항 제9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을 때 251명 중 해당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냄

□ 제1항 제9호의 개선 방안

- 제1항 제9호의 개선 방안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가 49.4%로 가장 높았음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회원은 현행 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약 23% 정도 선택하였으나, 수협의 조합원 중 5.0%만 현행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선택하고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평균보다 높은 50.5%의 응답을 보임
- 응답자의 신용이 높을수록 가구 종합소득이 높을수록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 추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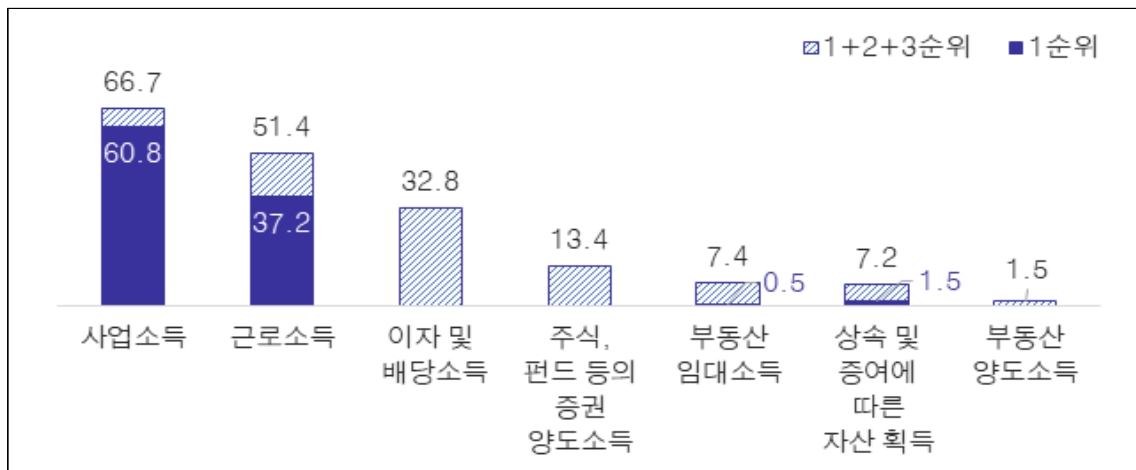
마. 인지세의 면제(§ 조특법 제116조)의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 가구 내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전체 응답자 중 60.8%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37.2%로 높은 기여도를 보임
- 지역농협과 수협과 같이 직업적 제한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사업소득 기여도가 높은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직업적 요건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기여도가 높았음
- 신용도나 가구 종합소득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음

[그림 V-22]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전체, n=430, 단위: %)



<표 V-14>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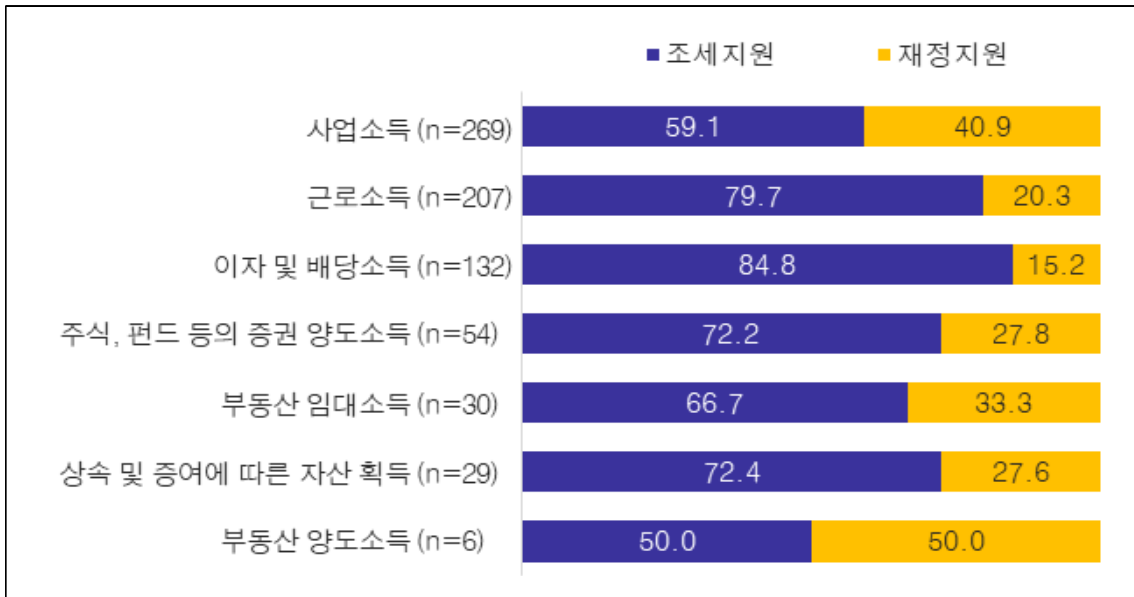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60.8	37.2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76.7	21.6	
	신협	120	53.3	44.2	
	새마을금고	130	49.2	50.0	
	수협	101	81.2	14.9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78.9	21.1
		발급 불가/모름	10	60.0	30.0
	신협	발급 가능	89	43.8	53.9
		발급 불가/모름	12	66.7	2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7.0	63.0
		발급 불가/모름	10	50.0	50.0
	수협	발급 가능	88	86.4	11.4
		발급 불가/모름	12	50.0	33.3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56.9	40.7
	4~6등급		116	74.1	25.0
	7~10등급		119	64.7	32.8
	모름		45	26.7	71.1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66.7	2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55.7	42.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4.6	34.0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61.9	38.1
	10,000만원 이상		56	55.4	41.1

□ 가구 소득 종류별 적합 지원 방식

- 가구 소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를 차지하는 3가지 소득에 대해 적합한 지원 방식을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종류에서 ‘조세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V-23] 소득별 적합 지원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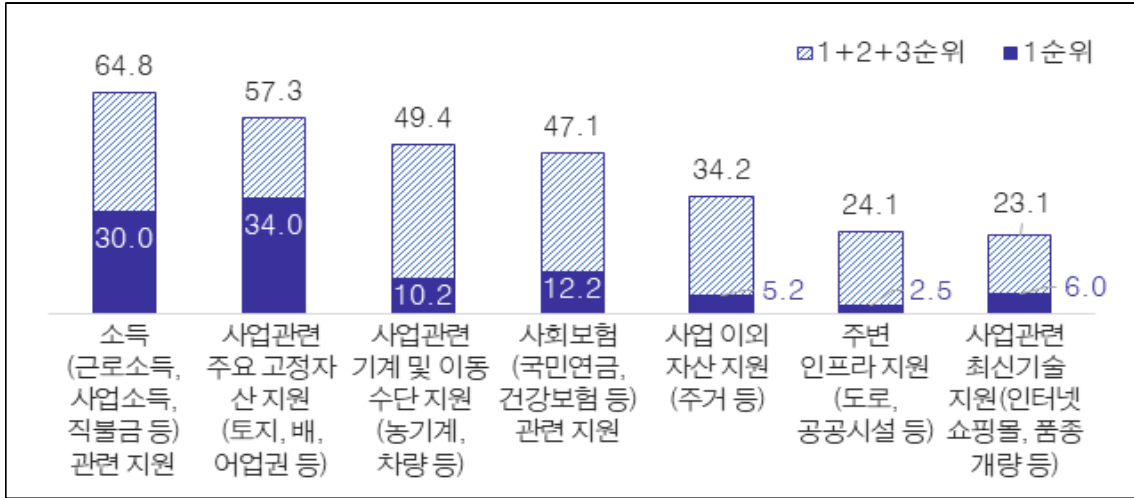


□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 본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 목적인 농민·어민·임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문함
-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34.0%), ‘소득 관련 지원’(30.0%), ‘사회보험 관련 지원’(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민·어민·임업인의 주된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소득 관련 지원’은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음

[그림 V-24]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전체, n=430, 단위: %)



<표 V-15>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 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소득 관련 지원	
전체		403	57.3	64.8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60.3	70.7	
	신협	120	50.8	71.7	
	새마을금고	130	53.1	68.5	
	수협	101	73.3	51.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56.7	68.9
		발급 불가/모름	10	60.0	70.0
	신협	발급 가능	89	47.2	68.5
		발급 불가/모름	12	66.7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46.7	67.4
		발급 불가/모름	10	80.0	60.0
	수협	발급 가능	88	70.5	52.3
		발급 불가/모름	12	91.7	41.7
신용점수 (추정 포함)	1~3등급	123	54.5	61.0	
	4~6등급	116	60.3	61.2	
	7~10등급	119	53.8	75.6	
	모름	45	66.7	55.6	

<표 V-15>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소득 관련 지원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83.3	6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48.9	70.5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6.7	60.4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57.7	56.7
	10,000만원 이상	56	37.5	82.1

□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방식

- 지원 사업에 따른 선호하는 지원 방식을 살펴본 결과, 소득 관련 지원, 사업 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 사회보험 관련 지원 사업에서는 ‘세액 감면’ 방식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높았음
  -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 지원’ 방식의 선호도가 높음

<표 V-16> 소득별 선호 지원 방식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 관련 지원	261	세액 감면 (68.2)	비과세 혜택 (23.0)	보조금 지원 (8.0)	과세 이연 (0.8)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	231	세액 감면 (42.4)	보조금 지원 (23.4)	대출 지원 (20.8)	비과세 혜택 (13.4)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199	보조금 지원 (38.2)	세액 감면 (35.2)	비과세 혜택 (13.6)	대출 지원 (13.1)
사회보험 관련 지원	190	세액 감면 (46.8)	보조금 지원 (26.8)	비과세 혜택 (24.7)	과세 이연 (1.6)
사업 이외 자산 지원	138	대출 지원 (40.6)	세액 감면 (26.1)	보조금 지원 (20.3)	비과세 혜택 (13.0)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93	보조금 지원 (51.6)	대출 지원 (31.2)	교육/연구 지원 (9.7)	임대/장소 지원 (7.5)

### 3. 회귀분석 결과

-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분석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응답자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함
    - $$Y_i = \alpha + \beta_1 Gender_i + \beta_2 Age_i + \beta_3 School_i + \beta_4 Tenure_i + \beta_5 Married_i + \beta_6 nFamily_i + \beta_7 Asset_i + \beta_8 CreditRate_i + \gamma' Job_i + \epsilon_i$$
    - $Y_i$ : 경제적 효과의 정도
    - $Gender_i$ : 여자면 1, 남자면 0인 더미변수
    - $Age_i$ : 나이
    - $School_i$ : 초대졸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Tenure_i$ : 재직기간
    - $Married_i$ : 결혼한 상태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nFamily_i$ : 가족 구성원수
    - $Asset_i$ : 순자산
    - $CreditRate_i$ : 신용등급 1(높음) ~ 10(낮음)
    - $Job_i$ : 직업 고정 효과
    - $\epsilon_i$ : 잔차항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응답자로 제한되어 총 403명 중 245명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함
  - 위의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하고자 함
    -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의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alpha$ 의 값을 추정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추정계수  $\beta$ 을 확인해봄으로써 특정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군이 보다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 <표 V-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질적으로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 제1항 제5호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점 만점일 때 2.812로 ‘도움이 된다’에 보다 가깝게 추정되었지만, 여러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2.416으로 추정되어 다소 효과의 수준이 낮게 추정되었음
- 제1항 제6호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이 통제된 경우 1.326으로 추정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가깝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제 이전의 2.078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임
  - 다만 통제 이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매우 가까운 수치를 보여 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제1항 제7호와 제11호의 경우에는 응답자 특성이 통제된 이후에 2.387로 추정되었으며 특성 통제 이전인 2.702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임
-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하기 이전에는 2.694로 추정되었으나, 통제 이후에는 2.237로 경제적 효과의 수준이 다소 감소한 값으로 추정되었음

<표 V-17> 개별 호에 대한 경제적 효과(회귀분석, Robust SE)

구분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alpha$	2.416***	1.326***	2.387***	2.237***
<i>Gender</i>	-0.007	-0.172*	-0.005	-0.124
<i>Age</i>	-0.006	0.000	-0.003	0.002
<i>School</i>	-0.157	-0.191*	-0.069	-0.175*
<i>Tenure</i>	0.004	0.001	0.007*	0.002
<i>Married</i>	0.154	0.025	0.053	0.022
<i>nFamily</i>	-0.006	0.100*	0.029	0.037
<i>Asset</i>	-0.001	-0.001**	-0.001	-0.001
<i>CreditRate</i>	-0.022*	-0.010	-0.024**	-0.035***
Job FE	Y	Y	Y	Y
R-squared	0.108	0.122	0.082	0.133
Obs.	245	245	245	245
$\bar{Y}_i$	2.812	2.078	2.702	2.694

주: \*\*\* P<0.01, \*\* p<0.0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4. 소결

- 설문조사와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대체로 설문응답자는 본 조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제1호 제6호의 경우에는 혜택받는 금액이 명목적으로도 무시할 수준(건별 100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탁과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 제5호와 제1항 제6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함
  -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의 수준이 큰 편이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표 V-18>)
    - 특히 제1항 제5호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용자 금액이 1억원을 초과(자산 구입을 위한 대출)하거나 5천만원 미만인 경우(생활 자금 융통을 위한 대출)에 속하기 때문임
  - 응답자들의 주된 자산 형성 경로를 고려할 때, 본 제도가 인지세 면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래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목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효과성 분석이 설문조사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이를 염두할 필요는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형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

<표 V-18>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설문조사)

대상	제5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9호
경제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설문자	41.7%	65.2%	71.7%	63.2%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설문자	75.3%	48.3%	63.2%	64.9%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론

- 본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음
- 동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 등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 보전 수단을 위해 특정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임
  - 수혜대상자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엽연초생산협동조합·산림조합·어촌계 등의 조합과 조합원 등임
  - 수혜자들에게 ① 소비대차증서(융자한도: 1억원), ② 예금·적금증서·통장, ③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④ 농촌 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등의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혜택 제공
- 주요국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고, 기존 문서들도 축소되는 추세이며,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 다수 존재
  - 영국은 2003년 Finance Act가 시행된 이후 토지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지세가 폐지되었음
  - 호주의 경우 주별로 인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존재
  - 싱가포르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자산의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과세대상 문서가 존재하지만, 일부 문서의 경우 납부가 면제됨
  - 홍콩에도 인지세가 존재하지만, 면제 문서 존재
  - 금전소비대차, 계속·반복적 거래, 예금 증서나 통장 등에 인지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만 해당(윤순상, 2023)
  -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범위에 대해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인지세 면제 특례의 경우 간접적으로 인지세 과세 범위를 줄여주므로, 국제적인 추세가 해당 특례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

□ 특례의 정책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

- 농어민의 소득 향상, 서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적 생활 도모, 농어촌 발전 등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므로 정부가 이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적절
  - 농어민에 대한 융자사업은 농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들이 금융취약계층과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조세지출은 타당
  -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및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역할
  - 인지세 면제 혜택을 통해 1금융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기관의 신규 고객 유인 및 기존고객충성도 유도로 조합원들의 저축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

□ 동 제도의 구조적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

- (지원대상)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 등과 신용수준이 낮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적절
  - 2021년 기준, 농가의 평균소득은 4,776만원, 어가의 평균소득은 5,23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484만원 대비 63%(농가) 및 70%(어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신용수준이 낮음
-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낮은 수혜대상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지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

- 소비대차증서에는 인지세 면제 대출한도가 현행 1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큰 규모의 대출이나 예·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고액 자산 농어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 인지세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 방식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정산 절차 생략으로 행정효율성 제고에 도움
  - (지원수준) 1인당 수혜금액과 특례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현 지원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 추정 세수 규모가 작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와 회귀분석 결과, 대체로 설문응답자는 본 조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거래 금액 대비 인지세 면제의 수준이 큰 편이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특히 제1항 제5호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용자 금액이 1억원을 초과(자산 구입을 위한 대출)하거나 5천만원 미만인 경우(생활 자금 유통을 위한 대출)에 속하기 때문임
  - 응답자들의 주된 자산 형성 경로를 고려할 때, 본 제도가 인지세 면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래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목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효과성 분석이 설문조사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이를 염두할 필요는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형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음

## 2. 정책 제언

-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현행 제도는 최초 목적에 맞추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농어민의 생산비 및 가계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의 타당성, 효과

성에 대한 분석 결과 동 제도의 효과가 영세한 농어민들에게서 발견되고,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가 최초 목적에 맞추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국가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대상, 가입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농어업에 대한 특수성과 관련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 후, 차후에 목적 달성 시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

#### (1안) 신탁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 중 농어민으로 본 특례의 수혜대상을 한정

- 본 특례는 최초 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농어민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수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오랜 기간 농어민뿐 아니라 신탁 및 새마을금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1975년 1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6호 및 7호에 최초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조합원에게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신탁, 새마을 금고 조합원의 경우 농어민이 아님에도 본 특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2022년 기준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예금·적금증서·통장 등을 통한 인지세 감면 금액은 새마을금고 26억원, 신탁중앙회 2022년 기준 20억 7,400여 만원으로 전체 인지세 면제 감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이는 동 기간 인지세 면제 조세지출규모(119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
  - 수혜자 중 상당수는 농어민이 아님에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음

-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특례의 수혜 대상을 농어민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함
  - 현행 제도의 취지가 영세한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고려할 때, 신흥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 중 농어민에게만 수혜대상을 한정
  - 구체적으로 대출 과정에서 농지원부 혹은 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농어민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농업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경증명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안) 총 급여소득이나 종합소득 또는 신용수준을 기준으로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한**

- 행정 효율성을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통해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부 고소득 또는 고자산가가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 동 특례제도는 농어촌 또는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의 안정적 소득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할 때 본래 의도 하였던 저소득 농어민 이외에 고소득 또는 고자산가 농어민 등도 혜택을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소득(근로, 사업, 연금 및 종합소득 총액 기준) 또는 고자산가 농어민이 8,000만원의 대출을 농협 또는 수협을 통해 받는다면 70,000원의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는 신용등급 1등급의 자산가가 새마을금고나 신흥에 예금을 예치할 경우 100원의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본 특례의 수혜대상을 종합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함
  - 농어민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 조건과 유사한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소득자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음
  -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외의 경우 수혜대상이 농어민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미소금융 신청 기준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등으로 수혜대상을 축소 가능

**(3안) 현행 특례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일몰 연장 후 농어민 및 농어업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 수혜대상 축소를 위해 인지세 면제 혜택에 대해 지나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세저항 및 관련 행정비용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목표인 농업발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정책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어렵고, 수혜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음
  - 소득·재산 수준을 이용한 스크리닝은 오히려 조세저항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농림어업 등 1차산업에 대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농어민 전체, 농지 거래 관련 지원 타당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혜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그 편익보다 더 클 수도 있음
  
- 특히, 청년조합원에게 인지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특정 연령대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본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청년조합원(15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인지세 면제 한도를 늘려줄 경우 청년층의 귀농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청년 농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 존재
  - 다만, 청년 농업인의 경우 이미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영주가 15~39세인 경우의 비중은 농가의 경우

2021년 약 0.8%, 어가의 경우 2020년 약 3.8%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음

- 또한 1억원 이상 대출에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줄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농·어가의 부채규모는 농가가 약 3,652만원, 어가가 약 6,44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영세한 농어민 취지라는 특례의 최초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
- 특정 연령대에만 혜택을 줄 경우 고소득 청년에게도 혜택이 가서 최초 제도 목적과도 어긋날 가능성이 존재

□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정비사업 수혜 범위를 사업 규모 등으로 축소할 경우 본 사업의 사회적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정책사업 인지세 면제 혜택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오히려 세액이 큰 중요한 사업(예를 들어 대규모 홍수 방지를 위한 큰 규모의 토목공사)이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미 농지은행 사업 등을 할 때 소득요건 등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본 특례는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음

□ 본 제도를 일몰 연장한 이후 농어촌 고령화율, 도시가구 대비 농어업 종사 가구 평균 소득 등 지표를 면밀하게 관찰 후 향후 농어민 및 농어업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 제안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5.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2013~2021.
- 김지석·안태현, 「농지은행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2021.
- 김정명·김치을·박하연·이경현, 『신흥국의 세정연구: 홍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2021.
- 박명재, 『인지세 및 수입인지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박명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4.
- 윤광재, 「수입인지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2008.
- 윤상용, 「서민금융기관의 지점수 감소가 지역의 금융포용과 기관의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제54권 제3호, 지역개발연구, 2022.
- 윤순상, 「인지세의 현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 임소영·김영준·하인혜,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 정다운·박하얀·서희진·변정윤, 『신흥국의 세정연구 - 싱가포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2020.
- 통계청,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
- \_\_\_\_\_,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 <웹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 일본 인지세법 사이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42AC0000000023_20230614_505AC0000000053&keyword=%E5%8D%B0%E7%B4%99%E7%A8%8E)

홍콩 인지세법 사이트,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

PWC Worldwide Tax Summaries

Worldwide Tax Summaries Online([pwc.com](http://pwc.com))



# 부 록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설문조사**

2023. 05

**Ipsos**



1부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농어민·서민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계층으로, 국가는 당초 ‘조세특례법(이하 조특법)’으로 이들의 인지세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해왔음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농어민·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통장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023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인지세의 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평가의 일부로서 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동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그동안의 운영성과 평가,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

## 2. 조사 방법

### 1) 조사 설계

〈부록 표 1-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지역농협(이하 농협으로 표기),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가입자
조사 모집단	만 19세 이상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가입자로, 조합원 및 회원에 한함
조사 지역	각 금융기관별 조합원/회원 규모를 고려하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10개 지점, 수협의 경우 3개 지점 선정
목표 표본	N=400명(각 금융기관별 100명)
표본 추출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조합원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기관별 100명 목표 하에 편의적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진행
조사 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의 조사원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ing)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2023년 4월 19일(수)~5월 10일(수)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li> <li>• 실사 및 자료 처리: 입소스 주식회사(Ipsos)</li> </ul>

### 2) 표본 설계

- 조사 모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합원/회원의 경우 권역별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수협의 조합원은 어업 경영 특성상 권역 분포에 차이가 두드러져 조사 지점을 따로 운영함

〈부록 표 1-2〉 조사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금융기관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전체	17,741,691	2,076,055	8,742,226	6,769,781	153,629
서울/경기/인천	2,199,831	333,962	3,464,320	2,087,615	12,202
대전/충청/세종	1,211,964	403,875	1,071,038	1,235,751	23,243
광주/전라	1,008,274	495,539	869,190	1,370,514	61,710
대구/경북	679,851	354,587	1,239,825	699,122	7,350
부산/울산/경남	708,968	280,235	1,693,133	880,522	33,986
강원	605,040	125,106	252,151	254,063	4,041
제주	448,403	82,751	152,569	242,194	11,097

- 권역별 도시 규모별 현황을 참고하고 기관 수 등 조사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함

〈부록 표 1-3〉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사 지점 배분(10개)

(단위: 명, 개)

구분	도시 규모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사 모집단 현황			조사 지점 배분(10개)		
	전체	시/구	군	전체	시/구	군
전체	17,588,062	15,416,673	2,171,389	10	9	1
서울/경기/인천	5,885,897	5,794,320	91,577	5	4	1
대전/충청/세종	2,710,664	2,164,089	546,576	1	1	0
광주/전라	2,735,243	2,045,484	689,760	1	1	0
대구/경북	2,293,534	1,901,661	391,874	1	1	0
부산/울산/경남	2,853,890	2,591,468	262,423	2	2	0
강원	631,320	442,139	189,181	0	0	0
제주	477,514	477,514	0	0	0	0

〈부록 표 1-4〉 수협 조사 지점 배분(3개)

(단위: 명, 개)

구분	도시 규모별 수협 조사 모집단 현황			조사 지점 배분(3개)		
	전체	시/구	군	전체	시/구	군
전체	153,629	90,395	63,234	3	2	1
서울/경기/인천	12,202	9,699	2,503	0	0	0
대전/충청/세종	23,243	11,285	11,958	1	0	1
광주/전라	61,710	26,544	35,166	1	1	0
대구/경북	7,350	3,796	3,554	0	0	0
부산/울산/경남	33,986	25,359	8,627	1	1	0
강원	4,041	2,615	1,426	0	0	0
제주	11,097	11,097	0	0	0	0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조합원/회원 각 100명씩, 총 300명을 목표로 조사 진행할 때 각 지점당 아래의 금융기관, 성별, 연령대 비율을 유지하며 운영함

〈부록 표 1-5〉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목표 표본 수

(단위: 개, 명)

구분	조사 지점	목표 표본			
		전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	10	300	100	100	100
서울/경기/인천	5	150	50	50	50
대전/충청/세종	1	30	10	10	10
광주/전라	1	30	10	10	10
대구/경북	1	30	10	10	10
부산/울산/경남	2	60	20	20	20
강원	0	0	0	0	0
제주	0	0	0	0	0

1개 지점당 30명 조사	금융기관	농협 10명	신협 10명	새마을금고 10명
	성별	남 15명	여 15명	-
	연령대	30대 이하 6명	40-50대 12명	60대 이상 12명

- 수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100명을 목표로 조사 진행할 때 각 지점당 아래의 성별, 연령대 비율을 유지하며 운영함

〈부록 표 1-6〉 수협 목표 표본 수

(단위: 개, 명)

구분	조사 지점	목표 표본		
		수협		
전체	3	100		
서울/경기/인천	0	0		
대전/충청/세종	1	33		
광주/전라	1	33		
대구/경북	0	0		
부산/울산/경남	1	33		
강원	0	0		
제주	0	0		

1개 지점당 33명 조사	금융기관	수협 33명	-	-
	성별	남 16~17명	여 16~17명	-
	연령대	30대 이하 7명	40-50대 13명	60대 이상 13명

### 3) 세부 조사 지점 및 표본 접촉

- 1개의 지점에서 30명(수협 33명) 내외의 표본을 조사하며, 표본의 특성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각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며 조사 진행하나, 지점별 쿼터보다 목표 표본(전체)이 더 우선 사항임
- 선정된 지점 내, 금융기관 인근에서 조사 대상을 인터셉트(Intercept)하여 조사 진행
- 선정된 지점 내,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원 파견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인접 행정구역에서 조사 진행

〈부록 표 1-7〉 조사 지점: 세부

(단위: 명)

No.	구분	조사 지점			조사 모집단			
		시도	시군구	도시규모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1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기	화성시	시/구	25,863	92,982	50,980	-
2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기	부천시	시/구	3,501	145,909	35,772	-
3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서울	송파구	시/구	967	103,717	60,927	-
4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인천	부평구	시/구	1,051	87,363	80,263	-
5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기	양평군	군	18,835	8,594	10,189	-
6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충남	천안시	시/구	19,243	114,188	85,320	-
7	농협/새마을금고/신협	전북	전주시	시/구	12,710	142,182	248,867	-
8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북	포항시	시/구	20,846	132,731	58,383	-
9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남	창원시	시/구	25,227	114,266	180,044	-
10	농협/새마을금고/신협	경남	진주시	시/구	22,457	75,466	41,466	-
11	수협	충남	태안군	군	-	-	-	53,591
12	수협	전남	여수시	시/구	-	-	-	12,506
13	수협	경남	통영시	시/구	-	-	-	7,250

### 3. 조사 내용

〈부록 표 1-8〉 조사 항목

단계	내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거주지역</li> <li>-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조합)</li> </ul>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혜택 경험/(경험)금액/효과</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혜택, 용자 1억 기준 인지 금액/효과</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혜택, 실 혜택에 대한 효과 및 이유</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li> </ul>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 혜택 경험/(경험)금액/효과</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 혜택, 인지 금액/효과</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 혜택, 실 혜택에 대한 효과 및 이유</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li> </ul>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7호, 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7호, 제11호 인지 여부</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 경험/(경험)금액/효과</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이 각종 사업 참여 유도에 주는 영향 정도/사유</li> </ul>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9호 혜택 경험/(경험)금액/효과/이유</li> <li>-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li> </ul>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축적에 기여한 가구 소득(1~8순위)</li> <li>- 자산 축적에 기여한 가구 소득(1~3순위)별 적절한 지원 형식</li> <li>- 농민, 어민, 임업인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방식</li> <li>- 인지세의 면제 관련 제언 사항</li> </ul>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학력, 직업, 직업, 경제활동기간, 혼인상태, 가구 구성원 수</li> <li>-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여부, 신용점수</li> <li>- 가구 소득 및 자산</li> </ul>

#### 4. 응답자 특성

- 표본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의 조합원(회원) 총 403명으로 구성됨  
 조합별 가입자를 살펴보면 주거래 기준 지역농협 100명, 신협 101명, 새마을금고 102명, 수협 100명으로 나타났으며, 복수 개의 조합에 동시 가입한 경우는 주거래 조합 중 지역농협 13명, 신협 16명, 새마을금고 11명, 수협 7명이 있었음

〈부록 표 1-9〉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3)	100.0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8.8	
	신협	(120)	29.8	
	새마을금고	(130)	32.3	
	수협	(101)	25.1	
가입 조합 (주거래)	지역농협	(100)	24.8	
	신협	(101)	25.1	
	새마을금고	(102)	25.3	
	수협	(100)	24.8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7.5
		준조합원	(5)	1.2
	신협	지역	(107)	26.6
		직장	(14)	3.5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0.5
		직장	(7)	1.7
	수협	조합원	(100)	24.8
		준조합원	(1)	0.2
복수 가입 여부	복수 가입 없음	(355)	88.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1.9	
성	남자	(203)	50.4	
	여자	(200)	49.6	
연령	19~39세	(84)	20.8	
	40~59세	(158)	39.2	
	60세 이상	(161)	40.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7.5	
	대전/충청	(63)	15.6	
	광주/전라	(65)	16.1	
	대구/경북	(30)	7.4	
	부산/울산/경남	(94)	23.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6.7	
	고등학교 졸업	(198)	49.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0.1	
	대학교(4년제) 졸업	(97)	24.1	

〈부록 표 1-9〉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3)	100.0
직업	관리자	(5)	1.2
	사무 종사자	(49)	12.2
	서비스 종사자	(57)	14.1
	판매 종사자	(128)	31.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2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4.5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7
	단순노무 종사자	(3)	0.7
	기타	(28)	6.9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19.9
	10~20년 미만	(104)	25.8
	20~30년 미만	(89)	22.1
	30~40년 미만	(89)	22.1
	40년 이상	(41)	10.2
혼인상태	기혼	(367)	91.1
	미혼	(32)	7.9
	기타	(4)	1.0
가구원수	1인	(21)	5.2
	2인	(160)	39.7
	3인	(125)	31.0
	4인 이상	(97)	24.1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발급 가능	(359)	89.1
	발급 불가능	(13)	3.2
	모름	(31)	7.7
신용점수 (환산등급 /인지)	1~3등급	(82)	55.8
	4~6등급	(46)	31.3
	7~10등급	(19)	12.9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30.5
	4~6등급	(116)	28.8
	7~10등급	(119)	29.5
	모름	(45)	11.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4.5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1.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35.7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4.1
	10,000만원 이상	(56)	13.9



2부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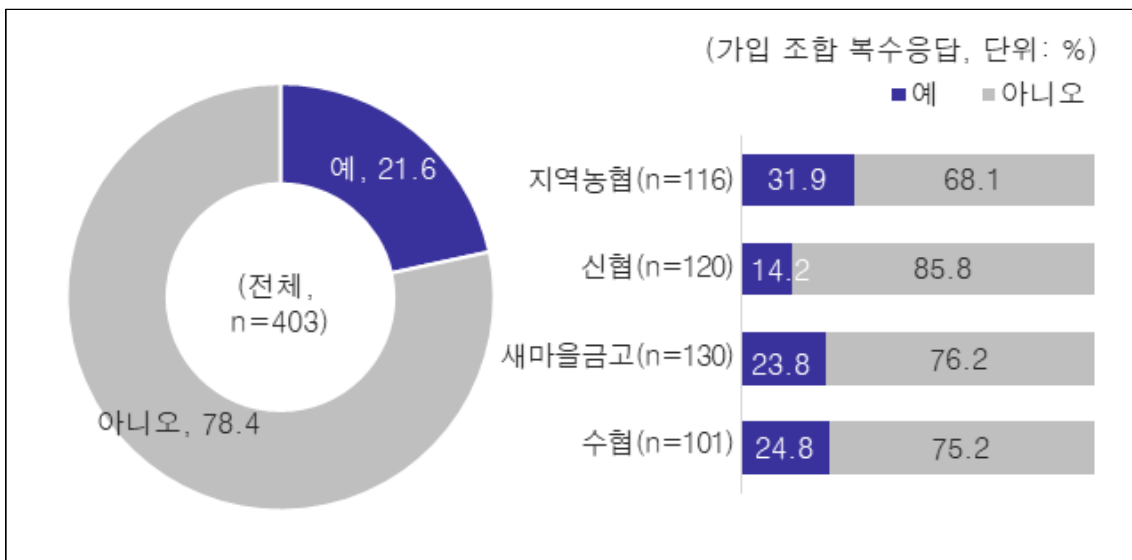
###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업연초생산협동조합(산립조합)의 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1.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5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1.6%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인지 수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협(24.8%), 새마을금고(23.8%) 순으로 높았음

[부록 그림 2-1]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부록 표 2-1〉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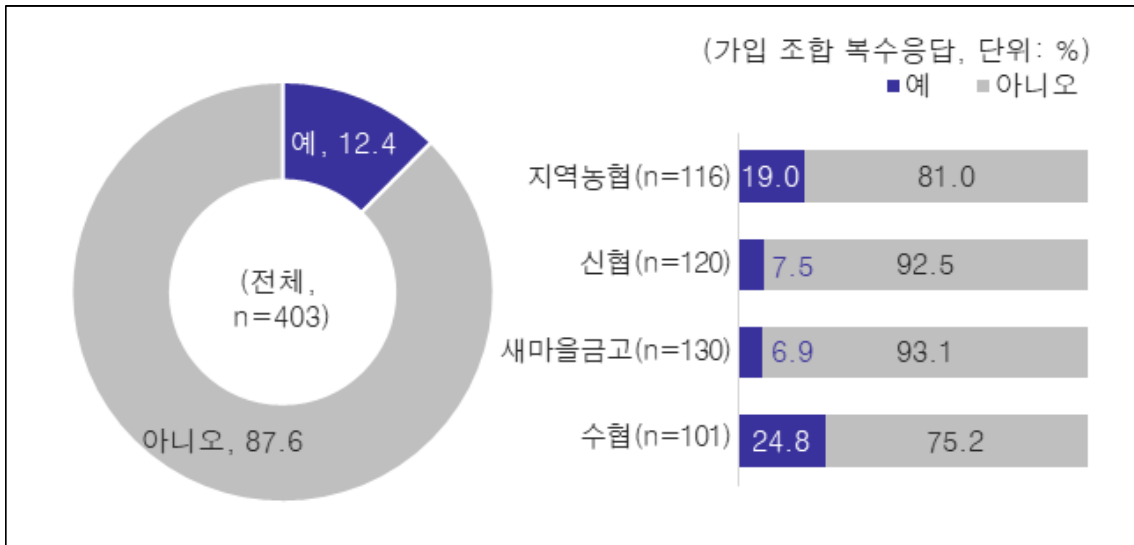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21.6	78.4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31.9	68.1	
	신협	(120)	14.2	85.8	
	새마을금고	(130)	23.8	76.2	
	수협	(101)	24.8	75.2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30.6	69.4
		준조합원	(5)	60.0	40.0
	신협	지역	(107)	15.0	85.0
		직장	(14)	7.1	92.9
	새마을 금고	지역	(123)	25.2	74.8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25.0	75.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9.7	80.3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35.4	64.6	
성	남자	(203)	28.1	71.9	
	여자	(200)	15.0	85.0	
연령	19~39세	(84)	16.7	83.3	
	40~59세	(158)	22.2	77.8	
	60세 이상	(161)	23.6	76.4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11.9	88.1	
	대전/충청	(63)	11.1	88.9	
	광주/전라	(65)	23.1	76.9	
	대구/경북	(30)	36.7	63.3	
	부산/울산/경남	(94)	38.3	61.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8.5	81.5	
	고등학교 졸업	(198)	19.2	80.8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3.5	76.5	
	대학교(4년제) 졸업	(97)	25.8	74.2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8.9	71.1
		발급 불가/모름	(10)	30.0	70.0
	신협	발급 가능	(89)	14.6	85.4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0.7	79.3
		발급 불가/모름	(10)	10.0	90.0
	수협	발급 가능	(88)	25.0	75.0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23.6	76.4	
	4~6등급	(116)	25.0	75.0	
	7~10등급	(119)	21.0	79.0	
	모름	(45)	8.9	91.1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88.9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8.2	81.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2.2	77.8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9.6	80.4	
	10,000만원 이상	(56)	32.1	67.9	

## 2.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 1)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 전체 응답자의 12.4%가 제1항 제5호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수협 가입자에서 수혜 비율 2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농협(19.0%) 등의 순임

[부록 그림 2-2]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87), 48.3%가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2〉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	아니오 (%)
전체	(403)	12.4	87.6
제1항 제5호 인지	(87)	48.3	51.7

〈부록 표 2-3〉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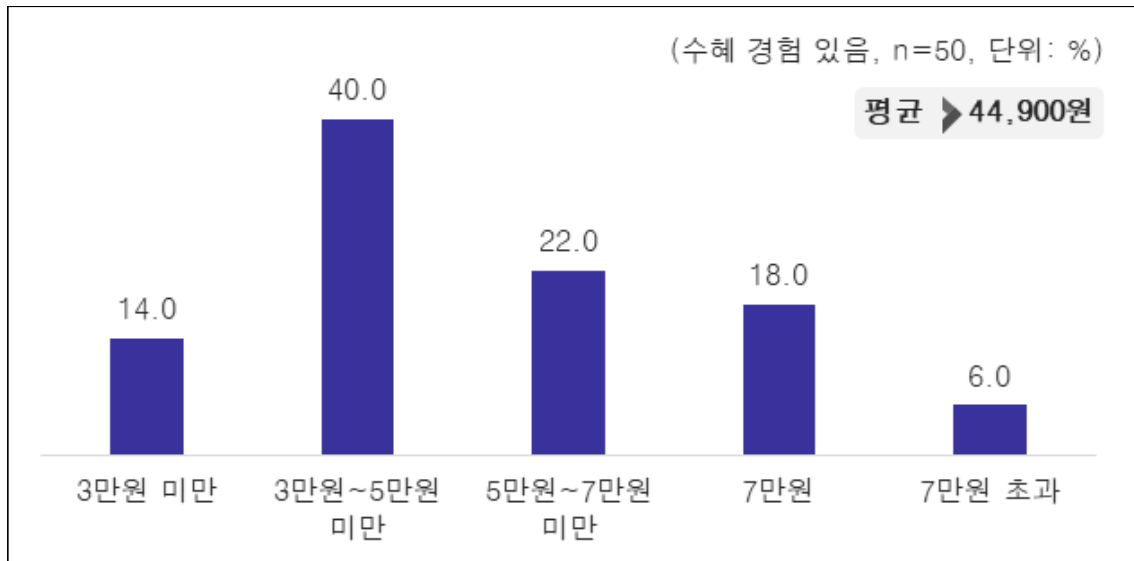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12.4	87.6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9.0	81.0	
	신협	(120)	7.5	92.5	
	새마을금고	(130)	6.9	93.1	
	수협	(101)	24.8	75.2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8.0	82.0
		준조합원	(5)	40.0	60.0
	신협	지역	(107)	7.5	92.5
		직장	(14)	7.1	92.9
	새마을 금고	지역	(123)	7.3	92.7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25.0	75.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1.3	88.7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0.8	79.2	
성	남자	(203)	16.7	83.3	
	여자	(200)	8.0	92.0	
연령	19~39세	(84)	7.1	92.9	
	40~59세	(158)	12.0	88.0	
	60세 이상	(161)	15.5	84.5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6.6	93.4	
	대전/충청	(63)	9.5	90.5	
	광주/전라	(65)	12.3	87.7	
	대구/경북	(30)	23.3	76.7	
	부산/울산/경남	(94)	20.2	79.8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88.9	
	고등학교 졸업	(198)	13.6	86.4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8.6	91.4	
	대학교(4년제) 졸업	(97)	13.4	86.6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8.9	81.1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신협	발급 가능	(89)	5.6	94.4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97.8
		발급 불가/모름	(10)	10.0	90.0
	수협	발급 가능	(88)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2)	16.7	83.3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0.6	89.4	
	4~6등급	(116)	19.8	80.2	
	7~10등급	(119)	10.1	89.9	
	모름	(45)	4.4	95.6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88.9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0.2	89.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1.8	88.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3.4	86.6	
	10,000만원 이상	(56)	16.1	83.9	

## 2) 제1항 제5호 최대 수혜 금액

-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n=50) 기준, 수혜 금액에 대해 평균 44,900원이라 응답함(추가적인 검색 없이 기억나는 대로 응답)
- 최대 수혜 금액으로 '3만~5만원 미만'이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94.0%가 최대 수혜 금액을 7만원 이하로 응답함(반면, 6.0%의 경우, 7만원 초과 응답)

[부록 그림 2-3] 제1항 제5호 최대 수혜 금액



〈부록 표 2-4〉 제1항 제5호 최대 수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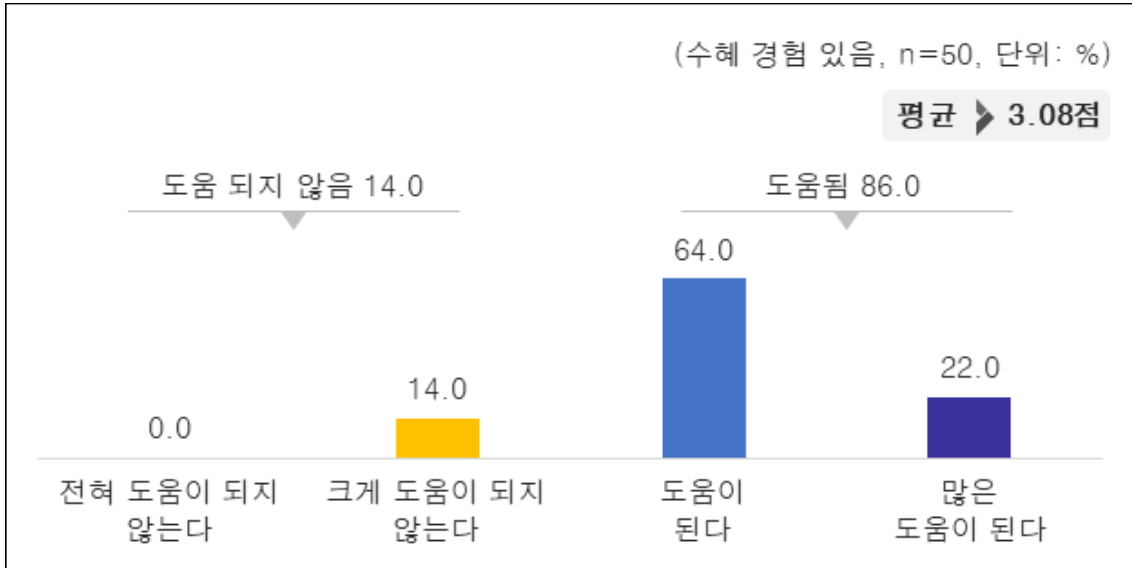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3만원 미만	3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원	7만원 초과	평균 금액	
전체		(50)	14.0	40.0	22.0	18.0	6.0	44,900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22)	9.1	54.5	9.1	18.2	9.1	45,909	
	신협	(9)	0.0	44.4	33.3	22.2	0.0	47,778	
	새마을금고	(9)	11.1	55.6	11.1	11.1	11.1	45,556	
	수협	(25)	20.0	36.0	24.0	16.0	4.0	41,80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20)	10.0	50.0	10.0	20.0	10.0	47,500
		준조합원	(2)	0.0	100.0	0.0	0.0	0.0	30,000
	신협	지역	(8)	0.0	50.0	37.5	12.5	0.0	45,000
		직장	(1)	0.0	0.0	0.0	100.0	0.0	70,000
	새마을금고	지역	(9)	11.1	55.6	11.1	11.1	11.1	45,556
	수협	조합원	(25)	20.0	36.0	24.0	16.0	4.0	41,8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40)	15.0	35.0	25.0	20.0	5.0	45,125	
	2개 이상 조합 가입	(10)	10.0	60.0	10.0	10.0	10.0	44,000	
성	남자	(34)	8.8	41.2	17.6	23.5	8.8	48,235	
	여자	(16)	25.0	37.5	31.3	6.3	0.0	37,813	
연령	19-39세	(6)	33.3	50.0	16.7	0.0	0.0	27,500	
	40-59세	(19)	10.5	31.6	31.6	15.8	10.5	50,263	
	60세 이상	(25)	12.0	44.0	16.0	24.0	4.0	45,000	
권역	서울/경기/인천	(10)	0.0	50.0	20.0	20.0	10.0	49,000	
	대전/충청	(6)	0.0	0.0	0.0	100.0	0.0	70,000	
	광주/전라	(8)	12.5	12.5	62.5	12.5	0.0	45,000	
	대구/경북	(7)	0.0	71.4	14.3	0.0	14.3	46,429	
	부산/울산/경남	(19)	31.6	47.4	15.8	0.0	5.3	34,21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33.3	33.3	0.0	33.3	0.0	40,000	
	고등학교 졸업	(27)	14.8	40.7	29.6	14.8	0.0	42,222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7)	0.0	57.1	14.3	14.3	14.3	48,571	
	대학교(4년제) 졸업	(13)	15.4	30.8	15.4	23.1	15.4	49,61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17)	11.8	47.1	11.8	23.5	5.9	45,882
		발급 불가	(5)	0.0	40.0	40.0	20.0	0.0	48,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2)	0.0	0.0	50.0	0.0	50.0	75,000
		발급 불가/모름	(1)	0.0	100.0	0.0	0.0	0.0	30,000
	수협	발급 가능	(23)	13.0	39.1	26.1	17.4	4.3	43,696
		발급 불가/모름	(2)	100.0	0.0	0.0	0.0	0.0	20,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3)	7.7	53.8	7.7	15.4	15.4	46,538	
	4~6등급	(23)	21.7	34.8	21.7	17.4	4.3	42,826	
	7~10등급	(12)	8.3	41.7	41.7	8.3	0.0	42,917	
	모름	(2)	0.0	0.0	0.0	100.0	0.0	70,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40,000	
	3,000만~5,000만원 미만	(9)	33.3	11.1	11.1	44.4	0.0	46,111	
	5,000만~7,000만원 미만	(17)	5.9	52.9	17.6	23.5	0.0	44,706	
	7,000만~10,000만원 미만	(13)	15.4	38.5	30.8	0.0	15.4	44,231	
	10,000만원 이상	(9)	11.1	44.4	22.2	11.1	11.1	46,111	

### 3) 제1항 제5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n=50)의 86.0%는 제1항 제5호가 주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많은 도움이 된다 22.0%+도움이 된다 64.0%)
-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3.08점임

[부록 그림 2-4] 제1항 제5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부록 표 2-5〉 제1항 제5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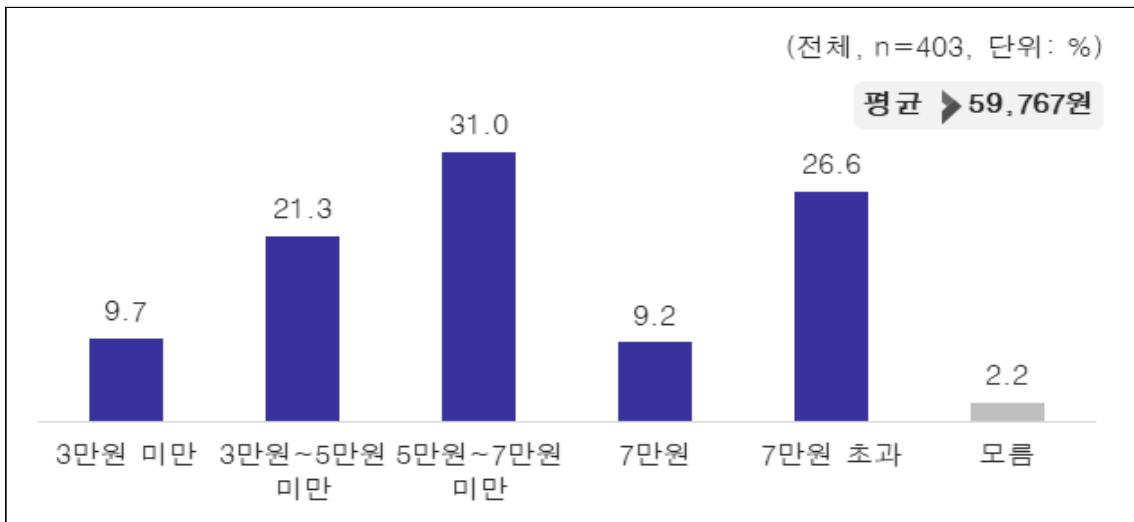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50)	14.0	64.0	22.0	14.0	86.0	3.08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22)	22.7	54.5	22.7	22.7	77.3	3.00	
	신협	(9)	11.1	55.6	33.3	11.1	88.9	3.22	
	새마을금고	(9)	11.1	55.6	33.3	11.1	88.9	3.22	
	수협	(25)	4.0	68.0	28.0	4.0	96.0	3.24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20)	25.0	55.0	20.0	25.0	75.0	2.95
		준조합원	(2)	0.0	50.0	50.0	0.0	100.0	3.50
	신협	지역	(8)	12.5	50.0	37.5	12.5	87.5	3.25
		직장	(1)	0.0	100.0	0.0	0.0	100.0	3.00
	새마을금고	지역	(9)	11.1	55.6	33.3	11.1	88.9	3.22
	수협	조합원	(25)	4.0	68.0	28.0	4.0	96.0	3.24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40)	15.0	67.5	17.5	15.0	85.0	3.03
	2개 이상 조합 가입		(10)	10.0	50.0	40.0	10.0	90.0	3.30
성	남자		(34)	11.8	67.6	20.6	11.8	88.2	3.09
	여자		(16)	18.8	56.3	25.0	18.8	81.3	3.06
연령	19~39세		(6)	0.0	66.7	33.3	0.0	100.0	3.33
	40~59세		(19)	15.8	78.9	5.3	15.8	84.2	2.89
	60세 이상		(25)	16.0	52.0	32.0	16.0	84.0	3.16
권역	서울/경기/인천		(10)	30.0	40.0	30.0	30.0	70.0	3.00
	대전/충청		(6)	0.0	83.3	16.7	0.0	100.0	3.17
	광주/전라		(8)	0.0	75.0	25.0	0.0	100.0	3.25
	대구/경북		(7)	28.6	71.4	0.0	28.6	71.4	2.71
	부산/울산/경남		(19)	10.5	63.2	26.3	10.5	89.5	3.16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0.0	66.7	33.3	0.0	100.0	3.33
	고등학교 졸업		(27)	14.8	59.3	25.9	14.8	85.2	3.1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7)	14.3	71.4	14.3	14.3	85.7	3.00
	대학교(4년제) 졸업		(13)	15.4	69.2	15.4	15.4	84.6	3.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17)	23.5	52.9	23.5	23.5	76.5	3.00
		신협	(5)	20.0	80.0	0.0	20.0	80.0	2.8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2)	0.0	100.0	0.0	0.0	100.0	3.00
		발급 불가/모름	(1)	100.0	0.0	0.0	100.0	0.0	2.00
	수협	발급 가능	(23)	4.3	65.2	30.4	4.3	95.7	3.26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0.0	0.0	100.0	3.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3)	30.8	61.5	7.7	30.8	69.2	2.77
	4~6등급		(23)	4.3	65.2	30.4	4.3	95.7	3.26
	7~10등급		(12)	16.7	58.3	25.0	16.7	83.3	3.08
	모름		(2)	0.0	100.0	0.0	0.0	100.0	3.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2)	50.0	50.0	0.0	50.0	50.0	2.50
	3,000만~5,000만원 미만		(9)	0.0	66.7	33.3	0.0	100.0	3.33
	5,000만~7,000만원 미만		(17)	17.6	64.7	17.6	17.6	82.4	3.00
	7,000만~10,000만원 미만		(13)	7.7	53.8	38.5	7.7	92.3	3.31
	10,000만원 이상		(9)	22.2	77.8	0.0	22.2	77.8	2.78

### 3. 제1항 제5호 혜택 예상

#### 1)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

- 용자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혜택 예상 금액에 대해 평균 59,767원으로 응답함
- 최대 수혜 예상 금액으로 '5만~7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1.2%가 최대 수혜 예상 금액을 7만원 이하로 응답함(26.6%의 경우, 7만원 초과 응답)

[부록 그림 2-5]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



- 제도 인지자 대비 제도 비인지자에서 최대 혜택 예상 금액이 높았으며, 수혜자 대비 수혜 비경험자에서 최대 혜택 예상 금액이 높게 나타남
- 관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하는 혜택 수준보다 실제 혜택이 다소 낮은 편임

<부록 표 2-6>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1)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3만원 미만	3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원	7만원 초과	모름	평균 금액	
전체	(403)	9.7	21.3	31.0	9.2	26.6	2.2	59,767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예	(87)	8.0	26.4	23.0	18.4	24.1	0.0	57,586
	아니오	(316)	10.1	19.9	33.2	6.6	27.2	2.8	60,384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예	(50)	6.0	34.0	18.0	24.0	18.0	0.0	56,500
	아니오	(353)	10.2	19.5	32.9	7.1	27.8	2.5	60,241

〈부록 표 2-7〉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최대 혜택 금액 예상(2)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3만원 미만	3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원	7만원 초과	모름	평균 금액	
전체		(403)	9.7	21.3	31.0	9.2	26.6	2.2	59,76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7.8	20.7	25.9	6.0	39.7	0.0	65,483	
	신협	(120)	10.8	25.0	32.5	12.5	18.3	0.8	55,597	
	새마을금고	(130)	10.0	22.3	30.0	7.7	26.9	3.1	60,484	
	수협	(101)	10.9	16.8	40.6	12.9	14.9	4.0	53,093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8.1	20.7	24.3	6.3	40.5	0.0	66,090
		준조합원	(5)	0.0	20.0	60.0	0.0	20.0	0.0	52,000
	신협	지역	(107)	11.2	23.4	31.8	13.1	20.6	0.0	57,019
		직장	(14)	7.1	42.9	35.7	7.1	0.0	7.1	41,923
	새마을 금고	지역	(123)	10.6	20.3	31.7	8.1	27.6	1.6	61,248
		직장	(7)	0.0	57.1	0.0	0.0	14.3	28.6	42,000
	수협	조합원	(100)	11.0	16.0	41.0	13.0	15.0	4.0	53,333
		준조합원	(1)	0.0	100.0	0.0	0.0	0.0	0.0	30,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9.0	21.1	30.4	9.3	27.6	2.5	60,86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4.6	22.9	35.4	8.3	18.8	0.0	51,875	
성	남자	(203)	7.4	20.7	32.0	10.3	28.1	1.5	61,460	
	여자	(200)	12.0	22.0	30.0	8.0	25.0	3.0	58,021	
연령	19~39세	(84)	15.5	17.9	32.1	6.0	26.2	2.4	56,427	
	40~59세	(158)	8.9	20.3	32.3	8.9	26.6	3.2	61,183	
	60세 이상	(161)	7.5	24.2	29.2	11.2	26.7	1.2	60,126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3	25.2	28.5	5.3	37.7	0.0	68,927	
	대전/충청	(63)	0.0	15.9	41.3	11.1	17.5	14.3	59,259	
	광주/전라	(65)	3.1	7.7	30.8	23.1	35.4	0.0	66,462	
	대구/경북	(30)	16.7	23.3	30.0	6.7	23.3	0.0	54,333	
	부산/울산/경남	(94)	28.7	27.7	28.7	5.3	9.6	0.0	42,44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3.7	25.9	37.0	7.4	22.2	3.7	56,923	
	고등학교 졸업	(198)	7.6	23.2	31.8	12.1	22.7	2.5	57,49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14.8	12.3	27.2	4.9	38.3	2.5	64,367	
	대학교(4년제) 졸업	(97)	11.3	23.7	30.9	7.2	25.8	1.0	61,313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7.8	18.9	24.4	6.7	42.2	0.0	68,233
		발급 불가/모름	(10)	0.0	30.0	20.0	0.0	50.0	0.0	63,000
	신협	발급 가능	(89)	12.4	25.8	32.6	12.4	15.7	1.1	53,875
		발급 불가/모름	(12)	16.7	8.3	41.7	8.3	25.0	0.0	57,91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8.7	22.8	26.1	5.4	32.6	4.3	64,557
		발급 불가/모름	(10)	0.0	50.0	20.0	10.0	20.0	0.0	54,000
	수협	발급 가능	(88)	9.1	17.0	42.0	13.6	15.9	2.3	54,419
		발급 불가/모름	(12)	25.0	8.3	33.3	8.3	8.3	16.7	44,000

〈부록 표 2-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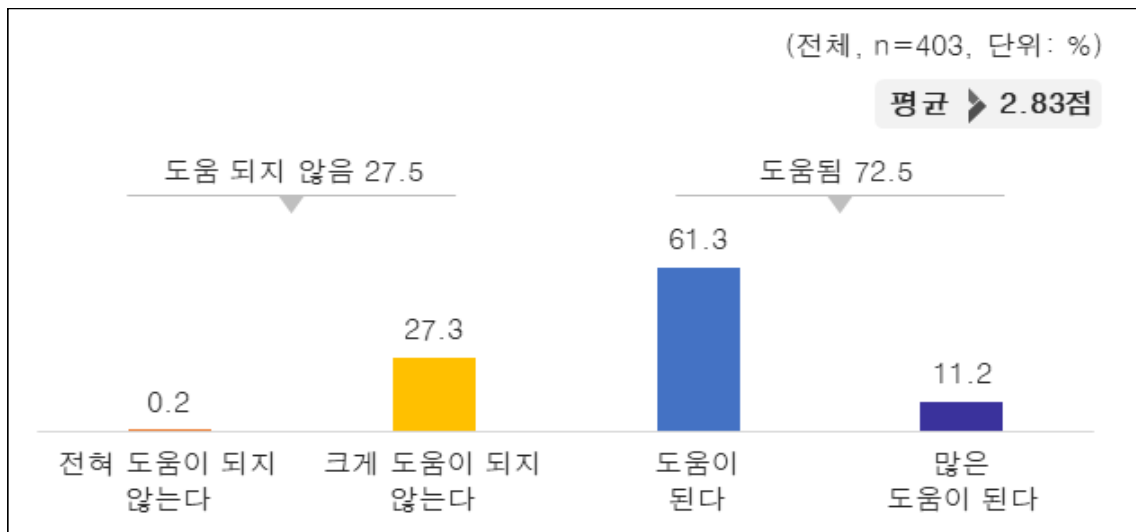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3만원 미만	3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원	7만원 초과	모름	평균 금액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3	23.6	16.3	4.1	39.8	0.0	64,122
	4~6등급	(116)	7.8	24.1	45.7	11.2	11.2	0.0	52,336
	7~10등급	(119)	7.6	16.8	30.3	12.6	32.8	0.0	63,866
	모름	(45)	2.2	20.0	35.6	8.9	13.3	20.0	55,2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22.2	44.4	5.6	27.8	0.0	63,889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1.4	19.3	34.1	6.8	25.0	3.4	55,647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3.2	18.8	27.8	9.7	26.4	4.2	58,993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9.3	18.6	26.8	9.3	36.1	0.0	67,278
	10,000만원 이상	(56)	1.8	35.7	37.5	12.5	12.5	0.0	53,589

## 2)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용자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혜택 예상 금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긍정 평가는 72.5%로 나타남(많은 도움이 된다 11.2%+도움이 된다 61.3%)
- 예상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83점임

[부록 그림 2-6]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제도 인지자, 수혜자에서 예상 혜택에 대한 경제적 효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제도 인지 2.97점 > 비인지 2.80점 / 수혜 경험 3.06점 > 수혜 비경험 2.80점)
- 최대 혜택 예상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7만원 이하의 경우 2.79점, 7만원 초과인 경우 2.99점으로 나타남

〈부록 표 2-8〉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1)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0.2	27.3	61.3	11.2	27.5	72.5	2.83	
제1항 제5호 인지 여부	예	(87)	0.0	19.5	64.4	16.1	19.5	80.5	2.97
	아니오	(316)	0.3	29.4	60.4	9.8	29.7	70.3	2.80
제1항 제5호 수혜 여부	예	(50)	0.0	12.0	70.0	18.0	12.0	88.0	3.06
	아니오	(353)	0.3	29.5	60.1	10.2	29.7	70.3	2.80
최대 혜택 예상 금액(원)	7만원 이하	(287)	0.3	30.3	59.2	10.1	30.7	69.3	2.79
	7만원 초과	(107)	0.0	15.9	69.2	15.0	15.9	84.1	2.99

〈부록 표 2-9〉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2)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0.2	27.3	61.3	11.2	27.5	72.5	2.8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0.9	24.1	61.2	13.8	25.0	75.0	2.88	
	신협	(120)	0.0	28.3	60.0	11.7	28.3	71.7	2.83	
	새마을금고	(130)	0.0	30.8	55.4	13.8	30.8	69.2	2.83	
	수협	(101)	0.0	21.8	66.3	11.9	21.8	78.2	2.9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0.9	23.4	63.1	12.6	24.3	75.7	2.87
		준조합원	(5)	0.0	40.0	20.0	40.0	40.0	60.0	3.00
	신협	지역	(107)	0.0	28.0	59.8	12.1	28.0	72.0	2.84
		직장	(14)	0.0	28.6	64.3	7.1	28.6	71.4	2.79
	새마을 금고	지역	(123)	0.0	30.9	54.5	14.6	30.9	69.1	2.84
		직장	(7)	0.0	28.6	71.4	0.0	28.6	71.4	2.71
	수협	조합원	(100)	0.0	22.0	66.0	12.0	22.0	78.0	2.90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0.3	27.6	62.5	9.6	27.9	72.1	2.8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0.0	25.0	52.1	22.9	25.0	75.0	2.98	
성	남자	(203)	0.5	25.6	61.6	12.3	26.1	73.9	2.86	
	여자	(200)	0.0	29.0	61.0	10.0	29.0	71.0	2.81	
연령	19~39세	(84)	0.0	32.1	58.3	9.5	32.1	67.9	2.77	
	40~59세	(158)	0.6	31.0	59.5	8.9	31.6	68.4	2.77	
	60세 이상	(161)	0.0	21.1	64.6	14.3	21.1	78.9	2.93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0.7	23.8	61.6	13.9	24.5	75.5	2.89	
	대전/충청	(63)	0.0	14.3	85.7	0.0	14.3	85.7	2.86	
	광주/전라	(65)	0.0	13.8	60.0	26.2	13.8	86.2	3.12	
	대구/경북	(30)	0.0	63.3	36.7	0.0	63.3	36.7	2.37	
	부산/울산/경남	(94)	0.0	39.4	53.2	7.4	39.4	60.6	2.68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11.1	66.7	22.2	11.1	88.9	3.11	
	고등학교 졸업	(198)	0.0	24.7	64.1	11.1	24.7	75.3	2.8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0.0	35.8	58.0	6.2	35.8	64.2	2.70	
	대학교(4년제) 졸업	(97)	1.0	29.9	56.7	12.4	30.9	69.1	2.8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1	23.3	61.1	14.4	24.4	75.6	2.89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	80.0	10.0	10.0	90.0	3.00
	신협	발급 가능	(89)	0.0	31.5	61.8	6.7	31.5	68.5	2.75
		발급 불가/모름	(12)	0.0	33.3	58.3	8.3	33.3	66.7	2.75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0.0	34.8	54.3	10.9	34.8	65.2	2.76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60.0	20.0	20.0	80.0	3.00
	수협	발급 가능	(88)	0.0	22.7	64.8	12.5	22.7	77.3	2.90
		발급 불가/모름	(12)	0.0	16.7	75.0	8.3	16.7	83.3	2.92

〈부록 표 2-9〉의 계속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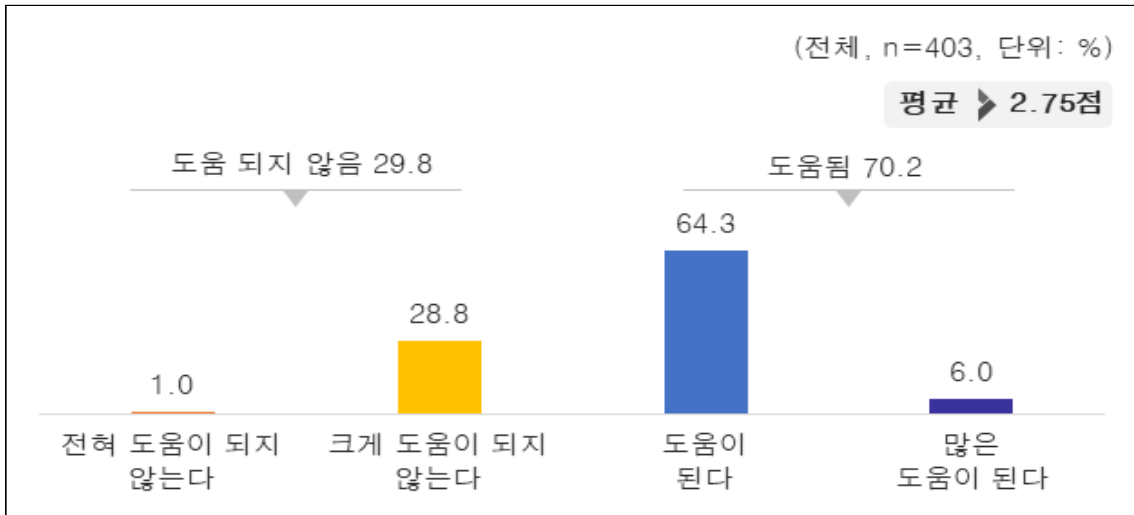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0.0	36.6	60.2	3.3	36.6	63.4	2.67
	4~6등급	(116)	0.9	16.4	60.3	22.4	17.2	82.8	3.04
	7~10등급	(119)	0.0	29.4	58.0	12.6	29.4	70.6	2.83
	모름	(45)	0.0	24.4	75.6	0.0	24.4	75.6	2.76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27.8	61.1	11.1	27.8	72.2	2.83
	3,000만~5,000만원 미만	(88)	0.0	20.5	64.8	14.8	20.5	79.5	2.94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0.7	27.1	63.9	8.3	27.8	72.2	2.80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0.0	35.1	53.6	11.3	35.1	64.9	2.76
	10,000만원 이상	(56)	0.0	25.0	62.5	12.5	25.0	75.0	2.88

## 4. 제1항 제5호 실제 혜택

### 1)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인 7만원의 인지세 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2%로 나타남(많은 도움이 된다 6.0%+도움이 된다 64.3%)
- 예상 혜택 금액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p 소폭 하락함
-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74점임

[부록 그림 2-7]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혜택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경우는 9.0%로 나타남
- 반면,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 평가에서 실제 혜택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경우는 6.5%임

<부록 표 2-10>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1)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29.8	70.2	2.75	
제1항 제5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111)	91.0	9.0	2.05
	도움됨	(292)	6.5	93.5	3.02

〈부록 표 2-11〉 제1항 제5호, 용자 금액이 1억원일 때,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2)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0	28.8	64.3	6.0	29.8	70.2	2.7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7	27.6	66.4	4.3	29.3	70.7	2.73	
	신협	(120)	0.0	30.8	61.7	7.5	30.8	69.2	2.77	
	새마을금고	(130)	1.5	32.3	62.3	3.8	33.8	66.2	2.68	
	수협	(101)	0.0	18.8	68.3	12.9	18.8	81.2	2.94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8	27.0	66.7	4.5	28.8	71.2	2.74
		준조합원	(5)	0.0	40.0	60.0	0.0	40.0	60.0	2.60
	신협	지역	(107)	0.0	30.8	61.7	7.5	30.8	69.2	2.77
		직장	(14)	0.0	28.6	64.3	7.1	28.6	71.4	2.79
	새마을 금고	지역	(123)	1.6	32.5	61.8	4.1	34.1	65.9	2.68
		직장	(7)	0.0	28.6	71.4	0.0	28.6	71.4	2.71
	수협	조합원	(100)	0.0	19.0	68.0	13.0	19.0	81.0	2.94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1	29.3	64.5	5.1	30.4	69.6	2.74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0.0	25.0	62.5	12.5	25.0	75.0	2.88	
성	남자	(203)	1.5	28.6	65.0	4.9	30.0	70.0	2.73	
	여자	(200)	0.5	29.0	63.5	7.0	29.5	70.5	2.77	
연령	19~39세	(84)	1.2	29.8	64.3	4.8	31.0	69.0	2.73	
	40~59세	(158)	1.3	32.9	61.4	4.4	34.2	65.8	2.69	
	60세 이상	(161)	0.6	24.2	67.1	8.1	24.8	75.2	2.83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2.0	33.1	59.6	5.3	35.1	64.9	2.68	
	대전/충청	(63)	0.0	11.1	85.7	3.2	11.1	88.9	2.92	
	광주/전라	(65)	0.0	13.8	75.4	10.8	13.8	86.2	2.97	
	대구/경북	(30)	0.0	66.7	33.3	0.0	66.7	33.3	2.33	
	부산/울산/경남	(94)	1.1	31.9	59.6	7.4	33.0	67.0	2.7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7.4	85.2	7.4	7.4	92.6	3.00	
	고등학교 졸업	(198)	0.5	26.8	64.6	8.1	27.3	72.7	2.8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0.0	33.3	64.2	2.5	33.3	66.7	2.69	
	대학교(4년제) 졸업	(97)	3.1	35.1	57.7	4.1	38.1	61.9	2.63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2	26.7	65.6	5.6	28.9	71.1	2.74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	90.0	0.0	10.0	90.0	2.90
	신협	발급 가능	(89)	0.0	34.8	61.8	3.4	34.8	65.2	2.69
		발급 불가/모름	(12)	0.0	33.3	58.3	8.3	33.3	66.7	2.75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38.0	57.6	2.2	40.2	59.8	2.60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80.0	0.0	20.0	80.0	2.80
	수협	발급 가능	(88)	0.0	20.5	65.9	13.6	20.5	79.5	2.93
		발급 불가/모름	(12)	0.0	8.3	83.3	8.3	8.3	91.7	3.00

〈부록 표 2-1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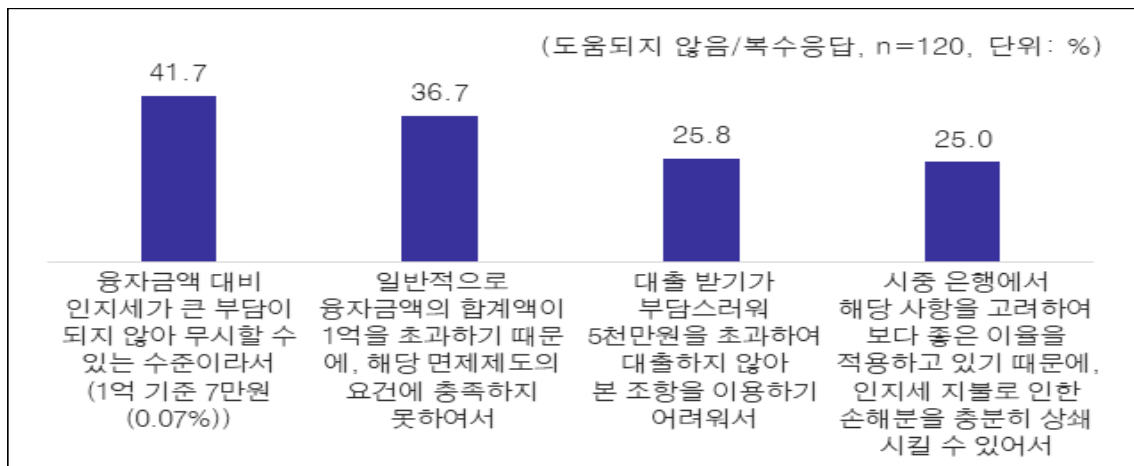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	43.1	53.7	1.6	44.7	55.3	2.55
	4~6등급	(116)	0.9	16.4	72.4	10.3	17.2	82.8	2.92
	7~10등급	(119)	0.8	30.3	60.5	8.4	31.1	68.9	2.76
	모름	(45)	0.0	17.8	82.2	0.0	17.8	82.2	2.8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33.3	61.1	5.6	33.3	66.7	2.7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0.0	19.3	73.9	6.8	19.3	80.7	2.88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1	27.8	64.6	5.6	29.9	70.1	2.74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0	41.2	49.5	8.2	42.3	57.7	2.65
	10,000만원 이상	(56)	0.0	23.2	75.0	1.8	23.2	76.8	2.79

## 2) 제1항 제5호,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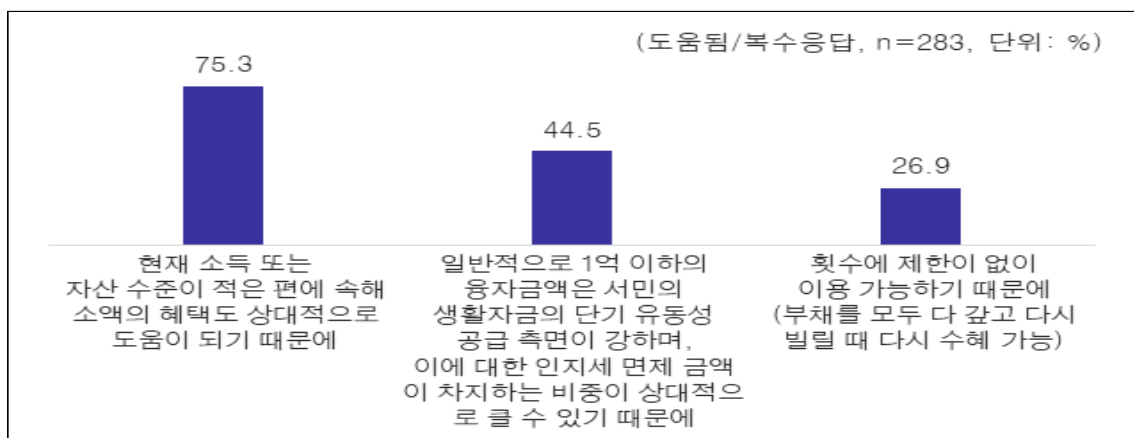
-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융자금액 대비 인지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1억원 기준 7만원(0.07%))'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제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서'(36.7%) 등의 순임

[부록 그림 2-8] 제1항 제5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제1항 제5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응답자의 75.3%가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적은 편에 속해 소액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를 꼽음
-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의 융자금액은 서민의 생활자금의 단기 유동성 공급 측면이 강하며, 이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가 44.5%로 나타남

[부록 림 2-9] 제1항 제5호, 도움되는 이유



〈부록 표 2-12〉 제1항 제5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융자금액 대비 인지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1억원 기준 7만원(0.07%))	일반적으로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제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서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 5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 본 조항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시중 은행에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 지불로 인한 손해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어서		
전체	(120)	41.7	36.7	25.8	25.0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34)	50.0	41.2	26.5	17.6	
	신협	(37)	40.5	35.1	29.7	43.2	
	새마을금고	(44)	43.2	45.5	18.2	15.9	
	수협	(19)	26.3	36.8	36.8	10.5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32)	53.1	37.5	25.0	18.8
		준조합원	(2)	0.0	100.0	50.0	0.0
	신협	지역	(33)	39.4	30.3	33.3	45.5
		직장	(4)	50.0	75.0	0.0	25.0
	새마을 금고	지역	(42)	45.2	45.2	19.0	14.3
		직장	(2)	0.0	50.0	0.0	50.0
수협	조합원	(19)	26.3	36.8	36.8	10.5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08)	41.7	33.3	25.0	26.9	
	2개 이상 조합 가입	(12)	41.7	66.7	33.3	8.3	
성	남자	(61)	41.0	37.7	24.6	34.4	
	여자	(59)	42.4	35.6	27.1	15.3	
연령	19~39세	(26)	38.5	57.7	23.1	26.9	
	40~59세	(54)	44.4	33.3	27.8	18.5	
	60세 이상	(40)	40.0	27.5	25.0	32.5	
권역	서울/경기/인천	(53)	39.6	24.5	26.4	22.6	
	대전/충청	(7)	42.9	57.1	14.3	42.9	
	광주/전라	(9)	11.1	33.3	55.6	0.0	
	대구/경북	(20)	45.0	50.0	30.0	15.0	
	부산/울산/경남	(31)	51.6	45.2	16.1	38.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0.0	100.0	0.0	0.0	
	고등학교 졸업	(54)	46.3	31.5	25.9	16.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27)	33.3	44.4	22.2	25.9	
	대학교(4년제) 졸업	(37)	43.2	35.1	29.7	37.8	

〈부록 표 2-12〉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자금액 대비 인지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1억원 기준 7만원(0.07%))	일반적으로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제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서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 5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 본 조항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시중 은행에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 지불로 인한 손해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어서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26)	53.8	38.5	19.2	19.2
		발급 불가/모름	(1)	100.0	0.0	0.0	0.0
	신협	발급 가능	(31)	38.7	32.3	29.0	51.6
		발급 불가/모름	(4)	25.0	25.0	50.0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37)	43.2	40.5	21.6	18.9
		발급 불가/모름	(2)	50.0	50.0	0.0	0.0
	수협	발급 가능	(18)	27.8	33.3	38.9	5.6
		발급 불가/모름	(1)	0.0	100.0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5)	34.5	34.5	16.4	30.9
	4~6등급		(20)	50.0	25.0	30.0	10.0
	7~10등급		(37)	48.6	43.2	37.8	24.3
	모름		(8)	37.5	50.0	25.0	25.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6)	33.3	50.0	0.0	33.3
	3,000만~5,000만원 미만		(17)	41.2	29.4	41.2	17.6
	5,000만~7,000만원 미만		(43)	46.5	30.2	23.3	27.9
	7,000만~10,000만원 미만		(41)	39.0	34.1	31.7	19.5
	10,000만원 이상		(13)	38.5	69.2	7.7	38.5

〈부록 표 2-13〉 제1항 제5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적은 편에 속해 소액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의 용자금액은 서민의 생활자금의 단기 유동성 공급 측면이 강하며, 이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부채를 모두 다 갚고 다시 빌릴 때 다시 수혜 가능)	
전체		(283)	75.3	44.5	26.9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82)	79.3	39.0	31.7	
	신협	(83)	83.1	33.7	33.7	
	새마을금고	(86)	83.7	33.7	38.4	
	수협	(82)	51.2	65.9	18.3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79)	81.0	38.0	30.4
		준조합원	(3)	33.3	66.7	66.7
	신협	지역	(74)	83.8	32.4	32.4
		직장	(10)	80.0	40.0	40.0
	새마을 금고	지역	(81)	85.2	33.3	39.5
		직장	(5)	60.0	40.0	20.0
	수협	조합원	(81)	51.9	65.4	18.5
		준조합원	(1)	0.0	10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247)	76.1	46.2	23.9	
	2개 이상 조합 가입	(36)	69.4	33.3	47.2	
성	남자	(142)	78.9	43.0	27.5	
	여자	(141)	71.6	46.1	26.2	
연령	19-39세	(58)	74.1	31.0	31.0	
	40-59세	(104)	78.8	38.5	25.0	
	60세 이상	(121)	72.7	56.2	26.4	
권역	서울/경기/인천	(98)	88.8	24.5	46.9	
	대전/충청	(56)	73.2	75.0	10.7	
	광주/전라	(56)	64.3	58.9	12.5	
	대구/경북	(10)	30.0	90.0	0.0	
	부산/울산/경남	(63)	73.0	28.6	27.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5)	68.0	68.0	24.0	
	고등학교 졸업	(144)	71.5	46.5	25.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54)	81.5	40.7	24.1	
	대학교(4년제) 졸업	(60)	81.7	33.3	35.0	

〈부록 표 2-1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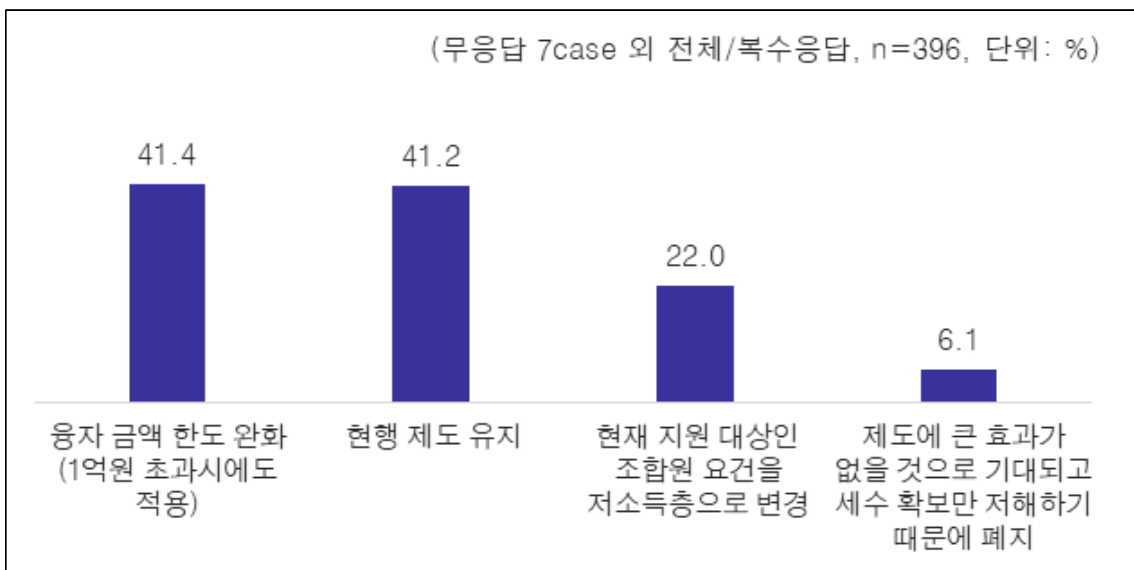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적은 편에 속해 소액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의 용자금액은 서민의 생활자금의 단기 유동성 공급 측면이 강하며, 이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부채를 모두 다 갚고 다시 빌릴 때 다시 수혜 가능)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64)	89.1	35.9	31.3
		발급 불가/모름	(9)	55.6	44.4	22.2
	신협	발급 가능	(58)	81.0	34.5	27.6
		발급 불가/모름	(8)	100.0	50.0	50.0
	새마을금고	발급 가능	(55)	85.5	34.5	29.1
		발급 불가/모름	(8)	87.5	37.5	37.5
	수협	발급 가능	(70)	51.4	64.3	20.0
		발급 불가/모름	(11)	54.5	72.7	9.1
신용점수 (환산등급/추정 포함)	1~3등급		(68)	77.9	35.3	20.6
	4~6등급		(96)	76.0	38.5	42.7
	7~10등급		(82)	75.6	50.0	22.0
	모름		(37)	67.6	64.9	8.1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2)	91.7	25.0	33.3
	3,000만~5,000만원 미만		(71)	76.1	49.3	22.5
	5,000만~7,000만원 미만		(101)	73.3	44.6	31.7
	7,000만~10,000만원 미만		(56)	64.3	50.0	25.0
	10,000만원 이상		(43)	88.4	34.9	23.3

## 5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

-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용자 금액 한도 완화(1억원 초과 시에도 적용)’(41.4%), ‘현행 제도 유지’(41.2%)가 높아, 상대적으로 혜택 유지/확대에 대한 니즈가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탁 가입자에서 혜택 확대(용자 금액 한도 완화)에 대한 니즈(48.3%), 수협 가입자에서 유지(58.0%), 지역농협에서 축소(저소득층 대상으로 요건 변경)에 대한 니즈(28.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10]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



-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유지/확대 응답 비율 높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축소/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남

〈부록 표 2-14〉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용자 금액 한도 완화 (1억원 초과 시에도 적용)	현행 제도 유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전체	(396)	41.4	41.2	22.0	6.1	
제1항 제5호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120)	30.8	30.8	30.8	20.0
	도움됨	(276)	45.7	46.0	18.1	0.0

〈부록 표 2-15〉 제1항 제5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응자 금액 한도 완화 (1억원 초과 시에도 적용)	현행 제도 유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전체		(396)	41.4	41.2	22.0	6.1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4)	43.0	37.7	28.9	6.1	
	신협	(116)	48.3	35.3	22.4	6.0	
	새마을금고	(128)	37.5	46.1	21.9	5.5	
	수협	(100)	28.0	58.0	14.0	3.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09)	44.0	35.8	30.3	6.4
		준조합원	(5)	20.0	80.0	0.0	0.0
	신협	지역	(104)	47.1	34.6	23.1	5.8
		직장	(13)	53.8	38.5	23.1	7.7
	새마을 금고	지역	(121)	38.0	45.5	22.3	5.8
		직장	(7)	28.6	57.1	14.3	0.0
	수협	조합원	(99)	28.3	58.6	13.1	3.0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49)	43.8	38.1	22.1	6.9	
	2개 이상 조합 가입	(47)	23.4	63.8	21.3	0.0	
성	남자	(200)	45.0	38.5	21.5	6.0	
	여자	(196)	37.8	43.9	22.4	6.1	
연령	19-39세	(81)	44.4	42.0	22.2	7.4	
	40-59세	(156)	39.7	38.5	25.6	5.8	
	60세 이상	(159)	41.5	43.4	18.2	5.7	
권역	서울/경기/인천	(146)	38.4	34.9	32.9	11.6	
	대전/충청	(62)	38.7	54.8	12.9	1.6	
	광주/전라	(65)	46.2	44.6	10.8	1.5	
	대구/경북	(30)	3.3	66.7	33.3	0.0	
	부산/울산/경남	(93)	57.0	31.2	15.1	5.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51.9	44.4	3.7	0.0	
	고등학교 졸업	(192)	35.9	46.9	22.9	4.2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0)	38.8	47.5	15.0	5.0	
	대학교(4년제) 졸업	(97)	51.5	23.7	30.9	12.4	

〈부록 표 2-15〉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응자 금액 한도 완화 (1억원 초과 시에도 적용)	현행 제도 유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5.6	34.4	30.0	7.8
		발급 불가/모름	(9)	55.6	22.2	33.3	0.0
	신협	발급 가능	(86)	51.2	29.1	23.3	8.1
		발급 불가/모름	(12)	41.7	50.0	16.7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0)	42.2	38.9	23.3	7.8
		발급 불가/모름	(10)	30.0	60.0	10.0	0.0
	수협	발급 가능	(87)	26.4	58.6	14.9	3.4
		발급 불가/모름	(12)	41.7	58.3	0.0	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19)	33.6	36.1	25.2	10.9
	4~6등급		(114)	48.2	41.2	24.6	2.6
	7~10등급		(118)	40.7	45.8	17.8	6.8
	모름		(45)	46.7	42.2	17.8	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66.7	5.6	0.0
	3,000만~5,000만원 미만		(87)	37.9	51.7	16.1	0.0
	5,000만~7,000만원 미만		(140)	39.3	40.7	25.0	6.4
	7,000만~10,000만원 미만		(96)	33.3	37.5	29.2	13.5
	10,000만원 이상		(55)	70.9	23.6	16.4	3.6

##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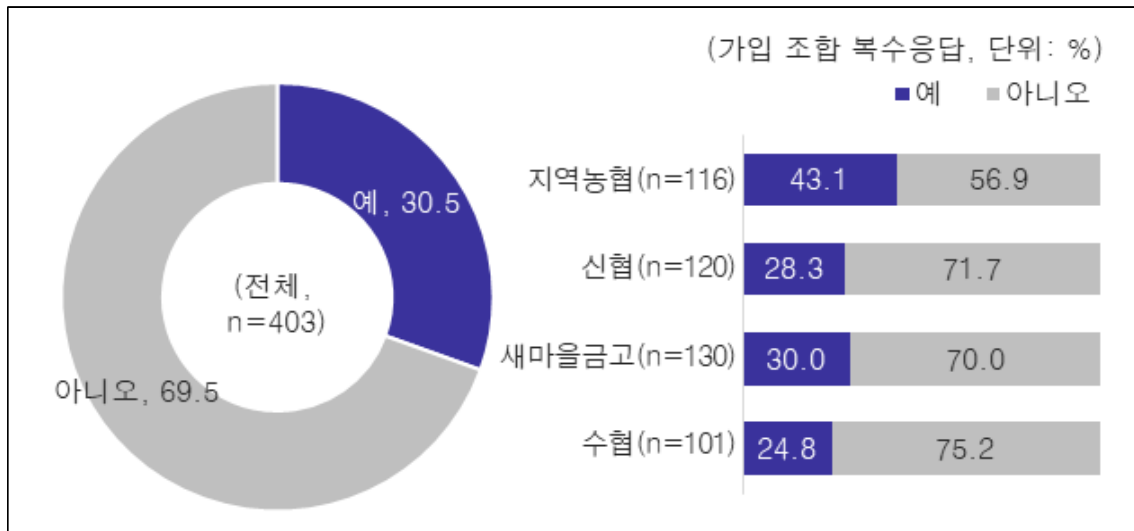
###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염연초생산협동조합(산립조합)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 1.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6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0.5%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인지 수준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30.0%), 신협(28.3%), 수협(24.8%) 순임

[부록 그림 2-11]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부록 표 2-16〉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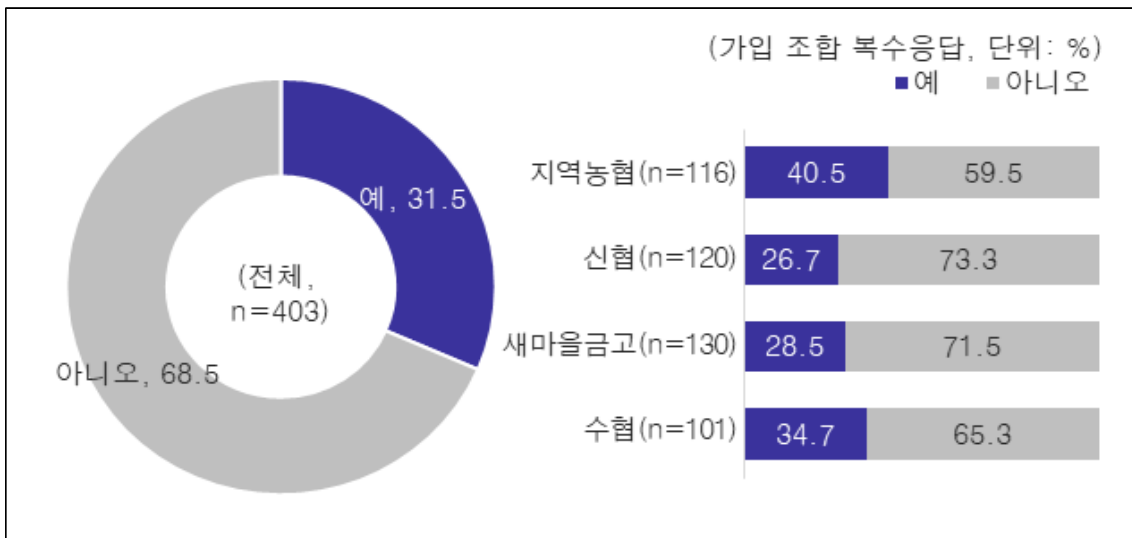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30.5	69.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43.1	56.9	
	신협	(120)	28.3	71.7	
	새마을금고	(130)	30.0	70.0	
	수협	(101)	24.8	75.2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42.3	57.7
		준조합원	(5)	60.0	40.0
	신협	지역	(107)	31.8	68.2
		직장	(14)	0.0	10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1.7	68.3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24.0	76.0
		준조합원	(1)	10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28.7	71.3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43.8	56.3	
성	남자	(203)	30.0	70.0	
	여자	(200)	31.0	69.0	
연령	19~39세	(84)	23.8	76.2	
	40~59세	(158)	32.3	67.7	
	60세 이상	(161)	32.3	67.7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21.2	78.8	
	대전/충청	(63)	7.9	92.1	
	광주/전라	(65)	4.6	95.4	
	대구/경북	(30)	76.7	23.3	
	부산/울산/경남	(94)	63.8	36.2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88.9	
	고등학교 졸업	(198)	26.3	73.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39.5	60.5	
	대학교(4년제) 졸업	(97)	37.1	62.9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0.0	60.0
		발급 불가/모름	(10)	40.0	60.0
	신협	발급 가능	(89)	31.5	68.5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8.3	71.7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수협	발급 가능	(88)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2)	8.3	91.7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46.3	53.7	
	4~6등급	(116)	24.1	75.9	
	7~10등급	(119)	31.1	68.9	
	모름	(45)	2.2	9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7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9.3	80.7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5.7	74.3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6.1	63.9	
	10,000만원 이상	(56)	51.8	48.2	

## 2.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 1)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 전체 응답자의 31.5%가 제1항 제6호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수혜 비율 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협(34.7%), 새마을금고(28.5%), 신협(26.7%) 순으로 나타남

[부록 그림 2-12]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123), 88.6%가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부록 표 2-17〉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	아니오 (%)
전체	(403)	31.5	68.5
제1항 제5호 인지	(123)	88.6	11.4

〈부록 표 2-18〉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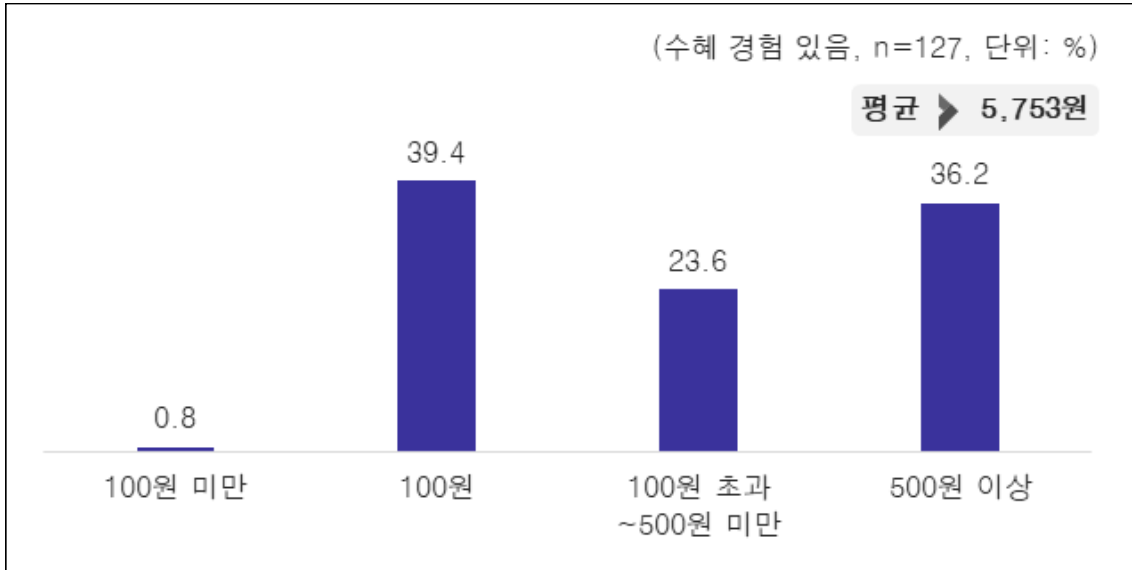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31.5	68.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40.5	59.5	
	신협	(120)	26.7	73.3	
	새마을금고	(130)	28.5	71.5	
	수협	(101)	34.7	65.3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39.6	60.4
		준조합원	(5)	60.0	40.0
	신협	지역	(107)	29.9	70.1
		직장	(14)	0.0	10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0.1	69.9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35.0	65.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30.1	69.9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41.7	58.3	
성	남자	(203)	32.0	68.0	
	여자	(200)	31.0	69.0	
연령	19~39세	(84)	23.8	76.2	
	40~59세	(158)	32.9	67.1	
	60세 이상	(161)	34.2	65.8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19.2	80.8	
	대전/충청	(63)	12.7	87.3	
	광주/전라	(65)	20.0	80.0	
	대구/경북	(30)	73.3	26.7	
	부산/울산/경남	(94)	58.5	41.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88.9	
	고등학교 졸업	(198)	27.3	72.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40.7	59.3	
	대학교(4년제) 졸업	(97)	38.1	61.9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36.7	63.3
		발급 불가/모름	(10)	40.0	60.0
	신협	발급 가능	(89)	29.2	70.8
		발급 불가/모름	(12)	25.0	7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6.1	73.9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수협	발급 가능	(88)	38.6	61.4
		발급 불가/모름	(12)	8.3	91.7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44.7	55.3	
	4~6등급	(116)	33.6	66.4	
	7~10등급	(119)	26.9	73.1	
	모름	(45)	2.2	9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7.8	7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6.1	73.9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7.1	72.9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40.2	59.8	
	10,000만원 이상	(56)	37.5	62.5	

## 2) 제1항 제6호 수해 금액

- 수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27) 기준, 수해 금액에 대해 평균 5,753원이라 응답함 (추가적인 검색 없이 기억나는 대로 응답)
- 수해 금액으로 '100원'(39.4%), '500원 이상'(36.2%) 응답이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13] 제1항 제6호 수해 금액



〈부록 표 2-19〉 제1항 제6호 수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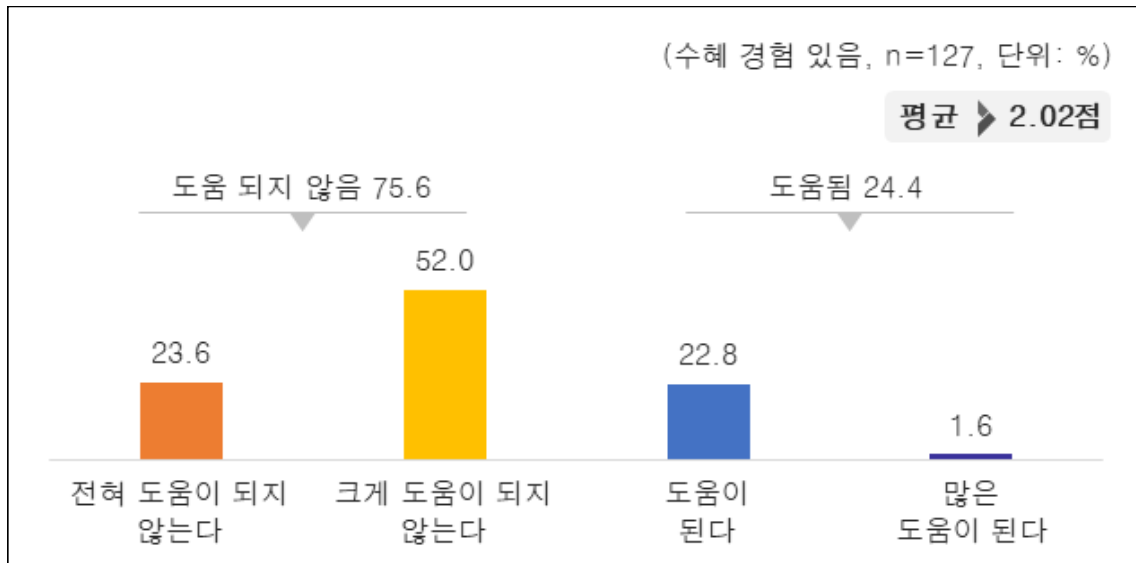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100원 미만	100원	100원 초과 ~500원 미만	500원 이상	평균금액	
전체		(127)	0.8	39.4	23.6	36.2	5,75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47)	0.0	40.4	23.4	36.2	6,412	
	신협	(32)	0.0	53.1	15.6	31.3	1,934	
	새마을금고	(37)	0.0	32.4	27.0	40.5	5,272	
	수협	(35)	2.9	20.0	34.3	42.9	7,207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44)	0.0	43.2	22.7	34.1	6,799
		준조합원	(3)	0.0	0.0	33.3	66.7	733
	신협	지역	(32)	0.0	53.1	15.6	31.3	1,934
	새마을금고	지역	(37)	0.0	32.4	27.0	40.5	5,272
	수협	조합원	(35)	2.9	20.0	34.3	42.9	7,207
		준조합원	(0)	0.0	0.0	0.0	0.0	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07)	0.9	43.0	21.5	34.6	6,188	
	2개 이상 조합 가입	(20)	0.0	20.0	35.0	45.0	3,430	
성	남자	(65)	1.5	35.4	23.1	40.0	6,146	
	여자	(62)	0.0	43.5	24.2	32.3	5,342	
연령	19~39세	(20)	0.0	45.0	30.0	25.0	2,825	
	40~59세	(52)	0.0	38.5	19.2	42.3	7,700	
	60세 이상	(55)	1.8	38.2	25.5	34.5	4,978	
권역	서울/경기/인천	(29)	0.0	44.8	27.6	27.6	4,127	
	대전/충청	(8)	0.0	12.5	75.0	12.5	300	
	광주/전라	(13)	0.0	0.0	0.0	100.0	20,000	
	대구/경북	(22)	0.0	31.8	27.3	40.9	3,123	
	부산/울산/경남	(55)	1.8	52.7	18.2	27.3	5,089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0.0	33.3	33.3	33.3	433	
	고등학교 졸업	(54)	1.9	33.3	20.4	44.4	7,19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33)	0.0	45.5	24.2	30.3	5,133	
	대학교(4년제) 졸업	(37)	0.0	43.2	27.0	29.7	4,641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33)	0.0	51.5	18.2	30.3	7,135
		발급 불가/모름	(4)	0.0	0.0	25.0	75.0	3,050
	신협	발급 가능	(26)	0.0	61.5	11.5	26.9	1,896
		발급 불가/모름	(3)	0.0	33.3	33.3	33.3	46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24)	0.0	33.3	25.0	41.7	7,487
		발급 불가/모름	(2)	0.0	50.0	50.0	0.0	200
	수협	발급 가능	(34)	2.9	20.6	32.4	44.1	7,413
		발급 불가/모름	(1)	0.0	0.0	100.0	0.0	2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5)	0.0	52.7	27.3	20.0	2,281	
	4~6등급	(39)	2.6	30.8	17.9	48.7	9,871	
	7~10등급	(32)	0.0	25.0	25.0	50.0	6,881	
	모름	(1)	0.0	100.0	0.0	0.0	1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5)	0.0	60.0	0.0	40.0	12,060	
	3,000만~5,000만원 미만	(23)	0.0	47.8	21.7	30.4	1,604	
	5,000만~7,000만원 미만	(39)	0.0	41.0	28.2	30.8	2,553	
	7,000만~10,000만원 미만	(39)	2.6	43.6	23.1	30.8	5,393	
	10,000만원 이상	(21)	0.0	14.3	23.8	61.9	15,410	

### 3) 제1항 제6호 수해로 얻은 경제적 효과

- 수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n=127)의 75.6%는 제1항 제6호가 주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6%+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0%)
-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02점임

[부록 그림 2-14] 제1항 제6호 수해로 얻은 경제적 효과



〈부록 표 2-20〉 제1항 제6호 수혜로 얻은 경제적 효과(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127)	23.6	52.0	22.8	1.6	75.6	24.4	2.02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47)	29.8	57.4	12.8	0.0	87.2	12.8	1.83	
	신협	(32)	34.4	56.3	9.4	0.0	90.6	9.4	1.75	
	새마을금고	(37)	16.2	64.9	18.9	0.0	81.1	18.9	2.03	
	수협	(35)	14.3	31.4	48.6	5.7	45.7	54.3	2.46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44)	31.8	56.8	11.4	0.0	88.6	11.4	1.80
		준조합원	(3)	0.0	66.7	33.3	0.0	66.7	33.3	2.33
	신협	지역	(32)	34.4	56.3	9.4	0.0	90.6	9.4	1.75
	새마을금고	지역	(37)	16.2	64.9	18.9	0.0	81.1	18.9	2.03
	수협	조합원	(35)	14.3	31.4	48.6	5.7	45.7	54.3	2.46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07)	23.4	50.5	24.3	1.9	73.8	26.2	2.05	
	2개 이상 조합 가입	(20)	25.0	60.0	15.0	0.0	85.0	15.0	1.90	
성	남자	(65)	21.5	49.2	29.2	0.0	70.8	29.2	2.08	
	여자	(62)	25.8	54.8	16.1	3.2	80.6	19.4	1.97	
연령	19~39세	(20)	15.0	55.0	30.0	0.0	70.0	30.0	2.15	
	40~59세	(52)	23.1	48.1	26.9	1.9	71.2	28.8	2.08	
	60세 이상	(55)	27.3	54.5	16.4	1.8	81.8	18.2	1.93	
권역	서울/경기/인천	(29)	34.5	51.7	13.8	0.0	86.2	13.8	1.79	
	대전/충청	(8)	0.0	62.5	37.5	0.0	62.5	37.5	2.38	
	광주/전라	(13)	0.0	23.1	61.5	15.4	23.1	76.9	2.92	
	대구/경북	(22)	36.4	59.1	4.5	0.0	95.5	4.5	1.68	
	부산/울산/경남	(55)	21.8	54.5	23.6	0.0	76.4	23.6	2.02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33.3	33.3	33.3	0.0	66.7	33.3	2.00	
	고등학교 졸업	(54)	16.7	59.3	20.4	3.7	75.9	24.1	2.1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33)	36.4	51.5	12.1	0.0	87.9	12.1	1.76	
	대학교(4년제) 졸업	(37)	21.6	43.2	35.1	0.0	64.9	35.1	2.14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33)	36.4	54.5	9.1	0.0	90.9	9.1	1.73
		발급 불가/모름	(4)	0.0	75.0	25.0	0.0	75.0	25.0	2.25
	신협	발급 가능	(26)	38.5	50.0	11.5	0.0	88.5	11.5	1.73
		발급 불가/모름	(3)	0.0	100.0	0.0	0.0	100.0	0.0	2.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24)	12.5	66.7	20.8	0.0	79.2	20.8	2.08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0.0	0.0	100.0	0.0	2.00
	수협	발급 가능	(34)	11.8	32.4	50.0	5.9	44.1	55.9	2.50
		발급 불가/모름	(1)	100.0	0.0	0.0	0.0	100.0	0.0	1.00

〈부록 표 2-20〉의 계속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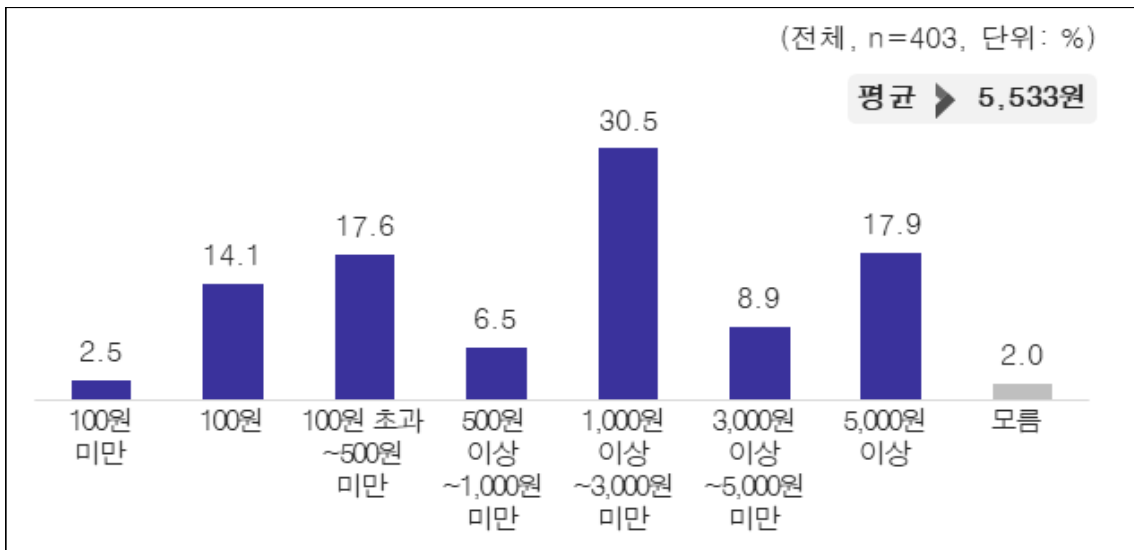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5)	32.7	52.7	14.5	0.0	85.5	14.5	1.82
	4~6등급	(39)	7.7	51.3	41.0	0.0	59.0	41.0	2.33
	7~10등급	(32)	28.1	53.1	12.5	6.3	81.3	18.8	1.97
	모름	(1)	0.0	0.0	100.0	0.0	0.0	100.0	3.00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3,000만~5,000만원 미만	(23)	13.0	73.9	13.0	0.0	87.0	13.0	2.00
	5,000만~7,000만원 미만	(39)	25.6	53.8	17.9	2.6	79.5	20.5	1.97
	7,000만~10,000만원 미만	(39)	28.2	41.0	28.2	2.6	69.2	30.8	2.05
	10,000만원 이상	(21)	23.8	42.9	33.3	0.0	66.7	33.3	2.10

### 3.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

#### 1) 제1항 제6호 혜택 금액 예상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예상 혜택 금액에 대해 평균 5,533원으로 응답하였음
- 최대 수혜 예상 금액으로 '1,000원 이상~3,000원 미만'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15]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



- 제도 인지자, 수혜자의 경우, 혜택 예상 금액에 대해 반수 이상이 '500원 미만'으로 응답함(제도 인지자 58.5%, 수혜자 60.6%)
- 반면, 제도 비인지, 수혜 비경험의 경우 '1,000원 이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표 2-21>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100원 미만	100원	100원 초과~500원 미만	500원 이상~1,000원 미만	1,000원 이상~3,000원 미만	3,000원 이상~5,000원 미만	5,000원 이상	모름	평균 금액	
전체	(403)	2.5	14.1	17.6	6.5	30.5	8.9	17.9	2.0	5,533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예	(123)	1.6	38.2	20.3	4.9	13.8	2.4	18.7	0.0	6,514
	아니오	(280)	2.9	3.6	16.4	7.1	37.9	11.8	17.5	2.9	5,090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예	(127)	1.6	40.2	20.5	3.9	14.2	3.1	16.5	0.0	4,436
	아니오	(276)	2.9	2.2	16.3	7.6	38.0	11.6	18.5	2.9	6,053

〈부록 표 2-22〉 제1항 제6호 혜택 예상(2)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100원 미만	100원	100원 초과~500원 미만	500원 이상~1,000원 미만	1,000원 이상~3,000원 미만	3,000원 이상~5,000원 미만	5,000원 이상	모름	평균 금액	
전체		(403)	2.5	14.1	17.6	6.5	30.5	8.9	17.9	2.0	5,53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0.9	21.6	15.5	7.8	33.6	7.8	12.9	0.0	5,321	
	신협	(120)	0.0	14.2	8.3	3.3	45.8	9.2	17.5	1.7	5,640	
	새마을금고	(130)	2.3	10.0	15.4	5.4	44.6	3.8	17.7	0.8	5,668	
	수협	(101)	8.9	6.9	32.7	6.9	9.9	11.9	17.8	5.0	4,085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0.0	22.5	15.3	8.1	32.4	8.1	13.5	0.0	5,531
		준조합원	(5)	20.0	0.0	20.0	0.0	60.0	0.0	0.0	0.0	670
	신협	지역	(107)	0.0	15.0	5.6	2.8	47.7	9.3	19.6	0.0	6,121
		직장	(14)	0.0	7.1	28.6	7.1	35.7	7.1	0.0	14.3	958
	새마을 금고	지역	(123)	2.4	10.6	15.4	4.9	43.9	4.1	18.7	0.0	5,898
		직장	(7)	0.0	0.0	14.3	14.3	57.1	0.0	0.0	14.3	967
	수협	조합원	(100)	9.0	7.0	33.0	7.0	10.0	11.0	18.0	5.0	4,097
		준조합원	(1)	0.0	0.0	0.0	0.0	0.0	100.0	0.0	0.0	3,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2.0	14.9	17.7	7.0	26.8	9.9	19.4	2.3	5,803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6.3	8.3	16.7	2.1	58.3	2.1	6.3	0.0	3,584	
성	남자	(203)	2.0	13.8	17.2	7.4	28.1	9.9	19.7	2.0	6,554	
	여자	(200)	3.0	14.5	18.0	5.5	33.0	8.0	16.0	2.0	4,496	
연령	19~39세	(84)	1.2	11.9	16.7	9.5	32.1	8.3	17.9	2.4	5,782	
	40~59세	(158)	2.5	12.0	18.4	7.0	29.7	8.2	19.6	2.5	5,498	
	60세 이상	(161)	3.1	17.4	17.4	4.3	30.4	9.9	16.1	1.2	5,439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0.7	9.9	7.3	8.6	58.9	7.9	6.6	0.0	2,439	
	대전/충청	(63)	0.0	6.3	63.5	9.5	4.8	1.6	1.6	12.7	1,810	
	광주/전라	(65)	0.0	0.0	0.0	1.5	21.5	35.4	41.5	0.0	6,192	
	대구/경북	(30)	0.0	23.3	26.7	3.3	40.0	0.0	6.7	0.0	4,853	
	부산/울산/경남	(94)	9.6	33.0	12.8	5.3	5.3	0.0	34.0	0.0	12,44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3.7	25.9	0.0	40.7	7.4	7.4	3.7	1,268	
	고등학교 졸업	(198)	2.5	12.1	15.7	5.6	31.3	10.1	20.2	2.5	6,418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1.2	21.0	14.8	7.4	29.6	7.4	16.0	2.5	4,370	
	대학교(4년제) 졸업	(97)	1.0	15.5	21.6	9.3	26.8	8.2	17.5	0.0	5,863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0.0	25.6	11.1	8.9	31.1	8.9	14.4	0.0	5,466
		발급 불가/모름	(10)	0.0	0.0	30.0	0.0	50.0	10.0	10.0	0.0	1,630
	신협	발급 가능	(89)	0.0	18.0	7.9	4.5	38.2	9.0	20.2	2.2	6,778
		발급 불가/모름	(12)	0.0	8.3	8.3	0.0	50.0	25.0	8.3	0.0	1,86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1	9.8	15.2	7.6	38.0	4.3	22.8	1.1	7,316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	30.0	0.0	50.0	10.0	0.0	0.0	1,030
	수협	발급 가능	(88)	9.1	8.0	30.7	5.7	10.2	12.5	20.5	3.4	4,537
		발급 불가/모름	(12)	8.3	0.0	50.0	16.7	8.3	0.0	0.0	16.7	357

〈부록 표 2-2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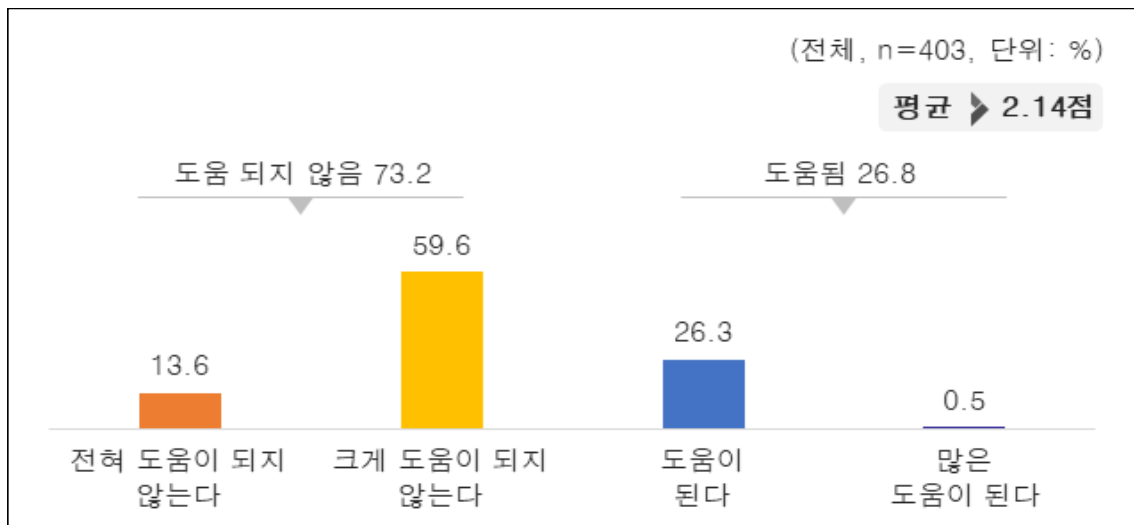
(단위: 명, %, 원)

구분		사례수	100원 미만	100원	100원 초과~500원 미만	500원 이상~1,000원 미만	1,000원 이상~3,000원 미만	3,000원 이상~5,000원 미만	5,000원 이상	모름	평균 금액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3.3	26.0	14.6	9.8	31.7	5.7	8.9	0.0	2,845
	4~6등급	(116)	1.7	12.1	8.6	2.6	41.4	11.2	22.4	0.0	6,472
	7~10등급	(119)	2.5	7.6	14.3	4.2	29.4	13.4	28.6	0.0	8,988
	모름	(45)	2.2	4.4	57.8	13.3	2.2	0.0	2.2	17.8	413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22.2	22.2	0.0	33.3	11.1	11.1	0.0	2,717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1	13.6	23.9	2.3	37.5	3.4	11.4	6.8	3,511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8	13.9	20.8	9.0	29.2	13.2	9.7	1.4	1,805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1	18.6	10.3	10.3	33.0	8.2	16.5	0.0	4,072
	10,000만원 이상	(56)	3.6	5.4	10.7	1.8	17.9	7.1	53.6	0.0	21,384

## 2)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예상 혜택 금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73.2%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함(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6%+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6%)
- 예상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14점으로 나타남

[부록 그림 2-16]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의 경우, 제도 인지자, 수혜자에서 예상 혜택에 대한 경제적 효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제도 비인지 2.23점 > 인지 1.92점 / 수혜 비경험 2.23점 > 수혜 경험 1.93점)

〈부록 표 2-23〉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3.6	59.6	26.3	0.5	73.2	26.8	2.14	
제1항 제6호 인지 여부	예	(123)	22.8	62.6	14.6	0.0	85.4	14.6	1.92
	아니오	(280)	9.6	58.2	31.4	0.7	67.9	32.1	2.23
제1항 제6호 수혜 여부	예	(127)	22.0	63.8	13.4	0.8	85.8	14.2	1.93
	아니오	(276)	9.8	57.6	32.2	0.4	67.4	32.6	2.23

〈부록 표 2-24〉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3.6	59.6	26.3	0.5	73.2	26.8	2.14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6.4	56.9	26.7	0.0	73.3	26.7	2.10	
	신협	(120)	13.3	52.5	34.2	0.0	65.8	34.2	2.21	
	새마을금고	(130)	13.8	51.5	34.6	0.0	65.4	34.6	2.21	
	수협	(101)	12.9	66.3	18.8	2.0	79.2	20.8	2.1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6.2	56.8	27.0	0.0	73.0	27.0	2.11
		준조합원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신협	지역	(107)	15.0	52.3	32.7	0.0	67.3	32.7	2.18
		직장	(14)	0.0	57.1	42.9	0.0	57.1	42.9	2.43
	새마을 금고	지역	(123)	13.8	51.2	35.0	0.0	65.0	35.0	2.21
		직장	(7)	14.3	57.1	28.6	0.0	71.4	28.6	2.14
	수협	조합원	(100)	13.0	66.0	19.0	2.0	79.0	21.0	2.10
		준조합원	(1)	0.0	100.0	0.0	0.0	100.0	0.0	2.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2.7	62.5	24.2	0.6	75.2	24.8	2.13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0.8	37.5	41.7	0.0	58.3	41.7	2.21	
성	남자	(203)	13.8	57.6	28.6	0.0	71.4	28.6	2.15	
	여자	(200)	13.5	61.5	24.0	1.0	75.0	25.0	2.13	
연령	19~39세	(84)	13.1	61.9	25.0	0.0	75.0	25.0	2.12	
	40~59세	(158)	12.7	60.8	25.9	0.6	73.4	26.6	2.15	
	60세 이상	(161)	14.9	57.1	27.3	0.6	72.0	28.0	2.14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15.2	44.4	40.4	0.0	59.6	40.4	2.25	
	대전/충청	(63)	0.0	68.3	31.7	0.0	68.3	31.7	2.32	
	광주/전라	(65)	1.5	89.2	6.2	3.1	90.8	9.2	2.11	
	대구/경북	(30)	33.3	66.7	0.0	0.0	100.0	0.0	1.67	
	부산/울산/경남	(94)	22.3	55.3	22.3	0.0	77.7	22.3	2.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2.2	55.6	22.2	0.0	77.8	22.2	2.00	
	고등학교 졸업	(198)	9.1	62.1	27.8	1.0	71.2	28.8	2.2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18.5	64.2	17.3	0.0	82.7	17.3	1.99	
	대학교(4년제) 졸업	(97)	16.5	51.5	32.0	0.0	68.0	32.0	2.1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6.7	55.6	27.8	0.0	72.2	27.8	2.11
		발급 불가/모름	(10)	0.0	80.0	20.0	0.0	80.0	20.0	2.20
	신협	발급 가능	(89)	14.6	58.4	27.0	0.0	73.0	27.0	2.12
		발급 불가/모름	(12)	0.0	66.7	33.3	0.0	66.7	33.3	2.33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2.0	56.5	31.5	0.0	68.5	31.5	2.20
		발급 불가/모름	(10)	30.0	40.0	30.0	0.0	70.0	30.0	2.00
	수협	발급 가능	(88)	11.4	68.2	18.2	2.3	79.5	20.5	2.11
		발급 불가/모름	(12)	25.0	50.0	25.0	0.0	75.0	25.0	2.00

〈부록 표 2-24〉의 계속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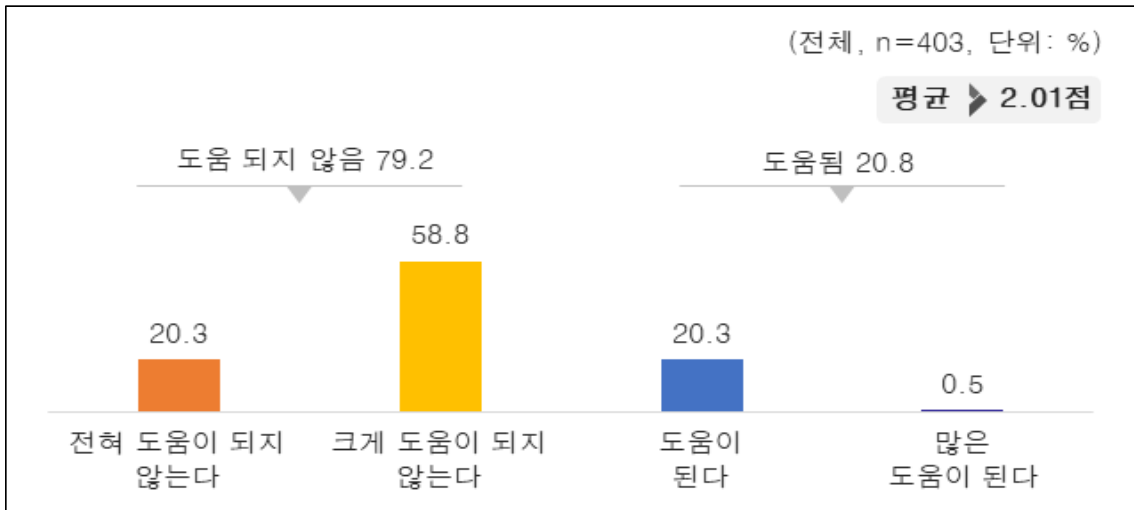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26.0	58.5	15.4	0.0	84.6	15.4	1.89
	4~6등급	(116)	3.4	56.0	39.7	0.9	59.5	40.5	2.38
	7~10등급	(119)	15.1	61.3	22.7	0.8	76.5	23.5	2.09
	모름	(45)	2.2	66.7	31.1	0.0	68.9	31.1	2.2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2.2	33.3	44.4	0.0	55.6	44.4	2.22
	3,000만~5,000만원 미만	(88)	8.0	69.3	22.7	0.0	77.3	22.7	2.15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3.9	59.0	27.1	0.0	72.9	27.1	2.13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7.5	63.9	16.5	2.1	81.4	18.6	2.03
	10,000만원 이상	(56)	12.5	46.4	41.1	0.0	58.9	41.1	2.29

#### 4.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 1)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인, 건별 100원의 인지세 면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8%로 나타남(많은 도움이 된다 0.5%+도움이 된다 20.3%)
- 예상 혜택 금액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p 하락함
-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01점임

[부록 그림 2-17]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혜택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경우는 1.4%임
- 반면,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 평가에서 실제 혜택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경우는 25.9%로 나타남

<부록 표 2-25>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29.8	70.2	2.75
제1항 제6호 예상 혜택의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295)	98.6	1.75
	도움됨	(108)	25.9	74.1

〈부록 표 2-26〉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 금액의 경제적 효과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20.3	58.8	20.3	0.5	79.2	20.8	2.01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5.9	53.4	20.7	0.0	79.3	20.7	1.95	
	신협	(120)	21.7	50.8	27.5	0.0	72.5	27.5	2.06	
	새마을금고	(130)	23.1	51.5	25.4	0.0	74.6	25.4	2.02	
	수협	(101)	13.9	66.3	17.8	2.0	80.2	19.8	2.08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6.1	53.2	20.7	0.0	79.3	20.7	1.95
		준조합원	(5)	20.0	60.0	20.0	0.0	80.0	20.0	2.00
	신협	지역	(107)	24.3	52.3	23.4	0.0	76.6	23.4	1.99
		직장	(14)	0.0	42.9	57.1	0.0	42.9	57.1	2.57
	새마을 금고	지역	(123)	22.8	51.2	26.0	0.0	74.0	26.0	2.03
		직장	(7)	28.6	57.1	14.3	0.0	85.7	14.3	1.86
	수협	조합원	(100)	14.0	66.0	18.0	2.0	80.0	20.0	2.08
		준조합원	(1)	0.0	100.0	0.0	0.0	100.0	0.0	2.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8.9	62.5	18.0	0.6	81.4	18.6	2.00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31.3	31.3	37.5	0.0	62.5	37.5	2.06	
성	남자	(203)	19.7	56.7	23.6	0.0	76.4	23.6	2.04	
	여자	(200)	21.0	61.0	17.0	1.0	82.0	18.0	1.98	
연령	19-39세	(84)	21.4	59.5	19.0	0.0	81.0	19.0	1.98	
	40-59세	(158)	19.0	58.9	21.5	0.6	77.8	22.2	2.04	
	60세 이상	(161)	21.1	58.4	19.9	0.6	79.5	20.5	2.0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23.2	43.0	33.8	0.0	66.2	33.8	2.11	
	대전/충청	(63)	0.0	71.4	28.6	0.0	71.4	28.6	2.29	
	광주/전라	(65)	7.7	84.6	4.6	3.1	92.3	7.7	2.03	
	대구/경북	(30)	53.3	46.7	0.0	0.0	100.0	0.0	1.47	
	부산/울산/경남	(94)	27.7	61.7	10.6	0.0	89.4	10.6	1.8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33.3	51.9	14.8	0.0	85.2	14.8	1.81	
	고등학교 졸업	(198)	13.6	62.6	22.7	1.0	76.3	23.7	2.1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7.2	60.5	12.3	0.0	87.7	12.3	1.85	
	대학교(4년제) 졸업	(97)	24.7	51.5	23.7	0.0	76.3	23.7	1.99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4.4	54.4	21.1	0.0	78.9	21.1	1.97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10.0	0.0	90.0	10.0	1.90
	신협	발급 가능	(89)	21.3	57.3	21.3	0.0	78.7	21.3	2.00
		발급 불가/모름	(12)	16.7	58.3	25.0	0.0	75.0	25.0	2.08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8	54.3	22.8	0.0	77.2	22.8	2.00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10.0	0.0	90.0	10.0	1.90
	수협	발급 가능	(88)	12.5	69.3	15.9	2.3	81.8	18.2	2.08
		발급 불가/모름	(12)	25.0	41.7	33.3	0.0	66.7	33.3	2.08

〈부록 표 2-26〉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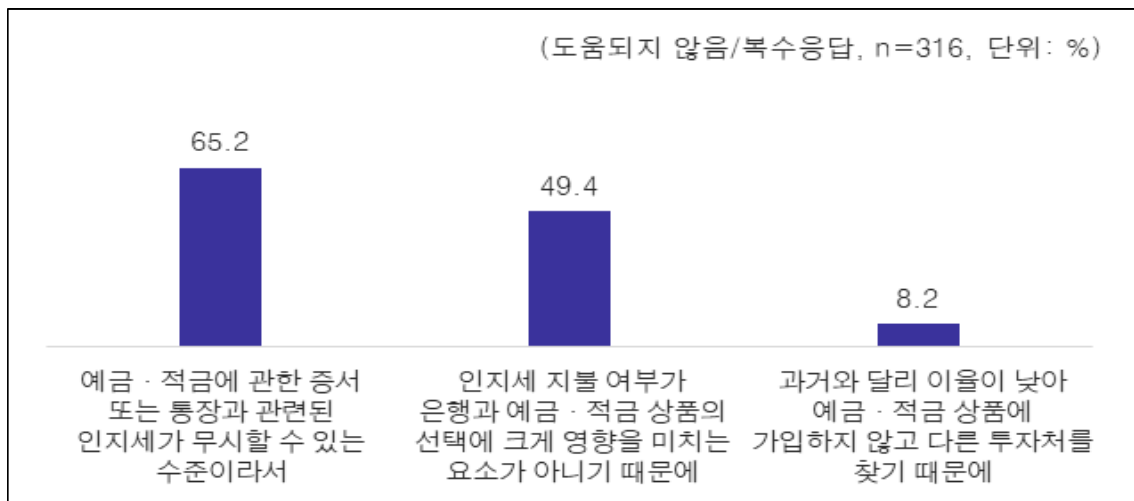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33.3	56.9	9.8	0.0	90.2	9.8	1.76
	4~6등급	(116)	5.2	56.9	37.1	0.9	62.1	37.9	2.34
	7~10등급	(119)	28.6	59.7	10.9	0.8	88.2	11.8	1.84
	모름	(45)	2.2	66.7	31.1	0.0	68.9	31.1	2.2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6.7	55.6	27.8	0.0	72.2	27.8	2.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4.8	64.8	20.5	0.0	79.5	20.5	2.06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2.9	54.2	22.9	0.0	77.1	22.9	2.00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2.7	61.9	13.4	2.1	84.5	15.5	1.95
	10,000만원 이상	(56)	19.6	57.1	23.2	0.0	76.8	23.2	2.04

## 2)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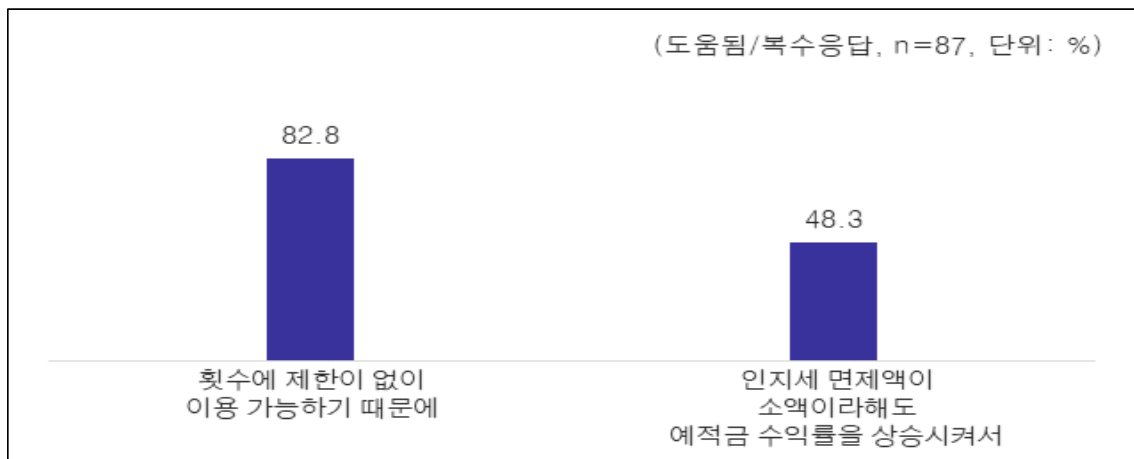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과 관련된 인지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인지세 지불 여부가 은행과 예금·적금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49.4%) 등의 순임

[부록 그림 2-18] 제1항 제6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제1항 제6호로 얻을 수 있는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응답자의 82.8%가 '횡수에 제한이 없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를 꼽았음
-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해도 예적금 수익률을 상승시켜서'는 48.3%로 나타남

[부록 그림 2-19] 제1항 제6호, 도움되는 이유



〈부록 표 2-27〉 제1항 제6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과 관련된 인지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인지세 지불 여부가 은행과 예금·적금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율이 낮아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전체		(316)	65.2	49.4	8.2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92)	66.3	55.4	9.8	
	신협	(85)	69.4	42.4	7.1	
	새마을금고	(96)	67.7	46.9	9.4	
	수협	(80)	60.0	43.8	5.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88)	65.9	56.8	10.2
		준조합원	(4)	75.0	25.0	0.0
	신협	지역	(80)	68.8	43.8	7.5
		직장	(6)	66.7	33.3	0.0
	새마을 금고	지역	(90)	70.0	44.4	10.0
		직장	(6)	33.3	83.3	0.0
수협	조합원	(80)	60.0	43.8	5.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287)	64.5	51.2	8.4	
	2개 이상 조합 가입	(29)	72.4	31.0	6.9	
성	남자	(154)	60.4	52.6	9.1	
	여자	(162)	69.8	46.3	7.4	
연령	19~39세	(68)	60.3	47.1	8.8	
	40~59세	(122)	64.8	49.2	7.4	
	60세 이상	(126)	68.3	50.8	8.7	
권역	서울/경기/인천	(98)	57.1	58.2	7.1	
	대전/충청	(45)	68.9	42.2	4.4	
	광주/전라	(59)	37.3	72.9	18.6	
	대구/경북	(30)	76.7	26.7	3.3	
	부산/울산/경남	(84)	88.1	34.5	6.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87.0	30.4	13.0	
	고등학교 졸업	(149)	59.7	51.7	9.4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71)	70.4	49.3	7.0	
	대학교(4년제) 졸업	(73)	64.4	50.7	5.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71)	69.0	56.3	9.9
		발급 불가/모름	(9)	33.3	77.8	22.2
	신협	발급 가능	(68)	70.6	42.6	5.9
		발급 불가/모름	(9)	55.6	55.6	22.2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70)	62.9	54.3	10.0
		발급 불가/모름	(9)	100.0	22.2	0.0
수협	발급 가능	(72)	56.9	47.2	4.2	
	발급 불가/모름	(8)	87.5	12.5	12.5	

〈부록 표 2-27〉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과 관련된 인지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인지세 지불 여부가 은행과 예금·적금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율이 낮아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09)	67.9	45.9	5.5
	4~6등급	(71)	63.4	45.1	4.2
	7~10등급	(105)	65.7	56.2	15.2
	모름	(31)	58.1	48.4	3.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3)	69.2	38.5	7.7
	3,000만~5,000만원 미만	(70)	72.9	38.6	2.9
	5,000만~7,000만원 미만	(111)	55.9	55.0	13.5
	7,000만~10,000만원 미만	(79)	62.0	53.2	5.1
	10,000만원 이상	(43)	81.4	48.8	9.3

〈부록 표 2-28〉 제1항 제6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도 예적금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전체		(87)	82.8	48.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24)	87.5	54.2	
	신협	(35)	82.9	51.4	
	새마을금고	(34)	73.5	55.9	
	수협	(21)	95.2	4.8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23)	87.0	56.5
		준조합원	(1)	100.0	0.0
	신협	지역	(27)	81.5	51.9
		직장	(8)	87.5	50.0
	새마을 금고	지역	(33)	72.7	57.6
		직장	(1)	100.0	0.0
	수협	조합원	(20)	95.0	5.0
		준조합원	(1)	10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68)	82.4	51.5	
	2개 이상 조합 가입	(19)	84.2	36.8	
성	남자	(49)	81.6	40.8	
	여자	(38)	84.2	57.9	
연령	19-39세	(16)	93.8	43.8	
	40-59세	(36)	75.0	44.4	
	60세 이상	(35)	85.7	54.3	
권역	서울/경기/인천	(53)	81.1	62.3	
	대전/충청	(18)	94.4	16.7	
	광주/전라	(6)	33.3	83.3	
	부산/울산/경남	(10)	100.0	1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00.0	25.0	
	고등학교 졸업	(49)	77.6	51.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10)	90.0	50.0	
	대학교(4년제) 졸업	(24)	87.5	45.8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19)	89.5	63.2
		발급 불가/모름	(1)	100.0	0.0
	신협	발급 가능	(21)	81.0	57.1
		발급 불가/모름	(3)	66.7	66.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22)	68.2	63.6
		발급 불가/모름	(1)	100.0	100.0
	수협	발급 가능	(16)	93.8	6.3
		발급 불가/모름	(4)	100.0	0.0

〈부록 표 2-2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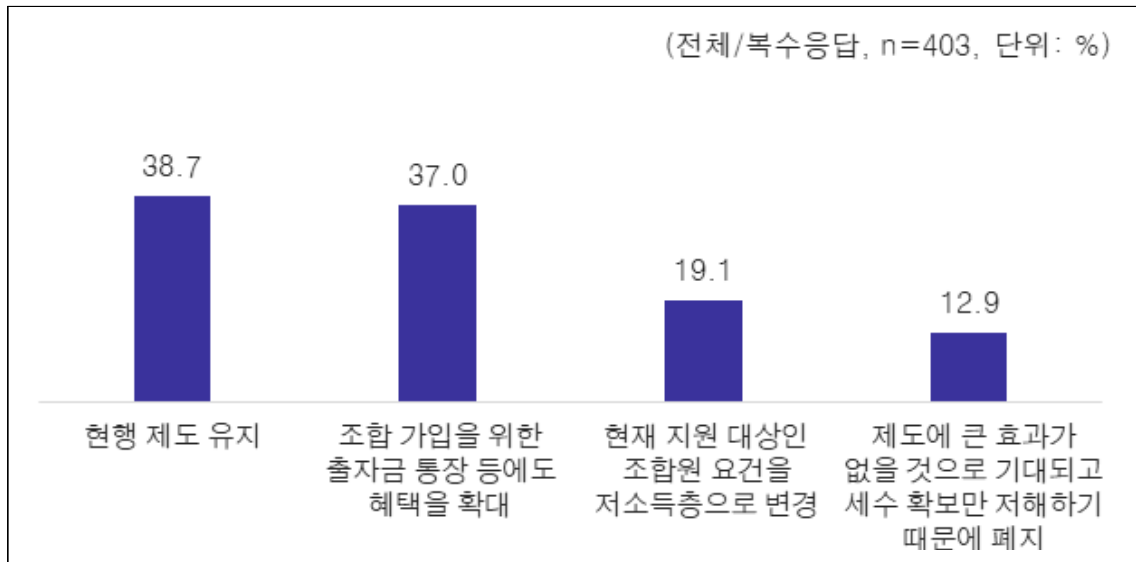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도 예적금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4)	78.6	28.6
	4~6등급	(45)	82.2	66.7
	7~10등급	(14)	71.4	50.0
	모름	(14)	100.0	7.1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5)	80.0	60.0
	3,000만~5,000만원 미만	(18)	83.3	38.9
	5,000만~7,000만원 미만	(33)	84.8	48.5
	7,000만~10,000만원 미만	(18)	72.2	50.0
	10,000만원 이상	(13)	92.3	53.8

## 5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

-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현행 제도 유지’(38.7%),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37.0%)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혜택 유지/확대에 대한 니즈가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혜택 확대(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 확대) (45.7%)에 대한 니즈, 수협 가입자에서 유지(49.5%)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20]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



-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혜택 유지/확대 응답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부록 표 2-29〉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행 제도 유지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전체	(403)	38.7	37.0	19.1	12.9	
제1항 제6호 실제 혜택의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319)	35.4	34.8	18.2	16.3
	도움됨	(84)	51.2	45.2	22.6	0.0

〈부록 표 2-30〉 제1항 제6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행 제도 유지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전체		(403)	38.7	37.0	19.1	12.9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31.0	45.7	19.0	12.1	
	신협	(120)	40.8	39.2	23.3	8.3	
	새마을금고	(130)	40.0	39.2	18.5	11.5	
	수협	(101)	49.5	23.8	13.9	17.8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8.8	46.8	18.9	12.6
		준조합원	(5)	80.0	20.0	20.0	0.0
	신협	지역	(107)	39.3	41.1	24.3	7.5
		직장	(14)	50.0	21.4	21.4	14.3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9.8	39.8	18.7	11.4
		직장	(7)	42.9	28.6	14.3	14.3
	수협	조합원	(100)	50.0	23.0	14.0	18.0
		준조합원	(1)	0.0	10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37.2	36.9	19.4	13.5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50.0	37.5	16.7	8.3	
성	남자	(203)	38.4	38.9	19.2	10.8	
	여자	(200)	39.0	35.0	19.0	15.0	
연령	19-39세	(84)	45.2	36.9	15.5	9.5	
	40-59세	(158)	33.5	38.6	19.6	15.2	
	60세 이상	(161)	40.4	35.4	20.5	12.4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7.1	31.8	24.5	17.9	
	대전/충청	(63)	46.0	39.7	15.9	6.3	
	광주/전라	(65)	46.2	40.0	18.5	1.5	
	대구/경북	(30)	60.0	33.3	3.3	3.3	
	부산/울산/경남	(94)	24.5	42.6	18.1	20.2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37.0	44.4	22.2	11.1	
	고등학교 졸업	(198)	42.9	35.4	17.2	11.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32.1	43.2	18.5	12.3	
	대학교(4년제) 졸업	(97)	36.1	33.0	22.7	16.5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6.7	44.4	18.9	15.6
		발급 불가/모름	(10)	20.0	70.0	20.0	0.0
	신협	발급 가능	(89)	38.2	38.2	25.8	10.1
		발급 불가/모름	(12)	41.7	41.7	25.0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5.9	41.3	18.5	12.0
		발급 불가/모름	(10)	80.0	20.0	10.0	0.0
	수협	발급 가능	(88)	53.4	21.6	14.8	15.9
		발급 불가/모름	(12)	25.0	33.3	8.3	33.3

〈부록 표 2-3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행 제도 유지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34.1	27.6	26.0	16.3
	4~6등급	(116)	43.1	37.9	24.1	8.6
	7~10등급	(119)	41.2	42.9	6.7	14.3
	모름	(45)	33.3	44.4	20.0	11.1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0.0	27.8	11.1	1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42.0	38.6	17.0	8.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41.7	34.0	19.4	13.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7.1	27.8	23.7	18.6
	10,000만원 이상	(56)	25.0	60.7	16.1	10.7

##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7호, 제11호

###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 제11호

#### 제7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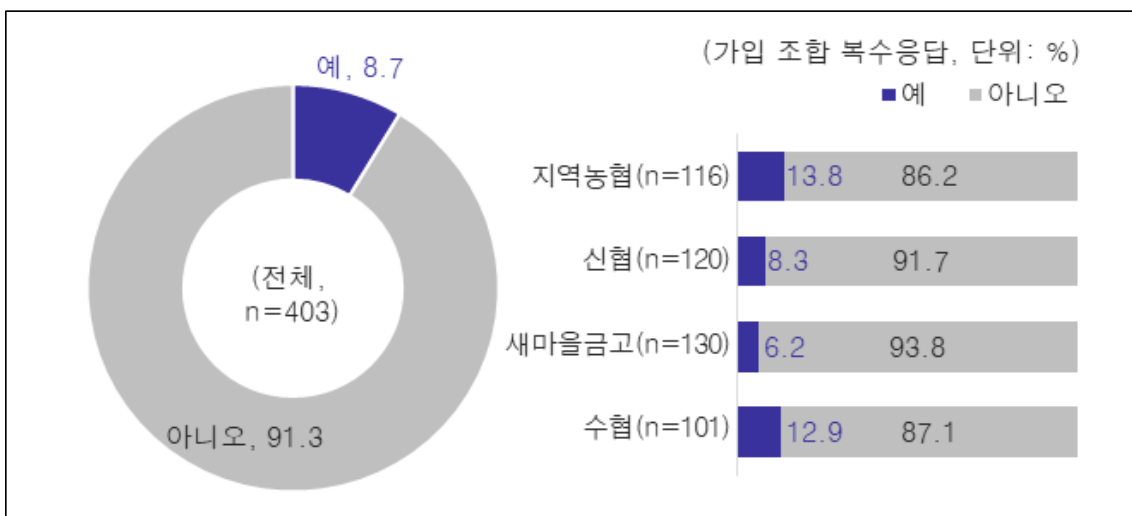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1. 제1항 제7호, 제11호 인지 여부

### 1)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7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지도는 지역농협(13.8%), 수협(12.9%), 신협(8.3%), 새마을금고(6.2%)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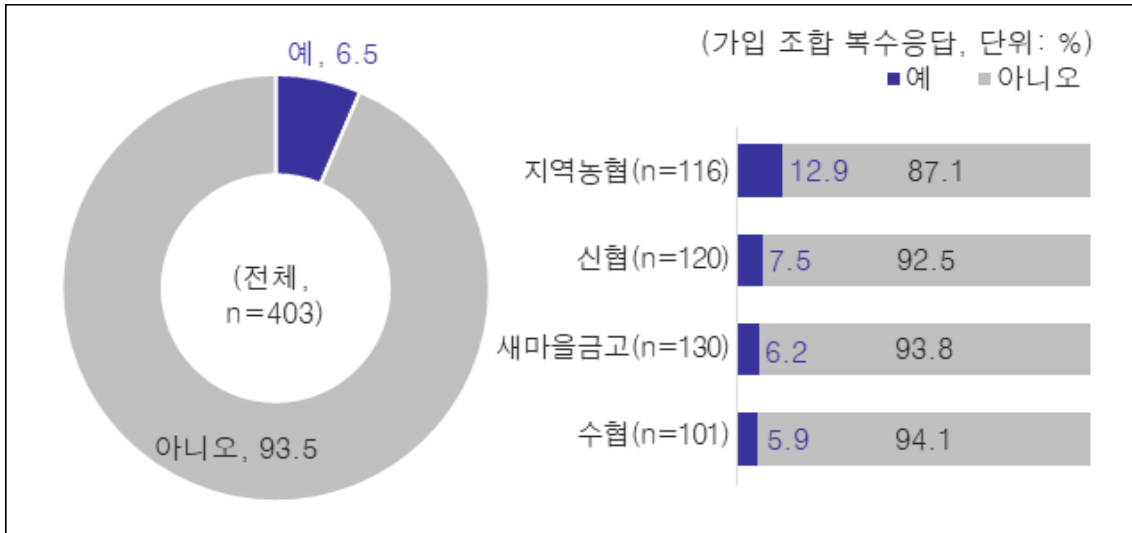
[부록 그림 2-21]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 2)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11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6.5%로 나타남
- 지역농협 가입자의 경우, 12.9%가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

[부록 그림 2-22]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부록 표 2-31〉 제1항 제7호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8.7	91.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3.8	86.2	
	신협	(120)	8.3	91.7	
	새마을금고	(130)	6.2	93.8	
	수협	(101)	12.9	87.1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4.4	85.6
		준조합원	(5)	0.0	100.0
	신협	지역	(107)	9.3	90.7
		직장	(14)	0.0	10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6.5	93.5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13.0	87.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7.9	92.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4.6	85.4	
성	남자	(203)	12.8	87.2	
	여자	(200)	4.5	95.5	
연령	19~39세	(84)	6.0	94.0	
	40~59세	(158)	10.1	89.9	
	60세 이상	(161)	8.7	91.3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6	95.4	
	대전/충청	(63)	0.0	100.0	
	광주/전라	(65)	3.1	96.9	
	대구/경북	(30)	20.0	80.0	
	부산/울산/경남	(94)	21.3	78.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88.9	
	고등학교 졸업	(198)	7.1	92.9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8.6	91.4	
	대학교(4년제) 졸업	(97)	11.3	88.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3.3	86.7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신협	발급 가능	(89)	5.6	94.4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3	96.7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88)	14.8	85.2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8.1	91.9	
	4~6등급	(116)	15.5	84.5	
	7~10등급	(119)	5.9	94.1	
	모름	(45)	0.0	1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6	94.4	
	3,000만~5,000만원 미만	(88)	9.1	90.9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7.6	92.4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0.3	89.7	
	10,000만원 이상	(56)	8.9	91.1	

〈부록 표 2-32〉 제1항 제11호 인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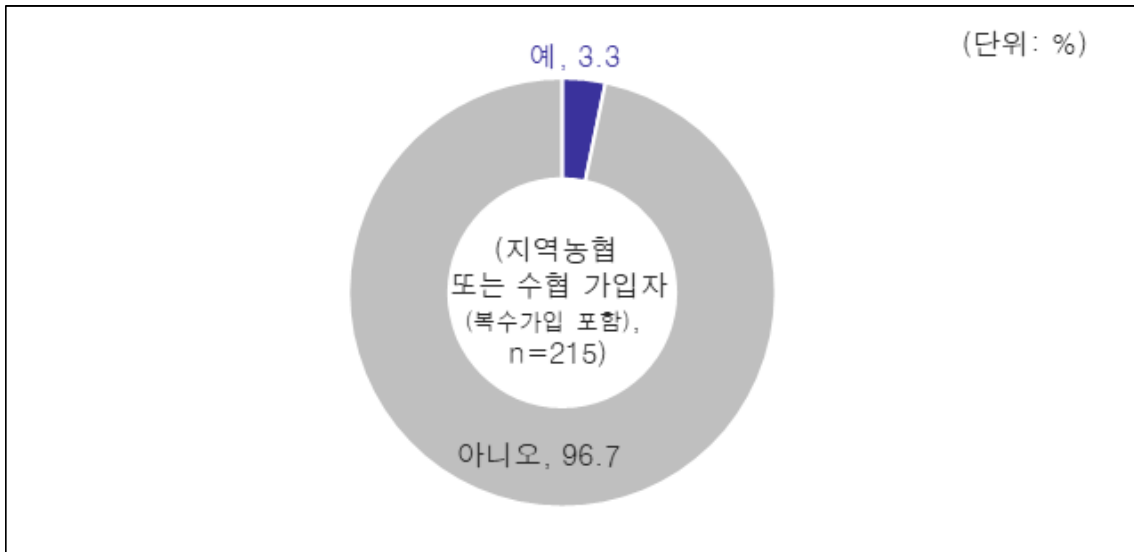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6.5	93.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2.9	87.1	
	신협	(120)	7.5	92.5	
	새마을금고	(130)	6.2	93.8	
	수협	(101)	5.9	94.1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3.5	86.5
		준조합원	(5)	0.0	100.0
	신협	지역	(107)	8.4	91.6
		직장	(14)	0.0	10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6.5	93.5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6.0	94.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5.4	94.6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4.6	85.4	
성	남자	(203)	8.9	91.1	
	여자	(200)	4.0	96.0	
연령	19~39세	(84)	1.2	98.8	
	40~59세	(158)	8.2	91.8	
	60세 이상	(161)	7.5	92.5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6	95.4	
	대전/충청	(63)	0.0	100.0	
	광주/전라	(65)	3.1	96.9	
	대구/경북	(30)	20.0	80.0	
	부산/울산/경남	(94)	11.7	88.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1.1	88.9	
	고등학교 졸업	(198)	5.6	94.4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8.6	91.4	
	대학교(4년제) 졸업	(97)	5.2	94.8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2.2	87.8
		발급 불가/모름	(10)	20.0	80.0
	신협	발급 가능	(89)	4.5	95.5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3	96.7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88)	6.8	93.2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5.7	94.3	
	4~6등급	(116)	11.2	88.8	
	7~10등급	(119)	5.0	95.0	
	모름	(45)	0.0	1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6	94.4	
	3,000만~5,000만원 미만	(88)	8.0	92.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9	93.1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4.1	95.9	
	10,000만원 이상	(56)	7.1	92.9	

## 2.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 1)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 지역농협 또는 수협 가입자(n=215)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 경험을 질문한 결과, 3.3%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부록 그림 2-23]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수혜 경험은 20% 남짓한 수준으로 나타남

〈부록 표 2-33〉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5)	3.3	96.7
제1항 제7호 인지	(29)	20.7	79.3
제1항 제11호 인지	(21)	19.0	81.0

〈부록 표 2-34〉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5)	3.3	96.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7	98.3	
	신협	(23)	8.7	91.3	
	새마을금고	(26)	7.7	92.3	
	수협	(101)	5.0	95.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8	98.2
		준조합원	(5)	0.0	100.0
	신협	지역	(22)	9.1	90.9
		직장	(1)	0.0	100.0
	새마을금고	지역	(26)	7.7	92.3
	수협	조합원	(100)	5.0	95.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80)	2.8	97.2	
	2개 이상 조합 가입	(35)	5.7	94.3	
성	남자	(118)	5.1	94.9	
	여자	(97)	1.0	99.0	
연령	19~39세	(35)	5.7	94.3	
	40~59세	(81)	0.0	100.0	
	60세 이상	(99)	5.1	94.9	
권역	서울/경기/인천	(55)	1.8	98.2	
	대전/충청	(43)	0.0	100.0	
	광주/전라	(44)	2.3	97.7	
	대구/경북	(20)	5.0	95.0	
	부산/울산/경남	(53)	7.5	92.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6)	6.3	93.8	
	고등학교 졸업	(116)	3.4	96.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41)	0.0	100.0	
	대학교(4년제) 졸업	(42)	4.8	95.2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1	98.9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신협	발급 가능	(6)	16.7	83.3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5)	0.0	100.0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88)	5.7	94.3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3)	0.0	100.0	
	4~6등급	(76)	7.9	92.1	
	7~10등급	(56)	1.8	98.2	
	모름	(30)	0.0	100.0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8)	0.0	100.0	
	3,000만~5,000만원 미만	(49)	2.0	98.0	
	5,000만~7,000만원 미만	(77)	2.6	97.4	
	7,000만~10,000만원 미만	(51)	3.9	96.1	
	10,000만원 이상	(30)	6.7	93.3	

## 2)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금액

-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n=7)의 경우,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6건, ‘농어촌 정비사업’ 2건,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지조성사업’ 각 1건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수혜 금액은 7만원이 다수였으며, ‘농어촌정비사업’에서 15만원 수혜 경험 1건 나타남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재산권 증가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7만원임을 감안하였을 때, 수혜자의 재산권 증가분이 1억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부록 표 2-35〉 제1항 제7호, 제11호 항목별 수혜 금액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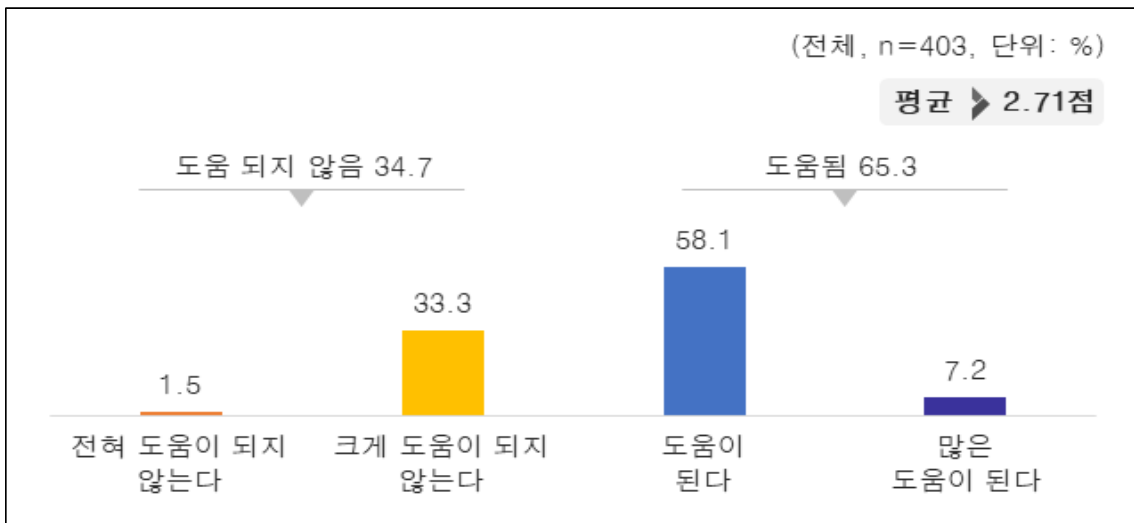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7만원	15만원
제1항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	(2)	50.0	50.0
	농지은행사업	(1)	100.0	-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1)	100.0	-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6)	100.0	-
제1항 제11호	농지조성사업	(1)	100.0	-

※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 필요

### 3.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

-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인지세 면제 혜택이 각종 농어촌 사업 참여 유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65.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많은 도움이 된다 7.2%+도움이 된다 58.1%)
- 수협 가입자의 경우, 도움됨(79.2%) 응답 비율이 타 조합 가입자 대비 높게 나타남
-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71점임

[부록 그림 2-24]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



- 수혜자(n=7)의 경우,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부록 표 2-36〉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5	33.3	58.1	7.2	34.7	65.3	2.71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예	(7)	0.0	0.0	57.1	42.9	0.0	100.0	3.43
	아니오	(396)	1.5	33.8	58.1	6.6	35.4	64.6	2.70

〈부록 표 2-37〉 제1항 제7호, 제11호의 사업 참여 유도 효과(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5	33.3	58.1	7.2	34.7	65.3	2.71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6	37.9	50.9	8.6	40.5	59.5	2.66	
	신협	(120)	0.8	35.8	59.2	4.2	36.7	63.3	2.67	
	새마을금고	(130)	1.5	33.1	60.0	5.4	34.6	65.4	2.69	
	수협	(101)	1.0	19.8	69.3	9.9	20.8	79.2	2.88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7	38.7	49.5	9.0	41.4	58.6	2.65
		준조합원	(5)	0.0	20.0	80.0	0.0	20.0	80.0	2.80
	신협	지역	(107)	0.9	38.3	56.1	4.7	39.3	60.7	2.64
		직장	(14)	0.0	21.4	78.6	0.0	21.4	78.6	2.79
	새마을 금고	지역	(123)	1.6	31.7	61.0	5.7	33.3	66.7	2.71
		직장	(7)	0.0	57.1	42.9	0.0	57.1	42.9	2.43
	수협	조합원	(100)	1.0	20.0	69.0	10.0	21.0	79.0	2.88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4	34.1	56.9	7.6	35.5	64.5	2.7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1	27.1	66.7	4.2	29.2	70.8	2.73	
성	남자	(203)	2.0	35.0	55.2	7.9	36.9	63.1	2.69	
	여자	(200)	1.0	31.5	61.0	6.5	32.5	67.5	2.73	
연령	19~39세	(84)	0.0	41.7	52.4	6.0	41.7	58.3	2.64	
	40~59세	(158)	1.3	31.0	59.5	8.2	32.3	67.7	2.75	
	60세 이상	(161)	2.5	31.1	59.6	6.8	33.5	66.5	2.71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3	40.4	53.6	2.6	43.7	56.3	2.56	
	대전/충청	(63)	0.0	11.1	88.9	0.0	11.1	88.9	2.89	
	광주/전라	(65)	0.0	20.0	55.4	24.6	20.0	80.0	3.05	
	대구/경북	(30)	0.0	63.3	36.7	0.0	63.3	36.7	2.37	
	부산/울산/경남	(94)	1.1	36.2	53.2	9.6	37.2	62.8	2.7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25.9	59.3	14.8	25.9	74.1	2.89	
	고등학교 졸업	(198)	1.0	27.3	66.7	5.1	28.3	71.7	2.7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0.0	45.7	46.9	7.4	45.7	54.3	2.62	
	대학교(4년제) 졸업	(97)	4.1	37.1	49.5	9.3	41.2	58.8	2.64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3.3	38.9	48.9	8.9	42.2	57.8	2.63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60.0	20.0	20.0	80.0	3.00
	신협	발급 가능	(89)	1.1	37.1	58.4	3.4	38.2	61.8	2.64
		발급 불가/모름	(12)	0.0	50.0	50.0	0.0	50.0	50.0	2.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1	38.0	55.4	5.4	39.1	60.9	2.65
		발급 불가/모름	(10)	0.0	30.0	60.0	10.0	30.0	70.0	2.80
	수협	발급 가능	(88)	1.1	19.3	69.3	10.2	20.5	79.5	2.89
		발급 불가/모름	(12)	0.0	25.0	66.7	8.3	25.0	75.0	2.83

〈부록 표 2-37〉의 계속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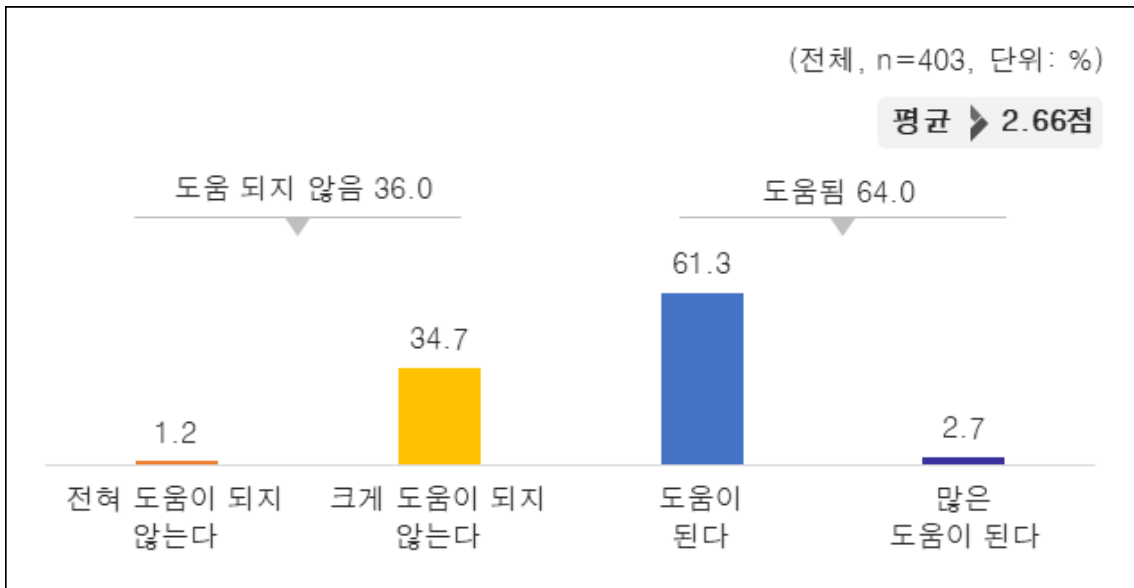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	52.0	43.1	3.3	53.7	46.3	2.48
	4~6등급	(116)	1.7	21.6	69.0	7.8	23.3	76.7	2.83
	7~10등급	(119)	1.7	32.8	52.1	13.4	34.5	65.5	2.77
	모름	(45)	0.0	13.3	86.7	0.0	13.3	86.7	2.87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38.9	55.6	5.6	38.9	61.1	2.67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1	28.4	62.5	8.0	29.5	70.5	2.77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8	29.9	59.7	7.6	32.6	67.4	2.7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1.0	42.3	49.5	7.2	43.3	56.7	2.63
	10,000만원 이상	(56)	0.0	32.1	62.5	5.4	32.1	67.9	2.73

#### 4. 제1항 제7호, 제11호의 혜택

##### 1)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7호, 제 11호 혜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많은 도움이 된다 2.7%+도움이 된다 61.3%)
- 제1항 제7호, 제11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4점 평균 환산 점수는 2.66점임

[부록 그림 2-25]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부록 표 2-38〉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 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2	34.7	61.3	2.7	36.0	64.0	2.66	
제1항 제7호, 제11호 수혜 여부	예	(7)	0.0	0.0	57.1	42.9	0.0	100.0	3.43
	아니오	(396)	1.3	35.4	61.4	2.0	36.6	63.4	2.64
제1항 제7호, 제11호 사업 참여 유도 효과	도움되지 않음	(140)	3.6	93.6	2.1	0.7	97.1	2.9	2.00
	도움됨	(263)	0.0	3.4	92.8	3.8	3.4	96.6	3.00

〈부록 표 2-39〉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2	34.7	61.3	2.7	36.0	64.0	2.66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7	37.1	58.6	2.6	38.8	61.2	2.62	
	신협	(120)	0.8	37.5	59.2	2.5	38.3	61.7	2.63	
	새마을금고	(130)	1.5	34.6	62.3	1.5	36.2	63.8	2.64	
	수협	(101)	1.0	22.8	70.3	5.9	23.8	76.2	2.81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8	37.8	57.7	2.7	39.6	60.4	2.61
		준조합원	(5)	0.0	20.0	80.0	0.0	20.0	80.0	2.80
	신협	지역	(107)	0.9	39.3	57.0	2.8	40.2	59.8	2.62
		직장	(14)	0.0	28.6	71.4	0.0	28.6	71.4	2.71
	새마을 금고	지역	(123)	1.6	33.3	63.4	1.6	35.0	65.0	2.65
		직장	(7)	0.0	57.1	42.9	0.0	57.1	42.9	2.43
	수협	조합원	(100)	1.0	23.0	70.0	6.0	24.0	76.0	2.81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1	35.8	60.6	2.5	36.9	63.1	2.65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1	27.1	66.7	4.2	29.2	70.8	2.73	
성	남자	(203)	1.5	36.5	59.1	3.0	37.9	62.1	2.64	
	여자	(200)	1.0	33.0	63.5	2.5	34.0	66.0	2.68	
연령	19~39세	(84)	0.0	41.7	56.0	2.4	41.7	58.3	2.61	
	40~59세	(158)	1.3	32.9	63.9	1.9	34.2	65.8	2.66	
	60세 이상	(161)	1.9	32.9	61.5	3.7	34.8	65.2	2.67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2.6	41.1	54.3	2.0	43.7	56.3	2.56	
	대전/충청	(63)	0.0	17.5	82.5	0.0	17.5	82.5	2.83	
	광주/전라	(65)	0.0	16.9	78.5	4.6	16.9	83.1	2.88	
	대구/경북	(30)	0.0	63.3	36.7	0.0	63.3	36.7	2.37	
	부산/울산/경남	(94)	1.1	39.4	54.3	5.3	40.4	59.6	2.6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33.3	55.6	11.1	33.3	66.7	2.78	
	고등학교 졸업	(198)	1.0	29.3	68.2	1.5	30.3	69.7	2.7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0.0	43.2	54.3	2.5	43.2	56.8	2.59	
	대학교(4년제) 졸업	(97)	3.1	39.2	54.6	3.1	42.3	57.7	2.58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2	37.8	56.7	3.3	40.0	60.0	2.61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80.0	0.0	20.0	80.0	2.80
	신협	발급 가능	(89)	1.1	39.3	58.4	1.1	40.4	59.6	2.60
		발급 불가/모름	(12)	0.0	50.0	50.0	0.0	50.0	50.0	2.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1	39.1	59.8	0.0	40.2	59.8	2.59
		발급 불가/모름	(10)	0.0	40.0	50.0	10.0	40.0	60.0	2.70
	수협	발급 가능	(88)	1.1	21.6	71.6	5.7	22.7	77.3	2.82
		발급 불가/모름	(12)	0.0	33.3	58.3	8.3	33.3	66.7	2.75

〈부록 표 2-39〉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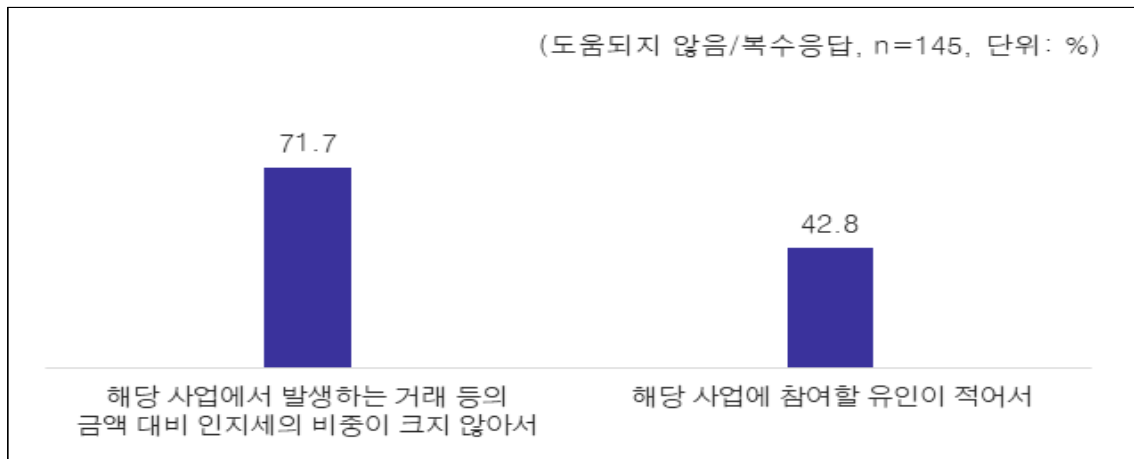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	52.8	43.9	1.6	54.5	45.5	2.46
	4~6등급	(116)	1.7	20.7	73.3	4.3	22.4	77.6	2.80
	7~10등급	(119)	0.8	34.5	61.3	3.4	35.3	64.7	2.67
	모름	(45)	0.0	22.2	77.8	0.0	22.2	77.8	2.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44.4	50.0	5.6	44.4	55.6	2.6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0.0	30.7	65.9	3.4	30.7	69.3	2.73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1	31.3	65.3	1.4	33.3	66.7	2.66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1	41.2	53.6	3.1	43.3	56.7	2.58
	10,000만원 이상	(56)	0.0	35.7	60.7	3.6	35.7	64.3	2.68

## 2) 제1항 제7호, 제11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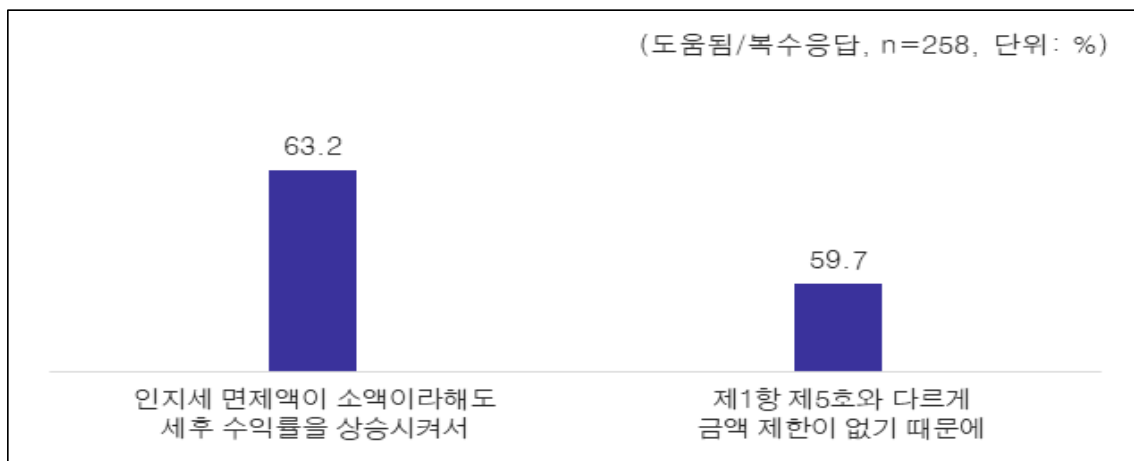
-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의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71.7%)를 주 이유로 꼽음
- 다음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서'는 42.8%로 나타남

[부록 그림 2-26]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 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63.2%),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59.7%) 순으로 이유를 꼽았음
- 수협 가입자의 경우,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76.6%)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부록 그림 2-27]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는 이유



〈부록 표 2-40〉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의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서	
전체		(145)	71.7	42.8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45)	80.0	37.8	
	신협	(46)	65.2	50.0	
	새마을금고	(47)	68.1	40.4	
	수협	(24)	75.0	37.5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44)	79.5	38.6
		준조합원	(1)	100.0	0.0
	신협	지역	(43)	67.4	48.8
		직장	(4)	25.0	75.0
	새마을 금고	지역	(43)	69.8	39.5
		직장	(4)	50.0	50.0
	수협	조합원	(24)	75.0	37.5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31)	72.5	42.7	
	2개 이상 조합 가입	(14)	64.3	42.9	
성	남자	(77)	80.5	35.1	
	여자	(68)	61.8	51.5	
연령	19~39세	(35)	65.7	45.7	
	40~59세	(54)	68.5	40.7	
	60세 이상	(56)	78.6	42.9	
권역	서울/경기/인천	(66)	68.2	45.5	
	대전/충청	(11)	72.7	54.5	
	광주/전라	(11)	63.6	45.5	
	대구/경북	(19)	73.7	36.8	
	부산/울산/경남	(38)	78.9	36.8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	66.7	44.4	
	고등학교 졸업	(60)	70.0	36.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35)	65.7	48.6	
	대학교(4년제) 졸업	(41)	80.5	46.3	

〈부록 표 2-4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의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서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36)	77.8	44.4
		발급 불가/모름	(2)	100.0	0.0
	신협	발급 가능	(36)	61.1	52.8
		발급 불가/모름	(6)	83.3	33.3
	새마을금고	발급 가능	(37)	70.3	40.5
		발급 불가/모름	(4)	75.0	25.0
	수협	발급 가능	(20)	80.0	35.0
		발급 불가/모름	(4)	50.0	5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67)	67.2	44.8
	4~6등급		(26)	73.1	46.2
	7~10등급		(42)	81.0	38.1
	모름		(10)	60.0	4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8)	62.5	37.5
	3,000만~5,000만원 미만		(27)	70.4	51.9
	5,000만~7,000만원 미만		(48)	66.7	47.9
	7,000만~10,000만원 미만		(42)	73.8	45.2
	10,000만원 이상		(20)	85.0	15.0

〈부록 표 2-41〉 제1항 제7호, 제11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체		(258)	63.2	59.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71)	73.2	60.6	
	신협	(74)	79.7	55.4	
	새마을금고	(83)	74.7	50.6	
	수협	(77)	32.5	76.6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67)	76.1	59.7
		준조합원	(4)	25.0	75.0
	신협	지역	(64)	81.3	51.6
		직장	(10)	70.0	80.0
	새마을 금고	지역	(80)	73.8	52.5
		직장	(3)	100.0	0.0
	수협	조합원	(76)	31.6	77.6
		준조합원	(1)	10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224)	61.6	58.9	
	2개 이상 조합 가입	(34)	73.5	64.7	
성	남자	(126)	58.7	61.1	
	여자	(132)	67.4	58.3	
연령	19~39세	(49)	59.2	55.1	
	40~59세	(104)	66.3	54.8	
	60세 이상	(105)	61.9	66.7	
권역	서울/경기/인천	(85)	75.3	61.2	
	대전/충청	(52)	50.0	78.8	
	광주/전라	(54)	72.2	33.3	
	대구/경북	(11)	72.7	81.8	
	부산/울산/경남	(56)	46.4	60.7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8)	72.2	61.1	
	고등학교 졸업	(138)	58.0	63.8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46)	71.7	47.8	
	대학교(4년제) 졸업	(56)	66.1	58.9	

〈부록 표 2-41〉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54)	74.1	61.1
		발급 불가/모름	(8)	87.5	50.0
	신협	발급 가능	(53)	81.1	52.8
		발급 불가/모름	(6)	83.3	5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55)	70.9	45.5
		발급 불가/모름	(6)	83.3	33.3
	수협	발급 가능	(68)	35.3	75.0
		발급 불가/모름	(8)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6)	60.7	50.0
	4~6등급		(90)	65.6	70.0
	7~10등급		(77)	67.5	50.6
	모름		(35)	51.4	68.6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0)	80.0	70.0
	3,000만~5,000만원 미만		(61)	65.6	62.3
	5,000만~7,000만원 미만		(96)	63.5	56.3
	7,000만~10,000만원 미만		(55)	52.7	63.6
	10,000만원 이상		(36)	69.4	55.6

##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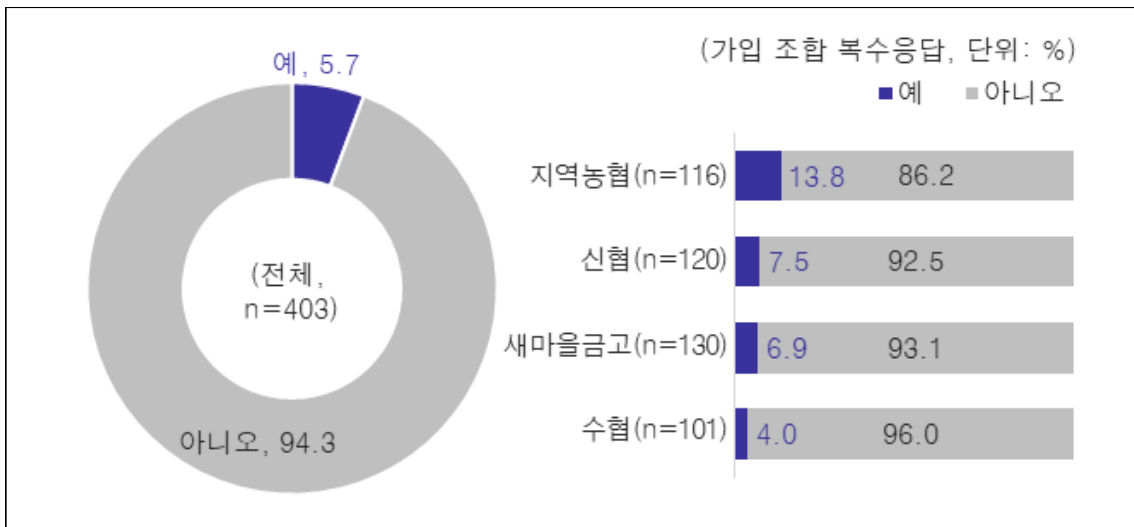
###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9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와 관련된 인지세 면제

### 1.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 인지세의 면제 제1항 제9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7%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농협 가입자에서 인지 수준 13.8%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의 경우, 10% 미만임

[부록 그림 2-28]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부록 표 2-42〉 제1항 제9호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3)	5.7	94.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3.8	86.2
	신협	(120)	7.5	92.5
	새마을금고	(130)	6.9	93.1
	수협	(101)	4.0	96.0

〈부록 표 2-4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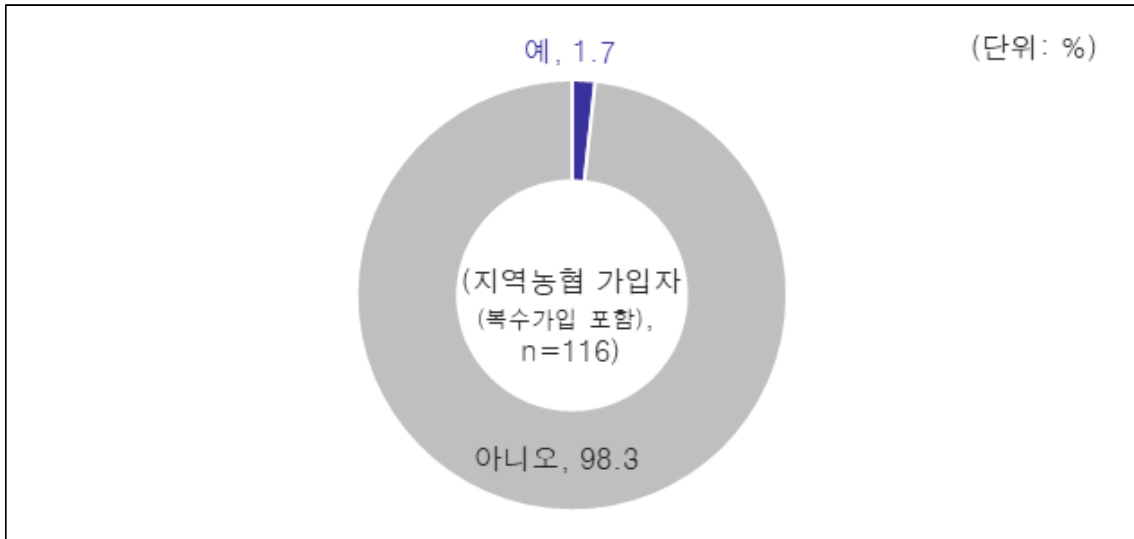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3.5	86.5
		준조합원	(5)	20.0	80.0
	신협	지역	(107)	8.4	91.6
		직장	(14)	0.0	10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7.3	92.7
		직장	(7)	0.0	100.0
	수협	조합원	(100)	4.0	96.0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3.9	96.1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8.8	81.3	
성	남자	(203)	7.9	92.1	
	여자	(200)	3.5	96.5	
연령	19~39세	(84)	2.4	97.6	
	40~59세	(158)	5.7	94.3	
	60세 이상	(161)	7.5	92.5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0	96.0	
	대전/충청	(63)	1.6	98.4	
	광주/전라	(65)	1.5	98.5	
	대구/경북	(30)	20.0	80.0	
	부산/울산/경남	(94)	9.6	90.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4.8	85.2	
	고등학교 졸업	(198)	4.0	96.0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8.6	91.4	
	대학교(4년제) 졸업	(97)	4.1	95.9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2.2	87.8
		발급 불가/모름	(10)	10.0	90.0
	신협	발급 가능	(89)	3.4	96.6
		발급 불가/모름	(12)	8.3	91.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3	96.7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88)	4.5	95.5
		발급 불가/모름	(12)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3.3	96.7	
	4~6등급	(116)	11.2	88.8	
	7~10등급	(119)	5.0	95.0	
	모름	(45)	0.0	1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6	94.4	
	3,000만~5,000만원 미만	(88)	8.0	92.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3	93.8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6.2	93.8	
	10,000만원 이상	(56)	0.0	100.0	

## 2. 제1항 제9호 수혜 여부

- 지역농협 가입자(n=116)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 경험을 질문한 결과, 1.7%만이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부록 그림 2-29] 제1항 제9호 수혜 여부



<부록 표 2-43> 제1항 제9호 수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16)	1.7	98.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7	98.3	
	신협	(22)	4.5	95.5	
	새마을금고	(21)	4.8	95.2	
	수협	(2)	0.0	100.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8	98.2
		준조합원	(5)	0.0	100.0
	신협	지역	(21)	4.8	95.2
		직장	(1)	0.0	100.0
	새마을금고	지역	(21)	4.8	95.2
	수협	조합원	(2)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87)	1.1	98.9	
	2개 이상 조합 가입	(29)	3.4	96.6	
성	남자	(69)	1.4	98.6	
	여자	(47)	2.1	97.9	

〈부록 표 2-43〉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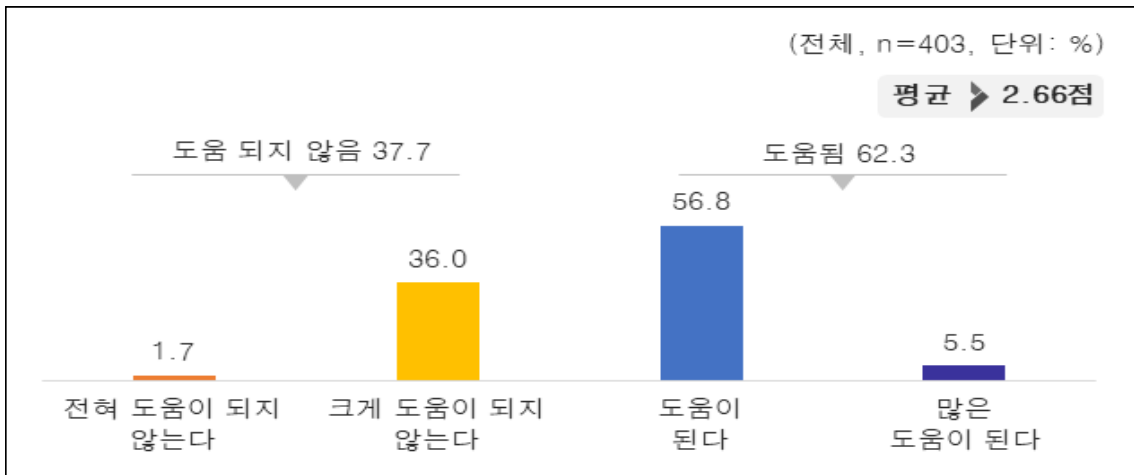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연령	19~39세	(13)	0.0	100.0	
	40~59세	(42)	2.4	97.6	
	60세 이상	(61)	1.6	98.4	
권역	서울/경기/인천	(54)	0.0	100.0	
	대전/충청	(10)	0.0	100.0	
	광주/전라	(10)	0.0	100.0	
	대구/경북	(20)	10.0	90.0	
	부산/울산/경남	(22)	0.0	10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	0.0	100.0	
	고등학교 졸업	(57)	1.8	98.2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29)	3.4	96.6	
	대학교(4년제) 졸업	(21)	0.0	10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1	98.9
		발급 불가/모름	(10)	0.0	100.0
	신협	발급 가능	(5)	20.0	80.0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5)	0.0	100.0
		발급 불가/모름	(2)	0.0	100.0
	수협	발급 가능	(2)	0.0	10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34)	0.0	100.0	
	4~6등급	(35)	2.9	97.1	
	7~10등급	(40)	2.5	97.5	
	모름	(7)	0.0	10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7)	0.0	100.0	
	3,000만~5,000만원 미만	(28)	0.0	100.0	
	5,000만~7,000만원 미만	(39)	5.1	94.9	
	7,000만~10,000만원 미만	(23)	0.0	100.0	
	10,000만원 이상	(19)	0.0	100.0	

### 3. 제1항 제9호의 혜택

#### 1)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9호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많은 도움이 된다 5.5%+도움이 된다 56.8%)
- 수협 가입자의 경우, 도움됨 응답 비율(78.2%)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부록 그림 2-30]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부록 표 2-44〉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전체	(403)	1.7	36.0	56.8	5.5	37.7	62.3	2.66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6	42.2	49.1	6.0	44.8	55.2	2.59	
	신협	(120)	0.8	37.5	54.2	7.5	38.3	61.7	2.68	
	새마을금고	(130)	2.3	37.7	55.4	4.6	40.0	60.0	2.62	
	수협	(101)	1.0	20.8	71.3	6.9	21.8	78.2	2.84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7	42.3	50.5	4.5	45.0	55.0	2.57
		준조합원	(5)	0.0	40.0	20.0	40.0	40.0	60.0	3.00
	신협	지역	(107)	0.9	39.3	51.4	8.4	40.2	59.8	2.67
		직장	(14)	0.0	28.6	71.4	0.0	28.6	71.4	2.71
	새마을금고	지역	(123)	2.4	36.6	56.1	4.9	39.0	61.0	2.63
		직장	(7)	0.0	57.1	42.9	0.0	57.1	42.9	2.43
	수협	조합원	(100)	1.0	21.0	71.0	7.0	22.0	78.0	2.84
		준조합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부록 표 2-4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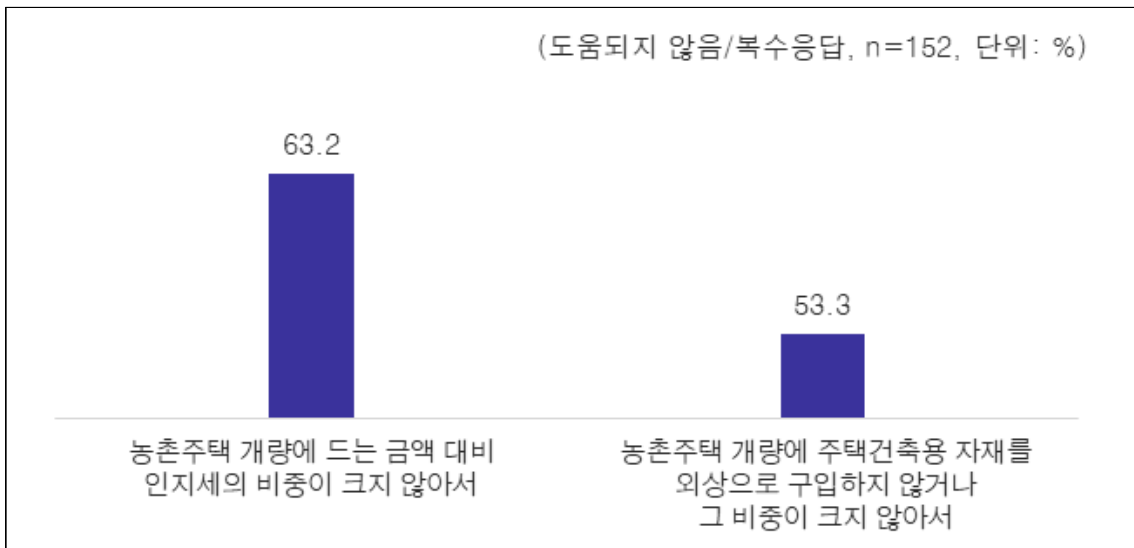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음	도움됨	평균 (4점)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7	36.6	56.9	4.8	38.3	61.7	2.65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1	31.3	56.3	10.4	33.3	66.7	2.75	
성	남자	(203)	1.5	36.5	56.7	5.4	37.9	62.1	2.66	
	여자	(200)	2.0	35.5	57.0	5.5	37.5	62.5	2.66	
연령	19~39세	(84)	2.4	38.1	56.0	3.6	40.5	59.5	2.61	
	40~59세	(158)	0.6	36.7	60.1	2.5	37.3	62.7	2.65	
	60세 이상	(161)	2.5	34.2	54.0	9.3	36.6	63.4	2.7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0	37.7	56.3	2.0	41.7	58.3	2.56	
	대전/충청	(63)	0.0	19.0	81.0	0.0	19.0	81.0	2.81	
	광주/전라	(65)	0.0	13.8	64.6	21.5	13.8	86.2	3.08	
	대구/경북	(30)	0.0	66.7	33.3	0.0	66.7	33.3	2.33	
	부산/울산/경남	(94)	1.1	50.0	43.6	5.3	51.1	48.9	2.5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18.5	55.6	25.9	18.5	81.5	3.07	
	고등학교 졸업	(198)	0.5	31.8	63.1	4.5	32.3	67.7	2.72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0.0	46.9	49.4	3.7	46.9	53.1	2.57	
	대학교(4년제) 졸업	(97)	6.2	40.2	50.5	3.1	46.4	53.6	2.51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3.3	43.3	47.8	5.6	46.7	53.3	2.56
		발급 불가/모름	(10)	0.0	20.0	80.0	0.0	20.0	80.0	2.80
	신협	발급 가능	(89)	1.1	40.4	53.9	4.5	41.6	58.4	2.62
		발급 불가/모름	(12)	0.0	33.3	41.7	25.0	33.3	66.7	2.92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42.4	53.3	2.2	44.6	55.4	2.55
		발급 불가/모름	(10)	0.0	40.0	50.0	10.0	40.0	60.0	2.70
	수협	발급 가능	(88)	1.1	20.5	71.6	6.8	21.6	78.4	2.84
		발급 불가/모름	(12)	0.0	25.0	66.7	8.3	25.0	75.0	2.83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0.8	53.7	43.1	2.4	54.5	45.5	2.47	
	4~6등급	(116)	0.9	25.0	67.2	6.9	25.9	74.1	2.80	
	7~10등급	(119)	4.2	33.6	52.9	9.2	37.8	62.2	2.67	
	모름	(45)	0.0	22.2	77.8	0.0	22.2	77.8	2.78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0.0	50.0	50.0	0.0	50.0	50.0	2.50	
	3,000만~5,000만원 미만	(88)	0.0	33.0	58.0	9.1	33.0	67.0	2.76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3.5	29.9	63.9	2.8	33.3	66.7	2.66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1	41.2	50.5	6.2	43.3	56.7	2.61	
	10,000만원 이상	(56)	0.0	42.9	50.0	7.1	42.9	57.1	2.64	

## 2)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응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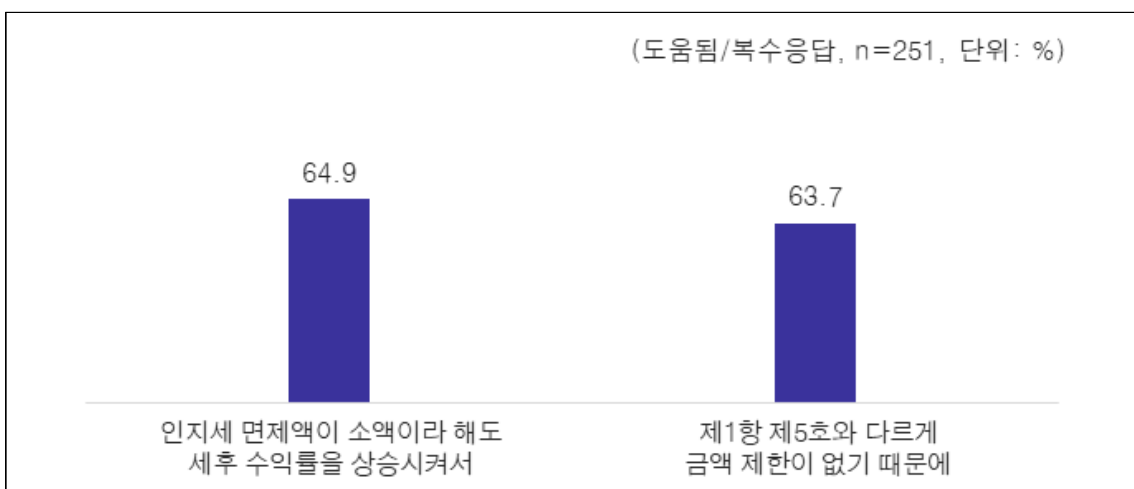
- 제1항 제9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농촌주택 개량에 드는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63.2%), '농촌주택 개량에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서'(53.3%)를 이유로 꼽음

[부록 그림 2-31] 제1항 제9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제1항 제9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 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64.9%), '제1항 제5호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63.7%)를 유사한 수준으로 꼽음

[부록 그림 2-32] 제1항 제9호, 도움되는 이유



〈부록 표 2-45〉 제1항 제9호, 도움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농촌주택 개량에 드는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농촌주택 개량에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전체		(152)	63.2	53.3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52)	65.4	57.7	
	신협	(46)	65.2	50.0	
	새마을금고	(52)	65.4	50.0	
	수협	(22)	40.9	63.6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50)	66.0	56.0
		준조합원	(2)	50.0	100.0
	신협	지역	(43)	65.1	51.2
		직장	(4)	75.0	25.0
	새마을 금고	지역	(48)	62.5	54.2
		직장	(4)	100.0	0.0
	수협	조합원	(22)	40.9	63.6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36)	64.0	52.2	
	2개 이상 조합 가입	(16)	56.3	62.5	
성	남자	(77)	62.3	58.4	
	여자	(75)	64.0	48.0	
연령	19~39세	(34)	67.6	47.1	
	40~59세	(59)	62.7	54.2	
	60세 이상	(59)	61.0	55.9	
권역	서울/경기/인천	(63)	73.0	44.4	
	대전/충청	(12)	50.0	66.7	
	광주/전라	(9)	55.6	44.4	
	대구/경북	(20)	75.0	50.0	
	부산/울산/경남	(48)	50.0	64.6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20.0	80.0	
	고등학교 졸업	(64)	64.1	45.3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38)	65.8	55.3	
	대학교(4년제) 졸업	(45)	64.4	6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42)	64.3	59.5
		발급 불가/모름	(2)	50.0	50.0
	신협	발급 가능	(37)	64.9	51.4
		발급 불가/모름	(4)	75.0	2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41)	73.2	46.3
		발급 불가/모름	(4)	50.0	50.0
	수협	발급 가능	(19)	47.4	57.9
		발급 불가/모름	(3)	0.0	100.0

〈부록 표 2-45〉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농촌주택 개량에 드는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농촌주택 개량에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지 않거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서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67)	61.2	52.2
	4~6등급	(30)	60.0	50.0
	7~10등급	(45)	68.9	57.8
	모름	(10)	60.0	50.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9)	33.3	66.7
	3,000만~5,000만원 미만	(29)	58.6	51.7
	5,000만~7,000만원 미만	(48)	68.8	50.0
	7,000만~10,000만원 미만	(42)	71.4	57.1
	10,000만원 이상	(24)	54.2	50.0

〈부록 표 2-46〉 제1항 제9호, 도움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체		(251)	64.9	63.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64)	67.2	75.0	
	신협	(74)	78.4	63.5	
	새마을금고	(78)	73.1	62.8	
	수협	(79)	46.8	64.6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61)	68.9	75.4
		준조합원	(3)	33.3	66.7
	신협	지역	(64)	78.1	62.5
		직장	(10)	80.0	70.0
	새마을 금고	지역	(75)	73.3	62.7
		직장	(3)	66.7	66.7
	수협	조합원	(78)	47.4	64.1
		준조합원	(1)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219)	63.9	61.6	
	2개 이상 조합 가입	(32)	71.9	78.1	
성	남자	(126)	64.3	63.5	
	여자	(125)	65.6	64.0	
연령	19~39세	(50)	72.0	58.0	
	40~59세	(99)	63.6	57.6	
	60세 이상	(102)	62.7	72.5	
권역	서울/경기/인천	(88)	73.9	65.9	
	대전/충청	(51)	58.8	72.5	
	광주/전라	(56)	83.9	37.5	
	대구/경북	(10)	60.0	100.0	
	부산/울산/경남	(46)	32.6	73.9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2)	72.7	63.6	
	고등학교 졸업	(134)	64.2	61.9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43)	74.4	60.5	
	대학교(4년제) 졸업	(52)	55.8	71.2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48)	66.7	81.3
		발급 불가/모름	(8)	87.5	37.5
	신협	발급 가능	(52)	73.1	61.5
		발급 불가/모름	(8)	100.0	62.5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51)	68.6	58.8
		발급 불가/모름	(6)	100.0	16.7
	수협	발급 가능	(69)	53.6	59.4
		발급 불가/모름	(9)	0.0	100.0

〈부록 표 2-46〉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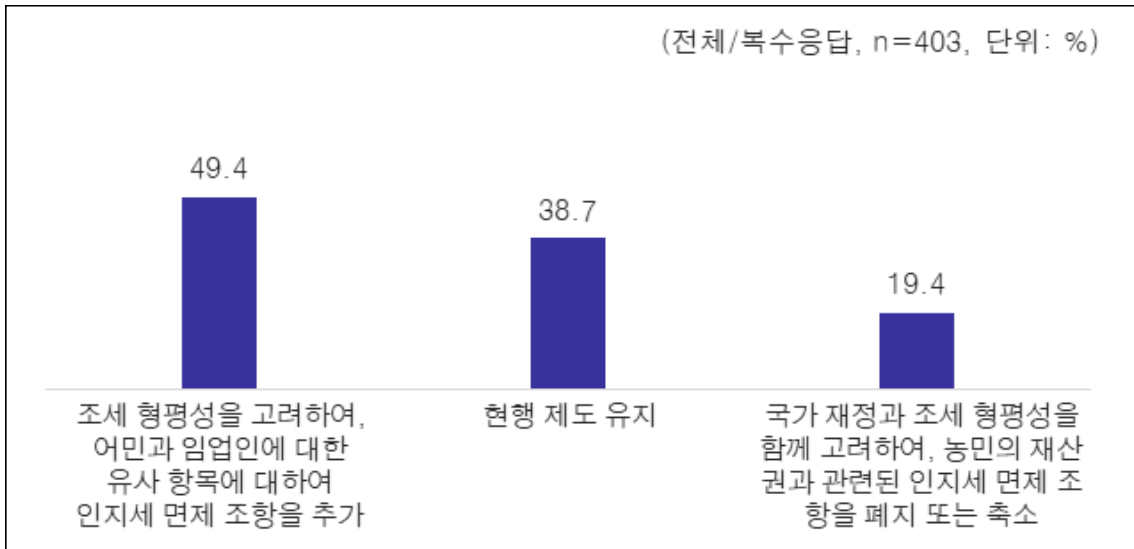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56)	50.0	69.6
	4~6등급	(86)	74.4	64.0
	7~10등급	(74)	71.6	59.5
	모름	(35)	51.4	62.9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9)	88.9	55.6
	3,000만~5,000만원 미만	(59)	69.5	67.8
	5,000만~7,000만원 미만	(96)	65.6	59.4
	7,000만~10,000만원 미만	(55)	52.7	72.7
	10,000만원 이상	(32)	68.8	56.3

#### 4.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

- 제1항 제9호의 개선 방안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가 49.4%로 가장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협 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한 응답이 4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33]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



〈부록 표 2-47〉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복수응답)(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	현행 제도 유지	국가 재정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농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	
전체	(403)	49.4	38.7	19.4	
제1항 제9호 혜택의 경제적 효과	도움되지 않음	(152)	52.6	28.9	23.0
	도움됨	(251)	47.4	44.6	17.1

〈부록 표 2-48〉 제1항 제9호 개선 방안(복수응답)(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	현행 제도 유지	국가 재정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농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	
전체		(403)	49.4	38.7	19.4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47.4	39.7	23.3	
	신협	(120)	47.5	40.0	23.3	
	새마을금고	(130)	42.3	41.5	23.1	
	수협	(101)	50.5	45.5	5.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45.9	40.5	24.3
		준조합원	(5)	80.0	20.0	0.0
	신협	지역	(107)	46.7	39.3	22.4
		직장	(14)	57.1	42.9	28.6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9.8	43.1	24.4
		직장	(7)	85.7	14.3	0.0
	수협	조합원	(100)	50.0	46.0	5.0
		준조합원	(1)	10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52.1	35.8	19.7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29.2	60.4	16.7	
성	남자	(203)	54.2	34.5	19.7	
	여자	(200)	44.5	43.0	19.0	
연령	19~39세	(84)	42.9	42.9	16.7	
	40~59세	(158)	55.7	31.6	20.9	
	60세 이상	(161)	46.6	43.5	19.3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8.3	33.8	23.2	
	대전/충청	(63)	46.0	54.0	6.3	
	광주/전라	(65)	52.3	40.0	24.6	
	대구/경북	(30)	10.0	83.3	6.7	
	부산/울산/경남	(94)	63.8	21.3	22.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51.9	44.4	22.2	
	고등학교 졸업	(198)	47.0	43.9	15.7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37.0	49.4	21.0	
	대학교(4년제) 졸업	(97)	63.9	17.5	24.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8.9	37.8	24.4
		발급 불가/모름	(10)	60.0	40.0	20.0
	신협	발급 가능	(89)	52.8	33.7	22.5
		발급 불가/모름	(12)	50.0	41.7	25.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46.7	32.6	27.2
		발급 불가/모름	(10)	30.0	70.0	10.0
	수협	발급 가능	(88)	47.7	47.7	5.7
		발급 불가/모름	(12)	66.7	33.3	0.0

〈부록 표 2-48〉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	현행 제도 유지	국가 재정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농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56.9	28.5	17.1
	4~6등급	(116)	46.6	41.4	21.6
	7~10등급	(119)	41.2	45.4	24.4
	모름	(45)	57.8	42.2	6.7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22.2	66.7	11.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39.8	51.1	19.3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48.6	40.3	18.1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51.5	33.0	21.6
	10,000만원 이상	(56)	71.4	16.1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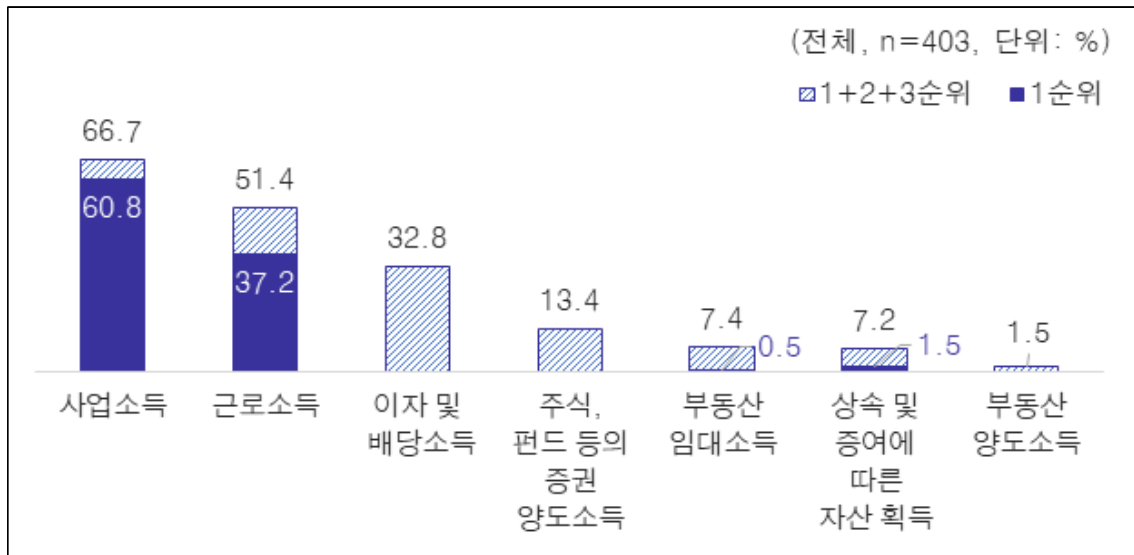
##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 1. 자산 축적 원천 소득 및 해당 소득에 적합한 지원 방식

#### 1)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 가구 내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소득은 1순위 기준, '사업소득' 응답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37.2%) 등의 순임
- 종합 순위(1+2+3순위) 기준으로는 '사업소득'(66.7%), '근로소득'(51.4%), '이자 및 배당 소득'(32.8%), '주식, 펀드 등의 증권 양도소득'(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농협, 수협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기여도가 높은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근로소득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부록 그림 2-34]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



〈부록 표 2-49〉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		(403)	60.8	37.2	1.5	0.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76.7	21.6	1.7	0.0	
	신협	(120)	53.3	44.2	1.7	0.8	
	새마을금고	(130)	49.2	50.0	0.8	0.0	
	수협	(101)	81.2	14.9	3.0	1.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77.5	21.6	0.9	0.0
		준조합원	(5)	60.0	20.0	20.0	0.0
	신협	지역	(107)	57.0	40.2	1.9	0.9
		직장	(14)	21.4	78.6	0.0	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51.2	48.0	0.8	0.0
		직장	(7)	14.3	85.7	0.0	0.0
	수협	조합원	(100)	82.0	14.0	3.0	1.0
		준조합원	(1)	0.0	10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57.7	40.3	1.4	0.6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83.3	14.6	2.1	0.0	
성	남자	(203)	66.5	32.0	1.0	0.5	
	여자	(200)	55.0	42.5	2.0	0.5	
연령	19~39세	(84)	41.7	58.3	0.0	0.0	
	40~59세	(158)	58.9	39.9	1.3	0.0	
	60세 이상	(161)	72.7	23.6	2.5	1.2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61.6	37.1	0.7	0.7	
	대전/충청	(63)	39.7	58.7	0.0	1.6	
	광주/전라	(65)	89.2	10.8	0.0	0.0	
	대구/경북	(30)	70.0	23.3	6.7	0.0	
	부산/울산/경남	(94)	51.1	45.7	3.2	0.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70.4	22.2	7.4	0.0	
	고등학교 졸업	(198)	71.7	26.8	1.0	0.5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59.3	40.7	0.0	0.0	
	대학교(4년제) 졸업	(97)	37.1	59.8	2.1	1.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78.9	21.1	0.0	0.0
		발급 불가/모름	(10)	60.0	30.0	10.0	0.0
	신협	발급 가능	(89)	43.8	53.9	1.1	1.1
		발급 불가/모름	(12)	66.7	25.0	8.3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37.0	63.0	0.0	0.0
		발급 불가/모름	(10)	50.0	50.0	0.0	0.0
	수협	발급 가능	(88)	86.4	11.4	2.3	0.0
		발급 불가/모름	(12)	50.0	33.3	8.3	8.3

〈부록 표 2-49〉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소득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56.9	40.7	2.4	0.0
	4~6등급	(116)	74.1	25.0	0.0	0.9
	7~10등급	(119)	64.7	32.8	2.5	0.0
	모름	(45)	26.7	71.1	0.0	2.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66.7	22.2	5.6	5.6
	3,000만~5,000만원 미만	(88)	55.7	42.0	2.3	0.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4.6	34.0	0.7	0.7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61.9	38.1	0.0	0.0
	10,000만원 이상	(56)	55.4	41.1	3.6	0.0

〈부록 표 2-50〉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순위)(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		(403)	60.8	37.2	1.5	0.5
직업	관리자	(5)	40.0	60.0	0.0	0.0
	사무 종사자	(49)	4.1	95.9	0.0	0.0
	서비스 종사자	(57)	36.8	63.2	0.0	0.0
	판매 종사자	(128)	81.3	18.8	0.0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90.7	5.6	3.7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7.8	72.2	0.0	0.0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57.1	42.9	0.0	0.0
	단순노무 종사자	(3)	0.0	100.0	0.0	0.0
	기타	(28)	32.1	53.6	7.1	7.1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40.0	57.5	2.5	0.0
	10~20년 미만	(104)	52.9	47.1	0.0	0.0
	20~30년 미만	(89)	61.8	37.1	0.0	1.1
	30~40년 미만	(89)	76.4	19.1	4.5	0.0
	40년 이상	(41)	85.4	12.2	0.0	2.4
혼인상태	기혼	(367)	63.5	34.6	1.4	0.5
	미혼	(32)	28.1	71.9	0.0	0.0
	기타	(4)	75.0	0.0	25.0	0.0
가구원수	1인	(21)	33.3	57.1	9.5	0.0
	2인	(160)	69.4	27.5	1.9	1.3
	3인	(125)	58.4	41.6	0.0	0.0
	4인 이상	(97)	55.7	43.3	1.0	0.0

〈부록 표 2-51〉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2+3순위)(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주식, 펀드 등의 증권 양도 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전체		(403)	66.7	51.4	32.8	13.4	7.2	7.4	1.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81.0	44.0	37.9	10.3	15.5	8.6	1.7	
	신협	(120)	58.3	59.2	39.2	14.2	8.3	5.8	0.8	
	새마을금고	(130)	58.5	60.0	35.4	16.2	9.2	8.5	0.0	
	수협	(101)	87.1	23.8	23.8	8.9	5.0	8.9	3.0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81.1	44.1	38.7	9.9	13.5	7.2	1.8
		준조합원	(5)	80.0	40.0	20.0	20.0	60.0	40.0	0.0
	신협	지역	(107)	62.6	57.0	40.2	13.1	9.3	6.5	0.9
		직장	(14)	21.4	78.6	28.6	21.4	0.0	0.0	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61.0	57.7	37.4	16.3	9.8	8.9	0.0
		직장	(7)	14.3	100.0	0.0	14.3	0.0	0.0	0.0
	수협	조합원	(100)	87.0	23.0	24.0	9.0	4.0	9.0	3.0
		준조합원	(1)	100.0	100.0	0.0	0.0	10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63.4	54.4	31.3	13.8	4.8	7.0	1.7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91.7	29.2	43.8	10.4	25.0	10.4	0.0	
성	남자	(203)	70.0	47.8	33.0	16.3	6.9	8.9	1.5	
	여자	(200)	63.5	55.0	32.5	10.5	7.5	6.0	1.5	
연령	19~39세	(84)	47.6	72.6	26.2	16.7	1.2	2.4	0.0	
	40~59세	(158)	67.1	52.5	35.4	19.0	7.0	3.8	1.9	
	60세 이상	(161)	76.4	39.1	33.5	6.2	10.6	13.7	1.9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70.2	57.0	22.5	13.2	2.6	7.3	0.7	
	대전/충청	(63)	39.7	61.9	17.5	19.0	1.6	9.5	3.2	
	광주/전라	(65)	92.3	33.8	44.6	9.2	1.5	1.5	0.0	
	대구/경북	(30)	80.0	30.0	63.3	10.0	56.7	13.3	3.3	
	부산/울산/경남	(94)	57.4	54.3	41.5	13.8	6.4	8.5	2.1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77.8	33.3	40.7	3.7	22.2	11.1	0.0	
	고등학교 졸업	(198)	75.8	40.4	33.3	12.6	6.6	7.1	1.5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66.7	59.3	25.9	16.0	8.6	7.4	2.5	
	대학교(4년제) 졸업	(97)	45.4	72.2	35.1	15.5	3.1	7.2	1.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82.2	45.6	32.2	8.9	6.7	7.8	2.2
		발급 불가/모름	(10)	70.0	50.0	50.0	10.0	30.0	0.0	0.0
	신협	발급 가능	(89)	49.4	70.8	36.0	19.1	7.9	3.4	1.1
		발급 불가/모름	(12)	75.0	41.7	50.0	0.0	16.7	16.7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46.7	70.7	35.9	20.7	5.4	9.8	0.0
		발급 불가/모름	(10)	50.0	50.0	30.0	0.0	20.0	0.0	0.0
	수협	발급 가능	(88)	89.8	20.5	25.0	10.2	3.4	6.8	3.4
		발급 불가/모름	(12)	66.7	41.7	16.7	0.0	8.3	25.0	0.0

〈부록 표 2-51〉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주식, 펀드 등의 증권 양도 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68.3	61.8	14.6	17.1	4.9	10.6	0.0
	4~6등급	(116)	77.6	33.6	42.2	10.3	3.4	6.9	1.7
	7~10등급	(119)	69.7	50.4	49.6	10.9	15.1	5.9	2.5
	모름	(45)	26.7	71.1	13.3	17.8	2.2	4.4	2.2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72.2	27.8	27.8	0.0	22.2	16.7	0.0
	3,000만~5,000만원 미만	(88)	56.8	54.5	23.9	10.2	8.0	6.8	2.3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9.4	46.5	28.5	12.5	7.6	4.9	0.7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74.2	59.8	29.9	17.5	4.1	6.2	2.1
	10,000만원 이상	(56)	60.7	51.8	64.3	17.9	5.4	14.3	1.8

〈부록 표 2-52〉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가구 소득 종류(1+2+3순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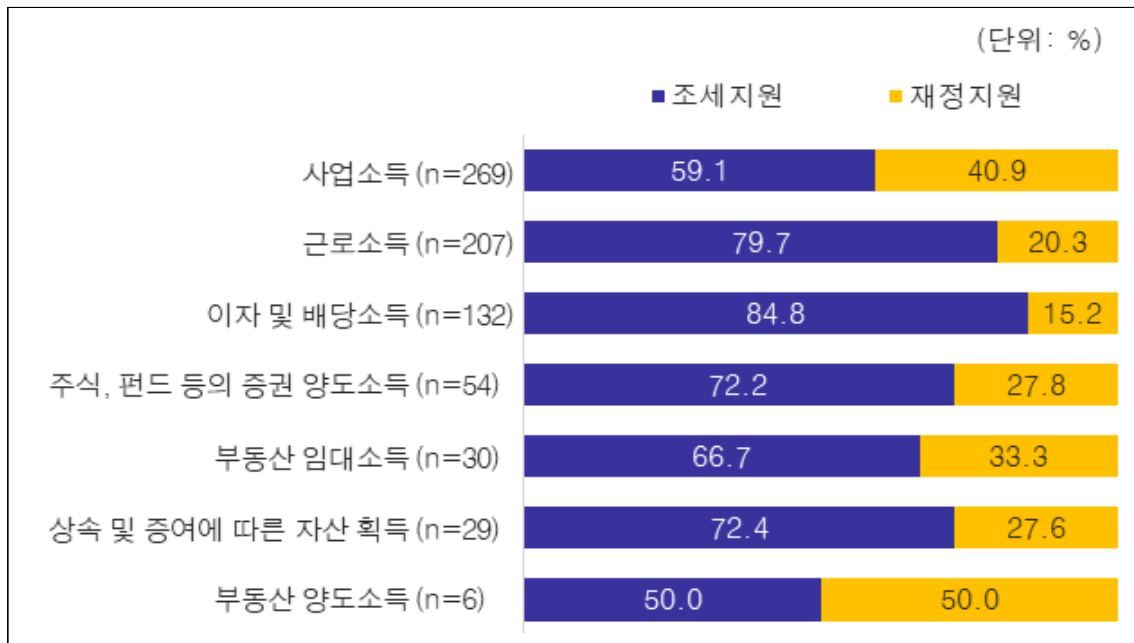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주식, 펀드 등의 증권 양도 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전체		(403)	66.7	51.4	32.8	13.4	7.2	7.4	1.5
직업	관리자	(5)	40.0	80.0	40.0	0.0	20.0	0.0	0.0
	사무 종사자	(49)	14.3	100.0	24.5	16.3	2.0	2.0	2.0
	서비스 종사자	(57)	45.6	70.2	29.8	12.3	3.5	7.0	3.5
	판매 종사자	(128)	85.9	39.1	37.5	16.4	7.8	0.8	0.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97.2	23.1	28.7	6.5	8.3	11.1	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7.8	94.4	16.7	27.8	0.0	16.7	0.0
	장가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57.1	57.1	57.1	0.0	14.3	14.3	0.0
	단순노무 종사자	(3)	0.0	100.0	0.0	0.0	0.0	0.0	0.0
기타	(28)	35.7	53.6	53.6	21.4	21.4	25.0	0.0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46.3	67.5	32.5	15.0	3.8	5.0	0.0
	10~20년 미만	(104)	59.6	63.5	32.7	16.3	2.9	3.8	1.9
	20~30년 미만	(89)	66.3	52.8	33.7	19.1	5.6	6.7	2.2
	30~40년 미만	(89)	85.4	36.0	30.3	6.7	15.7	10.1	2.2
	40년 이상	(41)	85.4	19.5	36.6	4.9	12.2	14.6	0.0
혼인상태	기혼	(367)	69.2	49.9	33.5	12.3	7.9	7.6	1.6
	미혼	(32)	34.4	75.0	18.8	28.1	3.1	0.0	0.0
	기타	(4)	100.0	0.0	75.0	0.0	0.0	25.0	0.0
가구원수	1인	(21)	38.1	57.1	42.9	19.0	0.0	9.5	0.0
	2인	(160)	73.1	34.4	31.3	7.5	9.4	10.0	1.9
	3인	(125)	62.4	65.6	30.4	18.4	4.8	5.6	1.6
	4인 이상	(97)	68.0	59.8	36.1	15.5	9.3	4.1	1.0

## 2) 가구 소득 종류별 적합 지원 방식

- 가구 소득 종류별 적합한 지원 방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소득 종류에서 ‘조세지원’ 방식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가구 자산 축적에 기여도가 높았던 사업소득의 경우, ‘조세지원’ 방식 59.1%, ‘재정지원’ 방식 40.9%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에서는 ‘조세지원’ 방식 79.7%, ‘재정지원’ 20.3%로 나타남
-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적합 지원 방식으로 ‘조세지원’ 방식을 꼽은 비율이 84.8%로 특히 높았음

[부록 그림 2-35]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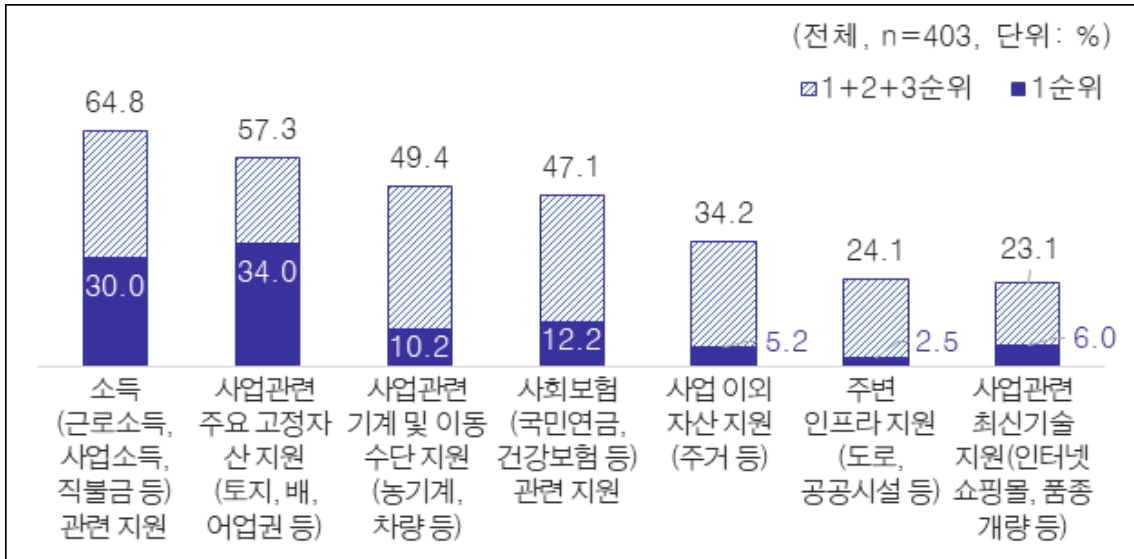


## 2.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및 방식

### 1)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순위 기준,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34.0%), '소득 관련 지원'(30.0%), '사회보험 관련 지원'(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종합 순위(1+2+3순위) 기준으로는 '소득 관련 지원'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57.3%),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4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1순위 기준과 우선순위 차이 있었음

[부록 그림 2-36]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부록 표 2-53>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물, 품종개량 등)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전체	(403)	34.0	30.0	12.2	10.2	6.0	5.2	2.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28.4	33.6	18.1	8.6	5.2	4.3	1.7
	신협	(120)	28.3	28.3	15.0	12.5	8.3	4.2	3.3
	새마을금고	(130)	31.5	31.5	16.2	8.5	3.8	4.6	3.8
	수협	(101)	50.5	19.8	5.9	10.9	5.9	5.9	1.0

〈부록 표 2-53〉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몰, 품종개량 등)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27.9	35.1	17.1	8.1	5.4	4.5	1.8
		준조합원	(5)	40.0	0.0	40.0	20.0	0.0	0.0	0.0
	신협	지역	(107)	26.2	29.0	16.8	12.1	8.4	3.7	3.7
		직장	(14)	42.9	21.4	7.1	14.3	7.1	7.1	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31.7	30.1	16.3	8.9	4.1	4.9	4.1
		직장	(7)	28.6	57.1	14.3	0.0	0.0	0.0	0.0
수협	조합원	(100)	50.0	20.0	6.0	11.0	6.0	6.0	1.0	
	준조합원	(1)	100.0	0.0	0.0	0.0	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33.2	31.8	10.7	9.9	6.2	5.6	2.5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39.6	16.7	22.9	12.5	4.2	2.1	2.1
성	남자		(203)	35.5	28.6	14.3	9.4	4.4	5.9	2.0
	여자		(200)	32.5	31.5	10.0	11.0	7.5	4.5	3.0
연령	19~39세		(84)	35.7	29.8	11.9	10.7	4.8	3.6	3.6
	40~59세		(158)	34.2	32.3	11.4	8.2	7.0	5.1	1.9
	60세 이상		(161)	32.9	28.0	13.0	11.8	5.6	6.2	2.5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40.4	11.9	15.2	10.6	10.6	5.3	6.0
	대전/충청		(63)	34.9	47.6	3.2	6.3	0.0	7.9	0.0
	광주/전라		(65)	29.2	49.2	1.5	6.2	9.2	3.1	1.5
	대구/경북		(30)	30.0	20.0	40.0	6.7	0.0	3.3	0.0
최종 학력	부산/울산/경남		(94)	27.7	37.2	11.7	16.0	2.1	5.3	0.0
	중학교 졸업 이하		(27)	48.1	33.3	11.1	7.4	0.0	0.0	0.0
	고등학교 졸업		(198)	34.8	28.8	8.1	12.6	6.1	5.1	4.5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34.6	33.3	16.0	4.9	3.7	7.4	0.0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대학교(4년제) 졸업		(97)	27.8	28.9	17.5	10.3	9.3	5.2	1.0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25.6	35.6	17.8	7.8	6.7	5.6	1.1
		발급 불가/모름	(10)	30.0	40.0	0.0	20.0	0.0	0.0	10.0
	신협	발급 가능	(89)	28.1	25.8	13.5	15.7	9.0	4.5	3.4
		발급 불가/모름	(12)	33.3	41.7	16.7	0.0	8.3	0.0	0.0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7.2	38.0	13.0	7.6	3.3	6.5	4.3
발급 불가/모름		(10)	70.0	20.0	10.0	0.0	0.0	0.0	0.0	
수협	발급 가능	(88)	51.1	20.5	5.7	10.2	6.8	4.5	1.1	
	발급 불가/모름	(12)	41.7	16.7	8.3	16.7	0.0	16.7	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40.7	18.7	14.6	10.6	7.3	4.1	4.1
	4~6등급		(116)	35.3	28.4	13.8	8.6	5.2	5.2	3.4
	7~10등급		(119)	23.5	41.2	11.8	11.8	6.7	4.2	0.8
	모름		(45)	40.0	35.6	2.2	8.9	2.2	11.1	0.0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0.0	5.6	22.2	11.1	0.0	5.6	5.6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2.7	42.0	13.6	11.4	2.3	5.7	2.3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40.3	26.4	11.1	9.0	6.9	4.2	2.1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39.2	22.7	8.2	11.3	11.3	5.2	2.1
10,000만원 이상		(56)	21.4	41.1	16.1	8.9	1.8	7.1	3.6	

〈부록 표 2-54〉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순위)(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몰, 품종개량 등)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전체	(403)	34.0	30.0	12.2	10.2	6.0	5.2	2.5	
직업	관리자	(5)	20.0	0.0	20.0	40.0	20.0	0.0	0.0
	사무 종사자	(49)	20.4	30.6	16.3	10.2	20.4	2.0	0.0
	서비스 종사자	(57)	24.6	47.4	7.0	8.8	1.8	8.8	1.8
	판매 종사자	(128)	33.6	35.2	13.3	5.5	3.9	5.5	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47.2	19.4	9.3	14.8	5.6	2.8	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50.0	16.7	16.7	11.1	0.0	0.0	5.6
	장가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4.3	28.6	14.3	14.3	0.0	28.6	0.0
	단순노무 종사자	(3)	0.0	33.3	33.3	33.3	0.0	0.0	0.0
기타	(28)	28.6	25.0	14.3	7.1	3.6	10.7	10.7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31.3	28.8	12.5	15.0	3.8	2.5	6.3
	10~20년 미만	(104)	39.4	27.9	12.5	4.8	4.8	7.7	2.9
	20~30년 미만	(89)	39.3	33.7	10.1	6.7	5.6	3.4	1.1
	30~40년 미만	(89)	28.1	32.6	13.5	11.2	9.0	5.6	0.0
	40년 이상	(41)	26.8	24.4	12.2	19.5	7.3	7.3	2.4
혼인상태	기혼	(367)	34.1	30.2	12.0	9.5	6.5	5.4	2.2
	미혼	(32)	34.4	31.3	12.5	12.5	0.0	3.1	6.3
	기타	(4)	25.0	0.0	25.0	50.0	0.0	0.0	0.0
가구원수	1인	(21)	28.6	9.5	19.0	23.8	4.8	4.8	9.5
	2인	(160)	33.8	31.9	11.3	10.0	5.6	6.9	0.6
	3인	(125)	36.0	30.4	12.0	8.8	7.2	1.6	4.0
	4인 이상	(97)	33.0	30.9	12.4	9.3	5.2	7.2	2.1

〈부록 표 2-55〉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2+3순위)(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몰, 품종개량 등)	
전체	(403)	64.8	57.3	49.4	47.1	34.2	24.1	23.1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70.7	60.3	51.7	50.0	30.2	19.8	17.2
	신협	(120)	71.7	50.8	50.0	46.7	26.7	28.3	25.8
	새마을금고	(130)	68.5	53.1	54.6	53.8	30.0	20.8	19.2
	수협	(101)	51.5	73.3	48.5	39.6	40.6	23.8	22.8

〈부록 표 2-55〉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몰, 품종개량 등)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70.3	58.6	52.3	48.6	31.5	20.7	18.0
		준조합원	(5)	80.0	100.0	40.0	80.0	0.0	0.0	0.0
	신협	지역	(107)	74.8	50.5	50.5	47.7	23.4	28.0	25.2
		직장	(14)	50.0	50.0	42.9	42.9	50.0	35.7	28.6
	새마을 금고	지역	(123)	67.5	53.7	56.1	52.0	30.9	22.0	17.9
		직장	(7)	85.7	42.9	28.6	85.7	14.3	0.0	42.9
	수협	조합원	(100)	51.0	73.0	49.0	40.0	41.0	24.0	22.0
		준조합원	(1)	100.0	100.0	0.0	0.0	0.0	0.0	10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64.2	55.5	47.0	46.5	36.9	25.1	24.8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68.8	70.8	66.7	52.1	14.6	16.7	10.4
성	남자		(203)	63.5	60.1	48.3	46.3	35.5	24.6	21.7
	여자		(200)	66.0	54.5	50.5	48.0	33.0	23.5	24.5
연령	19~39세		(84)	54.8	61.9	46.4	47.6	39.3	22.6	27.4
	40~59세		(158)	69.6	54.4	50.6	46.2	35.4	22.8	20.9
	60세 이상		(161)	65.2	57.8	49.7	47.8	30.4	26.1	23.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56.3	58.9	41.1	44.4	29.8	29.1	40.4
	대전/충청		(63)	66.7	58.7	52.4	52.4	42.9	20.6	6.3
	광주/전라		(65)	63.1	69.2	63.1	10.8	40.0	23.1	30.8
	대구/경북		(30)	80.0	60.0	70.0	70.0	20.0	0.0	0.0
	부산/울산/경남		(94)	73.4	44.7	44.7	66.0	36.2	26.6	8.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66.7	88.9	85.2	29.6	29.6	0.0	0.0
	고등학교 졸업		(198)	60.6	56.6	48.0	41.9	33.3	31.8	27.8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60.5	59.3	56.8	58.0	29.6	16.0	19.8
	대학교(4년제) 졸업		(97)	76.3	48.5	36.1	53.6	41.2	21.6	22.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68.9	56.7	46.7	52.2	31.1	22.2	22.2
		발급 불가/모름	(10)	70.0	60.0	90.0	20.0	50.0	10.0	0.0
	신협	발급 가능	(89)	68.5	47.2	43.8	47.2	29.2	33.7	30.3
		발급 불가/모름	(12)	100.0	66.7	66.7	33.3	16.7	0.0	16.7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67.4	46.7	46.7	57.6	35.9	23.9	21.7
		발급 불가/모름	(10)	60.0	80.0	90.0	20.0	30.0	0.0	20.0
	수협	발급 가능	(88)	52.3	70.5	47.7	40.9	37.5	26.1	25.0
		발급 불가/모름	(12)	41.7	91.7	58.3	33.3	66.7	8.3	0.0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61.0	54.5	36.6	48.8	28.5	33.3	37.4
	4~6등급		(116)	61.2	60.3	45.7	45.7	39.7	26.7	20.7
	7~10등급		(119)	75.6	53.8	61.3	47.1	29.4	16.8	16.0
	모름		(45)	55.6	66.7	62.2	46.7	48.9	11.1	8.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61.1	83.3	77.8	38.9	22.2	11.1	5.6
	3,000만~5,000만원 미만		(88)	70.5	48.9	53.4	52.3	29.5	28.4	17.0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60.4	66.7	56.3	43.1	27.8	20.8	25.0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56.7	57.7	45.4	43.3	36.1	23.7	37.1
10,000만원 이상		(56)	82.1	37.5	23.2	58.9	58.9	30.4	8.9	

〈부록 표 2-56〉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1+2+3순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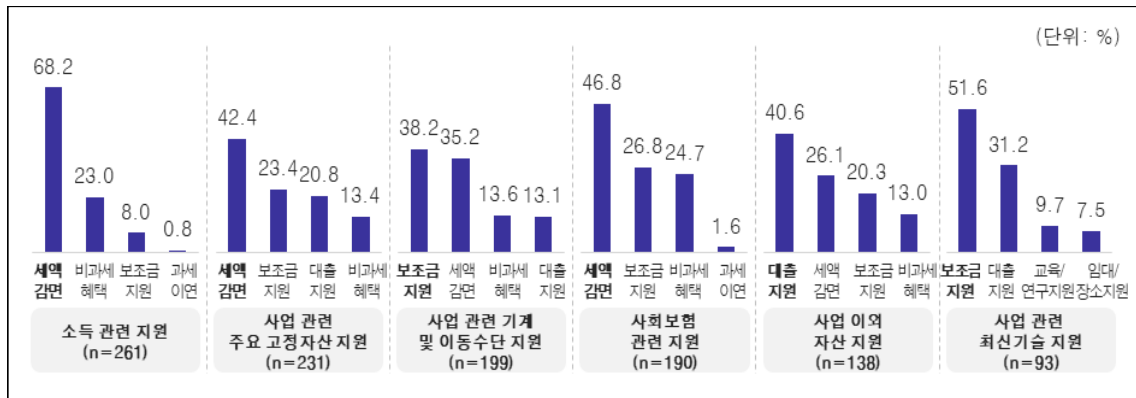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사업관련 주요 고정 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주거 등)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 쇼핑몰, 품종개량 등)	
전체	(403)	64.8	57.3	49.4	47.1	34.2	24.1	23.1	
직업	관리자	(5)	40.0	40.0	40.0	60.0	20.0	40.0	60.0
	사무 종사자	(49)	81.6	46.9	38.8	53.1	26.5	20.4	32.7
	서비스 종사자	(57)	68.4	52.6	54.4	50.9	29.8	24.6	19.3
	판매 종사자	(128)	64.1	53.1	47.7	50.0	33.6	28.1	23.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54.6	75.0	55.6	35.2	35.2	21.3	23.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50.0	61.1	55.6	50.0	55.6	16.7	11.1
	장가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71.4	28.6	71.4	42.9	57.1	14.3	14.3
	단순노무 종사자	(3)	66.7	33.3	66.7	66.7	66.7	0.0	0.0
기타	(28)	82.1	46.4	32.1	57.1	35.7	28.6	17.9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63.8	52.5	48.8	47.5	37.5	25.0	25.0
	10~20년 미만	(104)	66.3	55.8	42.3	52.9	40.4	25.0	17.3
	20~30년 미만	(89)	66.3	60.7	50.6	46.1	30.3	21.3	24.7
	30~40년 미만	(89)	61.8	57.3	56.2	46.1	30.3	22.5	25.8
	40년 이상	(41)	65.9	63.4	51.2	36.6	29.3	29.3	24.4
혼인상태	기혼	(367)	65.9	57.5	49.9	46.0	33.8	24.5	22.3
	미혼	(32)	56.3	56.3	40.6	56.3	37.5	18.8	34.4
	기타	(4)	25.0	50.0	75.0	75.0	50.0	25.0	0.0
가구원수	1인	(21)	42.9	47.6	47.6	61.9	47.6	38.1	14.3
	2인	(160)	65.6	59.4	48.8	48.8	30.0	25.0	22.5
	3인	(125)	66.4	62.4	50.4	44.0	32.0	23.2	21.6
	4인 이상	(97)	66.0	49.5	49.5	45.4	41.2	20.6	27.8

## 2) 농민·어민·임업인을 위한 지원 방식

- 지원 사업별 지원 방식을 살펴본 결과, 소득 관련 지원, 사업 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 사회보험 관련 지원 사업에서는 ‘세액 감면’ 방식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높았음
- 사업 이외 자산 지원 사업의 경우 ‘대출 지원’ 방식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37]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부록 표 2-57> 소득별 적합 지원 형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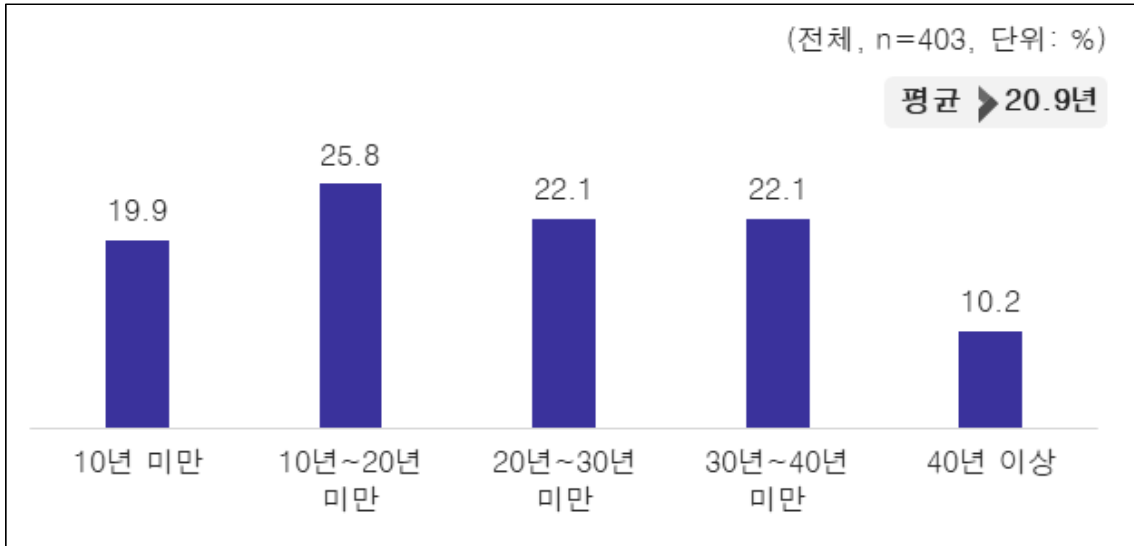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 관련 지원	(261)	세액 감면 (68.2)	비과세 혜택 (23.0)	보조금 지원 (8.0)	과세 이연 (0.8)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	(231)	세액 감면 (42.4)	보조금 지원 (23.4)	대출 지원 (20.8)	비과세 혜택 (13.4)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199)	보조금 지원 (38.2)	세액 감면 (35.2)	비과세 혜택 (13.6)	대출 지원 (13.1)
사회보험 관련 지원	(190)	세액 감면 (46.8)	보조금 지원 (26.8)	비과세 혜택 (24.7)	과세 이연 (1.6)
사업 이외 자산 지원	(138)	대출 지원 (40.6)	세액 감면 (26.1)	보조금 지원 (20.3)	비과세 혜택 (13.0)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93)	보조금 지원 (51.6)	대출 지원 (31.2)	교육/연구 지원 (9.7)	임대/장소 지원 (7.5)

## 조합원/회원의 경제적 특성

### 1. 경제 활동 기간

- 전체 응답자의 경제 활동에 참여 총 기간은 평균 21.6년임
- 지역 농협 가입자에서 경제 활동 참여 기간 '30~40년 미만' 응답이 30.2%로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38]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



〈부록 표 2-58〉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1)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수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평균	
전체	(403)	19.9	25.8	22.1	22.1	10.2	21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6.9	29.3	19.8	30.2	13.8	24
	신협	(120)	21.7	29.2	18.3	20.0	10.8	20
	새마을금고	(130)	21.5	26.2	22.3	21.5	8.5	20
	수협	(101)	21.8	14.9	27.7	19.8	15.8	23

〈부록 표 2-58〉의 계속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수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평균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6.3	30.6	18.9	30.6	13.5	24
		준조합원	(5)	20.0	0.0	40.0	20.0	20.0	24
	신협	지역	(107)	20.6	29.0	17.8	21.5	11.2	20
		직장	(14)	28.6	35.7	21.4	7.1	7.1	16
	새마을 금고	지역	(123)	20.3	26.0	22.8	22.0	8.9	20
		직장	(7)	42.9	28.6	14.3	14.3	0.0	15
	수협	조합원	(100)	22.0	15.0	28.0	19.0	16.0	23
		준조합원	(1)	0.0	0.0	0.0	100.0	0.0	35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21.4	26.2	22.3	21.1	9.0	20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8.3	22.9	20.8	29.2	18.8	25	
성	남자	(203)	22.2	22.7	17.7	25.6	11.8	22	
	여자	(200)	17.5	29.0	26.5	18.5	8.5	20	
연령	19~39세	(84)	69.0	29.8	1.2	0.0	0.0	7	
	40~59세	(158)	11.4	36.1	39.2	12.0	1.3	19	
	60세 이상	(161)	2.5	13.7	16.1	43.5	24.2	3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22.5	31.8	17.2	21.2	7.3	19	
	대전/충청	(63)	15.9	25.4	33.3	17.5	7.9	21	
	광주/전라	(65)	12.3	24.6	20.0	27.7	15.4	24	
	대구/경북	(30)	16.7	23.3	23.3	20.0	16.7	22	
최종 학력	부산/울산/경남	(94)	24.5	18.1	23.4	23.4	10.6	21	
	중학교 졸업 이하	(27)	0.0	7.4	14.8	59.3	18.5	31	
	고등학교 졸업	(198)	11.6	20.2	29.3	24.2	14.6	24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8.4	33.3	16.0	18.5	3.7	1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6.7	32.2	20.0	30.0	11.1	24
		발급 불가/모름	(10)	10.0	20.0	10.0	40.0	20.0	25
	신협	발급 가능	(89)	27.0	27.0	22.5	14.6	9.0	18
		발급 불가/모름	(12)	16.7	33.3	0.0	41.7	8.3	22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3.9	32.6	23.9	17.4	2.2	18
		발급 불가/모름	(10)	30.0	0.0	0.0	50.0	20.0	24
	수협	발급 가능	(88)	23.9	17.0	28.4	15.9	14.8	21
		발급 불가/모름	(12)	8.3	0.0	25.0	41.7	25.0	31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27.6	27.6	21.1	21.1	2.4	18	
	4~6등급	(116)	16.4	25.9	17.2	23.3	17.2	23	
	7~10등급	(119)	16.0	21.8	22.7	26.1	13.4	23	
	모름	(45)	17.8	31.1	35.6	11.1	4.4	19	
가구 총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11.1	11.1	44.4	22.2	28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9.3	21.6	21.6	26.1	11.4	22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21.5	33.3	19.4	18.8	6.9	19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0.6	23.7	22.7	21.6	11.3	22	
	10,000만원 이상	(56)	17.9	21.4	32.1	17.9	10.7	21	

〈부록 표 2-59〉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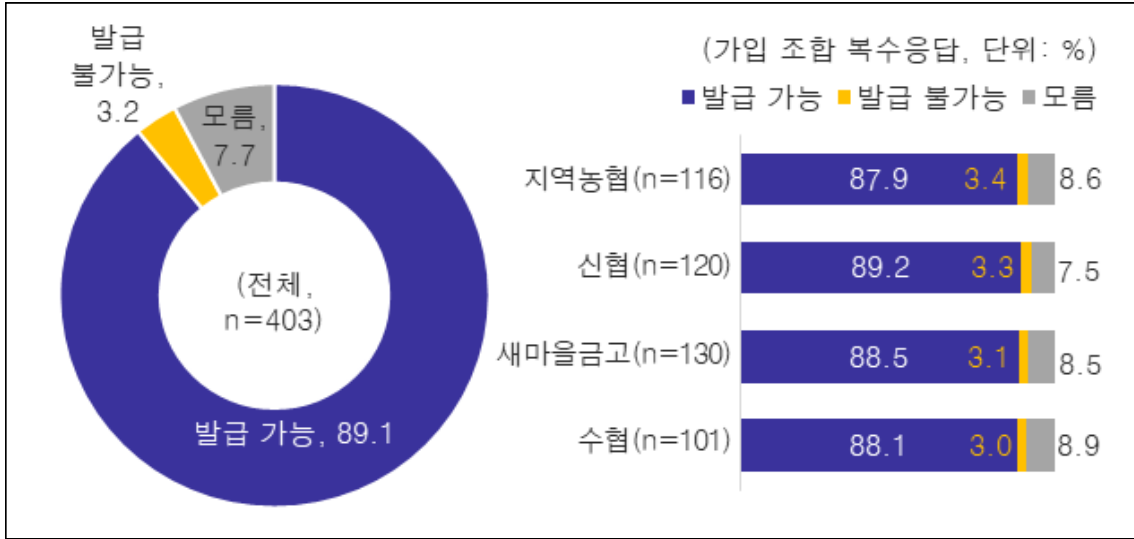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수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평균	
전체	(403)	19.9	25.8	22.1	22.1	10.2	21	
직업	관리자	(5)	0.0	20.0	20.0	40.0	20.0	30
	사무 종사자	(49)	32.7	40.8	14.3	10.2	2.0	15
	서비스 종사자	(57)	21.1	24.6	29.8	17.5	7.0	20
	판매 종사자	(128)	18.0	25.8	23.4	26.6	6.3	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15.7	17.6	23.1	25.0	18.5	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16.7	22.2	22.2	38.9	0.0	22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28.6	14.3	14.3	28.6	14.3	21
	단순노무 종사자	(3)	66.7	0.0	0.0	0.0	33.3	15
기타	(28)	17.9	42.9	14.3	7.1	17.9	20	
혼인상태	기혼	(367)	15.0	27.0	23.2	24.0	10.9	22
	미혼	(32)	78.1	12.5	9.4	0.0	0.0	7
	기타	(4)	0.0	25.0	25.0	25.0	25.0	30
가구원수	1인	(21)	38.1	19.0	19.0	14.3	9.5	16
	2인	(160)	9.4	16.9	18.1	37.5	18.1	27
	3인	(125)	28.8	26.4	26.4	15.2	3.2	17
	4인 이상	(97)	21.6	41.2	23.7	7.2	6.2	17

## 2.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

- 응답자 10명 중 9명(89.1%)이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응답하였음(발급 불가능 3.2%, 모름 7.7%)

[부록 그림 2-39]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



〈부록 표 2-60〉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모름	
전체		(403)	89.1	3.2	7.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87.9	3.4	8.6	
	신협	(120)	89.2	3.3	7.5	
	새마을금고	(130)	88.5	3.1	8.5	
	수협	(101)	88.1	3.0	8.9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88.3	2.7	9.0
		준조합원	(5)	80.0	20.0	0.0
	신협	지역	(107)	87.9	3.7	8.4
		직장	(14)	100.0	0.0	0.0
	새마을 금고	지역	(123)	87.8	3.3	8.9
		직장	(7)	100.0	0.0	0.0
	수협	조합원	(100)	88.0	3.0	9.0
		준조합원	(1)	100.0	0.0	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89.9	3.4	6.8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83.3	2.1	14.6	

〈부록 표 2-60〉의 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모름
성	남자	(203)	93.1	2.0	4.9
	여자	(200)	85.0	4.5	10.5
연령	19~39세	(84)	92.9	1.2	6.0
	40~59세	(158)	98.1	0.6	1.3
	60세 이상	(161)	78.3	6.8	14.9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93.4	1.3	5.3
	대전/충청	(63)	81.0	11.1	7.9
	광주/전라	(65)	87.7	4.6	7.7
	대구/경북	(30)	70.0	3.3	26.7
	부산/울산/경남	(94)	94.7	0.0	5.3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5.9	29.6	44.4
	고등학교 졸업	(198)	90.4	2.0	7.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98.8	1.2	0.0
	대학교(4년제) 졸업	(97)	95.9	0.0	4.1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00.0	0.0	0.0
	4~6등급	(116)	97.4	0.0	2.6
	7~10등급	(119)	74.8	5.0	20.2
	모름	(45)	75.6	15.6	8.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5.6	16.7	27.8
	3,000만~5,000만원 미만	(88)	72.7	8.0	19.3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95.1	1.4	3.5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97.9	1.0	1.0
	10,000만원 이상	(56)	94.6	0.0	5.4

〈부록 표 2-61〉 신용 카드 발급 가능 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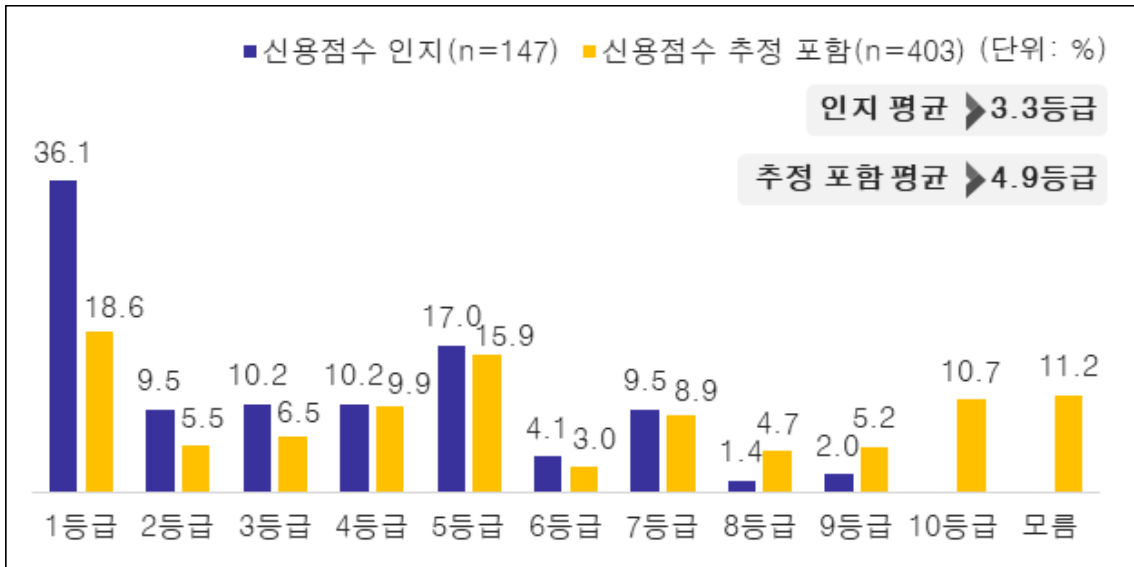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모름	
전체	(403)	89.1	3.2	7.7	
직업	관리자	(5)	100.0	0.0	0.0
	사무 종사자	(49)	100.0	0.0	0.0
	서비스 종사자	(57)	91.2	5.3	3.5
	판매 종사자	(128)	93.0	2.3	4.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89.8	0.9	9.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72.2	27.8	0.0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85.7	0.0	14.3
	단순노무 종사자	(3)	33.3	0.0	66.7
기타	(28)	60.7	3.6	35.7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91.3	1.3	7.5
	10~20년 미만	(104)	94.2	3.8	1.9
	20~30년 미만	(89)	95.5	2.2	2.2
	30~40년 미만	(89)	78.7	5.6	15.7
	40년 이상	(41)	80.5	2.4	17.1
혼인상태	기혼	(367)	89.9	3.3	6.8
	미혼	(32)	84.4	3.1	12.5
	기타	(4)	50.0	0.0	50.0
가구원수	1인	(21)	76.2	4.8	19.0
	2인	(160)	83.1	5.0	11.9
	3인	(125)	92.0	2.4	5.6
	4인 이상	(97)	97.9	1.0	1.0

### 3. 신용등급

- 나이스지키미(NICE평가정보) 또는 올크레딧(KCB)에서 산정한 본인의 신용점수를 인지하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6.5%로, 신용등급은 평균 3.3등급 수준임
- 최초 질문 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재질문을 통해 대략적인 점수를 기억나는대로 응답받았음. 이 결과 추정치를 포함한 신용등급은 평균 4.9등급 수준으로 나타남

[부록 그림 2-40] 신용등급(인지/추정 포함)



#### 💡 신용점수-신용등급 환산

조사시 나이스지키미(NICE평가정보) 또는 올크레딧(KCB)를 통해 확인한 신용점수를 응답받았으나, 비교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신용등급으로 환산하였음

이 때, 각 평가기관으로부터 산정받은 평가점수가 다를 경우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함

구분(등급)	나이스지키미(NICE평가정보)	올크레딧(KCB)
1	900~1000	942~1000
2	870~899	891~941
3	840~869	832~890
4	805~839	768~831
5	750~804	698~767
6	665~749	630~697
7	600~664	530~629
8	515~599	454~529
9	445~514	335~453
10	0~444	0~334

〈부록 표 2-62〉 신용등급(인지)(1)

(단위: 명, %, 등급)

구분		사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균	
전체		(147)	36.1	9.5	10.2	10.2	17.0	4.1	9.5	1.4	2.0	3.32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44)	29.5	9.1	11.4	13.6	20.5	2.3	9.1	0.0	4.5	3.57	
	신협	(46)	41.3	10.9	10.9	10.9	10.9	0.0	10.9	4.3	0.0	3.04	
	새마을금고	(50)	34.0	10.0	8.0	12.0	16.0	6.0	12.0	0.0	2.0	3.44	
	수협	(20)	40.0	0.0	15.0	5.0	30.0	10.0	0.0	0.0	0.0	3.15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42)	26.2	9.5	11.9	14.3	21.4	2.4	9.5	0.0	4.8	3.69
		준조합원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신협	지역	(44)	40.9	11.4	11.4	11.4	9.1	0.0	11.4	4.5	0.0	3.05
		직장	(3)	66.7	0.0	0.0	0.0	33.3	0.0	0.0	0.0	0.0	2.33
	새마을 금고	지역	(47)	36.2	6.4	8.5	12.8	14.9	6.4	12.8	0.0	2.1	3.47
		직장	(3)	0.0	66.7	0.0	0.0	33.3	0.0	0.0	0.0	0.0	3.00
	수협	조합원	(19)	36.8	0.0	15.8	5.3	31.6	10.5	0.0	0.0	0.0	3.26
		준조합원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137)	35.8	10.2	10.2	9.5	16.8	4.4	9.5	1.5	2.2	3.33	
	2개 이상 조합 가입	(10)	40.0	0.0	10.0	20.0	20.0	0.0	10.0	0.0	0.0	3.20	
성	남자	(79)	36.7	8.9	10.1	8.9	17.7	5.1	10.1	0.0	2.5	3.33	
	여자	(68)	35.3	10.3	10.3	11.8	16.2	2.9	8.8	2.9	1.5	3.31	
연령	19~39세	(40)	25.0	12.5	12.5	2.5	25.0	7.5	10.0	2.5	2.5	3.80	
	40~59세	(65)	40.0	4.6	10.8	12.3	18.5	1.5	10.8	0.0	1.5	3.22	
	60세 이상	(42)	40.5	14.3	7.1	14.3	7.1	4.8	7.1	2.4	2.4	3.02	
권역	서울/경기/인천	(65)	66.2	6.2	6.2	7.7	10.8	1.5	1.5	0.0	0.0	2.02	
	대전/충청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3.00	
	광주/전라	(26)	3.8	0.0	7.7	0.0	15.4	7.7	50.0	3.8	11.5	6.35	
	대구/경북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8.00	
	부산/울산/경남	(53)	15.1	18.9	17.0	18.9	24.5	5.7	0.0	0.0	0.0	3.36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50.0	0.0	0.0	0.0	0.0	0.0	25.0	25.0	0.0	4.25	
	고등학교 졸업	(55)	41.8	5.5	7.3	16.4	14.5	3.6	7.3	0.0	3.6	3.18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37)	24.3	13.5	10.8	10.8	13.5	5.4	18.9	0.0	2.7	3.84	
	대학교(4년제) 졸업	(51)	37.3	11.8	13.7	3.9	23.5	3.9	3.9	2.0	0.0	3.02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42)	26.2	9.5	11.9	14.3	21.4	2.4	9.5	0.0	4.8	3.69
		발급 불가	(41)	46.3	12.2	9.8	7.3	9.8	0.0	9.8	4.9	0.0	2.85
	신협	발급 불가/모름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4.00
		발급 가능	(44)	36.4	11.4	6.8	9.1	13.6	6.8	13.6	0.0	2.3	3.41
	수협	발급 가능	(19)	36.8	0.0	15.8	5.3	31.6	10.5	0.0	0.0	0.0	3.26

〈부록 표 2-62〉의 계속

(단위: 명, %, 등급)

구분		사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균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4)	25.0	0.0	25.0	25.0	0.0	25.0	0.0	0.0	0.0	3.50
	3,000만~5,000만원 미만	(21)	14.3	9.5	4.8	28.6	19.0	4.8	14.3	0.0	4.8	4.29
	5,000만~7,000만원 미만	(60)	31.7	11.7	13.3	6.7	16.7	1.7	13.3	3.3	1.7	3.50
	7,000만~10,000만원 미만	(44)	52.3	11.4	11.4	4.5	11.4	0.0	6.8	0.0	2.3	2.52
	10,000만원 이상	(18)	38.9	0.0	0.0	11.1	33.3	16.7	0.0	0.0	0.0	3.50
신용점수 확인 시점	2023년	(28)	64.3	3.6	7.1	0.0	7.1	7.1	10.7	0.0	0.0	2.46
	2022년	(66)	22.7	9.1	15.2	7.6	27.3	4.5	12.1	0.0	1.5	3.79
	2021년	(21)	0.0	19.0	9.5	28.6	14.3	4.8	9.5	4.8	9.5	4.71
	2020년 이전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모름	(31)	61.3	9.7	3.2	12.9	6.5	0.0	3.2	3.2	0.0	2.23

〈부록 표 2-63〉 신용등급(인지)(2)

(단위: 명, %, 등급)

구분		사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균
전체		(147)	36.1	9.5	10.2	10.2	17.0	4.1	9.5	1.4	2.0	3.32
직업	관리자	(2)	50.0	0.0	0.0	0.0	0.0	0.0	0.0	50.0	0.0	4.50
	사무 종사자	(28)	35.7	17.9	14.3	3.6	21.4	3.6	3.6	0.0	0.0	2.82
	서비스 종사자	(18)	27.8	22.2	5.6	11.1	16.7	5.6	11.1	0.0	0.0	3.28
	판매 종사자	(38)	42.1	5.3	10.5	7.9	10.5	2.6	15.8	2.6	2.6	3.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4)	29.5	6.8	13.6	9.1	20.5	6.8	9.1	0.0	4.5	3.68
	가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	25.0	0.0	0.0	50.0	25.0	0.0	0.0	0.0	0.0	3.50
	장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4.00
	기타	(11)	54.5	0.0	0.0	27.3	18.2	0.0	0.0	0.0	0.0	2.55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29)	27.6	17.2	13.8	0.0	24.1	10.3	6.9	0.0	0.0	3.34
	10~20년 미만	(53)	41.5	0.0	11.3	7.5	20.8	1.9	13.2	1.9	1.9	3.45
	20~30년 미만	(34)	41.2	14.7	2.9	14.7	8.8	5.9	8.8	0.0	2.9	3.06
	30~40년 미만	(26)	30.8	11.5	15.4	19.2	7.7	0.0	7.7	3.8	3.8	3.35
	40년 이상	(5)	20.0	20.0	0.0	20.0	40.0	0.0	0.0	0.0	0.0	3.40
혼인 상태	기혼	(134)	36.6	8.2	9.7	10.4	17.9	3.0	10.4	1.5	2.2	3.37
	미혼	(13)	30.8	23.1	15.4	7.7	7.7	15.4	0.0	0.0	0.0	2.85
가구원 수	1인	(4)	50.0	0.0	0.0	25.0	0.0	25.0	0.0	0.0	0.0	3.00
	2인	(41)	29.3	14.6	9.8	22.0	9.8	4.9	7.3	2.4	0.0	3.24
	3인	(50)	28.0	12.0	16.0	6.0	24.0	2.0	6.0	2.0	4.0	3.50
	4인 이상	(52)	48.1	3.8	5.8	3.8	17.3	3.8	15.4	0.0	1.9	3.23

〈부록 표 2-64〉 신용등급(추정 포함)(1)

(단위: 명, %, 등급)

구분		사례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모름	평균	
전체		(403)	18.6	5.5	6.5	9.9	15.9	3.0	8.9	4.7	5.2	10.7	11.2	4.95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4.7	7.8	6.9	11.2	17.2	1.7	8.6	5.2	7.8	12.9	6.0	5.25	
	신협	(120)	23.3	5.0	6.7	10.0	12.5	0.0	10.8	6.7	6.7	13.3	5.0	5.04	
	새마을금고	(130)	19.2	5.4	5.4	10.0	15.4	4.6	9.2	4.6	6.9	11.5	7.7	5.09	
	수협	(101)	11.9	0.0	7.9	11.9	22.8	6.9	9.9	4.0	1.0	1.0	22.8	4.64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3.5	8.1	7.2	11.7	18.0	0.9	8.1	5.4	8.1	12.6	6.3	5.26
		준조합원	(5)	40.0	0.0	0.0	0.0	0.0	20.0	20.0	0.0	0.0	20.0	0.0	5.00
	신협	지역	(107)	25.2	4.7	7.5	11.2	11.2	0.0	12.1	7.5	7.5	12.1	0.9	4.96
		직장	(14)	14.3	7.1	0.0	0.0	21.4	0.0	0.0	0.0	0.0	21.4	35.7	5.44
	새마을 금고	지역	(123)	20.3	3.3	5.7	10.6	15.4	4.9	9.8	4.9	7.3	12.2	5.7	5.17
		직장	(7)	0.0	42.9	0.0	0.0	14.3	0.0	0.0	0.0	0.0	0.0	42.9	2.75
	수협	조합원	(100)	11.0	0.0	8.0	12.0	23.0	7.0	10.0	4.0	1.0	1.0	23.0	4.69
		준조합원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9.2	6.2	6.5	9.6	15.2	2.8	8.2	3.9	4.5	11.5	12.4	4.87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4.6	0.0	6.3	12.5	20.8	4.2	14.6	10.4	10.4	4.2	2.1	5.45	
성	남자	(203)	18.7	6.4	7.4	11.3	16.3	3.9	7.4	2.5	5.4	11.3	9.4	4.83	
	여자	(200)	18.5	4.5	5.5	8.5	15.5	2.0	10.5	7.0	5.0	10.0	13.0	5.08	
연령	19~39세	(84)	15.5	8.3	8.3	4.8	19.0	4.8	7.1	3.6	7.1	10.7	10.7	5.04	
	40~59세	(158)	23.4	3.8	7.0	10.8	16.5	1.3	10.8	2.5	2.5	8.2	13.3	4.45	
	60세 이상	(161)	15.5	5.6	5.0	11.8	13.7	3.7	8.1	7.5	6.8	13.0	9.3	5.38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39.7	7.9	6.6	12.6	17.2	0.7	2.6	2.0	2.0	7.3	1.3	3.46	
	대전/충청	(63)	4.8	0.0	4.8	6.3	4.8	0.0	0.0	0.0	0.0	12.7	66.7	5.86	
	광주/전라	(65)	1.5	0.0	3.1	7.7	27.7	7.7	32.3	9.2	10.8	0.0	0.0	6.23	
	대구/경북	(30)	0.0	0.0	0.0	0.0	10.0	0.0	23.3	26.7	33.3	6.7	0.0	7.93	
	부산/울산/경남	(94)	11.7	10.6	11.7	12.8	14.9	6.4	4.3	2.1	1.1	23.4	1.1	5.28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7.4	0.0	0.0	3.7	7.4	0.0	3.7	25.9	22.2	7.4	22.2	7.29	
	고등학교 졸업	(198)	17.2	3.0	5.6	13.6	18.2	2.5	10.1	4.5	4.5	9.6	11.1	5.00	
	전문대학교(3년제) 졸업	(81)	19.8	11.1	6.2	6.2	11.1	3.7	14.8	1.2	4.9	6.2	14.8	4.49	
	대학교(4년제) 졸업	(97)	23.7	7.2	10.3	7.2	17.5	4.1	3.1	2.1	2.1	17.5	5.2	4.66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16.7	10.0	7.8	13.3	18.9	1.1	7.8	2.2	2.2	14.4	5.6	4.78
		발급 불가/모름	(10)	0.0	0.0	0.0	0.0	10.0	0.0	0.0	20.0	40.0	10.0	20.0	8.38
	신협	발급 가능	(89)	31.5	6.7	6.7	6.7	10.1	0.0	9.0	4.5	2.2	15.7	6.7	4.49
		발급 불가/모름	(12)	0.0	0.0	0.0	8.3	0.0	0.0	25.0	25.0	33.3	8.3	0.0	7.92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8	7.6	5.4	9.8	15.2	4.3	8.7	2.2	2.2	14.1	7.6	4.71
		발급 불가/모름	(10)	0.0	0.0	0.0	0.0	0.0	0.0	0.0	20.0	60.0	0.0	20.0	8.75
	수협	발급 가능	(88)	12.5	0.0	9.1	13.6	25.0	8.0	9.1	3.4	0.0	1.1	18.2	4.51
		발급 불가/모름	(12)	0.0	0.0	0.0	0.0	8.3	0.0	16.7	8.3	8.3	0.0	58.3	7.20

〈부록 표 2-64〉의 계속

(단위: 명, %, 평균)

구분		사례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모름	평균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5.6	0.0	5.6	5.6	11.1	5.6	0.0	22.2	22.2	16.7	5.6	7.18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0.2	2.3	4.5	14.8	13.6	2.3	9.1	3.4	13.6	4.5	21.6	5.46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8.1	8.3	8.3	5.6	16.7	2.1	11.1	6.3	2.1	5.6	16.0	4.52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29.9	8.2	7.2	11.3	16.5	2.1	10.3	3.1	1.0	8.2	2.1	4.05
	10,000만원 이상	(56)	17.9	0.0	3.6	12.5	17.9	7.1	3.6	0.0	1.8	35.7	0.0	6.09
신용점수 확인 시점	2023년	(29)	65.5	3.4	6.9	0.0	6.9	6.9	10.3	0.0	0.0	0.0	0.0	2.41
	2022년	(78)	25.6	7.7	14.1	7.7	24.4	3.8	11.5	0.0	3.8	1.3	0.0	3.87
	2021년	(38)	2.6	10.5	10.5	15.8	18.4	5.3	13.2	7.9	13.2	2.6	0.0	5.42
	2020년 이전	(6)	33.3	0.0	0.0	16.7	16.7	0.0	0.0	16.7	0.0	16.7	0.0	4.83
	모름	(252)	13.1	4.4	3.6	10.7	13.9	2.0	7.5	6.0	5.2	15.9	17.9	5.63

〈부록 표 2-65〉 신용등급(추정 포함)(2)

(단위: 명, %,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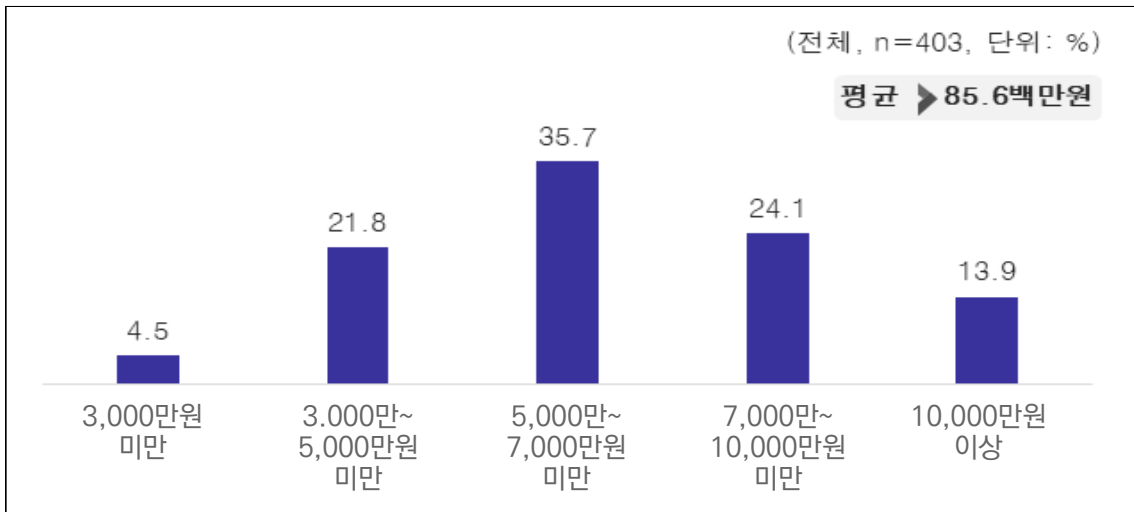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모름	평균
전체		(403)	18.6	5.5	6.5	9.9	15.9	3.0	8.9	4.7	5.2	10.7	11.2	4.95
직업	관리자	(5)	20.0	0.0	0.0	0.0	0.0	0.0	0.0	20.0	0.0	60.0	0.0	7.80
	사무 종사자	(49)	24.5	10.2	8.2	4.1	14.3	2.0	2.0	0.0	0.0	20.4	14.3	4.52
	서비스 종사자	(57)	12.3	7.0	3.5	7.0	12.3	1.8	5.3	3.5	5.3	22.8	19.3	5.91
	판매 종사자	(128)	22.7	7.8	7.0	11.7	16.4	1.6	7.8	3.1	2.3	7.0	12.5	4.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14.8	2.8	8.3	10.2	22.2	7.4	16.7	8.3	4.6	2.8	1.9	5.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16.7	0.0	5.6	16.7	11.1	0.0	5.6	0.0	0.0	5.6	38.9	4.09
	장기가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4.3	0.0	0.0	14.3	0.0	0.0	28.6	28.6	0.0	0.0	14.3	5.83
	단순노무종사자	(3)	0.0	0.0	0.0	0.0	0.0	0.0	0.0	0.0	66.7	33.3	0.0	9.33
기타	(28)	21.4	0.0	3.6	14.3	10.7	0.0	3.6	3.6	28.6	10.7	3.6	5.81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21.3	10.0	11.3	6.3	12.5	5.0	7.5	1.3	6.3	8.8	10.0	4.43
	10~20년 미만	(104)	23.1	1.9	7.7	5.8	21.2	1.9	10.6	3.8	2.9	7.7	13.5	4.60
	20~30년 미만	(89)	21.3	5.6	2.2	10.1	9.0	3.4	11.2	3.4	3.4	12.4	18.0	4.93
	30~40년 미만	(89)	14.6	6.7	7.9	12.4	16.9	1.1	5.6	11.2	6.7	11.2	5.6	5.24
	40년 이상	(41)	4.9	2.4	0.0	22.0	22.0	4.9	9.8	2.4	9.8	17.1	4.9	6.13
혼인 상태	기혼	(367)	19.3	5.2	6.3	10.1	16.9	2.5	9.3	4.6	4.4	11.2	10.4	4.92
	미혼	(32)	12.5	9.4	9.4	9.4	6.3	6.3	6.3	3.1	12.5	6.3	18.8	5.04
	기타	(4)	0.0	0.0	0.0	0.0	0.0	25.0	0.0	25.0	25.0	0.0	25.0	7.67
가구원 수	1인	(21)	14.3	0.0	4.8	9.5	4.8	9.5	9.5	9.5	14.3	0.0	23.8	5.50
	2인	(160)	13.1	5.6	4.4	14.4	15.0	3.1	6.3	6.9	5.6	14.4	11.3	5.43
	3인	(125)	15.2	8.0	8.0	6.4	16.8	2.4	9.6	4.8	4.8	12.0	12.0	5.09
	4인 이상	(97)	33.0	3.1	8.2	7.2	18.6	2.1	12.4	0.0	3.1	5.2	7.2	3.92

## 4. 가구 소득 및 자산(2022년 기준)

### 1) 가구 소득

- 가구 소득의 경우, '5,000만~7,000만원 미만' 구간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은 평균 85.6백만원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농협 가입자'(103.2백만원), '부산/울산/경남'(134.3백만원), '대학교(4년제) 졸업'(102.5백만원)에서 평균 가구 소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록 그림 2-41] 가구 종합소득



〈부록 표 2-66〉 가구 종합소득(1)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3,000만원 미만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000만원~7,000만원 미만	7,000만원~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전체		(403)	4.5	21.8	35.7	24.1	13.9	86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6.0	24.1	33.6	19.8	16.4	103	
	신협	(120)	7.5	27.5	34.2	21.7	9.2	71	
	새마을금고	(130)	8.5	19.2	38.5	20.8	13.1	76	
	수협	(101)	1.0	20.8	38.6	27.7	11.9	75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5.4	25.2	32.4	20.7	16.2	105
		준조합원	(5)	20.0	0.0	60.0	0.0	20.0	63
	신협	지역	(107)	8.4	26.2	34.6	20.6	10.3	72
		직장	(14)	0.0	42.9	28.6	28.6	0.0	54

〈부록 표 2-66〉의 계속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소득	
가입 유형 (복수응답)	새마을 금고	지역	(123)	8.9	19.5	36.6	1.1	13.8	77
		직장	(7)	0.0	14.3	71.4	14.3	0.0	57
	수협	조합원	(100)	1.0	21.0	39.0	27.0	12.0	75
		준조합원	(1)	0.0	0.0	0.0	100.0	0.0	75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3.1	20.6	35.5	25.9	14.9	90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4.6	31.3	37.5	10.4	6.3	55
성	남자		(203)	3.9	21.2	36.9	23.2	14.8	91
	여자		(200)	5.0	22.5	34.5	25.0	13.0	80
연령	19~39세		(84)	2.4	20.2	44.0	21.4	11.9	74
	40~59세		(158)	2.5	14.6	38.0	31.0	13.9	87
	60세 이상		(161)	7.5	29.8	29.2	18.6	14.9	9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6.0	16.6	38.4	29.8	9.3	83
	대전/충청		(63)	3.2	47.6	46.0	3.2	0.0	48
	광주/전라		(65)	0.0	18.5	41.5	36.9	3.1	73
	대구/경북		(30)	20.0	30.0	30.0	16.7	3.3	53
	부산/울산/경남		(94)	1.1	12.8	22.3	22.3	41.5	13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9.6	37.0	18.5	3.7	11.1	54
	고등학교 졸업		(198)	3.5	26.8	36.4	21.7	11.6	8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2.5	18.5	40.7	28.4	9.9	75
	대학교(4년제) 졸업		(97)	1.0	10.3	35.1	30.9	22.7	102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4.4	21.1	33.3	23.3	17.8	115
		발급 불가/모름	(10)	0.0	60.0	20.0	0.0	20.0	74
	신협	발급 가능	(89)	4.5	21.3	37.1	24.7	12.4	80
		발급 불가/모름	(12)	16.7	50.0	16.7	16.7	0.0	43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2.2	13.0	41.3	27.2	16.3	87
		발급 불가/모름	(10)	50.0	50.0	0.0	0.0	0.0	31
	수협	발급 가능	(88)	0.0	15.9	40.9	30.7	12.5	77
		발급 불가/모름	(12)	8.3	58.3	25.0	0.0	8.3	57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1.6	12.2	40.7	35.8	9.8	75
	4~6등급		(116)	3.4	23.3	30.2	25.0	18.1	98
	7~10등급		(119)	9.2	22.7	30.3	18.5	19.3	98
	모름		(45)	2.2	42.2	51.1	4.4	0.0	51

〈부록 표 2-67〉 가구 종합소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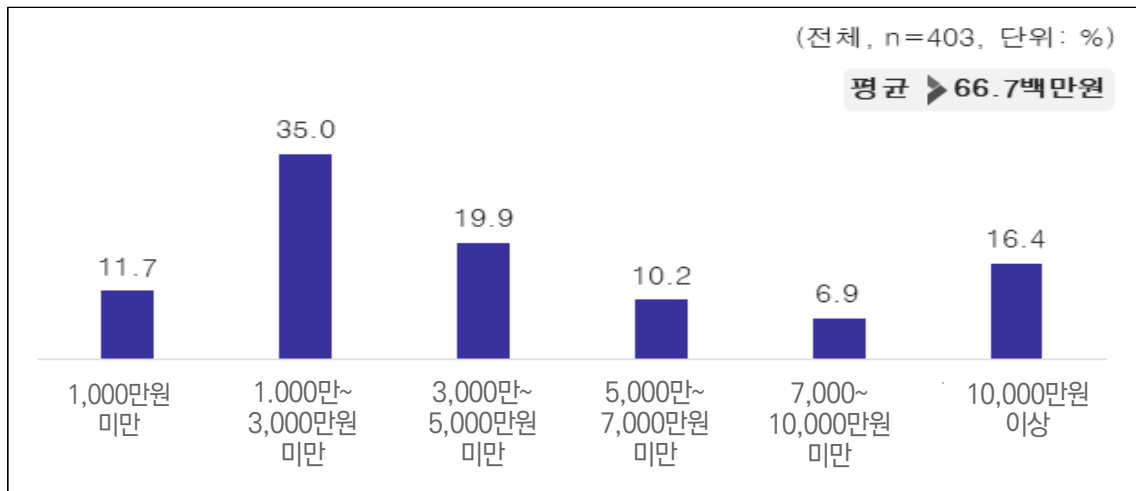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소득	
전체	(403)	4.5	21.8	35.7	24.1	13.9	86	
직업	관리자	(5)	0.0	0.0	80.0	0.0	20.0	146
	사무 종사자	(49)	0.0	8.2	42.9	32.7	16.3	85
	서비스 종사자	(57)	7.0	24.6	35.1	19.3	14.0	92
	판매 종사자	(128)	3.1	21.9	38.3	23.4	13.3	9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3.7	19.4	35.2	29.6	12.0	7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5.6	33.3	27.8	22.2	11.1	71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0.0	42.9	14.3	28.6	14.3	74
	단순노무 종사자	(3)	33.3	66.7	0.0	0.0	0.0	34
	기타	(28)	14.3	35.7	21.4	7.1	21.4	86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2.5	21.3	38.8	25.0	12.5	75
	10~20년 미만	(104)	1.9	18.3	46.2	22.1	11.5	80
	20~30년 미만	(89)	2.2	21.3	31.5	24.7	20.2	105
	30~40년 미만	(89)	9.0	25.8	30.3	23.6	11.2	84
	40년 이상	(41)	9.8	24.4	24.4	26.8	14.6	82
혼인상태	기혼	(367)	4.1	20.7	36.0	24.8	14.4	88
	미혼	(32)	6.3	34.4	31.3	18.8	9.4	59
	기타	(4)	25.0	25.0	50.0	0.0	0.0	40
가구원수	1인	(21)	19.0	52.4	19.0	4.8	4.8	78
	2인	(160)	6.9	30.6	35.0	14.4	13.1	84
	3인	(125)	1.6	12.8	40.0	33.6	12.0	80
	4인 이상	(97)	1.0	12.4	35.1	32.0	19.6	96

## 2) 단기유동성자산

- 가구 단기유동성자산의 경우, '1,0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 구간대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66.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농협 가입자'(114.1백만원), '2개 이상 조합 가입자'(143.8백만원), '대구/경북'(235.1백만원)에서 평균 단기유동성자산 보유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부록 그림 2-42] 가구 단기유동성자산



<부록 표 2-68> 가구 단기유동성자산(1)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만원 미만	1,000만~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7,000만원 미만	7,000만~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평균 자산	
전체		(403)	11.7	35.0	19.9	10.2	6.9	16.4	67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7.8	31.9	12.9	12.1	6.9	28.4	114	
	신협	(120)	10.0	38.3	20.8	5.8	5.0	20.0	67	
	새마을금고	(130)	15.4	32.3	18.5	8.5	10.8	14.6	75	
	수협	(101)	11.9	38.6	21.8	12.9	4.0	10.9	52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8.1	32.4	11.7	11.7	7.2	28.8	117
		준조합원	(5)	0.0	20.0	40.0	20.0	0.0	20.0	46
	신협	지역	(107)	8.4	38.3	21.5	4.7	5.6	21.5	71
		직장	(14)	21.4	42.9	14.3	14.3	0.0	7.1	27
	새마을금고	지역	(123)	15.4	30.9	18.7	8.9	10.6	15.4	78
		직장	(7)	14.3	57.1	14.3	0.0	14.3	0.0	23
	수협	조합원	(100)	12.0	39.0	22.0	13.0	3.0	11.0	52
		준조합원	(1)	0.0	0.0	0.0	0.0	100.0	0.0	71

〈부록 표 2-68〉의 계속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 만원 미만	1,000만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자산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1.8	35.5	20.8	10.7	7.0	14.1	56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10.4	31.3	12.5	6.3	6.3	33.3	144	
성	남자	(203)	10.3	30.5	22.2	10.8	7.9	18.2	83	
	여자	(200)	13.0	39.5	17.5	9.5	6.0	14.5	50	
연령	19~39세	(84)	9.5	51.2	13.1	7.1	7.1	11.9	66	
	40~59세	(158)	11.4	32.9	22.8	8.2	7.0	17.7	64	
	60세 이상	(161)	13.0	28.6	20.5	13.7	6.8	17.4	70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13.9	34.4	11.9	11.9	8.6	19.2	67	
	대전/충청	(63)	25.4	46.0	11.1	6.3	4.8	6.3	37	
	광주/전라	(65)	10.8	41.5	43.1	1.5	1.5	1.5	27	
	대구/경북	(30)	0.0	16.7	0.0	6.7	6.7	70.0	235	
	부산/울산/경남	(94)	3.2	29.8	28.7	17.0	9.6	11.7	60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5.9	18.5	22.2	7.4	0.0	25.9	96	
	고등학교 졸업	(198)	13.1	38.4	18.7	11.1	6.6	12.1	56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3.7	33.3	27.2	7.4	8.6	19.8	83	
	대학교(4년제) 졸업	(97)	11.3	34.0	15.5	11.3	8.2	19.6	66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5.6	35.6	13.3	12.2	7.8	25.6	111
		발급 불가/모름	(10)	30.0	20.0	10.0	10.0	0.0	30.0	137
	신협	발급 가능	(89)	9.0	39.3	23.6	5.6	5.6	16.9	44
		발급 불가/모름	(12)	8.3	25.0	33.3	8.3	0.0	25.0	105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4.1	30.4	21.7	9.8	14.1	9.8	48
		발급 불가/모름	(10)	50.0	20.0	0.0	10.0	0.0	20.0	71
	수협	발급 가능	(88)	11.4	38.6	22.7	12.5	3.4	11.4	50
		발급 불가/모름	(12)	16.7	41.7	16.7	16.7	0.0	8.3	61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2.4	33.3	20.3	16.3	11.4	16.3	63	
	4~6등급	(116)	9.5	36.2	19.0	10.3	8.6	16.4	56	
	7~10등급	(119)	16.8	26.9	24.4	7.6	3.4	21.0	87	
	모름	(45)	28.9	57.8	8.9	0.0	0.0	4.4	49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33.3	22.2	0.0	11.1	0.0	33.3	167	
	3,000만~5,000만원 미만	(88)	17.0	44.3	10.2	8.0	5.7	14.8	54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0.4	46.5	20.8	5.6	7.6	9.0	46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8.2	27.8	26.8	13.4	6.2	17.5	68	
	10,000만원 이상	(56)	5.4	7.1	26.8	19.6	10.7	30.4	106	

〈부록 표 2-69〉 가구 단기유동성자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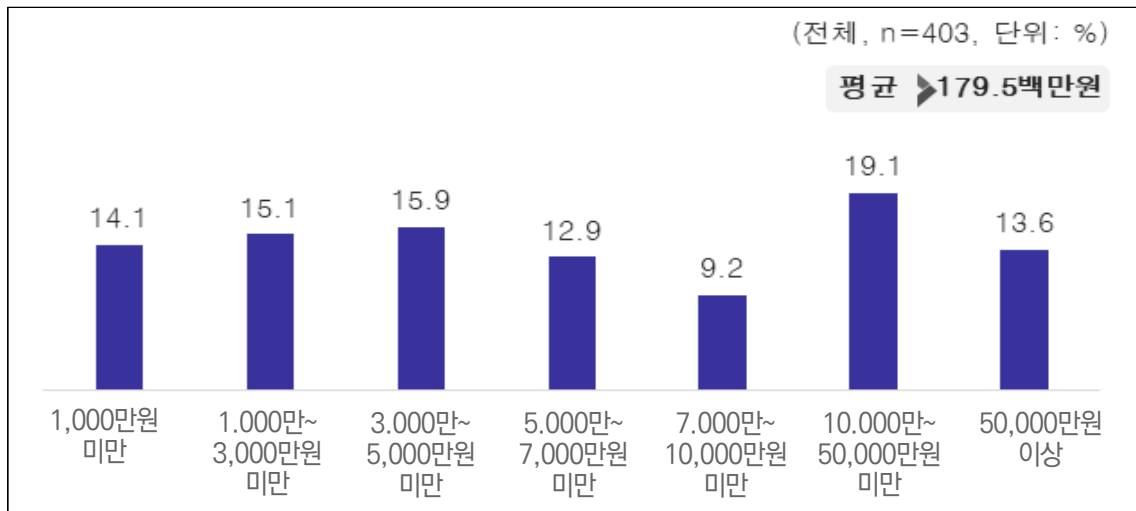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 만원 미만	1,000만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자산	
전체	(403)	11.7	35.0	19.9	10.2	.9	16.4	67	
직업	관리자	(5)	40.0	0.0	0.0	20.0	20.0	20.0	51
	사무 종사자	(49)	16.3	42.9	16.3	2.0	10.2	12.2	45
	서비스 종사자	(57)	19.3	42.1	19.3	5.3	1.8	12.3	41
	판매 종사자	(128)	7.8	29.7	21.1	14.8	10.9	15.6	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7.4	38.0	23.1	11.1	3.7	16.7	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38.9	16.7	22.2	5.6	11.1	5.6	27
	장기·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0.0	42.9	0.0	0.0	14.3	42.9	136
	단순노무 종사자	(3)	0.0	100.0	0.0	0.0	0.0	0.0	21
기타	(28)	3.6	28.6	17.9	14.3	0.0	35.7	107	
근로 지속 기간	10년 미만	(80)	8.8	42.5	13.8	8.8	8.8	17.5	81
	10~20년 미만	(104)	13.5	42.3	17.3	6.7	5.8	14.4	54
	20~30년 미만	(89)	10.1	37.1	22.5	12.4	4.5	13.5	59
	30~40년 미만	(89)	12.4	20.2	28.1	14.6	10.1	14.6	58
	40년 이상	(41)	14.6	29.3	14.6	7.3	4.9	29.3	106
혼인상태	기혼	(367)	11.4	33.2	20.7	10.4	6.8	17.4	69
	미혼	(32)	12.5	56.3	9.4	6.3	9.4	6.3	44
	기타	(4)	25.0	25.0	25.0	25.0	0.0	0.0	24
가구원수	1인	(21)	23.8	33.3	4.8	14.3	4.8	19.0	45
	2인	(160)	13.8	26.9	25.0	9.4	8.1	16.9	80
	3인	(125)	11.2	43.2	14.4	12.0	5.6	13.6	54
	4인 이상	(97)	6.2	38.1	21.6	8.2	7.2	18.6	66

### 3) 장기자산

- 가구 장기자산의 경우, 평균 179.5백만원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농협'(223.7백만원), '수협'(256.1백만원), '2개 이상 조합 가입자'(292.2백만원)에서 평균 가구 장기자산이 2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대구/경북'(486.8백만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320.1백만원)에서는 평균 장기 자산 보유액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부록 림 2-43] 가구 장기자산



〈부록 표 2-70〉 가구 장기자산(1)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만원 미만	1,000만~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미만	5,000만~7,000만원 미만	7,000만~10,000만원 미만	10,000만~50,000만원 미만	50,000만원 이상	평균 자산	
전체		(403)	14.1	15.1	15.9	12.9	9.2	19.1	13.6	179	
가입 조합 (복수응답)	지역농협	(116)	11.2	13.8	12.9	6.9	7.8	25.0	22.4	224	
	신협	(120)	11.7	15.0	13.3	15.8	11.7	19.2	13.3	159	
	새마을금고	(130)	11.5	16.9	17.7	12.3	10.0	20.8	10.8	150	
	수협	(101)	14.9	7.9	17.8	14.9	11.9	17.8	14.9	256	
가입 유형 (복수응답)	지역농협	조합원	(111)	11.7	14.4	12.6	7.2	7.2	24.3	22.5	223
		준조합원	(5)	0.0	0.0	20.0	0.0	20.0	40.0	20.0	238
	신협	지역	(107)	9.3	14.0	13.1	15.0	13.1	20.6	15.0	174
		직장	(14)	35.7	21.4	14.3	21.4	0.0	7.1	0.0	27
	새마을금고	지역	(123)	8.9	17.1	17.9	13.0	10.6	21.1	11.4	155
		직장	(7)	57.1	14.3	14.3	0.0	0.0	14.3	0.0	55
	수협	조합원	(100)	15.0	8.0	18.0	15.0	12.0	18.0	14.0	251
		준조합원	(1)	0.0	0.0	0.0	0.0	0.0	0.0	100.0	730

〈부록 표 2-70〉의 계속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 만원 미만	1,000만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만 ~50,000 만원 미만	50,000 만원 이상	평균 자산	
복수 가입	복수 가입 없음	(355)	16.1	16.3	16.6	13.2	8.5	17.2	12.1	164	
	2개 이상 조합 가입	(48)	0.0	6.3	10.4	10.4	14.6	33.3	25.0	292	
성	남자	(203)	13.3	16.3	15.8	10.8	9.9	18.2	15.8	191	
	여자	(200)	15.0	14.0	16.0	15.0	8.5	20.0	11.5	168	
연령	19~39세	(84)	19.0	17.9	21.4	9.5	11.9	14.3	6.0	120	
	40~59세	(158)	12.0	12.7	14.6	17.1	10.1	18.4	15.2	184	
	60세 이상	(161)	13.7	16.1	14.3	10.6	6.8	22.4	16.1	206	
권역	서울/경기/인천	(151)	10.6	9.3	10.6	12.6	10.6	30.5	15.9	191	
	대전/충청	(63)	44.4	11.1	15.9	14.3	6.3	7.9	0.0	28	
	광주/전라	(65)	12.3	32.3	26.2	15.4	12.3	1.5	0.0	35	
	대구/경북	(30)	0.0	0.0	6.7	6.7	6.7	23.3	56.7	487	
	부산/울산/경남	(94)	5.3	20.2	20.2	12.8	7.4	19.1	14.9	264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29.6	14.8	11.1	7.4	3.7	18.5	14.8	196	
	고등학교 졸업	(198)	13.1	14.1	18.7	16.2	8.1	17.2	12.6	161	
	전문대학교(2, 3년제) 졸업	(81)	9.9	19.8	14.8	11.1	7.4	21.0	16.0	187	
	대학교(4년제) 졸업	(97)	15.5	13.4	12.4	9.3	14.4	21.6	13.4	207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지역농협	발급 가능	(90)	7.8	17.8	14.4	7.8	7.8	25.6	18.9	192
		발급 불가/모름	(10)	60.0	0.0	0.0	10.0	0.0	10.0	20.0	212
	신협	발급 가능	(89)	13.5	18.0	12.4	15.7	10.1	19.1	11.2	151
		발급 불가/모름	(12)	16.7	16.7	16.7	8.3	0.0	25.0	16.7	178
	새마을 금고	발급 가능	(92)	13.0	18.5	19.6	14.1	9.8	15.2	9.8	121
		발급 불가/모름	(10)	30.0	20.0	20.0	10.0	0.0	10.0	10.0	110
	수협	발급 가능	(88)	12.5	9.1	19.3	14.8	12.5	18.2	13.6	252
		발급 불가/모름	(12)	33.3	0.0	8.3	16.7	8.3	16.7	16.7	246
신용점수 (환산등급 /추정 포함)	1~3등급	(123)	9.8	4.1	9.8	12.2	8.1	34.1	22.0	265	
	4~6등급	(116)	4.3	20.7	13.8	16.4	15.5	20.7	8.6	159	
	7~10등급	(119)	12.6	21.8	25.2	10.9	6.7	7.6	15.1	171	
	모름	(45)	55.6	13.3	13.3	11.1	2.2	4.4	0.0	20	
가구 종합소득 (2022년)	3,000만원 미만	(18)	11.1	16.7	16.7	27.8	0.0	16.7	11.1	141	
	3,000만~5,000만원 미만	(88)	21.6	15.9	15.9	11.4	11.4	15.9	8.0	116	
	5,000만~7,000만원 미만	(144)	18.8	14.6	18.1	11.1	9.7	16.7	11.1	141	
	7,000만~10,000만원 미만	(97)	6.2	12.4	5.2	17.5	10.3	25.8	22.7	261	
	10,000만원 이상	(56)	5.4	19.6	28.6	7.1	5.4	19.6	14.3	250	

〈부록 표 2-71〉 가구 장기자산(2)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사례수	1,000 만원 미만	1,000만 ~3,000 만원 미만	3,000만 ~5,000 만원 미만	5,000만 ~7,000 만원 미만	7,000만 ~10,000 만원 미만	10,000만 ~50,000 만원 미만	50,000 만원 이상	평균 자산	
전체	(403)	14.1	15.1	15.9	12.9	9.2	19.1	13.6	179	
직업	관리자	(5)	40.0	0.0	20.0	20.0	20.0	0.0	33	
	사무 종사자	(49)	20.4	22.4	12.2	12.2	14.3	16.3	81	
	서비스 종사자	(57)	17.5	19.3	19.3	8.8	12.3	14.0	110	
	판매 종사자	(128)	14.8	12.5	15.6	18.8	7.8	22.7	1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8)	3.7	14.8	20.4	11.1	7.4	18.5	3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33.3	16.7	0.0	5.6	16.7	11.1	145	
	장가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14.3	14.3	0.0	14.3	14.3	28.6	146	
	단순노무 종사자	(3)	33.3	0.0	33.3	33.3	0.0	0.0	27	
	기타	(28)	14.3	10.7	10.7	3.6	0.0	28.6	32.1	291
근로 자속 기간	10년 미만	(80)	18.8	16.3	11.3	10.0	10.0	22.5	11.3	194
	10~20년 미만	(104)	17.3	20.2	17.3	11.5	6.7	12.5	14.4	143
	20~30년 미만	(89)	12.4	6.7	19.1	15.7	12.4	18.0	15.7	201
	30~40년 미만	(89)	11.2	15.7	15.7	14.6	9.0	21.3	12.4	170
	40년 이상	(41)	7.3	17.1	14.6	12.2	7.3	26.8	14.6	215
혼인상태	기혼	(367)	13.4	15.5	15.8	12.5	9.3	19.6	13.9	181
	미혼	(32)	25.0	12.5	18.8	15.6	9.4	9.4	9.4	136
	기타	(4)	0.0	0.0	0.0	25.0	0.0	50.0	25.0	403
가구원수	1인	(21)	14.3	0.0	9.5	33.3	4.8	33.3	4.8	140
	2인	(160)	11.3	19.4	16.9	11.9	8.8	16.9	15.0	195
	3인	(125)	18.4	10.4	19.2	12.8	12.0	15.2	12.0	162
	4인 이상	(97)	13.4	17.5	11.3	10.3	7.2	24.7	15.5	185



부록

# 조사표

ID

## 인지세의 면제 관련 설문조사 : 조합원(회원) 대상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설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세제혜택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조 사 주 관



조 사 수 행 : Ipsos 입소스 주식회사 사회여론조사본부

담당 연구원 : 황 지 은 선임

실사 연구원 : 김 장 현 책임

연 락 처 : 02-6464-5394

###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입소스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기업) 정보를 중요시하며 본 조사결과 통계 분석 및 조사 참여 확인 등을 위해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일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유기간
수집, 이용 내역	개인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조사 검증	본 과업 계약 종료 시점 이후 1년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 주셔야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조사불가)

응답자 정보(응답 필수)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조사 후 기록(면접원 기입)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조사일시 2023년 4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조사지점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택1: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의 \_\_\_\_\_ 지점

## 응답자 선정 질문

SQ1. 본 조사는 **농협(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가입자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SQ1-1. 농협 가입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② 준조합원 <input type="checkbox"/> 면접 중단
----------------	---

② 신용협동조합(신협)



SQ1-2. 신협 가입유형 (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단체
---------------------------	---

③ 새마을금고



SQ1-3. 새마을금고 가입유형(복수 응답)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직장
-----------------------------	---

④ 수산업협동조합(수협)



SQ1-4. 수협 가입형태	<input type="checkbox"/> ① 조합원 <input type="checkbox"/> ② 준조합원 <input type="checkbox"/> 면접 중단
----------------	---

⑤ 가입한 조합이 없다  면접 중단

⑥ 모름/무응답  면접 중단

SQ2. **[조사원 확인 : 조사 쿼터 체크]** 응답하신 조합 중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② 신용협동조합(신협)  
 ③ 새마을금고                      ④ 수산업협동조합(수협)

SQ3. **[조사원 확인 : 조사 쿼터 체크]**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SQ4. [☞조사원 확인 : 조사 쿼터 체크]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	--	--	--	---

☞ 2004년 이후 면접 중단

- ① 만 19~39세 (1984년~2004년)      ② 만 40~59세 (1964년~1983년)      ③ 만 60세 이상 (~1963년 이전)

SQ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도		군·구
--	-----	--	-----



A6. 만약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5호의 혜택이 위 문항에 응답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A7. 현행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기재 금액이 5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이 인지세 면제로 받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중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릴 경우, 인지세 7만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절반인 3만 5천원을 시중 은행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A7-1(으)로 이동		☞A7-2(으)로 이동	

A7-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면제제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서
- 용자금액 대비 인지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1억 기준 7만원(0.07%))
- 시중 은행에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 지불로 인한 손해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어서
- 대출 받기가 부담스러워 5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않아 본 조항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 기타 (구체적으로: )

A7-2.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 1억 이하의 용자금액은 서민의 생활자금의 단기 유동성 공급 측면이 강하며, 이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적은 편에 속해 소액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부채를 다 갚고 다시 빌릴 때 다시 수혜 가능)
- 기타 (구체적으로: )

A8.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의 개선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현행 제도 유지 ~~☞~~ 유지 응답시 타 응답 불가
-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 용자 금액 한도 완화(1억원 초과시에도 적용)
-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 기타 (구체적으로: )



B6. 만약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6호의 혜택이 위 문항에 응답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B7. 현행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하여 건 별로 1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이 인지세 면제로 받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 B7-1(으)로 이동		☞ B7-2(으)로 이동	

B7-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과 관련된 인지세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 인지세 지불 여부가 은행과 예금·적금 상품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 과거와 달리 이율이 낮아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 기타 (구체적으로: )

B7-2.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횡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해도 예적금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 기타 (구체적으로: )

B8.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개선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제도 유지 ☞유지 응답시 타 응답 불가
- 현재 지원 대상인 조합원 요건을 저소득층으로 변경
- 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 통장 등에도 혜택을 확대
- 제도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확보만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
- 기타 (구체적으로: )

### C. 제도 인지 및 경제적 효과 : 제1항 제7호, 제11호

#### 💡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 제11호

**제7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제11호**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뒤의 참고자료 '가.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원문 (삭제 조항 제외)' 참조

C1.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제7호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①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모른다
제11호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①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모른다

C2. **[농협, 수협 조합 가입자만]**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 또는 제11호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① 예  C3(으)로 이동  ② 아니오  C4(으)로 이동

C3. **[농협, 수협 조합 가입자만]**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 또는 제11호의 **혜택을 받으신 금액을 적어주세요.**

구분		금액							원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제7호	농어촌정비사업								원
	농지은행사업								원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원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원
제11호	농지조성사업								원
총 액		조사원 기입							원

C4.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제11호가

각종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 참여 유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C5.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7호·제11호가 주는 경제적 효과(소득 및 자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 C5-1(으)로 이동		☞ C5-2(으)로 이동	

C5-1.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의 금액 대비 인지세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 해당 사업(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 확대 사업, 농지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어서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C5-2.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D4-2.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제1항 제5호(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와 다르게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 인지세 면제액이 소액이라해도 세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 기타 (구체적으로: )

D6.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의 제1항 제9호에서 농민에 대해서 공익 목적 사업 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관련된 거래에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민과 임업인에 대하여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과도한 조세 지출이 발생하여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보기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행 제도 유지 ☞유지 응답시 타 응답 불가
-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유사 항목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항을 추가
- 국가 재정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농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 조항을 폐지 또는 축소
- 기타 (구체적으로: )

## E.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

E1. 현재까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기여하였던 가구 기준 소득은 무엇인가요? 각 항목에 기여도가 큰 순서대로 1~8순위로 응답해주세요.

※ 현재까지의 자산 축적에 기여한 원천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요.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소득	순위 (1~8(으)로 기입) ☞모두 없음 응답 불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펀드 등의 증권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자산 획득	
기타	
구체적으로:	

E2. 현재까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중요하게 기여하였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지원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산 축적에 기여도 높은 소득	소득별 적합한 지원 형식(단수 응답)
1순위 소득	①조세지원(세액감면, 비과세혜택 등) ②재정지원(대출 지원, 보조금 지원 등)
2순위 소득	①조세지원(세액감면, 비과세혜택 등) ②재정지원(대출 지원, 보조금 지원 등)
3순위 소득	①조세지원(세액감면, 비과세혜택 등) ②재정지원(대출 지원, 보조금 지원 등)

E3-1. 농민·어민·임업인의 지원을 위해 어떠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 중 3순위까지 응답해주세요.

E3-2.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에 대해 지원 방식도 응답해주세요.

구분	E3-1. 지원 사업	순위 (1~3(으)로 기입)	E3-2. 지원 방식	항목 응답
유형 자산	사업관련 주요 고정자산 지원 (토지, 배, 어업권 등)		1. 세액 감면 2. 비과세 혜택 3. 대출 지원 4. 보조금 지원 5. 기타 ( )	
	사업관련 기계 및 이동수단 지원 (농기계, 차량 등)			
	사업 이외 자산 지원(주거 등)			
기술	사업관련 최신기술 지원 (인터넷쇼핑몰, 품종개량 등)		1. 대출 지원 2. 보조금 지원 3. 임대/장소 지원 4. 교육/연구 지원 5. 기타 ( )	
인프라	주변 인프라 지원 (도로, 공공시설 등)		X	
재정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지원		1. 세액 감면 2. 비과세 혜택 3. 과세 이연 4. 보조금 지원 5. 기타 (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직불금 등) 관련 지원			
기타 ( )			1. 세액 감면 2. 비과세 혜택 3. 과세 이연 4. 대출 지원 5. 보조금 지원 6. 임대/장소 지원 7. 교육/연구 지원 8. 기타 ( )	

E4. 인지세의 면제(§조특법 제116조)와 관련한 제언 사항이 있으면 가감 없이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Q6. 귀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 신용카드 발급 : 신용 점수, 나이, 장기연체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발급  
 ※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신용점수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 0.65% 이하로  
 나이스지키미 570점 이상, 올크레딧 541점 이상, SCI 555점 이상

- ① 발급 가능      ② 발급 불가능      ③ 모름

DQ7. 귀하의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장 최근에 확인한 점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점수 :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지키미(NICE평가정보), 올크레딧(KCB))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 점수로, 신용거래시 연체 유무, 금액, 기간, 다중채무 등을 종합하여 정해짐

나이스지키미(NICE평가정보)		점	모름 ⇨ 대략적으로 응답
올크레딧(KCB)		점	모름 ⇨ 대략적으로 응답

☞ 둘 중 한 가지만 응답 가능, 잘 모를 경우 '모름 체크 후' 대략적인 점수로 응답

DQ7-1. 귀하의 신용점수를 확인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모름

DQ8. 2022년 기준 귀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자산 : 재산과 같은 뜻으로 현물 뿐만 아니라,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 실체  
 ※ 단기유동성자산 : 1년 이내 사용 목적의 현금, 예금, 국채 등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 장기자산 : 비교적 장기간(1년 이상)에 걸쳐 사용하고자하는 자산

종합소득					백만원
단기유동성자산 (1년 이내/사용 목적)	자본금(A)		백만원	총 (A+B)	백만원
	부채(B)		백만원		
장기자산 (1년 이상/투자 목적)	자본금(A)		백만원	총 (A+B)	백만원
	부채(B)		백만원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자료

### 가. 인지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원문 (삭제 조항 제외)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1. 12. 29., 2004. 12. 31., 2005. 12. 29., 2006. 12. 30., 2008. 12. 26.,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7. 2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5. 29.,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목개정 2010. 1. 1.]

#### 나. 비과세문서 (인지세법 제6조) 원문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 1. 1.]